10·27 법 난 피 해 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에서
그대의 진실은 샘솟는다

10·27법난 당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들을 구금한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흥국사 대방(大房)



발간사



10·27법난은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억누르고 집권한 신군부가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불교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한 언론은 불교를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하여 불자들은 인욕(忍辱)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불교계의 끊임없는 요구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었고, 후속 조치로 우리 위원회가 발족되어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한국불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피해신고 내용을 심의하여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기념행사와 법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될 기념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은 법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불자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뒤늦게나마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신청이 적어 명예회복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피해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백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기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법난의 진실을 기억하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위원회의 명예회복 사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 6.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지 현

격려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의 발간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80년에 발생한 '10·27법난'은 1700년 한국 불교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가 늦어지면서 불교계와 불자(佛子)들에게도 적지 않은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8년여의 시간이 지난 1988년 국무총리가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졌습니다만, 본격적인 조사와 피해보상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무총리 소속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및 심의, 의료지원금 지급, 법난 기념관 건립 및 기념행사 지원 등을 통해 법난의 진실을 밝히고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그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만, 앞으로도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펴내는 백서는 위원회의 지난 8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10·27법난으로 인한 불교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위원회의 땀과 눈물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10·27법난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서 발간을 비롯하여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치하의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2016. 6.

국무총리 **황 교 안**

축 사



한국불교는 전래 이후 민족과 함께하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는 호국불교의 지혜로운 보살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역사이기에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1980년 '10 · 27법난'은 한국불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 불행하기 그지없는 미증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끊임없이 법난의 진상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2007년에 이르러서야 '10 · 27법난'이 '불교정화라는 미명 아래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후 특별법 제정과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 조금이나마 법난의 아픔을 치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10·27법난'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노력들은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한국불교가 '10·27법난'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백서〉 발간을 통하여 '10·27법난'을 기억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사무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용과 배려는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내는 덕목입니다. 이와 같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전달되어 보다 밝은 세상으로 거듭나기를 손 모아 기원하며 '10·27법난'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진해 나아갑시다.

2016. 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한승수
국무총리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

2008. 12. 30.



한승수
국무총리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

2008. 12. 30.



위원회 현판식

2009. 2. 19.



위원회 현판식

2009. 2. 19.



전국승려대회

1986. 9. 7.



10·27법난 규탄 및 군사독재 종식 **결의대회**

1987. 10. 24.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불교도 실천대회**

1988. 10. 27.



국방부 문공부 10·27 **불교계 수사 경위 설명회**

1989. 1. 30.



삼보스님,
10·27법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할복

2005.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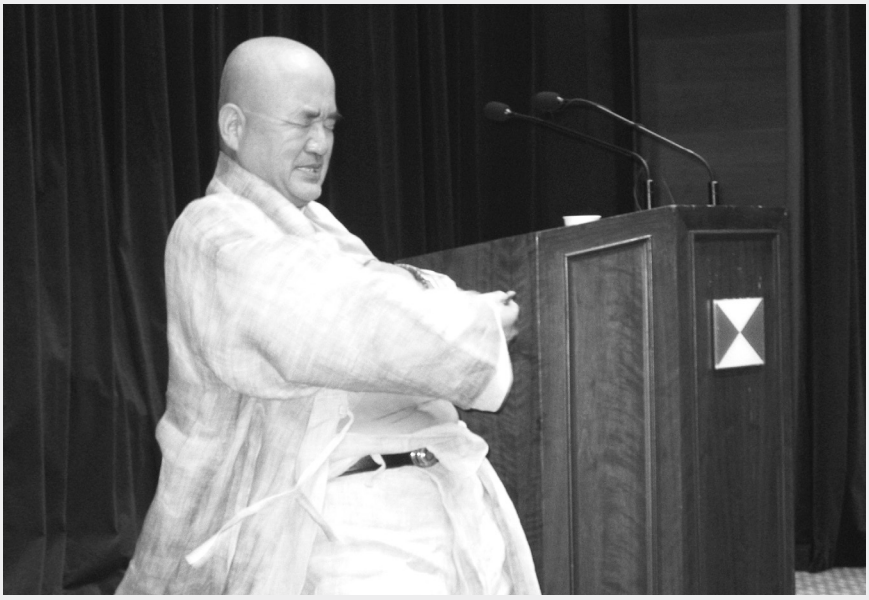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2007. 10. 25.



10·27법난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5. 10. 27.



10·27법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청회**

2008. 1. 23.



제1대 위원장
원학스님 선출

2009. 1. 8.



심의위원회
제42차 회의

2015. 1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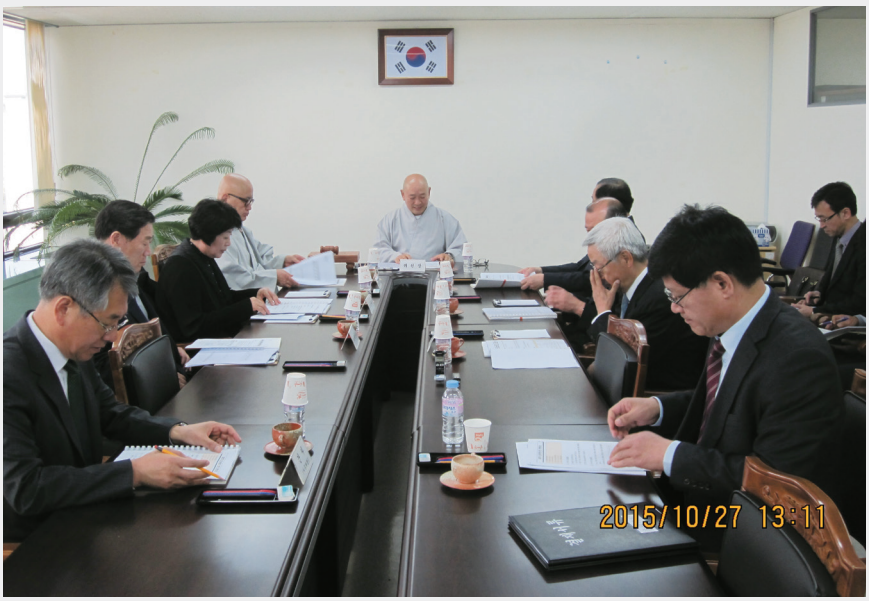

피해실무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2009.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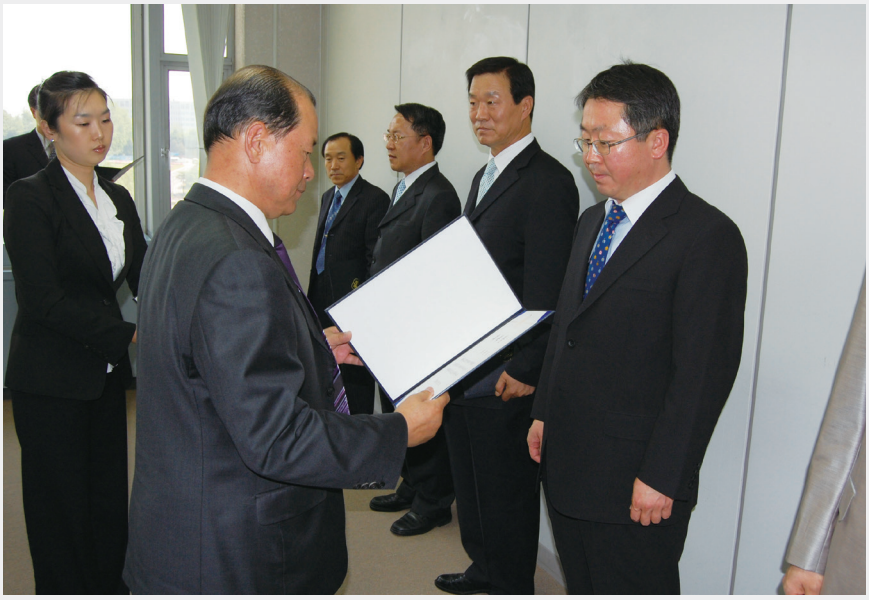

피해실무 위원회 제28차 회의

2015. 3. 31.



명예실무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2009. 5. 8.



명예실무
위원회
제27차 회의

2016. 1. 18.



의료실무 위원회
제34차 회의

2015. 9. 15.



병원 검진

2010. 3. 29.



피해자
신청접수

2013. 10. 31.



피해스님
방문조사

2010. 8. 12.



월주스님 **초청 간담회**

2009.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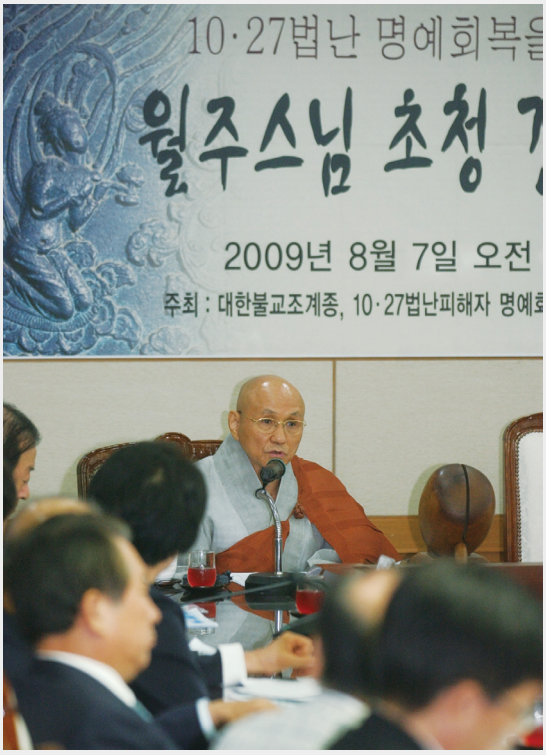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 심포지움**

2009. 10. 9.



10·27법난
피해자 간담회

2009. 10. 9.



전시회
언론보도로 본
10·27법난의
진실

2009. 10. 9.



10·27법난 **30주년 기념법회**

2010. 10. 27.



10·27법난 **30주년 기념 세미나**

2010. 10. 29.



10·27법난 **31주년 기념법회**

2011. 10. 26.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방안 세미나**

2011. 11. 21.



10·27법난 31주년 기념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2012. 1. 17.



10·27법난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구법회**

2012. 12. 14.



10·27법난
33주년 기념식

2013. 10. 25.



10·27법난
피해자 스님 간담회

2013. 10. 25.



10·27법난 **지역순회 강연 및 간담회** (울산)

2013. 12. 4.



10·27법난 제33주년 기념사업 **대학생 포럼 및 캠프**

2013. 11. 9.



불교계
언론 간담회

2014. 3. 5.



10·27법난
피해자 간담회

2014. 10. 27.



10·27법난 **지역순회 강연 및 간담회** (강릉)

2014. 11. 27.



10·27법난 제34주년 기념사업 **캄보디아 역사순례**

2014. 12. 16.



명예회복조치 마련 **토론회**

2015. 8. 27.



10·27법난 제35주년 **기념법회**

2015. 10. 27.



10·27법난 **피해자 간담회**

2015. 10. 27.



10·27법난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의**

2015. 11. 11.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 위원회 **위원 현황**

2016. 6. 현재

위원장



지현스님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조계사 주지, 청량사 회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위원(10명)

• 민간위원(6명)



정문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불국사 부주지, 보문사 주지
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삼보스님 (법흥사 주지)

상원사 주지, 동국대 이사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탄허불교재단 이사



윤원호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월드컵문화운동시민협의회 사무총장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조남진 (국군 예비역불자회 회장)

1사단장, 교육사 교리발전부장
국방부 개혁위원회 부위원장
軍 불교 총연합회 부회장



허남오 (영산대학교 석좌교수)
진주 국제대학교 총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 · 부산 · 충북 지방병무청장



이명묵 (세종병원 원장)
동국대학교병원 병원장
동국대학교 의료원 의료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정부위원(4명)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



황인무 (국방부 차관)
육군 참모차장, 교육사령관, 육군대학 총장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철성 (경찰청 차장)
청와대 사회안전 · 치안비서관, 경남지방경찰청장

차례



제1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절 10·27법난과 위원회 설립 배경 38
1. 10·27법난의 발생과 현황 38
가. 사건의 발생 38
나.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39
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43

제2절 특별법 제정 및 개정 47
1. 특별법 제정 47
가. 입법 과정 47
나. 법안 내용과 쟁점 48
다. 시행령 제정과 쟁점 51
2. 특별법 개정 54
가. 개정 과정 54
나. 개정 법안 내용과 쟁점 56
다. 시행령 개정과 쟁점 62

제3절 위원회 구성과 운영 65
1. 위원회 구성 65
2. 위원회 운영 70
가. 심의위원회 회의 71
나. 실무위원회 회의 73

제4절 위원회 사무기구 75
1.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 75
2. 사무처 77

제2장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제1절 심사 개요 80
제2절 피해신고 공고 및 홍보 82
1. 피해신고 공고 및 홍보 82
2. 피해신고 접수 현황 88

제3절 피해사실 조사 105
1. 피해사실 조사와 조사 기간 105
2. 조사 목적과 방향 106
3. 조사 방법 106
4. 피해사실 조사업무 처리지침 108
5. 자료수집 110



제3장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제1절 심의위원회 114
1.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114
2. 심의위원회 회차별 주요 내용 120
3. 심의위원회 결정 187
가.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결과 및 분석 187
나. 대표적인 피해자 사례 210

제2절 실무위원회 222
1.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223
가. 피해실무위 개최 현황 223
나. 피해실무위 회차별 주요 내용 226
2.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250
가. 명예실무위 개최 현황 250
나. 명예실무위 주요 심의 · 의결 사항 255
3.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267
가. 의료실무위 개최 현황 267
나. 의료실무위 회차별 주요 내용 272

제4장 10·27법난 명예회복 사업

제1절 명예회복방안 306
1. 명예회복방안 모색 306
2. 명예회복방안의 전제 307
가.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의 피해 유형 307
나. 법령에 따른 명예회복 308
3. 명예회복방안 모색과 활동 경과 309
가. 연구용역 사업 309
나. 세미나 및 토론회 315
다. 간담회 및 피해자 명예회복의견서 조사 318
4. 분야별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검토 321
가. 분야별 명예회복방안 321
나.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검토 322
5. 명예회복조치 마련 325
가. 위원회의 명예회복조치 심의 · 의결 경과 325
나. 유형별 명예회복조치 326



차례

제2절 10·27법난 기념관 건립 329
1. 기념관 건립계획 수립 330
가. 사업 개관 330
나. 기초자료 분석 및 타 기념관 사례조사 331
다. 기념관 구성과 운영 계획 331
라. 총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추산 332
2. 기념관 건립예산 편성 334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35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336
5. 기부채납약정서 체결 340
6.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340

제3절 10·27법난 기념행사 342
1. 주요 기념행사 현황 342
2. 연도별 기념행사 진행 344

제5장 위원회 활동성과와 후속과제

제1절 활동성과 356
제2절 후속과제 359

부 록

1.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 명단 362
2.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379

주요 표 목차

[표 1-1] 강영훈 국무총리 사과 담화문 전문 40
[표 1-2]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권고 내용 46
[표 1-3]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48
[표 1-4] 윤원호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48
[표 1-7] 위원회 제정 법률이 된 국방위원회 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51
[표 1-10] 시행령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53
[표 1-11]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56
[표 1-14] 법 제1차 개정 당시 개인 배 · 보상 관련 국회 주요 발언 58
[표 1-15]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59
[표 1-17] 법 제2차 개정 당시 개인 배 · 보상 관련 국회 논의 60
[표 1-18]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61
[표 1-21] 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조직도 66
[표 1-26] 지원단 최초 기구조직도 76
[표 1-27] 사무처 1차 기구도 및 인원 78
[표 1-28] 사무처 2차 기구도 78
[표 2-1] 위원회 업무 처리 절차 81
[표 2-2] 피해신고 공고 관보 게재 83
[표 2-6] 피해신고 안내 홍보(광고) 및 실적 총괄(2009~2015) 87
[표 2-7]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현황 88
[표 2-8] 10·27법난 피해신고 접수 현황 90
[표 3-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115
[표 3-96] 10·27법난 피해자 등 피해신고에 따른 위원회 결정 결과 188
[표 3-98] 위원회 심의 · 의결 현황 203
[표 3-101]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 204
[표 3-103] 재심신청 상세 내역 및 처리결과 205
[표 3-105] 피해실무위 개최 현황 223
[표 3-138] 명예실무위 개최 현황 250
[표 3-139] 의료실무위 개최 현황 268
[표 4-1] 법령에 명시된 10·27법난 명예회복방안 308
[표 4-5] 분야별 명예회복방안 321
[표 4-6] 10·27법난 피해 유형별 명예회복조치 327
[표 4-7] 10·27법난기념관 사업부지 배치계획도 333
[표 4-8]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339
[표 4-9] 10·27법난기념사업 진행 상황(2009~2015년) 343

제1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10·27법난과 위원회 설립 배경

1 10·27법난의 발생과 현황 [1]

가. 사건의 발생

1980년 10월 27일 새벽,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불교계 정화라는 미명하에 이른바 '45계획'[2] 작전에 들어갔다.

합수단은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 사찰을 급습하여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위시한 불교계 인사들과 민간인 관련자들을 강제 연행하여 고문과 폭행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신성한 법당을 짓밟는 불교계 탄압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다음날인 10월 28일 계엄사령부는 〈사이비 승려 및 불교계 내 폭력배 소탕에 관한 계엄사 발표문〉을 각종 언론을 통해 내보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합동수사본부는 전국 보안부대장에게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지시'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1980년 10월 30일 오전 6시에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대공용의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보안대 818명, 군 2만 3,600명, 경찰 7,658명 등 군·경 합동 병력 총 3만 2,076명을 동원하여 전국 사찰 3,733곳을 비롯하여 암자 1,607곳, 기타 291곳 등 총 5,731곳을 일제히 수색하였다.[3]

---

1) 본 백서의 제1장 제1절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행한 『10·27법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2007. 10. 25.)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주관한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10·27법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2009. 10. 9.)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 합수단이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을 수립할 당시 '45계획'이라 명명한 것은 조계종의 제1교구 본사이자 총무원이 소재하고 있는 조계사의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인 데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합수단의 김충우 단장 면담 조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1980년 10월 30일의 전국 사찰 일제 수색 역시 "10·27 사건과 함께 패키지로 세워진 계획이었다."고 한다. 즉, 전국 사찰 일제 수색사건은 앞서 10월 27일에 일어난 사건과 함께 이른바 '45계획'의 일환으로 결행한 합수단의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날 수색 결과 포고령 위반자 1명, 불교계 수배자 1명, 거동 수상자 362명, 기타 범법자 1,412명 등 총 1,776명을 검거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불교계 수배자는 단 1명뿐이었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무혐의로 1,499명이 훈방조치 되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불교계 인사 검거 및 사찰을 수색한 합동수사본부는 20여 일 후인 1980년 11월 1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불교계 인사 및 민간인 관련자를 포함한 55명과 기타 참고인 98명 등 총 153명을 강제 연행하거나 소환 조사하여, 이 중 승려 10명과 일반인 8명 등 총 18명을 형사입건하였다. 그리고 32명에 대해서는 조계종 정화중흥회의 정화분과위원회에 맡겨 승적 박탈(체탈도첩), 종무직 사퇴(공권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없는 5명은 훈방하는 한편, 사유재산은 조계종에 귀속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10·27법난에 대한 불교계의 저항은 젊은 대학생들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1980년 11월 22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산하 12개 대학은 '10·27 불교계 탄압사건'을 '법난'으로 규정하고, 당시 전두환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최초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84년 10월 27일 법난 4주기를 맞아 조계사에 1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10·27 법난에 대한 규탄 및 규명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부터 해마다 각종 불교단체에서 법난 기념행사가 열렸다.

1988년 총선을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 구성은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국회의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이하 '5공특위')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7월 20일 민주불교운동연합회(이하 '민불련')가 성명서를 발표하여 10·27 법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서 8월 2일 민불련 회원 10여 명이 평화민주당 당사에서 10·27법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다음 날인 3일 국회 5공특위는 야권 3당 단일안으로 '10·27법난 조사'를 현안으로 채택하였다.

10·27법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1988년 11월 16일 월하·서운·월주·월

탄 · 혜성 스님 등 불교계 중진 · 원로 승려들로 구성된 '10 · 27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위원장 월주 스님)가 발족되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민주당과 평민당 총재들이 '10 · 27 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와 회동을 갖고 협조를 다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조계종에서도 12월 14일 〈10 · 27법난에 대한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는 조계종 차원의 공식적인 문건을 청와대 · 문화공보부 · 국방부 · 보안사령부 등 정부기관에 발송하였다.

이렇게 되자 마침내 강영훈 국무총리는 1988년 12월 30일 불교계 승려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10 · 27법난 8년 만에 최초로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표 1-1 강영훈 국무총리 사과 담화문 전문

10·27 불교계 수사 사건에 관한 국무총리 담화

존경하는 불교도 여러분,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지도 벌써 1600여 성상이 흘렀습니다.
불교는 우리 역사상 민족문화의 중핵으로 한민족의 문화적 긍지를 지탱해온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의 대도를 걷고 있으며, 이러한 비약이 가능하게 된 저변에는 관용과 화합을 실천적으로 전개해온 불교의 기여가 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지난 1980년 10월 27일 비상계엄 하에서 있었던 불교계 수사로 말미암아 불교도 여러분 및 불교의 자존에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됐던 점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밀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그 사실이 수차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수행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나아가 마치 불교계 내부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오도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과잉수사로 인해 귀중한 개인의 인권과 신성한 교권이 침해되고 불교계의 명예와 권익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힌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정치와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부당한 종교계 개입이라는 문제점을 남긴 10·27 수사사건과 같은 사례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10·27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불교계에 적정한 보상으로 실추된 권익회복과 불교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10·27 수사사건의 경위를 밝혀 다시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도 여러분의 대승적 아량과 폭넓은 이해를 기대합니다.

1988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강영훈

1989년에 들어서면서 10·27법난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이어졌다. 1월 30일에는 육군본부 회관에서 '10·27 불교계 수사 경위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당시 합수단 실무자였던 김충우 전 단장을 비롯한 법난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사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피해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회 5공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10·27법난을 의제로 채택하고 증언 청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89년 3월 2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돌연 10·27법난에 대한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재야 불교 단체들은 종단협의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지만, 이틀 후인 3월 22일 10·27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와 증인으로 채택된 승려들이 청문회 비공개 진행을 반대하고, 5공특위 위원장에게 여야 의원 전원 참석과 TV·라디오 생중계를 요구하며 청문회 연기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10·27법난에 대한 5공특위 청문회는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5공특위 청문회를 통해 1980년 당시 사회정화 조치가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추어진 점을 사과하면서, 집행기관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는 면피성 발언을 하였다. 이후 1990년 1월 1일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가 10·27법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제 실시를 요구하는 등 간헐적으로 불교계 의견을 제시했으나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해인 1993년 10월 27일 법난 13주기를 맞아 전국불교운동연합회(이하 '전불련')·실천불교전국승가회·불교인권위원회·부산불교인권위원회·석림동문회 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전불련 의장단이 당시 이만섭 국회의장을 직접 면담하고 〈10·27법난 진상규명과 국회 내 진상조사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1995년 법난 15주기 때도 조계종 차원에서 '5·18학살 및 10·27법난 책임자참회촉구대회'를 열어 당시 김영삼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이후에도 조계종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이렇다 할 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1월 24일에는 불교인권위원회가 서울 안국동 길상사인권법당에서 '10·27 불교법난 21주년 반성과 회고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잠복기

를 거쳤던 10·27법난 진상규명의 의제를 끌어내 다시금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2003년 2월 16일에는 MBC 시사프로그램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45계획' 10·27법난의 진실〉이 방영되면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불교탄압의 충격적인 사실들이 일반인에게까지 공개되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해오던 10·27법난의 진상규명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을 썼으며, 불교계도 이에 힘을 받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갔다. 2005년 7월 4일 조계종은 '10·27법난불교대책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불교인에게 보내는 참회문과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그라지던 진상규명의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그리고 연구소 설립, 진상조사, 관련자 명예회복, 10·27법난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7월 28일에는 '10·27법난진상규명추진위원회'가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방문해 진상규명과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그 결과 8월 18일 조계종은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스님)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불교계의 움직임과 함께 2005년 8월 1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법률 제정을 언급함으로써 10·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바로 그 직후인 2005년 8월 23일 한국일보 송현클럽 강당에서는 '10·27법난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법타 스님) 주최로 '10·27법난 피해자 증언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피해자로 나온 삼보 스님[4]은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고초를 겪은 일들을 증언하던 중 할복을 기도하면서까지 당국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 9월 5일 10·27법

4)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상원사의 삼보 스님은 횡성군 보광사에 잠시 다니러 갔다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스님은 적법한 절차도 없이 체탈도첩을 당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삼청교육대까지 끌려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법난 피해 승려들 중에서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스님은 여느 피해자들과 달리 수사관에게 상당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삼청교육대로 가게 된 원인이었을 거라고 스스로 진단하였다. 당시에 보통 A급이나 B급은 형무소로 가고, C급은 삼청교육대로 보내졌다고 한다. 2005년 8월 23일 삼보 스님이 피해자 증언도중 할복을 기도했을 때, 주위에서 중지시켜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난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10월 27일 국회에서 '10·27법난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2006년에는 10·27법난 26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7년 10월 25일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를 통하여, 10·27법난이 불교계 정화 명분으로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정되었다. 조계종은 11월 6일 중앙종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10·27법난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의 건'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10·27법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밝힌 언론발표문의 17가지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우리 위원회는 10·27법난이 신군부 세력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그 집행부에 대한 신군부와 문공부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1980년 3월 30일 조계종은 분규 종식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고, 4월 26일 중앙종회에서 월주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으나 문공부는 장관의 지시로 총무원장 등록을 지연시켰음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3) 일부 승려들은 종정 복권을 시도하고, 진정 및 투서를 접수시키며, 고발 사태를 끊임없이 야기하는 등 국보위의 사회정화 국면을 이용하려고 시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월주 총무원장은 신군부 측이 요구한 전두환 장군 지지표명과 문공부의 자율정화 지침을 거부하였고, 불교재산관리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국보위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측과의 갈등 관계가 심화되었다.

5) 국보위는 1980년 6월경 '3단계 사회정화계획'[5]을 추진했으며, 종교계는 3단계인 10월부터 숙정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진정 및 투서 횟수나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종교계 중 하나를 수사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국보위는 1980년 6월 합수단에 불교계에 대한 수사를 지시[6]하였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수사 등으로 인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 지연되었고, 합수단은 9월부터 조계종을 정화수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수사 준비에 착수하였다.[7]

7) 합수단은 공권력을 동원해 10월 27일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교계 내의 종무 마비 사태를 대비하여 실무대책반[8]을 구성하였고, 실무대책반은 몇몇 승려를 접촉하여 동조를 획득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8) 합수단은 10월 27일 새벽부터 연행대상 69명 중 당일 45명을 체포·연행했으며[9], 연행한 승려들의 총무원장직, 종회의원직, 주지직 등 주요 직위의 사퇴서를 강제로 받아내었다.[10]

9) 합수단에서는 연행한 일부 승려들을 수사과정에서 무자비하게 구타를 통한 신체적 고통을 입힌 후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다.

---

5) 다음은 1980년 당시 국보위 사회정화계획의 단계별 추진 과제다.

단계	1단계(7월중)	2단계(8~9월)	3단계(10월 이후)
추진 과제	☐ 공직자 정화 ☐ 일반사회 정화 ☐ 사회지도층 정화 ☐ 기타 분야 정화	☐ 공직자 정화 ☐ 사회지도층 정화 ☐ 경제 및 기업풍토 정화 ☐ 특수 분야 정화	☐ 사회지도층 정화 ☐ 경제 및 기업풍토 정화 ☐ 특수 분야 정화 ☐ 언론·종교계 부조리 척결

6) 1989년 1월 31일 국방부가 육군본부에서 개최한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 당시 국방부가 주장한 '1980년 6월 국보위의 수사 지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기록과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가 1980년 6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의 특수 분야 정화계획과 1980년 9월 월주 총무원장의 개인동정기록 등을 볼 때 국보위 지시 아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7) 당시 김충우 합수단장은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면담에서 "1980년 9월 1일 부임했을 때 이미 조계종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장로와 조계종 중에서 조계종 수사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본인이 종교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 계열의 박○○장로 건을 수사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8) 합수단은 불교계 출신 군 장교 등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3단계의 수습대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실무대책반은 전창열 중령을 중심으로 보안사 양근하 소령, 다수의 군법사, 문공부 종무1과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9) 합수단은 10월 27일부터 중간수사발표를 하는 11월 14일까지 총 153명을 체포하였다.

10) 특히 종회의원 총 68명 중 17명의 사표를 받아 11월 3일 개최된 중앙종회에서는 재적의원 51명 중 35명(2/3이상 참석)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맞추게 되었다.

10) 조계종의 업무가 중단·마비된 상황 하에서 합수단과 실무대책반은 이미 입안된 불교계 정화계획의 단계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습모임'을 주선·소집하였다.

11) 합동수사본부는 1980년 11월 14일 불교계 중간수사 결과, 몇몇 승려의 부정축재액이 200억 6,000만 원이나 된다고 발표했으나,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수사 당국은 총 153명을 연행해 수사했으나, 가장 강력한 수준의 조치인 형사처벌과 관련, 총 17명을 구속 후 형사입건하였으나 실제 형사처벌된 것이 확인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하였고[11], 3명은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킨다고 밝혔다.

13) 정화중흥회의 정화분과위원회는 합수단에서 통보된 징계대상 승려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체탈도첩', '제적', '공권정지' 등 징계를 하였다.

14) 정화중흥회의에서는 11월 6일 발족 당시부터 최고위층 면담을 추진해 1980년 12월 11일 정화중흥회의 대표단 승려 8명이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면담[12]을 가졌다.

15) 계엄사는 1980년 10월 30일 오전 6시를 기해 3만 2,076명의 군·경 합동 병력을 투입하여 전국 5,731곳의 사찰과 암자 등을 수색하였고, 이 계획은 10·27 수사계획과 함께 추진된 것이었다.

16) 10월 30일 전국사찰 일제수색은 불교계 수배자 검거와 동시에 5·18 관련 수배자 등 포고령 위반자 및 간첩 색출이라는 대공적 작전이 포함되었지만, 불교계 1명을 포함한 수배자 2명을 검거하는 데 그친 무리한 작전으로 확인되었다.

17) 수사당국이 불교계 수사착수 직후(1980. 10. 28.)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1980. 11. 14.)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민 및 다수의 신도들에게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11) 형사처벌자 중 윤○ 스님, 대○ 스님, 김○○, 김○○은 당시 월주 총무원장 등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부정축재 또는 비리와는 무관하였다(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9. 5. 선고 81노3387 무고). 안○○, 김○○, 김○○은 당시 문공부 종무담당관이었던 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처벌되었다(안○○ 벌금 50만 원. 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 벌금 100만 원, 서울고등법원 1981. 9. 28. 선고 81노796 뇌물수수 등). 한○○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되었다(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앞의 판결). 또한 고운사 주지 도○ 스님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육군군법회의 1980. 12. 15. 선고).

12) 1980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정화중흥회의 대표단 승려 면담자리에서 "참선하는 절에 깡패들이 서식하고, 내가 잘 아는 서○○ 박사가 종단분규로 욕을 보았다."고 기존 종단의 분규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1989년 12월 31일 당시 국회 '5공비리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27법난 수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앞의 면담 자리 발언을 통해 살펴볼 때 '5공비리 청문회' 때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표 1-2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권고 내용

❶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정부에서는 1988년 12월 강영훈 국무총리가 성명서를 내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책임자 위치(합수 본부장)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중으로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흡한 사과였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의 진상규명 발표를 계기로 불교계 및 국민들에게 국가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여 국민 화합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권고한다.

❷ 또한 정부 당국은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 조계종 측과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제2절

특별법 제정 및 개정

1 특별법 제정

가. 입법 과정

조계종 총무원은 2007년 11월 6일 종무회의를 열고 '10·27법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총무부장 원학 스님, 법난추진위원장 법타 스님. 이하 '법제추진위')를 발족시켰고, 같은 날 중앙종회는 제175회 정기회에서 10·27법난에 대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법제추진위는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7년 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의에 착수하였다.

국회에서는 2007년 11월 15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14인이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 20일 통합민주당 윤원호[13] 의원 등 28인이 〈10·27법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두 법률안은 2008년 2월 13일 제271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대체토론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2월 21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두 법률안을 통합·수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22일 국방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

13) 윤원호 의원은 당시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10·27법난법 발의 및 제정 등 불교계의 권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도 조계종 봉축 법요식에서 제6회 불자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에도 10·27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였고,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사를 마친 대안을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같은 국방위원회의 대안은 현재의 법률명과 같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월 26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후 2008년 3월 14일 정부로 이송된 다음 3월 28일 법률 제8995호로 공포되었다.

나. 법안 내용과 쟁점

먼저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첫째, 이 법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 제1조)

둘째, 10·27법난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안 제4조)

셋째,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유족 및 상이를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유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모사업 및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조)

넷째, 국가는 10·27법난 피해자의 추모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8조)

다음은 윤원호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표 1-4 윤원호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첫째, 이 법은 10·27법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관련 단체의 명예회복·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둘째, 10·27법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둔다. (안 제3조)

셋째, 정부는 10·27법난 피해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각종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10·27법난의 관련 단체인 조계종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9조 및 제10조)

넷째, 정부는 피해자 중 신체·정신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介護)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1조)

이와 같은 두 의원의 법률안은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명옥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10·27법난에 대해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10·27법난 사건 조사 결과로 그 진상이 밝혀졌다고 보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윤원호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10·27법난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보다는 불교계에 대한 명예회복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 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폐기되었는데,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은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보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표 1-5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다른 보상법[14]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月實收額) 또는 평균임금을 보상금산정의 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 "평균 수입액 내지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보상금산정 기준액을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이 아닌 '평균수입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월평균수입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출가하여 수도에 정진하는 승려의 경우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별도의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신도의 보시금으로 사찰운영비 또는 활동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별 월수입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 둘째, 평균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도가 사찰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월별·연도별로 구분하여 종교단체 소유가 아닌 승려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 셋째, '생활비'를 보상 기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균수입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빈한 생활이 수도의 기초가 되는 승려에 대하여 생활비를 산정할 기준이 마땅치 아니하고, 생활비는 그 자체로서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이어야 할 보상금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보상법의 법리에도 맞지 아니함.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가 후 종교단체에 소속된 승려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우리나라 불교의 특성과 정서상 승려의 유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표 1-6 윤원호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10·27법난사건을 원인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 결과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어야 하나, 승려의 경우 신도의 보시금과 종단재산을 기초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업비지원에 있어서 사료관 및 역사공원의 운영·관리 등은 10·27법난을 종교적 성격보다는 역사적 사건으로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에 추가진상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로 보장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조사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요컨대 법률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입법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일 입법을 할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여기에 참고로 거창사건 사망자, 노근리사건 희생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거나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마저 제한받으면서 정신적·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아왔으나 명예회복 조치만 있었을 뿐 보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상과 같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준용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인 개인 배·보상 관련 조문이 제외되었다.

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표 1-7 위원회 제정 법률이 된 국방위원회 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제정 이유

– 10·27법난에 대하여는 수행자의 인권유린과 불교계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그 진상이 밝혀졌으나(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조계종과 승려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법 제5조)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되, 다른 위법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함.

– 사실조사 등(법 제7조)

: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정부로 이송되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8995호로 '10·27법난법'이 공포되었다.

다. 시행령 제정과 쟁점

10·27법난법이 제정·공포된 후 이에 따른 시행령 제정 작업을 착수하였다. 우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2008년 4월 22일 조계종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국방부로 이첩하였다. 그리고 5월 22일 차관면담을 하였으며, 2회에 걸친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관 부처 협의와 예비역 장성 불자 면담 또한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6월에는 조계종과 수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방부 시행령(안)에 대한 조계종의 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였다.

표 1-8 국방부 시행령(안)에 대한 조계종의 요구사항 및 정부 입장

구분	국방부 시행령(안)	조계종 요구	정부입장
위원회 구성	■ 위원을 국장급으로 구성	■ 위원을 차관급으로 구성 ■ 정부위원 중 법무부, 경찰청 제외	수용불가
	■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 조계종 추천자 포함	수용가능
	■ 피해자등여부판정분과위 및 의료지원금 판정분과위 설치	■ 분과위원회 1개 추가(명예회복/기념사업 분과위)	수용가능
사무 조직	■ 삼청보상단장이 위원회 간사 겸임 가능	■ 삼청보상단장이 위원회 간사 겸임 조항 삭제(별도 사무조직 설치 요구)	수용불가
	■ 위원회 사무직원은 파견공무원으로 충원	■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 시 불교 관련자 우선 채용	수용불가
명예회복 지원사항	■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지원만 반영	■ 명예회복 지원범위에 기념관 및 사료관 등 포함	수용불가

이에 따라 국방부는 조계종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재정립한 후 조계종 및 관련 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고, 2008년 7월 4일 조계종은 협의 결과를 수용하였다.

표 1-9 조계종의 요구사항에 대한 국방부의 해결방안 재정립

구분	조계종 요구	해결방안 재정립(안)
위원회 구성	■ 위원을 차관급으로 구성 ■ 정부위원 중 법무부, 경찰청 제외	■ 제주4·3사건 등 과거사 4개 위원회 위원 장관급 구성 사례를 고려, 차관급 구성 가능 판단(행안부 동의 필요) ■ 경찰청은 당사자로서 제외 곤란
	■ 조계종 추천자 포함	■ 수용가능
	■ 분과위원회 1개 추가(명예회복/기념사업 분과위)	■ 수용가능
사무 조직	■ 삼청보상단장이 위원회 간사 겸임 조항 삭제(별도 사무조직 설치 요구)	■ 삼청보상단 연말 임무종료 예정으로 별도 사무조직 설치 수용가능(행안부 동의 필요)
	■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 시 불교 관련자 우선 채용	■ 계약직원으로 사업예산 반영, 채용가능 판단 * 단, 시행령 명시 곤란(조계종 설득 필요)
명예 회복	■ 명예회복 지원범위에 기념관 및 사료관 등 포함	■ 기념관 건립 대신, 역사교육관으로 변경하여 명예회복지원 범위에 포함 가능(기재부, 법제처 동의 필요) * 법률 제3조(위원회 심의대상)

구분	조계종 요구	해결방안 재정립(안)
지원 사항		– 피해자 해당여부, 피해자 명예회복 사항 – 의료지원금 지급사항 – 그 밖의 명예회복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그리고 2008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20991호로 시행령이 정식 공포되었다.

표 1-10 시행령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제정 이유

–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995호, 2008. 3. 28. 공포, 6. 29. 시행)됨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27법난 피해자의 피해자 신고, 명예회복 신청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차관, 문체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불교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영 제6조)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10·27법난 피해자의 피해자 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절차(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고된 신청기간에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 명예회복 결정 및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 재심신청 및 동의·청구 절차(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고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해 결정한 경우 명예회복결정서 또는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신청을 하도록 하며,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 관련 기관에 대한 10·27법난 피해사실 확인 요청 절차(영 제17조)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10·27법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함.

2 특별법 개정

가. 개정 과정

10·27법난법은 제정 전부터, 그리고 제정 이후에도 법률상 한계가 지적되었다.

첫째, '사망자에 대한 보상수단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사망자에 관하여 명예회복 외에 다른 보상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상이를 입은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사망자에게 이에 상당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둘째, '피해자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협소'하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로는 10·27법난 당시 있었던 피해사례 중 극히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셋째, '법률의 유효기간' 문제이다. 즉 법률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인데, 법률이 제정된 지 3개월 후에나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졌고, 2009년 3월 16일에야 피해신고 접수 공고를 하게 됨으로써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및 명예회복이 법률의 유효기간 내에 처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상의 문제점을 인식한 위원회는 활동 초기인 2009년 3월 26일 '법률개정안 의견서'를 조계종에 전달하였고, 조계종은 이를 다시 수정·보완하여 4월 10·27법난법 개정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6월 3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 41인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15] 이는 2009년 11월 24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11월 27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12월 7일 법사

15) 물론 이보다 앞선 2009년 3월 5일 권경석 의원 등 14인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18대 국회 회기(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개인 배·보상이나 피해조사 및 명예회복방안 등의 내용과는 무관하였다(2009년 3월 6일 국방위원회 회부, 4월 14일 제3차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결정, 4월 15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및 미논의, 2012년 5월 29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임기만료로 폐기).

위 제16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12월 29일 제285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2010년 1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다음 1월 25일 법률 제9947호로 공포되었는데, 이상이 10·27법난법 제1차 개정이었다.

제1차 개정으로 위원회 활동 기간이 원래의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로 3년 늘어나기는 했으나,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제1차 개정에 따른 피해자 심사 기한인 2012년 6월 30일을 6개월여 경과하였다. 이에 따라 다시 위원회 활동 종료 기간을 늘려야만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일인 2013년 6월 30일을 6개월여 남겨둔 2012년 12월 13일, 정갑윤 의원 등 13인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10·27법난법 제2차 개정이 시작되었다.[16]

2013년 4월 15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4월 22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4월 3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5월 10일 정부로 이송된 다음 5월 22일 법률 제11776호로 공포되었는데, 이상이 법 제2차 개정이었다.

한편, 10·27법난법 제2차 개정으로 인한 피해자 심사기한인 2015년 6월 30일을 3개월여 경과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일인 2016년 6월 30일을 8개월여 남겨둔 2015년 10월 15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법 제3차 개정이 시작되었다.

2015년 11월 24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12월 7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12월 31일 국회 제33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4호로 공포(6월 30일 시행)되었는데, 이상이 법 제3차 개정이다.

---

16) 앞서 살핀 법 제1차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보다 앞선 2011년 6월 14일 김학송 의원 등 11인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도 10·27법난의 피해종교단체에 천태종을 추가함으로써 불교계 전체에 대한 실질적 차원에서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역시 18대 국회 회기(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개인 배·보상 관련 내용과는 무관하였다(2011년 6월 15일 국방위원회 회부, 2012년 5월 29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임기만료로 폐기).

나. 개정 법안 내용과 쟁점

위원회가 2009년 3월 26일 조계종에 전달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는, 조계종의 수정·보완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 41인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1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첫째, 10·27법난은 국가가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신적 명예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해 등에 대한 물질적 보상까지 하게 함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 제1조)

둘째, 10·27법난 당시 있었던 피해사례 중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 있는 현행법상 피해자의 정의를 실질적인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확장한다. (안 제2조 제2호)

셋째, 현행법은 상이를 입은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반해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사망자에게는 명예회복 밖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상을 하도록 한다. (안 제5조의2 신설)

넷째, 10·27법난 명예회복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한다. (안 제11조 신설)

다섯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면서 임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 (안 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이에 대한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은 특별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보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표 1-12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이 법의 목적에 보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목적이 되는 10·27법난으로 인한 사망자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자가 있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조사되고 있지 아니하고 사건 발생 후 29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난다 해도 10·27법난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임. 현행 법 제정 당시에도 보상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보상금 지급 및 보상금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승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입법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이 있음.
▶이 법의 제정 당시에 보상금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두고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고 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

이상의 내용은 대체로 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 당시와 그 기조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10·27법난법 제1차 개정 당시 신설된 항목인 피해자의 범위 확대와 10·27법난 명예회복기념사업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표 1-13 법 제1차 개정 당시 주요 신설 항목에 대한 검토보고

▶피해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2호 나목 신설)
-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10·27법난은 국가의 권력남용 사례임을 인정하였지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해라고 법률에서 직접 판단하여 규정하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고,
-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가배상법의 적용대상이 됨.

▶10·27법난 명예회복기념사업(안 제3조 제2항 제5호, 안 제11조 신설)
- 개정안의 명예회복기념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를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이 아니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되나, 다른 법률의 경우 법인설립은 주로 피해자의 추모 사업을 위해 설립되고 정부는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의 설립은 위원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민법상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주무관청은 국방부가 아니라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0·27법난 관련 자료는 역사교육관의 일부에 불과하고 불교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나 종교적 교육과 홍보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을 명분으로 한 역사교육관 건립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두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겠음.

이러한 검토보고를 토대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개인 배·보상에 대해 언급된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4 법 제1차 개정 당시 개인 배 · 보상 관련 국회 주요 발언

▶"법난법이 제가 장관 할 적에 통과된 법인데, 당시 불교계에서는 '명예회복만 해주면 추가 보상 요구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명예회복만 해줘라. 추가 보상 요구 없다.' 그거 불교단체들이 요구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선 전이고 뭐이고 해 가지고 시대 상황하고 결부해 가지고 그렇게 통과된 법이에요, 사실 이 법도. 그런데 지금 와서 보상금 운운해 버리면 진짜 여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왔지만 법 취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09. 11. 25. 제28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보상을 주자고 하는 것은 금방 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당초의 입법 취지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노근리사건 희생자, 제주4·3사건 희생자 이런 경우에 정부 명예회복에 대한 조치만 있었지 이것을 보상해 준 전례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보상해 줄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사건들도 전부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해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2009. 11. 25. 제28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이것은 저도 부동의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것은 피해당한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또 상대가 수행자이기 때문에요." (2009. 11. 26. 제28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이러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무엇보다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법 제1차 개정에서 피해 보상과 관련한 조문들은 모두 빠졌다. 따라서 보상 관련 규정을 현행과 같이 하되, 다만 피해자 심사기한 및 위원회 활동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래서 10·27법난법 제1차 개정 결과, 개정 이유가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업무 등이 완료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10·27법난법 제1차 개정 이후 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되던 중 종료 6개월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10·27법난법 제2차 개정이다.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5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첫째, 제명(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중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보상"으로, 제1조 중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수행함으로써"로 한다.

둘째, 10·27법난 사건의 피해자의 범위에 강제로 연행·수사·구금을 당한 자와 강압에 의하여 조계종에서 부여한 직위에서 해직된 자를 추가한다.(안 제2조 제2호)

셋째,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은 사망 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종교단체에 귀속하고, 그 밖에 보상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안 제4조의 2부터 제4조의 7까지)

넷째, 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활동 유효기간 삭제)

이에 대한 검토보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및 보상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검토내용이 10·27법난법 제1차 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담긴 주요 기조와 유사하였다. 한편 다시 한 번 제기된 피해자의 범위 확대와 피해자 심사기간 및 법률의 유효기간 삭제와 관련하여서 검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6 법 제2차 개정 당시 주요 항목에 대한 검토보고

▶피해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2호)

- 추가하려는 피해자 중 "강제로 연행·수사·구금 등 국가의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자"(안 제2조 제2호 나목)는 법적 절차인 연행·수사·구금 자체를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피해의 구체성도 부족하게 되고,
- "강압에 의하여 조계종에서 부여한 직위에서 해직된 자"(안 제2조 제2호 다목)는 강압에 의한 직위해직 사실의 증명이 용이하지 않으며,
- "10·27법난 당시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안 제2조 제2호 라목)는 10·27법난 당시 승적 보유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피해자 심사기간 및 법률의 유효기간 삭제(안 제4조 제1항 및 법률 8995호 부칙 제2항)

- 심사기간 및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사 및 보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과거사의 조속한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음.

– 피해자 심의와 역사교육관 지원 등 잔여업무 처리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심사 및 법률의 유효기간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겠음.

이러한 검토보고를 토대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개인 배·보상에 대해 언급된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7 법 제2차 개정 당시 개인 배·보상 관련 국회 논의

▶"812부대, 소년소녀병, 특수임무수행자 등등 정말로 많은, 어떤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해 보신 분이 돌아가셨다 해서 그 종교단체에다 돈이 다시 귀속시킨다고 하면, 6·25전쟁 중에 종교인들 중에서 이름이 확인되고 한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17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해서 해당 종교단체에 귀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 형평성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친 이런 보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 4. 15.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전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피해자 범위 확대 문제를 저희 정부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더욱 더 저희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3. 4. 17. 제315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이러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10·27법난법 제2차 개정 역시 제1차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 보상과 관련한 조문들이 모두 빠졌다. 그리고 피해자 심사기한 및 위원회 활동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10·27법난법 제2차 개정에서는 제1차 개정 때와 같이 개정법률안의 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 속에서도, 제1차 개정 때와는 다른 주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현행과 같이 하되,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역사교육관 건립'이 '기념관 건립'으로 명칭이 바뀌어 시행령 조문에서 법 조문으로 격상된 것이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전에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두도록 하였던 '위원회 사무조직'을 시행령 조문에서 법 조문으로 격상시키면서 그 공식명칭을 '사무처'로 명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심사기한과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되

어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과 기념관 건립 등을 비롯한 명예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다시금 마련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법 조문으로 강조되었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조직으로 사무처가 신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 제3차 개정은 법 제1차 및 제2차 개정과는 그 논의와 방향이 조금 달랐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16년 6월 30일까지 10·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과 의료지원금 지급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업은 완료가 된다. 그러나 10·27법난 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10·27법난 관련 기념사업 지원 등은 현행법의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개정의 이유였다.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8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 내용

첫째,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안 제3조)

둘째,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사무처 설치와 피해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삭제)

셋째,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며, 동 기념재단은 기념관 운영과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안 제8조 신설)

넷째,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한다.(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이에 대한 검토보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념재단 설립의 경우 이미 10·27법난법 제2차 개정 당시에 '10·27법난 관련 법인'의 설립·운영으로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특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17]을 제출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유효기간 삭제에 대해 법 제정 시, 1차 개

17) 기념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 가능하고, 다른 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기념사업은 종교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2015. 11. 4.)

정 및 2차 개정 당시 관련한 논의경과를 살펴보면서 그간의 연장취지와 향후 업무 추진 등을 병행·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 1-19 법 제3차 개정 당시 주요 항목에 대한 검토보고

▶기념재단 설립(안 제8조 신설)
- 법난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 등은 현재 민간보조(조계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인을 설립하여 법난기념관과 기념사업을 지속적·공공적 성격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러한 입법취지와 향후 계속 추진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정부 의견(기재부 의견 제시) 등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법의 유효기간 삭제(법률 8995호 부칙 제2항 삭제)
- 개정안은 법난기념관 건립·운영, 기념사업 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 이는 그간 과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피해자 심사 지연 등을 반영하여 3년씩 2번 연장해온 취지와 향후 계속 추진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검토보고를 토대로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념재단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다. 시행령 개정과 쟁점

10·27법난법이 2010년 1월 25일 개정·공포됨으로써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법 제1차 개정 과정 중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2009년 12월부터 내부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제반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3월 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조계종과 국방부에 제출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조계종과 국방부의 의견 차이로 시행령 개정 업무가 다소 지체되었다.

이렇게 장기간 공전되었던 시행령 개정 업무는 2010년 12월 28일 조계종이 국방부에 시행령 개정 청원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위원회 주무부처인 국방부 차원에서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다. 조계종에서 제출한 시행령 개정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민간 출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촉 절차의 완화, 지원단장 및 직원의 계약직공무원 임명,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역사교육관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등이었다.

위원회는 국방부에 제출한 조계종의 시행령 개정 청원서를 근거로 하여 2011년 1~2월에 조계종과 여러 차례 실무토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계종이 요구한 9개 조항 11개 항목 중에서 재단법인 설립 규정과 민간위원 추천권 신설 등에 합의하였다. 이때 11개 청원안 중에서 5개 항목은 청원안을 반영하기로 하였고, 1개 항목은 수정하여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항목의 경우 청원안대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2011년 2월 16일 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합의 내용 중 재단법인 설립 규정은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상정안 의견을 확정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안을 국방부에 정식으로 의뢰하였다.

표 1-20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

조항	조항내용	개정안 요약
제4조 제2항	위원회의 사무직원	간사 임명 자격에 계약직공무원 추가
제8조 제1항, 제4항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 유족의 피해신청 시 구비서류 추가 – 피해자 및 명예회복 신청권자 확대 등
제10조 제2항	의료지원금의 산정	호프만계수에 의한 의료지원금 중간이자 공제 신설
제13조 제1호	재심신청	재심신청 첨부 진단서 종류 완화
별지서식	신청서식 수정·신설	수정 4종, 신설 2종

위와 같이 국방부에 개정을 의뢰한 위원회(안)은 국방부에서 계속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사(지원단장) 임명에 대해 현행대로 국방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재차 검토하여 2011년 6월 10일에 국방부로 시행령 개정을 수정·의뢰하였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5일 시행령 개정 전문이 입법예고되었고, 9월과 10월에 일부 수정을 거친 뒤 2011년 11월 11일 대통령령 제23292호로 공포되었다. 이상이 법

제1차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1차 개정[18]이다.

결과적으로 시행령 제1차 개정은 "10·27법난의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다.

한편 2013년 5월 22일 법 제2차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시행령 제2차 개정이 추진되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76호, 2013.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사무처장의 임명 절차 및 사무처 직원의 충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이유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시행령 제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제2차 개정으로 그동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인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에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이와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는 자구의 삭제 및 법령 번호의 수정 등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사무조직이 법 제2차 개정으로 법에 사무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전 규정인 위원회의 사무직원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조항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18) 시행령은 2008년 9월 9일 제정된 이후 시행령 제1차 개정(2011. 11. 11.) 이전인 2010년 5월 4일 타법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바 있어서 엄밀하게 보면 제1차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라는 차원에서 타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 개정은 시행령 개정 차수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시행령 제1차 개정 이후 제2차 개정(2013. 8. 20.)이 있기 전에도 3차례 타법 개정에 의한 시행령 개정이 있었다.

제3절

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위원회 구성

10·27법난법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시행령 제2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즉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차관급 정부위원 4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시행령 제2조에서는 10·27법난법 제3조 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3개의 실무위원회[19]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각 실무위원회 역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20]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21]으로 구성하게 된다.

한편 10·27법난법 제정 당시 시행령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간사는 당시 위원회 주무부처였던 국

19)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법 제3조 제2항 제1호),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및 명예회복에 관한 기념행사, 그리고 기념관 건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시행령 제6조),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여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3급·4급 일반직공무원이 포함된다.

21) 물론 위원회 위원 구성과 마찬가지로 실무위원회 역시 10인 이내의 위원에 실무위원장이 포함되는데, 다만 위원회와 다른 것은 실무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것이다.

방부 소속 공무원[22]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위원회의 사무조직은 법 제2차 개정 당시 시행령 조문에서는 폐지되고 대신 법 조문으로 신설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회 주무부서 역시 기존의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이관되었다. 다시 말해 법 제3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사무처장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23] 중에서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21 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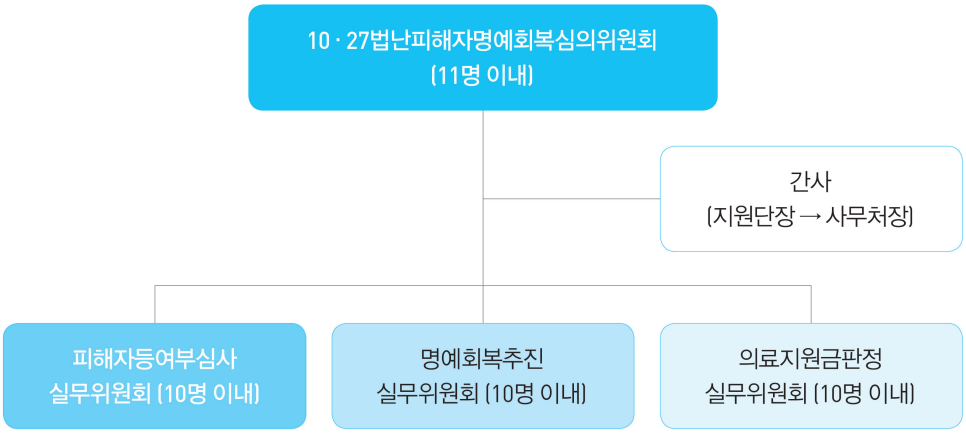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9년 9월 1일 기획조정관 소속 하에 '법난명예회복준비T/F'(이하 '법난 T/F')를 설치하여 위원회 출범 시까지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공식 실무준비 기구 출범 이전에도 해당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당시에는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기획총괄과에서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 시행령(안)에 대한 관련부처(조계종 포함) 협의 및 법률 시행에 따른 위원회 · 실무위원회 구성, 사무조직 구성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22)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이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일컫는다.
23)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이는 문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시행령의 제정·공포(2008. 9. 9.)보다 앞서 법난 T/F가 발족하게 된 것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어 6월 29일 시행된 법의 유효기간이 법 시행 2년 후인 2010년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법 시행 후 1년 이내(2009. 6. 29.)에 완료하도록 한 법 규정에 그 배경이 있었다. 다시 말해 법의 유효기간 및 피해자 해당여부 심사기한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2008년 12월 말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시급히 마무리 짓고, 2009년부터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국방부 내에 법난 T/F가 공식적으로 발족한 이후 조계종 총무원과 정부(국방부)는 2008년 9월부터 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다. 2008년 9월 4일 먼저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이하 '10·27법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법타 스님 일행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조계종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9월 9일 국무총리실 통일안보정책과장 주관으로 자체 실무회의를 열어 정부(국방부) 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은 2008년 9월 19일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에서 있었던 국장급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22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1차 협의 결과**(2008. 9. 19.)

■ **민·관 합동 준비 T/F 구성 건**

– 국방부 T/F에 조계종 측 요원 2명 참여 가능. 추후 필요 시 인원 추가도 가능.

* 단, T/F 참여 인원의 인건비 지급은 불가. 10·27법난 명예회복지원단에는 1~2명 상근 인력 인건비 반영 추진 중.

– 총리실, 문체부, 국방부 국장급 및 불교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상설 협의체 구성·운영(문제 사항은 협의 추진).

■ **위원회 구성 건(민간위원 7명)**

– 조계종 측에서 위원 선임에 관한 2개 방안을 검토 후 의견 제시 ⇨ 협의하여 조치.

* 1방안: 조계종 측 5명, 정부 측 2명 선임 / 2방안: 조계종 측 7명 전원 선임.

※ 위원 선임은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

■ **실무위원회 구성 건**

– 각 실무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임은 3:3으로 하는 방안 검토.

※ 위원회 발족 후 필요 시 위원 추가 가능.

이와 같은 협의 결과를 가지고 2008년 9월 30일 조계종 기획실장이 주관하는 실무자 협의를 실시하였는데, 양측 공히 상대방 요구사항의 검토 및 대안 모색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최종 협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최종 협의가 연기된 구체적인 사유는 조계종과 정부(국방부)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2008년 10월 15일 국방부 기획조정관이 주관한 협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2차 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23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2차 협의 결과(2008. 10. 15.)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성(국무총리 소속)**

– 조계종 측은 7명 위원 기 선정

조계종 선정 위원: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세영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법타 스님(조계종 10·27법난추진위원장), 삼보 스님(10·27법난 피해자), 이근우(전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장), 윤원호(전 국회의원), 허남오(전 서울지방 병무청장)

* 국방부에 위원 선정 명단을 왜 통보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겠으며, 제출할 것을 약속.

– 국방부는 조계종 측에서 민간위원 7명 전원 선임 시 아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당부.

- 변호사 및 의사는 소관 협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 추천.
- 불교신도로서 예비역 장성 1명 반드시 포함.
- 위원 추천 시 사전 국방부와 협의 요망.

* 의사: 의료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등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 필요.

※ 검진 대상인원 1,050여 명 예상(일반적 상이검진 90%, 정밀검진 10%).

* 변호사: 의료지원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 개별적·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 및 판례 등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 필요.

* 예비역: 군의 명예와 사기 등 군의 입장과 정서를 이해하는 위원 참여 필요.

– 만일 수용할 수 없다면, 조계종에서 총리실과 직접 협조하여 위원 선정·위촉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건의.

■ **민·관 합동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준비 T/F 구성**
- 국방부: 민·관 합동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준비 T/F 구성을 폐지하고,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조계종: 검토해 보겠음. 가능할 것 같음.

■ **운영지원단 구성**
- 조계종에서 구성(안)을 작성, 국방부에 제출하면 검토·협의키로 함.

이에 따라 2008년 10월 말 조계종에서는 위원회 민간위원 7인 전원을 불교계에서 추천하여 국방부에 통보하였고, 국방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10·27법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삼보 스님을 제외하고 의사 등 전문직 인사와 군 예비역 장성을 포함해 줄 것으로 재차 요구하였다.

그 후 2008년 11월 11일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고, 11월 25일에는 조계종을 대표하여 원학 스님과 세영 스님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국무차장과 면담하였다. 그 결과 예비역 장성 1인을 포함하고 일부 인사를 교체하는 구성안에 합의함으로써 12월 12일 조계종과 정부(국방부)는 민간위원 7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12월 24일 이를 국무총리실에 통보하여, 12월 30일 국무총리실에서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관 하에 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 위촉 및 임명된 위원으로는 먼저 위촉직 민간위원에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 조계종 10·27법난추진위원회 위원 삼보 스님, 법안 발의자인 윤원호 전 국회의원, 조남진 예비역 장성, 허남오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이명묵 동국대 의료원장 등 7명이고, 당연직 정부위원에 장수만 국방부 차관, 김대기 문체부 제2차관[24], 이종정 국가보훈처 차장, 최병민 경찰청 차장 등 4명이었다.[25]

한편 위원회가 출범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국방부 법난 T/F는 위원회 사무실 준비와 위원회 사무기구인 지원단 인원구성에 대한 업무를 2009년 1월 중순까지 계속하였다. 그리고 2월 중순경에는 지원단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현판

24)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당연직 정부위원 가운데 문체부 제2차관은 2013년 3월 23일 시행령 개정 당시 문체부 제1차관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년 1월 6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바뀌었다.
25) 이후 위촉 또는 임명된 역대 위원의 명단은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식이 2009년 2월 19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4층에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의 출범,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사무조직인 지원단의 설치 완료 등이 2009년 2월에 최종 마무리됨으로써 3월부터는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착수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공식 활동의 첫 단계로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부터 시작하였다.[26]

2 위원회 운영

10·27법난법 제정 이유는 '수행자의 인권유린과 불교계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그 진상이 밝혀졌으나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조계종과 승려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사실 조사,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 등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었다. 그리고 위원회는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표 1-24 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1.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26) 위원회의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에 대해서는 제2장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5.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러한 기능 중에서도 특히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과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27]

결국 위원회의 운영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와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맞춰져 있으므로,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기능별 관련 실무위원회를 두었는데, 실무위원회의 운영 역시 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 심의위원회 회의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8]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10·27법난 심의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를 통보하고 3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통지한다.[29] 또한 위원회

27) 특히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의 경우 법 제정 당시에는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었는데, 법 제2차 개정 당시에는 법조문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그 명칭 역시 시행령 제정 당시에는 '역사교육관'이었으나 법 제2차 개정 후에는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28) 제2조(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회의의 의장인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함으로써 개의된다. 의사(議事)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사의 결정과정에서 위원 등이 해당 안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일 경우에는 제척(除斥)되며, 위원 본인 스스로 제척 대상이라고 판단하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을 생산하도록 지정되었다.[30] 이 경우 역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위원회 회의는 2009년 1월 8일 제1차 회의부터 2016년 4월 26일 제47차 회의까지 모두 47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10·27법난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의 업무수행 체계는 다음과 같다.

---

29) 다만 회의의 일시·장소에 대한 통보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회의의 안건에 대한 통지에서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보 및 통지 기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국가기록원 고시 제2011-2호(2011. 6. 30.)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하는 의무 회의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표 1-25 위원회 업무수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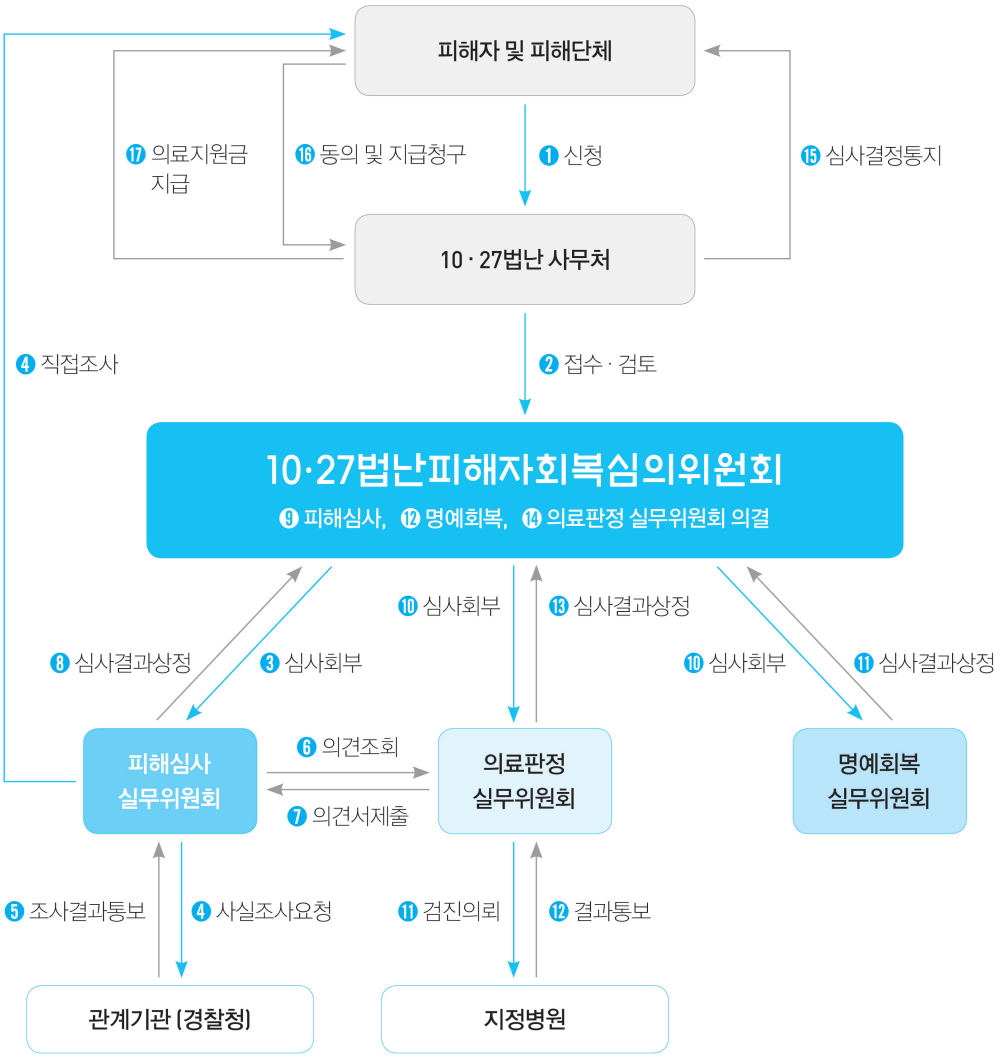

나. 실무위원회 회의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하에 피해자등 여부심사실무위원회(이하 '피해실무위'),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이하 '명예실무위'), 의

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이하 '의료실무위')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두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실무위원회의 회의운영규칙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31]

먼저 피해실무위는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하고, 명예실무위는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과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즉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끝으로 의료실무위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상이자의 신체검진 및 정밀검사에 필요한 수가(酬價) 기준의 결정과 의료지원금 산정뿐만 아니라 10·27법난 피해 관련 상이의 인정도 포함된다.[32]

각 실무위원회의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회의 운영과 소집·개의·의결정족수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 다만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가부동수일 경우에 대한 판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의록의 경우 위원회 회의와 달리 생산의무가 지정된 회의가 아니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을 생산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의료실무위의 경우 의료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병원 검진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실무위원회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33]

이상과 같은 실무위원회 회의는 2009년 1월 8일 피해실무위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4월 14일 명예실무위의 제29차 회의까지 모두 95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중 피해실무위는 32회, 명예실무위는 29회, 의료실무위는 34회 개최되었다.

---

31) 2009년 6월 4일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3개 실무위원회의 회의운영규칙이 심의·의결되었다. 〈피해자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시행 2009. 6. 4./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규칙 제2009-02호, 2009. 6. 4. 제정), 〈명예회복추진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시행 2009. 6. 4./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규칙 제2009-03호, 2009. 6. 4.), 〈의료지원금판정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시행 2009. 6. 4./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규칙 제2009-04호, 2009. 6. 4. 제정).

32) 의학적 인과관계라고도 하는 이 업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10·27법난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의 입증뿐만 아니라 10·27법난으로 인한 상이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실무위의 고유 업무, 다시 말해 의료지원금 산정 못지않게 피해자 해당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업무이다. 이에 따라 〈의료지원금판정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7조에서 상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3) 〈의료지원금판정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8조(검진장소 지정), 제9조(검진전문의), 제10조(검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원회 사무기구

1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

10·27법난법이 2008년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자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사무기구 인력확보와 아울러 사무실 설치 등의 제반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8년 9월 1일부터 '법난명예회복준비T/F' 활동에 들어갔다.

2009년 2월 1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현판식이 거행되었고, 이와 동시에 사무기구인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10·27법난법 제3조 제5항은 '그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무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지원단장은 법령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되 국방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34]하였다. 그리고 단장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원을 확보하였다.

지원단의 초기 인원편성은 20명으로 구성되었다.[35] 구성을 보면 행안부에서 인가한 정원은 5명(국방부 고위공무원 1, 서기관 1, 사무관 1, 문체부 사무관 1, 경찰청 경감 1명)이었고, 정원 외로는 전문계약직 나급 2명, 상근직 3명이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현

34) 시행령 제4조 제2항.

35) 2008년 9월 1일부로 국방부에 설치된 '법난명예회복준비T/F' 소속 인원 6명 중 중령 2명, 소령 1명 등 3명이 잔류하였다. 그리고 삼청교육피해보상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 1명, 대령 1명 등 2명의 인원이 합류하였다. 또한 국방부에서 추가로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법무관 1명, 군의관 1명, 소령 1명, 대위 1명, 중사 1명 등 7명이 충원되었다. 더불어 경찰청에서 경감 1명, 문체부에서 사무관 1명이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다. 기타 부족 인원으로 전문계약직 나급 2명과 상근계약직 3명을 선발하였다.

역 군인 10명을 지원받아 부족한 행정인력을 확보하였다. 사무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단장 아래 총괄과와 심의지원과를 두었다. 다시 총괄과는 총괄반 · 대외협력홍보반 · 본회의지원반 등 3개 반으로, 심의지원과는 피해심사지원반 · 명예회복지원반 · 의료판정지원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되었다.

표 1-26 지원단 최초 기구조직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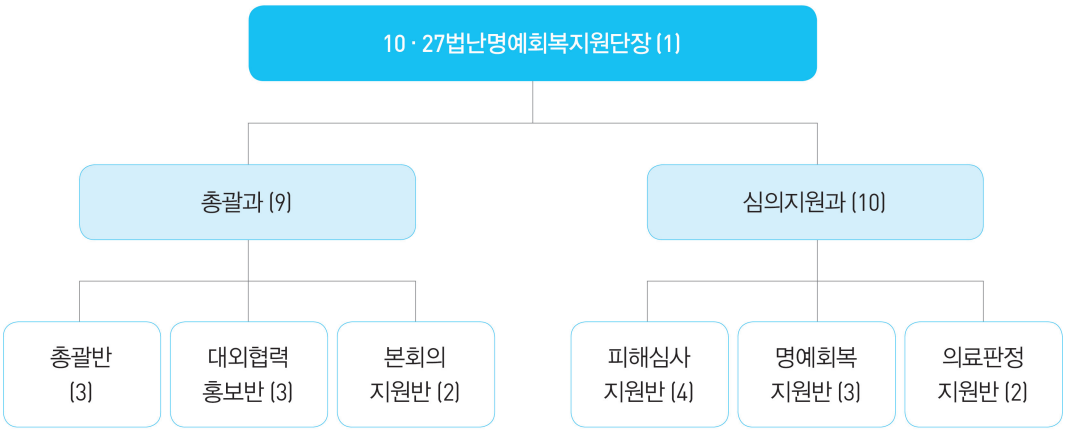

구분	파 견					전문 계약직 나급	상근 계약직	국방부 지원 (현역 군인)				계
	국방부			문체부	경찰청							
직급	고위직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경감			대령	중·소령	위관	부사관	
편성 인원[36]	1	1	1	1	1	2	3	1	5	3	1	20
현원	1	1	1	1	1	2	3	1	4	3	1	19

지원단은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사무실에서 업무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위원회가 2011년 3월 3일 조계종 총무원과 가까운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동덕빌딩 9층으로 옮겨서 업무활동을 하였다.

10·27법난의 최대 피해종교단체인 조계종에서는 2012년 7월경부터 불교계의 명예회복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국방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것보다는 종교계 유관부처가 맡는

36) 국방부에서 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편성한 인원(행안부에서 인가한 정원, 정원 외, 국방부 지원인력이 포함된 인원).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 국방부 · 문체부 등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를 문체부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부에서 지원했던 행정지원 인력인 현역 군인 전원이 2013년 1월 17일부로 지원단에서 철수했다. 따라서 지원단은 일반직공무원 3명, 전문계약직공무원 3명, 상근계약직 직원 2명 등 8명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 6월 30일 부로 전문계약직공무원 3명과 상근계약직 직원 1명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던 지원단 구성원은 지원단장 1명(고위공무원), 일반직공무원(문체부 5급) 1명, 상근계약직 직원 1명만이 남았다.

2 사무처

2013년 5월 22일 10·27법난법이 재개정되었는데, 신설된 제3조의2 제1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개정 법률에 따라 2013년 8월 23일부터 주무부처는 국방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되었다.

문체부가 주체가 되어 만든 사무처 조직 편성안은 1명의 사무처장 아래 2과 체제로 하되 관련 부처에서 파견한 8명의 공무원이 포함된 편성인원 17명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무처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를 놓고 안전행정부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편성인원을 15명으로 조정하였다.

사무처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문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3년 10월 23일 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사무처를 1처 2과(기획총괄과, 명예회복지원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기한인 2015년 6월 30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및 의료지원금 지원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처 업무를 자체 조정하여, 기존 기획총괄과 · 명예회복지원과에 조사심의과를 하나 더 만들어 1처 3과로 운영하였다.[37]

표 1-27 사무처 1차 기구도 및 인원(2013. 10. 23.~2015. 7. 31.)

(단위: 명)



구분	파 견						전문 임기제		상근 계약직	계
	문체부			국방부		경찰청				
직급	고위직	서기관	사무관	서기관	사무관	경감	가급	나급		
편성인원	1	1	3	1	1	1	1	2	4	15
현원	1	1	3	1	1	1	1	2	4	15

이후 위원회는 10·27법난 신청인에 대한 법적 심사기간이 2015년 6월 30일부로 끝남에 따라 백서 발간 업무에 착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서는 편제를 조정하였다. 즉 2015년 8월 1일부[38]로 기존 3개과에서 조사심의과를 폐지하고 기획총괄과와 명예회복지원과의 2개 과로 편제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였다.

표 1-28 사무처 2차 기구도(2015. 8. 1.~2016. 6. 30.)

(단위: 명)



구분	파 견				전문 임기제		상근 계약직	계
	문체부			국방부				
직급	고위직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가급	나급		
편성인원	1	1	2	1	1	2	5	13
현원	1	1	2	1	1	2	5	13

37) 문체부 사무관(1)과 경찰청 경감(1)은 2015년 7월 1일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였다.
38) 신청인에 대한 법적 심사기한은 2015년 6월 30일이었으나, 잔여업무 처리를 위해 2015년 7월 31일까지 기존 편제를 유지하였다.

제2장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심사 개요

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피해신고를 한 신청인에 대하여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명예회복 조치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10·27법난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참고인 조사와 정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해사실을 밝혀냄으로써 10·27법난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법 제3조 제2항[1]에 따라 적법한 임무수행 절차를 거쳐 10·27법난 피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먼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피해자 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위원회는 신고 건에 대해 신청인과 관련 참고인 및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데, 우선 의료실무위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이가 10·27법난으로 인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피해실무위에서는 의료실무위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를 근간으로 하여 피해사실이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하는데, 실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법에 규정된 피해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시 실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③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② 그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명예실무위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의료실무위에서 병원검진을 통해 피해자의 상이에 대한 적정한 의료지원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조치 및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한다.

표 2-1 위원회 업무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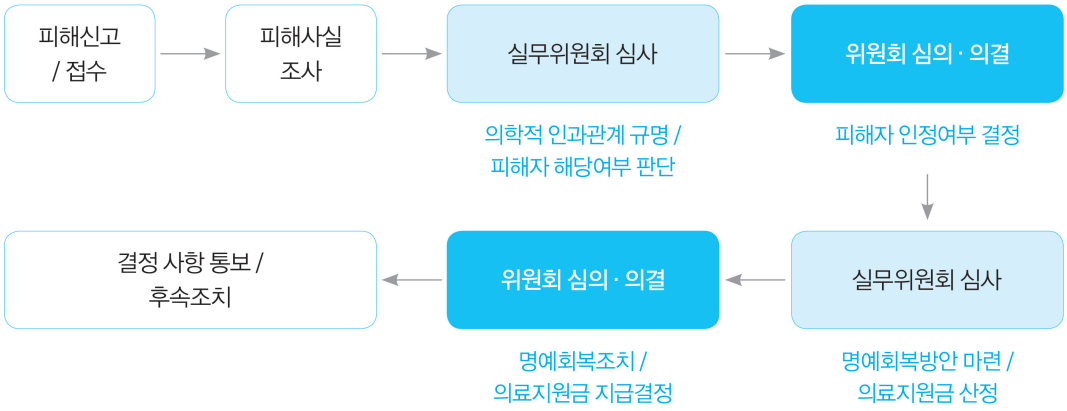

피해신고 공고 및 홍보

1 피해신고 공고 및 홍보

10·27법난법 제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2] 이에 따라 시행령 제7조에는 피해자 신고(법 제4조)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법 제5조[3])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2개 매체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4] 다시 말해 10·27법난 피해자와 대리인(유족 및 소속 종교단체의 장)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와 의료지원금 지급이 법률에 따른 피해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사실 조사나 그로 인한 피해자 해당여부를 포함한 명예회복조치와 의료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의 피해신고 및 위원회의 접수에 의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2009년 3월 16일 피해신고 공고를 관보 등에 게재하였고, 이로써 피해신고 접수가 시작되었다. 피해자와 대리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피해신고 공고는 1회에 그치지지 않고 신고기간 내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2009년에 2회(3월, 9월),

---

2) 법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기간·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3) 법 제5조 (의료지원금) ①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행령 제7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사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피해신고와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② 신청인의 자격, ③ 신청서 접수기관, ④ 신청기간, ⑤ 의료지원금의 산정기준, ⑥ 심의·결정 절차, ⑦ 구비서류, ⑧ 그밖에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0년에 2회(3월, 10월), 2011년에 2회(3월, 5월), 2013년에 1회(11월), 2014년에 3회(5월, 10월, 11월) 등 10회에 걸쳐 관보, 주요 일간지, 교계 신문, 방송 자막 광고, 전광판 등 활용 가능한 광고매체에 공고를 하였다.

표 2-2 **피해신고 공고 관보 게재**(2009년 3월 16일자 관보 제1695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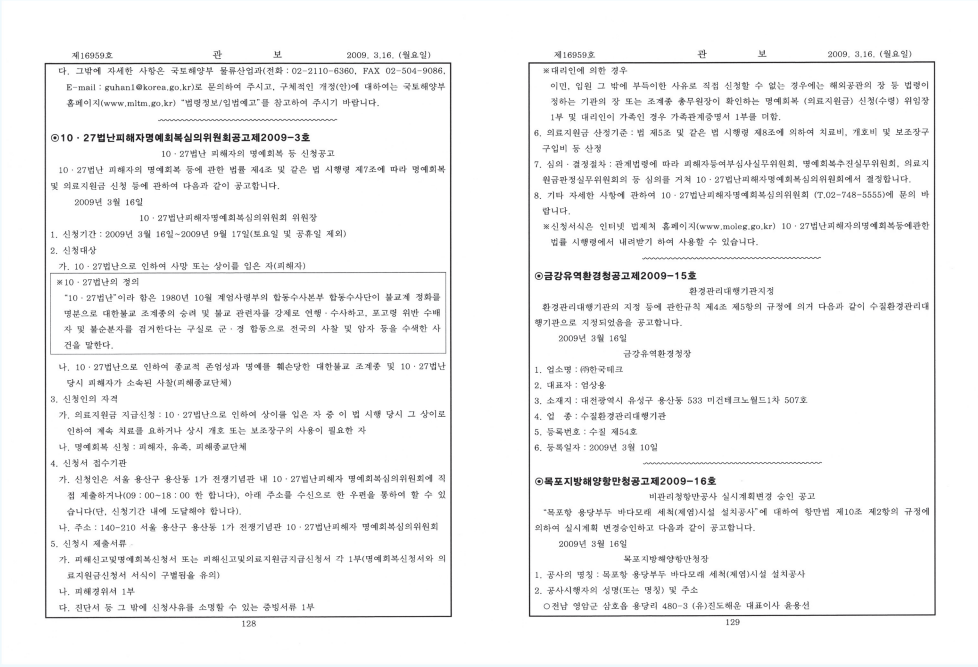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 : 02-2110-6360, FAX 02-504-9086, E-mail : guhan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09-3호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 2009년 3월 16일~2009년 9월 1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 · 27법난의 정의
"10 · 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 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 · 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 피해종교단체
4. 신청서 접수기관
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내 10 · 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09 : 00~18 : 00 한 합니다), 아래 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단, 신청기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 주소 :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10 · 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128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대리인에 의한 경우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더함.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 산정
7. 심의 · 결정절차 :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T.02-748-5555)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10 · 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 (주)한국테크
2. 대표자 : 염상용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1차 507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수질 제54호
6. 등록일자 : 2009년 3월 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목포항 용당부두 바다모래 세척(제염)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목포항 용당부두 바다모래 세척(제염)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3 (유)진도해운 대표이사 윤용선

129

이러한 피해신고 공고에 따른 신고기간은 법 제정과 개정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최초 신고 공고(2009. 3. 16.~9. 17.)와 1차 연장공고(2009. 9. 18.~2010. 3. 17.), 그리고 2010년 1월 15일 제1차 법 개정 이후 2차 연장공고(2010. 3. 18.~2011. 12. 31.), 2013년 5월 22일 제2차 법 개정 이후 최종 신고 공고(2013. 11. 11.~2014. 12. 31.) 등이었다.

이처럼 4회에 걸쳐 기한을 늘려 피해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러한 법적 신고기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약 4년여에 걸쳐 공고를 한 셈이다.[5]

한편 위원회는 피해신고 접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위원회의 활동이 신청인의 신고 및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주요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처리현황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피해신고를 위한 위원회 홍보 활동은 2009년 2월 19일 위원회 현판식 이후 시작되었고, 3월 16일 최초 신고 공고를 냈다. 초기에는 계획성 있는 홍보보다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였다. 정부매체 · 불교매체 · 일간신문 · 무가지 ·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배분하여 게재함으로써, 10 · 27법난의 의미와 위원회의 활동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직접 피해 승려들에게 서신 및 연하장을 띄우기도 했다.

표 2-3 신문에 게재한 피해신고 공고

공고 제2009-3호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10.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2009. 3. 16. ~ 2009. 9. 17.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 · 27법난의 정의
"10 · 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 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 · 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 피해종교단체

4. 신청서 접수기관
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내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09:00~18:00한 합니다), 아래 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 주소 :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대리인에 의한 경우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더함.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산정

7. 심의 · 결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T. 02-748-5555)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10 · 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다만 이와 같은 공식적인 법적 신고기간 이외에 실질적으로는 2012년과 2013년 최종 신고 공고(2013년 11월 11일자) 이전에도 피해신고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폭넓게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약 5년 10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이은 피해신고 접수 현황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010년에 접어들어서는 10·27법난법 제1차 개정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기간이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피해신고 접수 연장공고, 역사교육관 건립지원 사항, 명예회복방안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즉 위원회의 중점 사업에 대해 주된 피해 대상층인 불교계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주로 불교계 매체 위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홈페이지를(www.1027beopnan.go.kr) 개설하고[6], 소식지 발행[7]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였으며, 소식지는 위원회 소개 및 활동, 피해자 신청안내, 10·27법난의 의미 등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표 2-4 위원회 홈페이지 오픈 화면



6) 2009년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시작하여 2010년 4월 19일 위원회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오픈했다.
7) 2010년 10월에 창간호를 발행한 이 소식지는, 2014년 제2호부터 『歸正(귀정)』으로 제호를 바꾸어 2015년 제4호까지 발행하였다.

표 2-5 위원회 소식지 창간호 및 제2호(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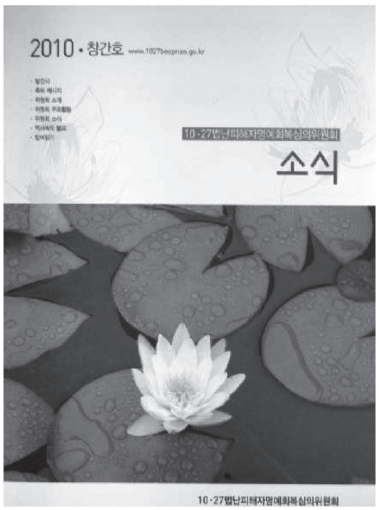



2011년도에는 위와 같은 홍보와 더불어 주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 불교계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였다. 당시로서는 위원회 활동 후반기에 접어들어 위원회 사무실 이전, 법률·시행령 개정, 역사교육관 건립사업 지연, 개인 피해 신청인 감소, 피해종교단체 신청 및 자격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불교계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다.

2012년도 홍보 활동은 2011년 12월 31일부로 피해신고기간이 종료된 관계로 더 이상 별도의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2013년도에는 10·27법난법 제2차 개정으로 인해 위원회의 사무조직으로 사무처가 신설되었고, 위원회 활동기간이 3년 더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피해자 심사기한 또한 연장되었으므로 피해신고기간을 새로이 공고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2015년 6월 30일 피해자 등의 심사완료 6개월 전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마감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법적 신고기간 종료 직전에는 추가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공고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8]

표 2-6 피해신고 안내 홍보(광고) 및 실적 총괄(2009~2015)

(단위: 천 원)

유형 / 연도	구분	신문 광고	방송 광고	관보 공고	잡지 광고	언론 보도	전광판 광고	홈페이지 배너·링크	안내문 제작·배포	리플릿 제작·배포	소식지 제작·배포	기타	계
'09	실적	6개 매체 10회	2개 매체 12개월	2회	1개 매체 1회	–	전국 53개소 4개월	14개 기관 6회	100부	1,800부	–	–	
	소요 예산 (천원)	18,590	6,600	무료	무료	–	무료	무료	무료	2,100	–	–	27,290
'10	실적	5개 매체 10회	2개 매체 10.3개월	1회	2개 매체 2회	9개 매체 9회	–	39개 기관 4회	–	10,000부	30,000부	DVD 100개	
	소요 예산 (천원)	11,990	무료	무료	1,100	무료	–	무료	–	8,145	9,900	308	31,443
'11	실적	5개 매체 6회	2개 매체 4개월	1회	1개 매체 1회	–	전국 124개소 1개월	–	–	30,000부	–	–	
	소요 예산 (천원)	13,420	3,300	무료	무료	–	무료	–	–	6,358	–	–	23,078
'13	실적	6개 매체 6회	2개 매체 1일/수시	1회	–	–	–	3개 기관 수시/1달	–	3,000부	–	–	
	소요 예산 (천원)	10,918	550	무료	–	–	–	무료	–	2,200	–	–	13,668
'14	실적	7개 매체 16회	1개 매체 5일 (25회)	–	–	–	–	4개 매체 2달	–	–	10,000부 (2회)	–	
	소요 예산 (천원)	28,958	550	–	–	–	–	4,840	–	–	9,053	–	43,401
'15	실적	–	–	–	–	–	–	–	–	–	5,000부	–	
	소요 예산 (천원)	–	–	–	–	–	–	–	–	–	4,869	–	4,869
	계	83,876	11,000		1,100			4,840		18,803	23,822	308	143,749

8) 2차 연장 공고 종료(2011. 12. 31.)로 2012년 홍보(광고) 실적은 없었다. 2013년은 법 제2차 개정 이후 최종 신고 공고와 동시에 홍보(광고)를 실시했다. 최종 신고 공고 종료(2014. 12. 31.)로 2015년 홍보(광고) 실적은 없으나, 위원회 소식지는 발행되었다.

2 피해신고 접수 현황

10·27법난 피해신고 공고가 나가고 난 직후인 2009년 3월 23일 첫 피해신고가 들어온 이래 2014년 12월 31일 마지막 피해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4년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신청건수는 명예회복 신청이 166건,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이 68건 등 총 234건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회복 단일 신청은 103건, 의료지원금 지급 단일 신청은 5건,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병합 신청은 126건이다. 그리고 피해신고는 개인(피해자 및 대리인)과 단체(피해종교단체)가 할 수 있는데, 명예회복 단일 신청 103건 중에서 개인 신청은 58건, 단체 신청은 45건이었다. 다만 의료지원금은 개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단체는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신청인은 명예회복 단일 신청 58명과 의료지원금 지급 단일 신청 5명, 그리고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병합 신청은 63명으로 총 126명이었다.

표 2-7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지급	비고
2009	41	25	16	
2010	32	22	10	단체 1건 포함
2011	97	86	11	단체 44건 포함
2012	6	0	6	
2013	2	0	2	
2014	56	33	23	
계	**234**	**166**	**68**	

이에 따른 연도별 피해신고 접수 현황은 2009년에 41건(30명), 2010년에 32건(21명), 2011년에 97건(49명), 2012년에 6건(6명), 2013년에 2건(2명), 2014년에 56건(33명)이었다. 이와 같은 피해신고는 2011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10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소속 피해사찰 42건, 입적 승려 29건 등을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한 데에

기인한다.

한편 2012년은 법적 신고기간은 아니었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신고 접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피해신고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접수가 마감되는 때였는데, 접수 마감 5일 전인 12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이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적을 보유한 소속 승려 9,853명 전원을 대리하여 일괄적으로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이하 '조계종 일괄대리신청'[9])을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신고와 관련된 구비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조계종 총무원에 보완·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일단 조계종 일괄대리신청을 '가접수'로 간주하고, 이후 조계종 총무원 또는 개인이 보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의 경우 정식으로 신청접수를 받기로 하였다. 2012년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6건 중 5건은 이러한 보완자료를 2011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였다. 보완서류 제출 시에 의료지원금 지급신청도 함께 하였는데, 사실 조계종 일괄대리신청은 명예회복 신청에 국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은 법적 신고기간을 지난 상태에서는 접수할 수 없었으나, 당시 위원회는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정식으로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10]

또한 2013년 피해신고 2건 중 1건은 2012년 피해신고 건과 마찬가지로 법적 신고기간이 아닐 때 접수되었다. 이 경우 역시 조계종 일괄대리신청에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는 위원회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는 상황[11]이었으므로 2012년의 접수 사례와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기간의 연장을 감안하여 '가접수'를 하였던 것이다. 이후 2013년 11월 11일 신고기간이 연장되자 이에 대한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접수번호를 부여하였다.[12]

2014년의 경우도 2011년과 비슷하게 피해신고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10월 이후

---

9) 조계종 일괄대리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3장 제1절 심의위원회 3. 심의위원회 결정 부분에 참고 형식으로 간략하게 개요와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였다.

10) 2012년에 접수된 피해신고 6건 중 1건은 이미 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로, 피해자로 인정된 후 이를 토대로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사례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조계종 일괄대리신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11) 2013년 4월 3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현행 법률이 수정·가결되었고, 5월 10일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5월 22일 공포되었다.

12) 다만 접수일자의 경우 앞의 5명의 사례와 동일하게 명예회복 신청 접수일은 조계종 일괄대리신청 '가접수'일인 2011년 12월 30일로 하고,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접수일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처리하였다.

11~12월 두 달에 걸쳐 한 해 피해신고 건수 56건의 60.7%인 34건이 집중적으로 신청되었다. 이는 피해신고 접수 마감을 앞두고 위원회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안내를 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8 10·27법난 피해신고 접수 현황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1	2009.3.23.	1		이배원(자신)	능인사(인천 중구) / 주지	■수배 도피(미연행) ■주지 해임
2	2009.5.7.		1	강만봉	상원사(강원 평창) / 매점 운영	■연행, 감금, 조사 ■고문, 폭행
3	2009.5.13.	2		문성경(혜운)	법주사(충북 보은) / 교무국장	■고문, 폭행 ■부정축재 누명
4	2009.5.13.		2	문성경(혜운)	법주사(충북 보은) / 교무국장	■고문, 폭행 ■부정축재 누명
5	2009.5.26.	3		윤수만(성해)	천왕사(제주) / 주지	■연행, 조사 ■주지 해임
6	2009.6.3.		3	김주환(관후)	갑사(충남 공주) / 부전	■미연행 ■경내 구타 후 실신
7	2009.6.5.		4	신현배(율봉)	덕암사(경기 고양) / 부전	■연행, 감금, 조사 ■연행도중 부상
8	2009.6.11.	4		류희민(종근)	불국사(경북 경주) / 재무국장	■연행, 조사 ■재무국장 해임
9	2009.6.15.	5		박용식(명선)	화엄사(전남 구례) / 주지	■감금, 조사 ■고문, 협박, 폭행 ■주지 해임
10	2009.6.15.		5	박용식(명선)	화엄사(전남 구례) / 주지	■감금, 조사 ■고문, 협박, 폭행
11	2009.6.18.	6		신흥균	상원사(강원 평창) / 사무장	■연행, 감금 ■고문, 협박, 폭행
12	2009.6.18.		6	신흥균	상원사(강원 평창) / 사무장	■연행, 감금 ■고문, 협박, 폭행
13	2009.7.30.		7	최용경(명연)	성불사(서울 강북) / 주지	■미연행 ■경내 구타 폭행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14	2009.7.31.	7		박준석(석암)	천태종(충북 단양) / 총무원장	■ 고문 후유증 사망 ■ 징역, 재산몰수
15	2009.7.31.		8	박준석(석암)	천태종(충북 단양) / 총무원장	■ 고문, 협박, 폭행 ■ 징역, 재산몰수
16	2009.7.31.	8		이성휘(원행)	월정사(강원 평창)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 협박, 구타
17	2009.7.31.		9	이성휘(원행)	월정사(강원 평창)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 협박, 구타
18	2009.8.7.	9		김천일(혜법)	조계사(서울 종로)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언 ■ 주지 해임
19	2009.8.7.		10	김천일(혜법)	조계사(서울 종로)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언 ■ 주지 해임
20	2009.8.11.	10		채규호(일행)	조계사(서울 종로) / 교육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언, 구타 ■ 교육국장 해임
21	2009.8.11.		11	홍성한(무외)	광흥사(경북 안동)	■ 미연행 ■ 놀람, 공포 후유증
22	2009.8.17.	11		경○○(성○)	신흥사(강원 속초)	■ 법난 이전 경찰서 구금 및 삼청교육 피해
23	2009.8.21.	12		서승남(윤월)	홍은암(서울 서대문)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구타 ■ 형 확정(무고)
24	2009.8.21.		12	서승남(윤월)	홍은암(서울 서대문)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구타 ■ 형 확정(무고)
25	2009.9.7.	13		장○○(연○)	관음사(제주) / 총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언, 구타 없음
26	2009.9.10.	14		황한수(진경)	마곡사(충남 공주)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27	2009.9.15.	15		정재우(지우)	대흥사(전남 해남)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28	2009.9.16.	16		박정운(법열)	심광사(대전) / 총무국장	■ 연행, 조사 ■ 구타, 폭행
29	2009.9.16.		13	박정운(법열)	심광사(대전) / 총무국장	■ 연행, 조사 ■ 구타, 폭행
30	2009.9.16.	17		이근우	청담학원(경기 평택) / 이사	■ 연행, 조사 ■ 이사 해임
31	2009.9.18.	18		김종우(도웅)	반룡사(경북 영천)	■ 연행, 감금, 조사 ■ 폭언
32	2009.10.22.	19		이병한(청수)	신흥사(강원 속초) / 부주지 및 재무	■ 수배 도피(미연행)
33	2009.10.23.	20		김용오(경우)	대각사(부산)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34	2009.10.23.		14	김용오(경우)	대각사(부산)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35	2009.11.9.	21		오영준(성면)	명봉사(경북 예천)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 주지 해임
36	2009.11.9.		15	오영준(성면)	명봉사(경북 예천)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 주지 해임
37	2009.11.10.	22		승종봉(법민)	조계사(서울 종로)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언 ■ 재무국장 해임
38	2009.11.11.	23		성성환(청욱)	관음사(경북 김천) / 주지	■ 연행, 조사 ■ 실신 ■ 주지 해임
39	2009.11.18.	24		정막동(명철)	화엄사(전남 구례) / 부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40	2009.11.18.		16	정막동(명철)	화엄사(전남 구례) / 부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41	2009.11.18.	25		김수년(명현)	화엄사(전남 구례)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42	2010.1.27.	26		우홍근(학우)	마곡사(충남 공주)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43	2010.2.3.		17	우홍근(학우)	마곡사(충남 공주)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44	2010.2.11.	27		남익순(대충)	천태종(충북 단양) / 종정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45	2010.2.11.	28		전종윤(운덕)	천태종(충북 단양) / 총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46	2010.2.11.	29		윤흥식(덕산)	천태종(충북 단양) / 교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47	2010.2.11.	30		김형묵(기성)	천태종(충북 단양) / 재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48	2010.2.11.	31		김○○(국○)	천태종(충북 단양) / 사회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49	2010.2.11.	32		조운석(대정)	천태종(충북 단양) / 종정사서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50	2010.2.11.	33		서영숙(월궁)	구인사(충북 단양) / 법사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51	2010.2.11.	34		정희자(명성)	구인사(충북 단양) / 판매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52	2010.2.11.	35		여옥희(문성)	구인사(충북 단양) / 법사	■ 사찰 내 조사(미연행) ■ 협박, 폭언
53	2010.2.11.	36		박○○(거○)	구인사(충북 단양) / 공양주	■ 사찰 내 조사(미연행) ■ 협박, 폭언
54	2010.3.3.	37		이근배(혜성)	도선사(서울 강북)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55	2010.3.3.		18	이근배(혜성)	도선사(서울 강북)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56	2010.3.12.	38		한영수	문공부 / 종무관	■ 연행, 감금, 조사 ■ 형 확정(파면)
57	2010.3.12.		19	한영수	문공부 / 종무관	■ 연행, 감금, 조사 ■ 형 확정(파면)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58	2010.3.15.	39		이종석(근식)	표충사(경남 밀양) / 재무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59	2010.3.15.		20	이종석(근식)	표충사(경남 밀양) / 재무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60	2010.3.31.	40		김기곤	조계종(서울 종로) / 관리계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61	2010.3.31.		21	김기곤	조계종(서울 종로) / 관리계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62	2010.4.12.	41		김천석(회광)	표충사(경남 밀양)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63	2010.6.4.		22	윤흥식(덕산)	천태종(충북 단양) / 교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64	2010.10.5.	42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종(서울 종로)	■ 조계종 소속 사찰 폭력적 유린 (5,000여 사찰) ■ 소속 승려 연행(2,000여명)
65	2010.10.12.	43		오인근(법달)	조계사(서울 종로) / 감찰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66	2010.10.12.		23	오인근(법달)	조계사(서울 종로) / 감찰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67	2010.11.15.	44		김도학(허현)	조계종(서울 종로) / 재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68	2010.11.15.		24	김도학(허현)	조계종(서울 종로) / 재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69	2010.11.22.	45		김삼형(현철)	은해사(경북 영천) / 재무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70	2010.11.22.		25	김삼형(현철)	은해사(경북 영천) / 재무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71	2010.12.31.	46		권장수(도현)	도선사(서울 강북)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72	2010.12.31.		26	권장수(도현)	도선사(서울 강북)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73	2010.12.31.	47		김각경	조계사(서울 종로) / 신도	■ 연행, 감금, 조사 ■ 무고죄(1년)
74	2011.6.28.	48		구인사	구인사(충북 단양)	■ 인적 피해(11명) ■ 물적 피해 ■ 종교적 피해
75	2011.8.24.		27	서영숙(월궁)	구인사(충북 단양) / 법사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76	2011.9.8.		28	황한수(진경)	마곡사(충남 공주)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77	2011.9.26.		29	이병한(청수)	신흥사(강원 속초) / 부주지 및 재무	■ 수배 도피(미연행)
78	2011.10.12.	49		송현섭(월주)	조계종(서울 종로) / 총무원장	■ 연행, 감금, 조사 ■ 종권 찬탈, 명예 실추
79	2011.10.12.	50		박주식(진설)	조계사(서울 종로)	■ 연행, 조사
80	2011.10.12.	51		서병식(정대)	용주사(경기 화성)	■ 연행, 조사
81	2011.10.12.	52		임점택(원광)	신흥사(강원 속초)	■ 연행, 조사
82	2011.10.12.	53		황기연(오현)	신흥사(강원 속초)	■ 연행, 조사
83	2011.10.12.	54		장인찬(희찬)	월정사(강원 평창)	■ 연행, 조사
84	2011.10.12.	55		이상열(현우)	월정사(강원 평창)	■ 연행, 조사
85	2011.10.12.	56		김한기(서운)	동화사(대구)	■ 연행, 조사
86	2011.10.12.	57		최종렬(월산)	불국사(경북 경주)	■ 연행, 조사
87	2011.10.12.	58		박한남(광진)	범어사(부산)	■ 연행, 조사
88	2011.10.12.	59		윤희중(월하)	통도사(경남 양산)	■ 연행, 조사
89	2011.10.12.	60		박인수(청하)	통도사(경남 양산)	■ 연행, 조사
90	2011.10.12.	61		백식화(현광)	고운사(경남 의성)	■ 연행, 조사
91	2011.10.12.	62		이○○(서○)	백양사(전남 장성)	■ 연행, 조사
92	2011.10.12.	63		조학주(학능)	백양사(전남 장성)	■ 연행, 조사
93	2011.10.12.	64		김기태(천장)	백양사(전남 장성)	■ 연행, 조사
94	2011.10.12.	65		정기철(정수)	조계사(서울 종로)	■ 연행, 조사
95	2011.10.12.	66		가○○(성○)	용봉사(충남 홍성)	■ 연행, 조사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96	2011.10.12.	67		김연수(지성)	선운사(전북 고창)	■ 연행, 조사
97	2011.10.12.	68		고○○(태○)	내장사(전북 고창)	■ 연행, 조사
98	2011.10.12.	69		임동철(정산)	내장사(전북 고창)	■ 연행, 조사
99	2011.10.12.	70		홍상길(성진)	내장사(전북 고창)	■ 연행, 조사
100	2011.10.12.	71		이경환(현광)	증심사(광주)	■ 연행, 조사
101	2011.10.12.	72		김○○(태○)	백양사(전남 장성)	■ 연행, 조사
102	2011.10.12.	73		이재명(자순)	적조암(서울 성북)	■ 연행, 조사
103	2011.10.12.	74		배○○(송○)	연주암(경기 과천)	■ 연행, 조사
104	2011.10.12.	75		김희현(능혜)	조계종(서울 종로) / 재무부장	■ 연행, 조사
105	2011.10.12.	76		정○○(영○)	백담사(강원 인제)	■ 연행, 조사
106	2011.10.12.	77		김강웅(도명)	상원사(강원 평창)	■ 연행, 조사
107	2011.10.12.	78		최영권(원철)	낙산사(강원 양양)	■ 연행, 조사
108	2011.10.12.	79		조계사	조계사(서울 종로) / 김천일(혜법)	■ 소속 사찰 피해
109	2011.10.12.	80		신흥사	신흥사(강원 속초) / 이병한(청수)	■ 소속 사찰 피해
110	2011.10.12.	81		월정사	월정사(강원 평창) / 이성휘(원행)	■ 소속 사찰 피해
111	2011.10.12.	82		법주사	법주사(충북 보은) / 문성경(혜운)	■ 소속 사찰 피해
112	2011.10.12.	83		마곡사	마곡사(충남 공주) / 황한수(진경)	■ 소속 사찰 피해
113	2011.10.12.	84		은해사	은해사(경북 영천) / 김삼형(현철)	■ 소속 사찰 피해
114	2011.10.12.	85		불국사	불국사(경북 경주) / 류희민(종근)	■ 소속 사찰 피해
115	2011.10.12.	86		범어사	범어사(부산) / 박한남(광진)	■ 소속 사찰 피해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116	2011.10.12.	87		화엄사	화엄사(전남 구례) / 박용선(명선)	■ 소속 사찰 피해
117	2011.10.12.	88		대흥사	대흥사(전남 해남) / 정재우(지우)	■ 소속 사찰 피해
118	2011.10.12.	89		도선사	도선사(서울 강북) / 이근배(혜성)	■ 소속 사찰 피해
119	2011.10.12.	90		홍은암	홍은암(서울 서대문) / 서승남(윤월)	■ 소속 사찰 피해
120	2011.10.12.	91		성불사	성불사(서울 성북) / 최용경(명연)	■ 소속 사찰 피해
121	2011.10.12.	92		심광사	심광사(대전) / 박정운(법열)	■ 소속 사찰 피해
122	2011.10.12.	93		상원사	상원사(강원 평창) / 김강웅(도명), 신흥균	■ 소속 사찰 피해
123	2011.10.12.	94		표충사	표충사(경남 밀양) / 이종석(근식)	■ 소속 사찰 피해
124	2011.10.12.	95		반룡사	반룡사(경북 고령) / 김종우(도웅)	■ 소속 사찰 피해
125	2011.10.12.	96		명봉사	명봉사(경북 예천) / 오영준(성면)	■ 소속 사찰 피해
126	2011.10.12.	97		대자암	대자암(충남 공주) / 김주환(관후)	■ 소속 사찰 피해
127	2011.10.12.	98		광흥사	광흥사(경북 안동) / 홍성한(무외)	■ 소속 사찰 피해
128	2011.10.12.	99		능인사	능인사(인천) / 이배원(자신)	■ 소속 사찰 피해
129	2011.10.12.	100		덕암사	덕암사(경기 남양주) / 신현배(율봉)	■ 소속 사찰 피해
130	2011.10.12.	101		관음사	관음사(제주) / 장○○(연○)	■ 소속 사찰 피해
131	2011.10.12.	102		천왕사	천왕사(제주) / 윤수만(성해)	■ 소속 사찰 피해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132	2011.10.12.	103		서산사	서산사(전남 곡성) / 김수년(명현)	■ 소속 사찰 피해
133	2011.10.12.	104		백련사	백련사(서울 서대문) / 승종봉(법민)	■ 소속 사찰 피해
134	2011.10.12.	105		장경사	장경사(경기 광주) / 승종봉(법민)	■ 소속 사찰 피해
135	2011.10.12.	106		용주사	용주사(경기 화성) / 서병식(정대)	■ 소속 사찰 피해
136	2011.10.12.	107		동화사	동화사(대구) / 김환기(서운)	■ 소속 사찰 피해
137	2011.10.12.	108		통도사	통도사(경남 양산) / 박인수(청하)	■ 소속 사찰 피해
138	2011.10.12.	109		고운사	고운사(경북 의성) / 백식화(현광)	■ 소속 사찰 피해
139	2011.10.12.	110		백양사	백양사(전남 장성) / 조학주(학능)	■ 소속 사찰 피해
140	2011.10.12.	111		보문사	보문사(인천) / 정기철(정수)	■ 소속 사찰 피해
141	2011.10.12.	112		용봉사	용봉사(충남 홍성) / 가○○(성○)	■ 소속 사찰 피해
142	2011.10.12.	113		선운사	선운사(전남 고창) / 김연수(지성)	■ 소속 사찰 피해
143	2011.10.12.	114		내장사	내장사(전북 정읍) / 임동철(정산)	■ 소속 사찰 피해
144	2011.10.12.	115		증심사	증심사(광주) / 이경환(현광)	■ 소속 사찰 피해
145	2011.10.12.	116		적조암	적조암(서울 성북) / 이재명(자순)	■ 소속 사찰 피해
146	2011.10.12.	117		연주암	연주암(경기 과천) / 김홍규(금용)	■ 소속 사찰 피해
147	2011.10.12.	118		백담사	백담사(강원 인제) / 정○○(영○)	■ 소속 사찰 피해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148	2011.10.12.	119		상원사	상원사(강원 평창)	■ 소속 사찰 피해
149	2011.10.12.	120		낙산사	낙산사(강원 양양) / 최영권(원철)	■ 소속 사찰 피해
150	2011.10.17.		30	이근우	청담학원(경기 평택) / 이사	■ 연행, 조사 ■ 이사 해임
151	2011.10.17.		31	김수년(명현)	화엄사(전남 구례)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152	2011.11.9.		32	채규호(일행)	조계사(서울 종로) / 교육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언, 구타 ■ 교육국장 해임
153	2011.11.17.		33	여옥희(문성)	구인사(충북 단양) / 법사	■ 사찰 내 조사(미연행) ■ 협박, 폭언
154	2011.11.28.	121		홍현희(봉주)	해인사(경남 합천)	■ 연행 여부 미상 ■ 경내 폭행
155	2011.11.28.		34	홍현희(봉주)	해인사(경남 합천)	■ 연행 여부 미상 ■ 경내 폭행
156	2011.12.22.	122		배두관(철우)	조계종(서울 종로) / 기획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157	2011.12.22.		35	배두관(철우)	조계종(서울 종로) / 기획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158	2011.12.30.	123		○○신문	대한불교(서울 종로)	■ 대한불교 강제 폐간 ■ 명예 실추, 구독자 및 광고료 손실
159	2011.12.30.	124		하태용(성조)	성덕암(경남 창원) / 원주	■ 미연행 ■ 경내 폭행
160	2011.12.30.		36	하태용(성조)	성덕암(경남 창원) / 원주	■ 미연행 ■ 경내 폭행
161	2011.12.30.	125		황태로(종래)	보현사(대구) / 주지(종회의원)	■ 경내 폭행 ■ 수배 도피(미연행) ■ 주지(종회의원) 해임
162	2011.12.30.		37	황태로(종래)	보현사(대구) / 주지(종회의원)	■ 경내 폭행 ■ 수배 도피(미연행) ■ 주지(종회의원) 해임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163	2011.12.30.	126		김홍규(금용)	연주암(경기 과천) / 조계종(서울 종로) 재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 재무부장 해임
164	2012.6.19.		38	김홍규(금용)	연주암(경기 과천) / 조계종(서울 종로) 재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 재무부장 해임
165	2011.12.30.	127		조강원(중하)	조계사(서울 종로)/ 사무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166	2012.6.22.		39	조강원(중하)	조계사(서울 종로)/ 사무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167	2012.6.22.		40	이배원(자신)	능인사(인천 중구) / 주지	■ 도피 중 자수, 조사과정에서 고문
168	2011.12.30.	128		박대홍(법등)	임휴사(대구)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구타 ■ 주지 해임
169	2012.7.17.		41	박대홍(법등)	임휴사(대구)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구타 ■ 주지해임
170	2011.12.30.	129		박태일(현소)	봉정사(경북 안동)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주지 해임
171	2011.12.30.	130		박무홍(오설)	조계사(서울 종로)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172	2012.11.9.		42	박무홍(오설)	조계사(서울 종로)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173	2011.12.30.	131		허인환(성운)	무량사(충남 부여)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폭언
174	2011.12.30.	132		정동군(삼오)	조계사(서울 종로) / 주지 시자(시봉)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구타
175	2012.12.13.		43	정동군(삼오)	조계사(서울 종로) / 주지 시자(시봉)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구타
176	2011.12.30.	133		최현인(정혜)	통도사(경남 양산)	■ 미연행 ■ 경내 구타, 폭행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177	2013.5.6.		44	최현인(정혜)	통도사(경남 양산)	■ 미연행 ■ 경내 구타, 폭행
178	2013.11.27.		45	성성환(청욱)	관음사(경북 김천) / 주지	■ 연행, 조사 ■ 실신 ■ 주지 해임
179	2014.2.13.	134		김○○(도○)	천태종(충북 단양) / 사회과장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180	2014.2.13.	135		변○○(춘○)	구성사(대구)	■ 미연행 ■ 종단스님 연행 소식에 정신적 충격
181	2014.2.13.	136		조○○(진○)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182	2014.2.13.	137		최○○(성○)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183	2014.2.13.	138		주○○(대○)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184	2014.2.13.	139		김○○(명○)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185	2014.2.13.	140		김○○(화○)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186	2014.2.13.	141		안○○(선○)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187	2014.4.14.	142		김○○(법○)	금강대(부산) / 주지	■ 수배 도피(미연행) ■ 사찰수색
188	2014.6.3.		46	김○○(법○)	금강대(부산) / 주지	■ 수배 도피(미연행) ■ 사찰수색
189	2014.6.12.	143		김중건(자성)	적조암(서울 성북) / 총무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 총무 해임
190	2014.6.12.		47	김중건(자성)	적조암(서울 성북) / 총무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 총무 해임
191	2014.6.12.	144		이기남(자항)	적조암(서울 성북)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192	2014.6.12.		48	이기남(자항)	적조암(서울 성북)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193	2014.6.19.	145		김○○(자○)	적조암(서울 성북) / 재무	■ 미연행 ■ 경내 폭행, 폭언 ■ 재무 해임
194	2014.6.19.		49	김○○(자○)	적조암(서울 성북) / 재무	■ 미연행 ■ 경내 폭행, 폭언 ■ 재무 해임
195	2014.6.30.	146		김○○(법○)	원통사(서울 도봉) / 주지	■ 미연행 ■ 경내 폭행, 도피
196	2014.10.7.		50	김○○(법○)	원통사(서울 도봉) / 주지	■ 미연행 ■ 경내 폭행, 도피 ■ 치아 손상
197	2014.10.27.	147		이건호	조계종 전국신도회 / 사무총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198	2014.10.27.		51	이건호	조계종 전국신도회 / 사무총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199	2014.10.29.	148		박○○(도○)	홍련암(강원 양양)	■ 미연행 ■ 경내 폭행, 도피
200	2014.10.29.		52	박○○(도○)	홍련암(강원 양양)	■ 미연행 ■ 경내 폭행, 도피
201	2014.11.6.	149		전보원(보원)	선석사(경북 성주)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202	2014.11.6.		53	전보원(보원)	선석사(경북 성주)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203	2014.11.10.	150		최○○(진○)	조계사(서울 종로) / 부전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204	2014.11.10.		54	최○○(진○)	조계사(서울 종로) / 부전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205	2014.11.11.	151		문윤식(법장)	낙산사(강원 양양) / 부전	■ 미연행 ■ 경내 구타, 폭행
206	2014.11.11.		55	문윤식(법장)	낙산사(강원 양양) / 부전	■ 미연행 ■ 경내 구타, 폭행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207	2014.11.12.	152		이도성(도성)	해인사(경남 합천)	■ 수배 도피(미연행) ■ 졸도
208	2014.11.12.		56	이도성(도성)	해인사(경남 합천)	■ 수배 도피(미연행) ■ 졸도
209	2014.11.18.	153		임○○(보○)	홍련암(강원 양양)	■ 연행, 감금, 조사 ■ 경내 폭행
210	2014.11.18.		57	임○○(보○)	홍련암(강원 양양)	■ 연행, 감금, 조사 ■ 경내 폭행
211	2014.11.19.	154		윤동암(일선)	조계종(서울 종로) / 성자 이차돈 선양회	■ 미연행 ■ 청사 내 폭행(추락)
212	2014.11.19.		58	윤동암(일선)	조계종(서울 종로) / 성자 이차돈 선양회	■ 미연행 ■ 청사 내 폭행(추락)
213	2014.11.24.	155		반○○(혜○)	홍련암(강원 양양)	■ 미연행 ■ 경내 폭행, 도피
214	2014.11.24.		59	반○○(혜○)	홍련암(강원 양양)	■ 미연행 ■ 경내 폭행, 도피
215	2014.11.26.	156		전득수(설정)	수덕사(충남 예산)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폭언
216	2014.12.2.	157		박○○(도○)	낙산사 홍련암(강원 양양)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217	2014.12.2.		60	박○○(도○)	낙산사 홍련암(강원 양양)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218	2014.12.9.	158		박○○(보○)	낙산사(강원 양양) / 주지 시자(시봉)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219	2014.12.9.		61	박○○(보○)	낙산사(강원 양양) / 주지 시자(시봉)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220	2014.12.22.	159		진○○(천○)	해인사(경남 합천) / 재무국장	■ 수배 도피(미연행) ■ 도피 중 상이
221	2014.12.22.	160		최○○(수○)	불국사(경북 경주)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222	2014.12.22.		62	최○○(수○)	불국사(경북 경주)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223	2014.12.29.	161		하○○(정○)	홍련암(강원 양양)	■ 미연행 ■ 경내 폭행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명예	의료			
224	2014.12.29.		63	하○○(정○)	홍련암(강원 양양)	■ 미연행 ■ 경내 폭행
225	2014.12.30.	162		천성봉(도만)	계림사(경북 김천)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 주지 해임
226	2014.12.30.		64	천성봉(도만)	계림사(경북 김천)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 주지 해임
227	2014.12.30.	163		류광수(지호)	청곡사(경남 진주) / 주지	■ 미연행 ■ 연행중 상이(허리)
228	2014.12.30.		65	류광수(지호)	청곡사(경남 진주) / 주지	■ 미연행 ■ 연행중 상이(허리)
229	2014.12.30.	164		한정기(자용)	적조암(서울 성북)	■ 수배 도피(미연행)
230	2014.12.30.		66	한정기(자용)	적조암(서울 성북)	■ 수배 도피(미연행)
231	2014.12.31.	165		김광회(진우)	광흥사(경북 안동) / 주지	■ 수배 도피(미연행) ■ 주지 해임
232	2014.12.31.		67	김광회(진우)	광흥사(경북 안동) / 주지	■ 수배 도피(미연행) ■ 주지 해임
233	2014.12.31.	166		이법철(법철)	조계종(서울 종로) / 사회국장	■ 조사 ■ 사회국장 해임
234	2014.12.31.		68	이법철(법철)	조계종(서울 종로) / 사회국장	■ 조사 ■ 사회국장 해임

제3절

피해사실 조사

1 피해사실 조사와 조사 기간

10·27법난법 제3조에는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제7조는 피해자와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사무처 조사심의과에 피해조사담당자와 의료조사담당자를 두어 조사를 진행했다.[13] 피해조사담당은 법난 사건으로 신군부 합수단에 의해 연행·구금·폭행·수배·강제사직·형사입건 등을 당하거나 신청인이 소속 종단으로부터 법난 사건으로 징계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했다. 그리고 의료조사담당은 신청인이 법난으로 신체적·정신적 상이 피해를 입었는지,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상이 부위와 정도, 그리고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였다.

피해사실 조사활동은 2009년 6월부터 진행되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10·27법난명예회복 지원단이 창설되고 피해접수, 피해조사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업무절차 및 제반 규정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유효기간은 당초 2010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법률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위원회 활동이 연장되면서 피해신고 접수는 2014년 12월 31일로, 피해사실 조사활동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진행했다.[14]

---

13) 국방부가 주무부처였던 시기에는 지원단 심의지원과에 피해조사반, 의료지원반을 두어 조사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주무부처가 문체부로 이관되고 사무처 체계로 개편되면서 조사심의과에 피해조사와 의료조사 담당을 두었다.

14)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이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기한은 2015년 6월 30일이기에 법률에

2 조사 목적과 방향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는 10·27법난 사건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15] 당시 조사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계획 수립, 실행 과정 등 전반적인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피해자 조사의 경우,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광범위한 개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피해자·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개별 피해사실과 피해종교단체의 피해 내용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법난 사건의 진상규명활동은 이미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진행하였고, 진상규명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는 피해신고를 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방안을 만드는데 기초를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3 조사 방법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의료실무위, 피해실무위, 그리고 위원회에서 피해자(단체)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하였다. 이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사를 하였다.

따른 기간 안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건은 2015년 6월 30일 이후에도 재조사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15)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종합보고서는 2007년 12월 6일에 발간되었다.

첫째, 국가기관에서 법난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를 확보해 피해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10·27법난 사건 관련 조사보고서를 확보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와 국회 등의 자료를 입수하였다. 특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겨 있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자료를 소장한 국군기무사령부의 협조를 구해 법난 피해자의 명단, 연행 및 조사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였다.

둘째, 신청인의 형사입건, 재판기록, 행형기록 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법난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피해종교단체, 특히 조계종 자료를 통해 법난과 관련하여 종단에서 징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대상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법난 당시 승려였는지의 여부, 소속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넷째, 신문 · 방송 등 언론기관의 자료 및 출판물을 수집하여 조사활동을 하는데 활용하였다. 법난 당시의 신문기사, 방송보도 내용, 피해종교단체 등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신청인의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신청인과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16] 피해신고서에 사건 경위 등을 자세히 서술하여 제출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간략히 피해 내용을 적은 사례가 많았다.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 참고인에 대해 대면조사를 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다.

여섯째, 신청인의 의료기관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일곱째, 신청인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피해조사와 더불어, 피해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 원로 승려[17]에 대한 방문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즉 신청인 및 관련 참고인 조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피해 원로 승려 방문 활동을 통해 피해신고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불교계에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

16)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건강상 이유 혹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17) 합동수사본부 자료에 기재되어 있거나 불교계에서 법난 피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4 피해사실 조사업무 처리지침

피해사실조사 업무처리지침은 피해사실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사관들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관이 공석이거나 교체될 때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5월 19일 제정한 이 업무지침은,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침은 피해사실 조사활동을 할 때 업무 기준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실무위원회 심사 자료로도 쓰였다.[18]

피해사실조사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10 · 27법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조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조사 범위 · 대상)

① 조사의 범위는 2007년 10월 25일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10 · 27법난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② 조사 대상은 10 · 27법난법 제2조 2, 3호의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사실관계규명을 위한 개인 · 관련자 · 단체를 피해사실 조사 대상자로 함.

제3조(조사의 개시 및 기간)

조사관에게 정상적으로 접수된 시점을 개시시기로 하며, 기간은 피해사실 조사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함.

18) 피해사실조사 업무처리지침은 2009년 5월 19일 제정되고 2010년 4월 23일에 개정되었다.

제4조(조사방법 및 분류)
사실조사는 실무위원회 담당관의 직접조사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실시되는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함.

제5조(조사요령 및 절차)
조사관은 다양한 조사기법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피해신청서, 피해경위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조사 혹은 간접조사에 해당하는지 분리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며,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는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해 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함.

제6조(담당관 지정)
피해신청서 처리 담당관은 피해심의지원반 전원이 되며, 사건 담당관은 순번제로 정함.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조사관이 자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군 및 군 관련 기관, 경찰청, 국가기록원, 병/의원, 기타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함.

제8조(출석요구 등)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며, 추가 진술을 희망할 경우 진술청취 장소는 위원회 사무실로 함. 단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음.

제9조(조사의 중지)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피해자, 핵심 조사대상자,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와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중지 여부 등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에 따라 처리해야 함.

제10조(재심의 조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신청한 '재심'은 원심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

5 자료수집

위원회 초기인 2011년 5월까지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하였다. 그러다보니 심의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10·27법난과 관련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명예회복사업도 명확한 피해실태 확인 없이는 올바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까지 남기기 위한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이후부터 관계기관 및 단체,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자료수집 활동을 하였다.

1) 국가기록원

우선 위원회에서는 10·27법난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던 법난 관련 자료는 모두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다는 회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10·27법난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입수하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이 보낸 자료에는 먼저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1985년부터 1989년에 걸쳐 생산된 국회 5공특위 문서검증 실시계획 등과 불교계 분규 발생경과, 불교계 수사 경위(표지), 1980년 10월 27일 상황일지(표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생산 자료 등이 24쪽 분량이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직접 생산하고 접수한 10·27법난 관련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하는 문서 및 회신내용 69건과, 자료입수 및 검토보고 6건, 출장계획 및 면담·조사 결과보고 66건, 기타 자료 17건 등 500쪽 분량의 자료가 회신되었다. 뿐만 아니라 10·27법난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료는 혜성 스님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 45쪽, 성해 스님이 제출한 자료 등 35쪽,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 등이 제출한 자료 31쪽 등이다.

2) 국회

1988년 국회 5공특위에서는 10·27법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바 있었다. 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와 협조하여 2011년 9월 국회 5공특위에 제출된 각 정부 부처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에는 국방부가 5공특위에 제출한 국회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 계엄위원회 토의 내용,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백서 중 종교 관련 내용, 불교 정화조치 관련 내용 등이 있었다. 또한 법무부에서 제출한 불교 비리 관련 고소·고발 사건 기록과 불교 비리 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 문화공보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 등도 수집하였다.

3) 육군본부

위원회에서 육군본부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10·27법난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합수단 내 수사2국은 육군본부 예하 헌병부대 수사 인력으로 편성되어 10·27법난 시 수사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육군본부 대상 자료수집을 위해 2011년 9월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육군본부 기록정보단을 방문, 기록정보단장을 면담하여 자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약속받았다. 그리고 2011년 10월 법난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2국에서 수사대상자 등을 연행 조사한 내용이 기록된 수사자료 553쪽 분량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4)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10·27법난 당시에는 국군보안사령부라는 기관 명칭을 사용하였다.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직책을 수행하였고,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장 역시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이었다. 또한 합수단 소속 수사1국의 운영 주체도 국군보안사령부 부대원들이었다. 따라서 그 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10·27법난과 관련한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자료 수집은 수차례에 걸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였다. 이때 자료는 피해를 신고한 대상자에 대한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하기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활용 종료 시 또는 위원회 활동 종료 시에는 반환하기로 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분량은 총 19권 26책 7,675쪽이다.

5) 기타 기관

위원회에서는 법난 당시 불교계가 입은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난 당시 관련기관인 경찰청(합수단 수사3국)과 국가정보원(법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합수단 수사5국)에도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두 기관 모두 '10·27법난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심의활동에 필요하여 대법원, 행정자치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조계종, 천태종 등에도 자료를 요청해 심의활동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1980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10·27법난과 불교 관련 기사, 10·27법난을 다룬 도서, 10·27법난을 주제로 한 발표문, 10·27법난을 주제로 한 자료집, 10·27법난을 비롯한 과거사 관련 발표문, 그리고 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백서 등을 수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중앙 일간지 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실에서 수집하였다. 마이크로필름에 담겨져 있는 신문들을 날짜별로 검색하여 10·27법난 관련 기사를 출력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타 10·27법난을 다룬 도서, 발표문, 자료집, 과거사 관련 논문, 타 과거사 위원회 보고서·백서 등은 직접 구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제3장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10·27법난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따라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피해실무위,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및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명예실무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의료실무위 등 3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1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심의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에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의결기구로서 위원회를 통해서만 비로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09년 1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에 8차례, 2010년에 7차례, 2011년에 5차례, 2012년에 3차례, 2013년에 3차례, 2014년에 8차례, 2015년에 10차례, 2016년에 3차례 등 총 47차례 걸쳐 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다.

표 3-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참석자	회 의 내 용	결과
제1차 회의	2009.1.8.	위원장 등 9명	10·27법난피해자명예회회복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심의	원학 스님 선임
제2차 회의	2009.2.26.	위원장 등 6명	실무위원회(명예회복, 피해심사, 의료실무위) 위원장 선임안 심의	윤원호 · 조남진 · 이명묵 선임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안 심의	원안 의결
제3차 회의	2009.6.4.	위원장 등 8명	각 실무위(명예회복, 피해심사, 의료지원) 회의운영 규칙 심의	원안 의결
제4차 회의	2009.7.13.	위원장 등 9명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관 지원 심의	예산규모1,500억 원, 건립장소 추후 결정 의결
제5차 회의	2009.9.7.	위원장 등 9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4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 심의	원안 의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 심의	원안 의결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 심의	원안 의결
제6차 회의	2009.11.16.	위원장 대행 등 8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7, 보류 1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개정 심의	원안 의결
			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심의	원안 의결
제7차 회의	2009.12.9.	위원장 등 7명	10·27법난피해자명예회회복위원회 위원장 선임 심의	영담 스님 선임
제8차 회의	2009.12.21.	위원장 등 7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4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1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자 기여도 적용 심의	원안 의결
제9차 회의	2010.1.27.	위원장 등 7명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3
제10차 회의	2010.3.2.	위원장 등 7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3, 보류 1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 심의	원안 의결
제11차 회의	2010.4.9.	위원장 등 7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4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1
제12차 회의	2010.6.7.	위원장 등 7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5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1
			검진업무처리계획 수정 심의	원안 의결

구분	개최일자	참석자	회 의 내 용	결과
제13차 회의	2010.7.22.	위원장 등 6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3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2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 심의	원안 의결
제14차 회의	2010.9.14.	위원장 등 8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3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1, 보류 1
			재심 심사 중 추가 신청서 제출 건의 업무처리 심의	원안(1안) 의결
제15차 회의	2010.12.8.	위원장 등 8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1, 불인정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3
			10·27법난 기념행사 교부 보조금 금액 확정 심의	원안 의결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원안 의결
제16차 회의	2011.2.15.	위원장 등 8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3
			피해자 신청 접수장소 지정 변경 심의	원안 의결
제17차 회의	2011.4.19.	위원장 등 8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4
			'12년 역사기념관 건립 및 법난행사 지원 예산 요구안	미 의결
제18차 회의	2011.6.28.	위원장 등 9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1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여부 결정 심의	비공개 의결
제19차 회의	2011.10.5.	위원장 등 8명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2
제20차 회의	2011.12.6.	위원장 등 6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안건 미상정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심의	
			피해자 신고기간 연장 심의	
			심의위원회 및 3개 실무위원회 규칙 개정 심의	
제21차 회의	2012.9.25.	위원장 등 7명	위원장 선임	지현 스님 선임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차기 회의에서 심의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심의	차기 회의에서 심의
			피해종교단체 심의	차기 회의에서 심의

구분	개최일자	참석자	회 의 내 용		결과
제22차 회의	2012.10.18.	위원장 등 6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37, 불인정 7, 보류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차기로 이월
			피해종교단체 심사		차기로 이월
			2012년도 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심의		수정안 의결
			긴급안건	법률시한 종료 후 10·27법난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방안 (제1호)심의	원안 의결
				역사교육관 완공 후 그 운영방안에 대한 방안(제2호)심의	원안 의결
				피해종교단체 신고서를 제출한 조계종의 법적 범주의 확정(제3호)심의	원안 의결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신청 처리방안 심의		차기로 이월
제23차 회의	2012.10.24.	위원장 등 6명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6
			피해자 해당여부(피해종교단체) 심의		인정 40, 불인정 5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개정 심의		원안 의결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신청 처리방안 심의		보류
			긴급안건		원안 의결
제24차 회의	2013.5.28.	위원장 등 7명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차기로 이월
			2014년도 법난명예회복사업 예산 심의		원안 의결
			10·27법난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심의		수정 의결 (단, 제6조 제1항 삭제)
			입적 승려(10명)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 심의		보류
제25차 회의	2013.10.23.	위원장 등 6명	위원장 선임의 건		정만 스님 선임
			「2013년 10·27법난기념행사」 관련 조계종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의 건 심의		원안 의결
제26차 회의	2013.12.4.	위원장 등 6명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6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1
			피해자 인정 입적 승려(10명)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 심의		원안 의결
제27차 회의	2014.1.22.	위원장 등 7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2
			조계종 일괄 대리 신청인 처리방향 심의		원안 의결
			정부위원 대리출석 제도 도입 심의		보류

구분	개최일자	참석자	회 의 내 용	결과
제28차 회의	2014.3.5.	위원장 등 6명	「2014년 10·27기념행사」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심의	원안 의결
제29차 회의	2014.4.9.	위원장 등 6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신청 안 심의	인용 1, 기각 1
			조계종 일괄 대리신청인 설문조사결과 및 처리방안 심의	원안 의결
			의료실무위 회의운영규칙 별지서식 개정 심의	원안 의결
제30차 회의	2014.5.28.	위원장 등 8명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2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심의	원안 의결
제31차 회의	2014.6.24.	위원장 등 9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1, 불인정 1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신청 심의	인용 1
제32차 회의	2014.8.27.	위원장 등 9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1
제33차 회의	2014.10.27.	위원장 등 6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불인정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신청 심의	기각 1
제34차 회의	2014.12.10.	위원장 등 7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불인정 2, 보류 1
제35차 회의	2015.1.27.	위원장 등 9명	위원장 선임의 건	지현 스님 선임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2, 불인정 4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신청 심의	인용 1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2
제36차 회의	2015.3.15.	위원장 등 8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불인정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3
			2015년 10·27기념행사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심의	원안 의결
제37차 회의	2015.4.15.	위원장 등 7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불인정 6
제38차 회의	2015.5.20.	위원장 등 6명	피해자 해당여부안 심의	인정 4, 불인정 2
			2016년 '법난 기념관 건립'예산 요구 심의	원안 또는 수정 의결

구분	개최일자	참석자	회 의 내 용	결과
제39차 회의	2015.6.30.	위원장 등 7명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인정 3, 불인정 3 각하 1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4, 불인정 1
제40차 회의	2015.8.25.	위원장 등 7명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신청 심의	인정 5, 기각 1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1
제41차 회의	2015.9.21.	위원장 등 7명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심의	지급 의결 5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신청 심의	기각 1
제42차 회의	2015.10.27.	위원장 등 7명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방안 심의	원안 의결
제43차 회의	2015.12.2.	위원장 등 7명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심의	원안 의결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	피해자인정 취소 (의료지원금 환수)
제44차 회의	2015.12.23.	위원장 등 6명	10·27법난 피해자(입적 승려 ·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심의	원안 의결 33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심의	원안 의결 6
제45차 회의	2016.1.27.	위원장 등 7명	10·27법난 피해자(입적 승려 · 생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심의	원안 의결 62
제46차 회의	2016.3.29.	위원장 등 7명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사찰)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및 명예회복조치(안) 심의	원안 의결 12
			2016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교부의 건 심의	원안 의결
제47차 회의	2016.4.26.	위원장 등 6명	2017년 「법난기념관」 건립예산 요구(안) 심의	원안 의결

2 심의위원회 회차별 주요 내용

1) 제1차 회의

2008년 12월 30일 국무총리실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7명에 대해 임명·위촉[1]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2]에서는 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정부 및 민간위원 9명이 참석하여, 조계종의 원학 스님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판식 행사를 2009년 1월 중에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표 3-2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일반 제1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원학 스님 선임	

2) 제2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3]에서는 10·27법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명예실무위, 피해실무위, 의료실무위 등 3개 분야 실무위원회 위원장 선임 안건과 명예회복심의원회 회의운영규칙 등의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후에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신청 공고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공고문의 주요내용은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인의 자격, 신청서 접수기관, 제출서류 등이었다. 보고 과정에서 신청기간 중 직접방문 접수시간(09:00~18:00)을 명시하고, 신청서 제출서류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관보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법난명예회복지원단 총괄과장은 법령개정 추진상황과 명예회복 관련 예산편성절차 보고를 하였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향후 위원

1) 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은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 일시/장소: 2009. 1. 8. 15:00~16:00/조계종 총무원 회의실 (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민간위원(원학·세영·삼보 스님, 조남진·허남오·이명묵), 정부위원(김종천·이종정·임재식) 등 9명.
3) 일시/장소: 2009. 2. 26. 16:00~18:00/전쟁기념관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원학 스님(위원장), 세영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 6명.

회 회의 개최 횟수·날짜 등에 대한 토의 시간도 가졌다.

표 3-3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일반 제2호	실무위원회(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 3개 분야) 위원장 선임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윤원호 위원으로 의결	
일반 제3호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조남진 위원으로 의결	
일반 제4호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이명묵 위원으로 의결	
일반 제5호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운영규칙[4]을 원안대로 의결	

3) 제3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5] 안건은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규칙'이었다. 10·27법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설치된 각 실무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후에는 조계종에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역사교육관 건립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때 논의된 주요 내용은 조계종 측에 우선 건립 부지를 확정토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현안보고 사항으로 피해자 신고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구, 법률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위원들의 협조[6], 2010년 예산편성(안) 반영을 위한 지원단의 노력[7]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

4) 원안 의결한 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조문은 총 10개로 제1조(목적), 제2조(의장), 제3조(회의의 소집 등),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회의의 운영), 제7조(관계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의결서, 회의록), 제10조(비밀엄수의무),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록 참조)

5) 일시/장소: 2009. 6. 4. 16:00~18:00/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소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원학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경찰청 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등 8명.

6) 주요 내용은 ① 피해자 범위 확대: 구금·폭행·가혹 행위, ② 보상금 지급, ③ 법률 유효기간 연장: 3년(2010. 6.→ 2013. 6.), ④ '승려의 재산상속을 종단에 귀속' 규정 반영 등이다.

7) 2010년 예산편성(안) 주요내용: 역사교육관 1,500억 원, 기념행사 1억 원, 의료지원금 33억 원, 안건심사 20억 원.

표 3-4 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일반 제6호	각 실무위(명예회복, 피해심사, 의료지원 3개 분야) 회의운영규칙[8]	각 실무위(명예회복, 피해심사, 의료지원 3개 분야) 회의운영규칙 원안 의결	

4) 제4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9]에서는 10·27법난법 시행령(2008. 9. 9. 시행) 제6조 제1항에 따라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관 지원(안)'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던 역사교육관 건립 지원(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참석위원들 간에 이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특히 역사교육관의 예산확보 문제, 주무부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10]

표 3-5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일반 제7호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관 지원(안)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관 지원(안)의 예산규모는 1,500억 원으로 하고, 건립 장소 등은 추후 결정하여 반영키로 함.	

5) 제5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11]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 피해자

8) 원안 의결한 각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은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규칙의 조문은 총 11개내지 13개 조항과 부칙 및 별표서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의운영규칙은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2011년과 2013년 2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부록 참조)

9) 일시/장소: 2009. 7. 13. 16:00~18:00/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소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원학 스님(위원장), 세영·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9명.

10)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역사교육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모두 인식을 같이하는 가운데,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역사교육관 건립 장소 선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1) 일시/장소: 2009. 9. 7. 16:00~18:00/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소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원학 스님(위원장), 세영·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국방부 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등 9명.

해당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는 피해실무위 제2차와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명예회복 신청 1건,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2건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1건 등 4건 모두 법난 피해자 인정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에 회부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 3건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심의가 끝난 후 '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과 '2010년 예산편성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심의결과의 후속조치사항[12]에 대하여 토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차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였다.

표 3-6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호	의료	강만봉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호	의료	김주환(관후)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4호	명예/의료	문성경(혜운)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5호	명예	류희만(종근)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7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일반 제8호	10·27법난 피해자 검진 업무처리계획(안)[13]	10·27법난 피해자 검진 업무처리계획(안)을 원안 의결	
일반 제9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안)[14]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 신청 기간 연장(안)을 원안 의결	
일반 제10호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안)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토록 의결	

12) 후속조치 사항으로 원안 의결한 피해자 해당여부안 및 일반 심의안건 등 7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하였다. 즉 ① 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신청 3명을 의료실무위에 회부(의료실무위에서 의료지원금 등 산정 후 본 위원회 최종결정), ②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신청 2명을 명예실무위에 회부(명예실무위에서 명예회복방안 등 심의 후 본 위원회 최종결정), ③ 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 의료실무위에 통보(검진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 ④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 홍보반에 통보(신청공고문을 관보 및 불교신문 등에 홍보), ⑤ 법난 기념행사 지원, 총괄반에서 조치(조계종 법난 기념행사에 예산 등 지원) 등이다. 또한 회의 간 논의 부분에 대한 조치로 피해 신청인(강만봉)의 병명 중 일부 상이 인정 여부는 의료실무위에서 재차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6) 제6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15]에서는 모두 10건을 심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 공석에 따라 세영 스님이 위원장직을 대행하였다.[16]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8건은 피해실무위 제3차와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안건이었다.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피해자 인정 의결을 보류한 안건 피해 제11호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법난으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 의결하고, 이를 해당 실무위에 회부하였다.

일반안건 2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중에 한 위원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법난과의 관련성(인과관계) 처리문제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표 3-8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6호	의료	신현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7~8호	명예/의료	박준석(석암)	피해자 인정 ※ 사망자이므로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10호	명예/의료	이성휘(원행)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1호	의료	홍성한(무외)	피해자 여부 보류[17]	해당 실무위 재회부
피해 제12~13호	명예/의료	신흥균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15호	명예/의료	박용식(명선)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13) 10·27법난 관련 피해보상을 위해 상이자의 신체검진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의료보장구 구입비 산정 등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이다.

14) 법률개정안(위원회 활동기간 3년 연장: 2010. 6. 30. → 2013. 6. 30.)의 국회통과 등에 대비하여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2009. 3. 16.~2009. 9. 17. → 2009. 3. 16.~2010. 3. 17.)하는 내용이다.

15) 일시/장소: 2009. 11. 16. 16:00~18:00/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세영 스님(위원장 직무대리),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등 8명.

16) 조계종 총무부장이었던 위원장 원학 스님은 제33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출범에 맞추어 총무부장직과 위원장직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임 전 위원장 직무대리로 세영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지명하였다.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6호	의료	최용경(명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7~18호	명예/의료	김천일(혜법)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9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일반 제11호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개정(안)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개정(안)을 원안 의결	
일반 제12호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준(안)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준(안)을 원안 의결	

7) 제7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18]는 위원장인 원학 스님의 사퇴로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윤원호 위원에 의해서 개회되었다. 위원장 선임까지만 회의를 진행한 후, 그 이후로는 새로 선임된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었다. 심의안건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이었다.

표 3-10 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일반 제13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17) 신청인 무외 스님은 법난당시 광흥사(안동)에서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나오다 약 2~3m 앞에서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는 군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다고 피해를 주장(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하는데 객관적 증거 자료 부족으로 의결을 보류하고 의료실무위로 다시 회부키로 하였다. 추후 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심의하였다.

18) 일시/장소: 2009. 12. 9. 16:30~18:00/전쟁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혜경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경찰청 차장 등 7명.

8) 제8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19]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은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한 이후 의료실무위 제4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이후 처음으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은 의료지원금 지급 및 명예회복을 신청한 1건과 명예회복을 신청한 3건 모두 법난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여도 적용(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표 3-11 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9호	의료	강만봉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12 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0호	명예	채규호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1호	명예	정재우(지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2~23호	명예/의료	박정운(법열)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4호	명예	이근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13 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일반 제14호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자 기여도 적용(안)[20]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법난으로 인한 상이 이외의 기여도는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	해당 실무위 처리

19) 일시/장소: 2009. 12. 21. 16:30~18:00/전쟁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혜경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 7명.

9) 제9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21]에서는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3건을 심의하였다. 이는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하고 해당 실무위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의 안건 심의 외에도 법률 개정안 공포(2010. 1. 25.)에 따른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노력과 역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예산증액[22], 2009년 위원회 업무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14 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5호	의료	신현배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6호	의료	신흥균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7호	의료	최용경(명연)	지급결정	지급완료

10) 제10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23]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4건은 피해실무위 제6차 회의에서 모두 법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의결한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안건번호 피해 제28호를 제외한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해당 실무위에 회부하였다. 피해 제28호의 경우, 심의 전에 법제처 '의료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유권 해석 결과 보고가 선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인정을 보류하였다.[24]

---

20)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상이 정도가 10·27법난과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하여 확대된 경우, 그 기여도(피해자의 기왕증 및 손해확대방지 또는 경감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질병이 확대된 정도)를 고려하여 의료지원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21) 일시/장소: 2010. 1. 27. 14:00~15:00/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경찰청 차장 등 7명.

22)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 5억 4,000만 원에서 23억 원으로 증액된 것을 말한다.

23) 일시/장소: 2010. 3. 2. 15:00~16:00/전쟁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국가보훈처 차장 등 7명.

24) 기무사 기록에 의하면 윤월 스님은 당시 폭력배 배후 조종 등 혐의로 지명수배 및 1980년 10월 30일 합동수사본부에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안)'을 심의하였다. 2010년 1월 25일 개정·공포된 10·27법난법은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완료를 2012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심사완료 6개월 전인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으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표 3-15 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8호	명예/의료	서승남(윤월)	피해자 여부 보류	추후 재심의
피해 제29호	명예	황한수(진경)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0호	명예/의료	정막동(명철)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1호	명예	김수년(명현)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16 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일반 제15호	피해자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안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안) 원안 의결 * 신청기간: 2010.3.17. → 2011.12.31.	

11) 제11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25]에서는 모두 5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4건은 제7차 피해실무위에서 법난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특히 안건번호 피해 제35호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이다. 이 안건의 경우 의료실무위 제6차 회의에서 심의결과 의학적 인과관

검거되어 무고죄로 형사 입건된 바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명예회복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제기가 있어 일단 보류되었다. 추후 피해자 인정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25) 일시/장소: 2010. 4. 9. 16:00~17:10/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경찰청 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등 7명.

계를 인정하였는데, 이를 인용하여 법난으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1건은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어 의료실무위에 회부된 안건이다. 이후 의료실무위 제6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의결하여 다시 상정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표 3-17 심의위원회의 제11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32호	명예	윤수만(성해)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3호	명예	승종봉(법민)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4호	명예	김종우(도웅)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5호	의료	홍성한(무외)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18 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36호	의료	김천일(혜법)	지급결정	추후 재심 신청[26]

12) 제12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27]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은 피해실무위 제8차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상정한 안건과 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피해자 인정을 보류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안건을 포함하여 5건이다. 안건 모두 법난 피해자로 인정하고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을 심의하였는데, 이는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7차 회의에서 의결

26) 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27) 일시/장소: 2010. 6. 7. 16:30~17:50/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국가보훈처 차장 등 7명.

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검진업무처리 계획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심의가 끝난 후에는 위원회 홈페이지 시연과 역사교육관 건립부지 및 사업계획(수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19 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37호	명예/의료	김용오(경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8호	명예/의료	오영준(성면)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9호	명예	이배원(자신)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40호	명예	이병한(청수)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41호	명예/의료	서승남(윤월)	피해자 인정[28]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20 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42호	의료	박용식(명선)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21 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일반 제16호	검진업무처리 계획 수정안	원안 의결 * 검진의 수당을 1인당 1일 14만 원에서 1인 1회당 7만 원으로 조정	의료 실무위 처리

28) 신청인의 신청 상이가 법난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된다는 의료실무위의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료지원금 지급대상 피해자에는 해당되나, 명예회복 대상 피해자 인정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한 안건이다. 명예회복 대상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는 1980년 11월 18일 조계종의 정화중흥회의에서 체탈도첩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1984년 8월 31일 제80회 중앙종회 결의에 의하여 사면되어 복권되었으므로 10·27법난 피해자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의결한 사항이다.

13) 제13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29]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실무위 제9차 회의에서 상정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3건 모두를 법난 피해자로 인정·의결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제5차와 제8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정한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2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안)'은 명예실무위 제7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심의 후에는 2010년 전반기 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표 3-22 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43호	명예/의료	우홍근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44호	명예/의료	이근배(혜성)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45호	명예/의료	이종석(근식)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23 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46호	의료	문성경(혜운)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47호	의료	박정운(법열)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24 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 고
일반 제17호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안)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하는 30주년 10·27법난 기념행사 비용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	

29) 일시/장소: 2010. 7. 22. 11:00~12:05/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 6명.

14) 제14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30]에서는 모두 6건을 심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피해실무위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정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3건을 법난 피해자로 인정·의결하고, 해당 실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다.

이어서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2건을 심의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51호는 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9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52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의료실무위 제9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을 재산정하여 상정한 안건이다.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상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심심사 중에 추가 상이신청 제출 건'을 일반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한 결과, 추가 신청한 서류를 재심 건의 보완자료 제출로 간주하여 재심신청 건은 심의를 보류하였다. 즉,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해당 실무위원회 심사 후에 보류한 사항과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의 후에는 10·27법난 피해자 진료출장비 지급시행 및 역사교육관 건립추진경과, '10·27법난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인쇄·배포에 대한 검토 등의 보고가 있었다.

표 3-25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48호	명예/의료	윤흥식(덕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49호	명예/의료	한영수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50호	명예	김천석(회광)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30) 일시/장소: 2010. 9. 14. 11:00~12:05/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혜경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 위원, 국방부 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등 8명.

표 3-26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51호	의료	홍성한(무외)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52호	의료	김천일(혜법) * 재심의건	보류	추후 재심의[31]

표 3-27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고
일반 제18호	재심심사 중 추가 신청서 제출 건의 업무처리(안)	재심 심사 중 제출 건의 업무처리(안)은 재심 건 보류, 추가신청 건 재심사 후 병합처리로 의결	

15) 제15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32]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3건은 피해실무위 제11차 회의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안건이었다.

안건번호 피해 제53호와 피해 제54호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신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법난 관련 상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인정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피해 제55호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추가 상이 신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던 안건이었다. 의료실무위 제10차 회의 및 피해실무위 제11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인용하여 추가로 신청한 질환을 인정하고,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어서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3건을 심의하였다. 이 안건은 심의위원회 제10차와 제12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제10차 의료실무위에서 의결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일반안건으로 '10·27법난 기념행사 교부 보조금 금액 확정'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

31) 추후 재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 제15차와 제16차 회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32) 일시/장소: 2010. 12. 8. 14:00~15:05/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혜경·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국가보훈처 차장 등 8명.

결하였다. 또한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안에 대해서는 10·27법난 피해자(개인, 사찰, 조계종)에 대한 조사와 입증에 관한 연구 및 명예회복방안에 대해 전문성·객관성·신뢰성이 있는 연구용역을 민간 전문기관에 실시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심의 후에는 2010년도 위원회 운영현황과 10·27법난 피해 관련 국가배상사건 판결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28 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53호	명예	장○○(연○)	피해자 불인정	기각 통보
피해 제54호	명예	성성환(청욱)	피해자 불인정	기각 통보
피해 제55호	명예/의료	김천일(혜법)	피해자 인정	의료실무위 회부 (추가)

표 3-29 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56호	의료	서승남(윤월)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57호	의료	오영준(성면)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58호	의료	정막동(명철)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30 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고
일반 제19호	10·27법난 기념행사 교부 보조금 금액 확정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금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이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보조사업 실적이 관련 근거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집행됨이 인정되어 교부 보조금 금액을 1억 원으로 확정	지급 조치
일반 제20호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원안 의결	

16) 제16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6차 회의[33]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으로 명예회복 신청건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건을 각각 법난 피해자로 인정·의결하였고,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5차와 제13차 및 제15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11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을 산정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10·27법난 피해자 신청서 접수처 주소지 변경 공고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심의 후에는 시행령 개정안의 토의와 명예회복지원단 사무실 이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31 심의위원회 제16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59호	명예	전종윤(운덕)[34]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60호	명예/의료	김기곤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32 심의위원회 제16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61호	의료	김주환(관후)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62호	의료	이근배(혜성)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63호	의료	김천일(혜법)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33 심의위원회 제16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고
일반 제21호	10·27법난 피해자 신청서 접수처 주소지 변경 공고안	사무실 이전에 따라 10·27법난 피해자 신청서 접수처를 현재 주소에서 이전주소로 관보에 변경공고 의뢰	

33) 일시/장소: 2011. 2. 15. 15:00~17:05/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혜경·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경찰청 차장 등 8명.

34) 전종윤(운덕)은 법난 피해자로 인정됨에 따라, 법난 당시 소속 사찰이었던 천태종 구인사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받았다.

17) 제17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7차 회의[35]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은 피해실무위 제13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한 안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인용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6차와 제13차 및 제14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12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을 산정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2012년 역사교육관 건립 및 법난행사 지원 예산 요구안'을 심의하였는데 역사교육관 건립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역사교육관 사업 및 예산 편성항목과 금액의 적정성, 사업 시행주체 변경여부(국방부 직접사업, 민간보조사업), 법령개정 필요여부(역사교육관 건립 지원사업을 보상적 성격으로 가능여부) 등을 국방부에서 검토·협의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의결하지 않았다.

표 3-34 심의위원회 제17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64호	명예/의료	오인근(법달)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65호	명예/의료	김도학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35 심의위원회 제17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66호	의료	이성휘(원행)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67호	의료	한영수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68호	의료	우홍근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69호	의료	윤흥식(덕산)	지급결정	지급완료

35) 일시/장소: 2011. 4. 19. 14:00~16: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국방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 8명.

표 3-36 심의위원회 제17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고
일반 제22호	2012년 역사교육관 건립 및 법난행사 지원 예산 요구안	• 미의결: 역사교육관 건립사업의 관련 사항을 국방부에서 검토·협의 후 위원장 보고 – 역사교육관 사업 및 예산편성 항목·금액 적정성 검토 – 사업시행주체 변경여부 – 법령개정 필요 여부	

18) 제18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36]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은 피해실무위 제14차 회의에서 법난으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의결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안'은 심의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13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 산정을 의결하여 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여부 결정(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 심의안건은 불교신문사에서 2011년 4월 26일, 제1차부터 제17차까지 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회의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되나 공개여부 결정과정의 객관성 제고 및 심의위원회 결정 규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결정 후 최종 통보하는 것으로 1차 회신을 하였다.

이후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였는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개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공개청구 회의록에는 피해자, 참고인 및 발언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더

36) 일시/장소: 2011. 6. 28.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삼보·혜경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국방부 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등 9명.

라도 회의 자료나 발언 내용을 근거로 유추 가능한 제3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는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이익 침해, 공정한 업무수행 장애, 개인정보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대부분의 안건은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및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등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과 피해 내용, 상이 내용, 의료지원금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역사교육관 건립' 관련 등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항의 공개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된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7조에 따라 작성 · 관리해야 되는 회의록은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해 10년 이내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활발한 심의보장을 위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가 교환될 수 있도록 발언자 및 발언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 12946호), '10·27법난 심의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제8조에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교신문사의 정보공개청구 건의 경우 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등의 '비공개 관련 규정' 및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발언 보장'을 위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회의에 대해 사전에 별도 공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비공개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심의 ·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심의 후에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37 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70호	명예/의료	김삼형(현철)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71호	명예	김각경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38 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72호	의료	김기곤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39 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고
일반 제24호[37]	10·27법난피해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여부 결정안	비공개 결정 * 개인정보 포함 등에 의한 비공개 관련 법령 및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발언 보장	

19) 제19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38]에서는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2건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는 심의위원회 제12차 및 제17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14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을 산정하여 상정한 안건이다.

심의 후에는 2011년 법난 기념행사 국가보조금 지원 계획과 10·27법난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40 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73호	의료	김용오(경우)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74호	의료	김도학	지급결정	지급완료

37) 안건번호 제23호는 결번 처리되었다.

38) 일시/장소: 2011. 10. 5.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삼보·혜경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경찰청 차장 등 8명.

20) 제20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0차 회의[39]에서는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안), 피해자 신고기간 연장(안), 위원회 및 3개 실무위원회 규칙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위원장은 회의 개회선언 직후 심의에 앞서 민간위원 5명을 교체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자 민간위원인 삼보 스님이, 민간위원 교체 발언을 포함한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배경설명이 필요한데, 위원회 제2대 위원장 영담 스님은 2011년 4월경부터 10·27법난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국회의원과 법률전문가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 심의위원 5명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민간 심의위원들은, 위원장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 교체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특별한 과실이 없는 민간 심의위원 5명을 임의로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며, 위원장의 권한사항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장이 민간 심의위원 5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자, 위원장과 민간 심의위원 5명의 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제20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위원장은 정상적인 회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의 재소집 의사를 표명한 뒤 폐회선언과 동시에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이후 민간위원 5명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구성을 선언하였다. 이때 삼보 스님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장 해임을 의결하였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간 심의위원 5명의 교체 추진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민간 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관계 법령 검토 결과 '10·27법난법 제3조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39) 일시/장소: 2011. 12. 6. 16: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영담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 6명.

고 볼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로써 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

다음으로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 위원장 선임,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 해임 의결과 관련하여, 10·27법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비대위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아니므로 그 직무를 대행할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비대위에서 의결한 위원장 해임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또한 시행령 같은 조 제4호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날 전체 위원 11명 중 불참한 위원이 5명인 데다 위원장마저 퇴장하였으므로 민간위원 5명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었다. 그러므로 비대위의 구성이나 비대위 위원장의 선출,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의결은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했던 안건은 일단 보류함으로서, 차기 회의로 자동 연기되었다.

21) 제21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1차 회의[40]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민간위원 5명의 해촉 문제 등으로 인해 비대위가 발족되는 파행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가, 약 10개월 만에 열렸다. 심의위원회가 장기간 공전되면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에서 신청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및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등 안건 처리가 지연되었다.

이날 회의에 상정한 심의안건은 위원장 선임,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54건,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6건, 피해종교단체 심의안 45건, 일반 심의안 3건 등이었다.

위원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조계종 전 사회부장 혜경 스님의 위원 사퇴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위촉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인 지현 스님을 소개하였다. 그 후 긴급으로 '위원장 선임'안을 포함한 회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위원장은 '위원장 선임' 건을 심의안

40) 일시/장소: 2012. 9. 25. 14:00/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영담·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 7명.

건 중에 마지막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원들의 '위원장 선임' 건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그 문제부터 안건으로 다루었다. 위원장은 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신임 위원장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전임 위원장에게 회의 사회권 위임을 제안하였으나 위원들의 반대로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신임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원들은 안건의 사전 검토기간 부족과 긴급안건 상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금일 안건 처리는 순연하기로 제안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위원들은 위원회 회의장소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위원회 미개최 기간 중 위원장이 처리한 문서를 정리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주문하였다.

22) 제22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2차 회의[41]에서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21차 회의 때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이월한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10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상정한 안건 중에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과 일반안건 및 긴급안건 등 50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6건과 '종교단체 피해자 인정 심의안' 45건 및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신청 처리방안' 등 52건은 회의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기 회의 때 심의하기로 하였다.

우선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으로 46건을 심의하였다. 이 안건들은 피해실무위 제15차 · 제16차 · 제18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이 중에서 심의위원회는 37건을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7건은 불인정하였으며, 2건은 의결을 보류하였다.

이때의 심의 · 의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의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입적 승려 33명에 대해 대리로 명예회복 신청(안건번호 피해 제86호부터 제118호까지)을 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입적 승려 27명

41) 일시/장소: 2012. 10. 18. 14: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 · 조남진 · 허남오 · 이명묵 위원 등 6명.

은 법난 피해자로 인정한 반면, 6명은 불인정하였다. 이들은 명예회복 대리 신청 당시에 입적 승려로 잘못 알고 피해신고(생존해 있는 본인은 피해신청을 거부하거나 법난과 무관)를 한 2명과,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언이나 자료가 전무하여 검증할 방법이 없는 4명에 대해 불인정 의결을 한 것이다.

또한 개인이 신청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8건과 의료지원금 지급만 신청한 2건은 법난으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83호는 대리로 명예회복을 신청한 안건인데, 심사대상자의 의사 확인 및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은 점과 상이 피해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인정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를 의결하고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산정과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피해자로 불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명예회복 기각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명예회복을 신청한 안건번호 피해 제75호 및 제81호를 심의하였는데, 끝까지 결론을 내리 못하고 의결을 보류하였다. 이때 보류를 결정한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안건번호 피해 제75호의 경우는 신청인이 계엄사령부로 강제 연행되어 구금,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아 상이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10·27법난법 제2조 제2호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할 만한 상이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을 강제연행·구금하여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총무원장직을 강요에 의해 사퇴하게 한 합수단의 행위는 명백히 신청인과 조계종의 권위와 정통성을 짓밟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피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실무위 제15차 회의에서도 신청인을 '10·27법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회복 불인정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이 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강제연행·구금·강압조사를 받은 사실은 심각한 종단의 명예훼손으로 피해인정이 당연하다면서도, 현행법에 신청인이 상이가 없다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로 불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들 간에 의견의 차이로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81호는 소속 종단인 천태종에서 대리로 명예회복을 신청했으나 당사자는 피해사실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이었다. 참고인(천태종 총무국장 갈수 스님)은 피해자가 청주보안대에 강제로 연행되어 약 1주일간 조사를 받았으나 직접적인 구타나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가 고문당하는 소리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당시의 불미스런 일을 떠올리기 싫어 조사를 기피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기도 정진으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몸이 쇠약해져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실무위 제18차 회의에서 신청인을 법난으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이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본인이 명예회복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피해사실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추가 확인을 한 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이 안건 역시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2012년도 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안)'을 심의하였는데, 계획안대로 의결하였다.[42]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법률시한 종료 후 10·27법난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방안, 역사교육관 완공 후 그 운영에 대한 방안, 피해종교단체 신고서를 제출한 조계종의 법적 범주의 확정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신청 처리방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하였다.

이상과 같은 심의 후에는 '2013년도 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1 심의위원회 제22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75호	명예	송월주(월주)	피해자 여부 보류	
피해 제76호	명예/의료	서영숙(월궁)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42) 이 계획(안)은 당초 제13차 명예실무위에서 법난 기념행사로 해외역사순례를 계획했던 것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해외역사순례 사업을 취소하고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발표회(세미나)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14차 명예실무위에서 수정·의결한 원안을 의결하였다.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77호	명예/의료	배두관(철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78호	명예/의료	황태로(종래)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79호	명예/의료	하태용(성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80호	명예/의료	권장수(도현)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81호	명예	김○○(국○)	피해자 여부 보류	
피해 제82호	명예/의료	김홍규(금용)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83호	명예	박○○(거○)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84호	명예/의료	여옥희(문성)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85호	명예/의료	홍현희(봉주)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86호	명예	박주식(진설)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87호	명예	서병식(정대)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88호	명예	임점택(원광)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89호	명예	황기연(오현)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0호	명예	장인찬(희찬)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1호	명예	이상열(현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2호	명예	김한기(서운)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3호	명예	최종열(월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4호	명예	박한남(광진)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5호	명예	윤희중(월하)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6호	명예	박인수(청하)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7호	명예	백식화(현광)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98호	명예	이○○(서○)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99호	명예	조학주(학능)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00호	명예	김기태(천장)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01호	명예	정기철(정수)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02호	명예	가○○(성○)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103호	명예	김연수(지성)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04호	명예	고○○(태○)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105호	명예	임동철(정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06호	명예	홍상길(성진)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07호	명예	이경환(현광)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08호	명예	정○○(영○)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109호	명예	이재명(자순)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10호	명예	정희자(명성)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11호	명예	김희현(능혜)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12호	명예	김강웅(도명)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13호	명예	최영권(원철)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14호	명예	남익순(대충)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15호	명예	김형묵(기성)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16호	명예	조운석(대정)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17호	명예	배○○(송○)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118호	명예	김○○(태○)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119호	의료	이근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20호	의료	채규호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42 심의위원회 제22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 고
일반 제25호	2012년도 법난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계획안	2012년도 법난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	
일반 제26호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신청 처리방안 심의	차기로 이월	

표 3-43 심의위원회 제22차 회의 긴급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 고
긴급안건 제1호	법률시한 종료 후 10·27법난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방안	기존의 방식대로 최대 피해종교 단체인 조계종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규모는 정부와 조계종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역사교육관 완공 후 그 운영방안에 대한 방안	역사교육관 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며 역사교육관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피해종교단체 신고서를 제출한 조계종의 법적 범주의 확정	조계종의 법적 범주는 10·27법난 당시 조계종의 종헌이 규정한 범주로 한다.	

23) 제23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3차 회의[43] 심의안건은 '의료지원금지급 결정안', '피해자 등 해당여부 심의안', '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개정안',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신청 처리방안', '긴급안건 제1호의 의결내용에 대한 수정(안)' 등이었다. 즉 지난 제22차 회의에서 차기 회의 때 심의하기로 한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안' 6건과 '종교단체 피해 해당여부 심의안' 45건을 포함하여 모두 54건의 안건이었다.

안건번호 피해 제121호 · 제122호 및 제123호는 각각 지난 심의위원회 제13차 · 18차 · 17차 회의에서 법난으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하여, 의료실무위 제15차 및 제16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을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안건번호 피해 제124호 · 제126호 및 제125호의 신청인은 당초 명예회복을 신청하여 지난 제10차 및 제12차 위원회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추후에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의료실무위 제17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을 산정하여 상정한 것이다.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심의위원회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신청에 대한 피해 해당여부를 심의하였다.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대상은 10·27법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한정하고 있다.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신청은 피해종교단체 소속 대표인 조계종 총무원장(43건) 및 천태종 총무원장(1건)과 불교신문(1건) 등에서 모두 45건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피해실무위 제18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40건에 대해서는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명예회복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반면 안건번호 피해 제149호 · 제160호 · 제166호는 소속 사찰 승려가 법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가 없고, 피해 제167호는 피해 제141호인 피해종교단체와 중복으로 신청되었으며, 피해 제171호는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5곳 모두를 피해종교단체로 불인정하였다. 따라서 명예회복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하였다.

---

43) 일시/장소: 2012. 10. 24. 17:00~19: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 · 조남진 · 허남오 · 이명묵 위원 등 6명.

한편, 일반안건으로 '위원회 회의 운영규칙 개정안'[44]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긴급안건으로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긴급안건 제1호로 의결한 '법률시한 종료 후 10·27법난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방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이어서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인 신청 처리방안'은 피해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방법, 증거서류 구비문제 등을 결정한 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 결정을 하였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4 심의위원회 제23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21호	의료	이종석(근식)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22호	의료	김삼형(현철)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23호	의료	오인근(법달)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24호	의료	황한수(진경)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25호	의료	이병한(청수)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26호	의료	김수년(명현)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45 심의위원회 제23차 회의 피해종교단체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단체		
피해 제127호	명예	조계사	위원회에서 김천일(혜법)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28호	명예	신흥사	위원회에서 이병한(청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29호	명예	월정사	위원회에서 이성휘(원행)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44) 심의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보완 및 지원단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명칭 수정 등을 위한 회의운영 규칙 개정안이다.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단체		
피해 제130호	명예	법주사	위원회에서 문성경(혜운)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31호	명예	마곡사	위원회에서 황한수(진경)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32호	명예	은해사	위원회에서 김삼형(현철)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33호	명예	불국사	위원회에서 류희민(종근)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34호	명예	범어사	위원회에서 박한남(광진)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35호	명예	화엄사	위원회에서 박용식(명선)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36호	명예	대흥사	위원회에서 정재우(지우)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37호	명예	도선사	위원회에서 이근배(혜성) 등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38호	명예	홍은암	위원회에서 서승남(윤월)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39호	명예	성불사	위원회에서 최용경(명연)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0호	명예	심광사	위원회에서 박정운(법열)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단체		
피해 제141호	명예	상원사	위원회에서 김강웅(도명), 신흥균 등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2호	명예	표충사	위원회에서 이종석(근식) 등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3호	명예	반룡사	위원회에서 김종우(도웅) 등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4호	명예	명봉사	위원회에서 오영준(성면)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5호	명예	대자암	위원회에서 김주환(관후)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6호	명예	광흥사	위원회에서 홍성한(무외)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7호	명예	능인사	위원회에서 이배원(자신)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8호	명예	덕암사	위원회에서 신현배가 피해자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49호	명예	관음사	위원회에서 장○○(연○)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불인정	기각
피해 제150호	명예	천왕사	위원회에서 윤수만(성해)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51호	명예	서산사	위원회에서 김수년(명현)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단체		
피해 제152호	명예	백련사	위원회에서 승종봉(법민)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53호	명예	장경사	위원회에서 승종봉(법민)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54호	명예	용주사	위원회에서 서병식(정대)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55호	명예	동화사	위원회에서 김한기(서운)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56호	명예	통도사	위원회에서 박인수(청하)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57호	명예	고운사	위원회에서 백식화(현광)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58호	명예	백양사	위원회에서 조학주(학능) 등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59호	명예	보문사	위원회에서 정기철(정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60호	명예	용봉사	위원회에서 가○○(성○)이 피해자로 불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불인정	기각
피해 제161호	명예	선운사	위원회에서 김연수(지성)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62호	명예	내장사	위원회에서 임동철(정산) 등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단체		
피해 제163호	명예	증심사	위원회에서 이경환(현광)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64호	명예	적조암	위원회에서 이재명(자순)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65호	명예	연주암	위원회에서 김홍규(금용)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66호	명예	백담사	위원회에서 정○○(영○)이 피해자로 불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불인정	기각
피해 제167호	명예	상원사	피해 제141호로 신청한 동일한 사찰로 확인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기각
피해 제168호	명예	낙산사	위원회에서 최영권(원철)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69호	명예	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은 법 제2조 제3호에 피해종교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70호	명예	구인사 (천태종)	위원회에서 전종윤(운덕) 등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71호	명예	○○신문	조계종 ○○신문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피해자 등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등으로 불인정	기각

표 3-46 심의위원회 제23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 고
일반 제27호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개정안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표 3-47 심의위원회 제23차 회의 긴급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 고
긴급안건 제2호	긴급안건 제1호의 의결내용에 대한 수정안 – 법률시한 종료 후 10·27법난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 방안	기존의 방식대로 최대 피해종교 단체인 조계종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규모는 정부와 조계종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로 수정 의결	

24) 제24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4차 회의[45]에서는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2014년도 법난명예회복사업 예산(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피해인정 입적 승려(10명)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 등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들 안건 중에서 지난 심의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하고 의료실무위 제20차 회의에서 상정한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과 '입적 승려(10명)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 건은 차기 회의 때 재상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다.

한편 '2014년 법난명예회복 사업 예산(안)' 건의 경우 2014년도 역사교육관 및 법난기념행사 예산은 각각 216억 2,500만 원 및 2억 원으로, 이를 원안 그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항 전체를 삭제하고, 그 이외의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8 심의위원회 제24차 회의 의료지원금지급 결정(안)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71호	의료	서영숙(월궁)	차기 회의 시 재상정 결정	
피해 제171호	의료	이근우	차기 회의 시 재상정 결정	
피해 제171호	의료	채규호	차기 회의 시 재상정 결정	
피해 제171호	의료	배두관(철우)	차기 회의 시 재상정 결정	
피해 제171호	의료	하태용(성조)	차기 회의 시 재상정 결정	
피해 제171호	의료	황태로(종래)	차기 회의 시 재상정 결정	

45) 일시/장소: 2013. 5. 28.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법광·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 7명.

표 3-49 심의위원회 제24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 고
일반 제28호	2014년도 법난명예회복 사업 예산(안)	2014년도 법난명예회복 사업 예산(안)은 원안 의결	
일반 제29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중 제6조 ①항을 삭제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 의결	
일반 제30호	피해인정 입적 승려 인적사항 오류 정정	차기 회의 시 재상정하여 심의·의결	

25) 제25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5차 회의[46]에서는 위원장 지현 스님의 사의표명으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7월 25일 위원회 위원인 법광 스님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하였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법광 스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개최되었다.

이어서 공석으로 있는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지현 스님의 후임으로 위촉된 정만 스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회의는 신임 위원장인 정만 스님이 진행하였다.

안건으로 상정한 '2013년도 법난기념행사 국고보조금의 신청의 건'은 조계종 총무원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따라 명예실무위 제16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10·27법난법 제3조 및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억 원을 국고예산에 반영하여 법난 기념행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법난기념행사에 대하여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3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2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46) 일시/장소: 2013. 10. 23. 15: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법광·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 위원 등 6명.

이어서 10·27법난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2013. 5. 22.)[47]되어 시행(2013. 8. 23.)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가 있었다.

또한 국방부에서 문체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는 데 따른 '위원회 사무조직 개편' 사항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회복지원과장과 담당 전문 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위한 '사무처 인력 채용계획(안)', 그리고 법난 피해자 심사기간 연장에 따른 '피해자 신청공고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심의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보류'로 의결한 '의료지원 지급 결정안'과 '입적 승려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에 대한 안건은 심의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50 심의위원회 제25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고
	위원장 선임의 건	신임 위원장으로 정만 스님 선임	
일반 제31호	2013년 10·27법난 기념행사 관련 조계종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의 건	조계종 총무원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	

26) 제26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6차 회의[48]에서는 지난 제24차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피해자 인정 입적 승려(10명)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 등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은 심의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하여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20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다. 상정한 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47) 주요 내용은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처 설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2012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2년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이다.

48) 일시/장소: 2013. 12. 4. 15: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보화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 6명.

이어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으로 안건번호 피해 제178호를 심의하였는데, 이는 피해실무위 제19차 회의에서 신청인을 법난 피해자로 인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실무위와 의료실무위의 심사결과를 인용하여 신청인을 10·27법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로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인정·의결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지원금 산정 및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일반안건으로 상정한 '피해자 인정 입적 승려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의 건은 심의위원회 제22차 및 제23차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입적 승려 27명 중 10명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대리신청을 할 때 표기가 잘못된 경우와 심의 전 법명으로만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발생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인데, 해당 승려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였다.

심의 후에는 '피해신청 공고 및 홍보실적'과 위원회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주무부처 역할을 고려하고 조계종 총무원 직제개정 및 정기인사를 반영한 '실무위원 일부 조정안' 및 '심의위원회 제25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51 심의위원회 제26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72호	의료	서영숙(월궁)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73호	의료	이근우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74호	의료	채규호	지급결정	재심신청[49]
피해 제175호	의료	배두관(철우)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76호	의료	하태용(성조)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77호	의료	황태로(종래)	지급결정	지급완료

49) 채규호는 위원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 상이 인정을 신청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재심의를 하였다. 추가 상이 신청 내용 및 의결 결과는 심의위원회 제29차 회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3-52 심의위원회 제26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78호	명예/의료	박대홍(법등)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53 심의위원회 제26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고
일반 제32호	피해인정 입적 승려(10명)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	원안대로 추진	

27) 제27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7차 회의[50]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2건을 법난 피해자로 인정·의결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지원금 산정 및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조계종 일괄 대리 신청 처리방안'[51]은 원안대로 의결한 반면, '정부위원 대리출석 제도 도입(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심의 후에는 위원회의 핵심기능 중심의 조직구성과 업무효율 제고 및 부서별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상근계약직 1명의 채용을 추진하는 것 등을 포함한 '사무처 조직 운영현황'과 위원회의 변화된 모습 및 활동상황 소개, 위원회 인지도·이미지 제고를 위한 '위원회 소식지 발간계획' 및 기념관 건립 지원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자세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50) 일시/장소: 2014. 1. 22. 17:00~18:1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삼보·보화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 7명.

51) 조계종 총무원에서 일괄 대리 신청한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신청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류를 보완·신청토록 적극 홍보하여 안내하고, 서류 구비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 순으로 사실조사 착수 후 2015년 6월 30일까지 심의하며, 기타 일괄 신청인은 신청기한(2014. 12. 31.) 종료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종결처리토록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표 3-54 심의위원회 제27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79호	명예/의료	조강원(중하)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80호	명예/의료	박무홍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55 심의위원회 제27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 고
제2014-1호	조계종 일괄 대리 신청인 처리방향(안)	원안대로 추진	
제2014-2호	정부위원 대리출석 제도 도입(안)	보류	

28) 제28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8차 회의[52]에서는 명예실무위의 제17차 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한 '2014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심의 과정에서 법난 기념행사가 전년도 기념행사의 평가·분석을 통해 의미가 있거나 잘된 점은 확대·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개선·보완하여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기념관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3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평가 및 결산', '조계종 일괄 대리 신청인 설문조사' 등의 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56 심의위원회 제28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고
제2014-3호	2014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2014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조계종 총무원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의결	

52) 일시/장소: 2014. 3. 5. 16:10~17:2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보화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등 6명.

29) 제29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29차 회의[53]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명예회복 신청을 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2건의 경우 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당시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공포증이 계속되는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법난 관련 상이로 인정·의결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어서 '의료지원금 재심신청 심의안' 2건을 심의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183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법난으로 인한 상이를 인정받아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 불복하고 추가 상이 재심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는 법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의료실무위 제22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이를 인용하여 의료지원금 재심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미 결정한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184호는 심의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추가 상이 재심의를 신청한 안건이다. 의료실무위 제22차 회의가 재심을 신청한 신청인의 진술과 소견서에 비춰, 심의위원회는 이를 인용하고 의료지원금의 구체적 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일반안건으로 '조계종 일괄 대리 신청인 설문조사 결과 및 처리방안'과 '의료실무위 회의운영규칙 별지서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57 심의위원회 제29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81호	명예	박태일(현소)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82호	명예	허인환(성운)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53) 일시/장소: 2014. 4. 9.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문체부 제1차관 등 6명.

표 3-58 심의위원회 제29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83호	의료 재심	이병한(청수)	재심신청(추가상이/요구사항): 기각 기 결정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기각, 지급완료
피해 제184호	의료 재심	채규호	재심신청: 인용 – 추가 상이 인정 요구에 따른 추가 검진실시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59 심의위원회 제29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고
제2014-4호	조계종 일괄 대리 신청인 설문조사 결과 및 처리방안	① '피해신청 의사'가 있는 승려들에게 적극신청 안내하고, 신청 순으로 사실조사 및 심의 조치 ② 기타 일괄 대리 신청인에 대해서는 조계종과 협의(시기, 방식 등)를 통해 종결처리 ③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 개별 신청에 나서도록 지속 안내 및 홍보(신청기한: 2014.12.31. / 조사 및 심사기한: 2015.6.30.)	
제2014-5호	의료실무위 회의운영규칙 별지서식 개정(안)	의료실무위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차기 실무위원회부터 시행함.	

30) 제30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30차 회의[54]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한 이후 의료실무위 2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상정한 안건이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업 추진주체인 조계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54) 일시/장소: 2014. 5. 28. 14:00~15: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문체부 제1차관, 경찰청 차장 등 8명.

표 3-60 심의위원회 제30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85호	의료	조강원(중하)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86호	의료	박무홍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61 심의위원회 제30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신청구분	의결 내용	비고
제2014-6호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이 제출한 사업계획(국고 보조금 1,534억 900만 원 / 사업 계획안 요약 붙임)을 원안대로 의결	

31) 제31차 회의

심의위원회의 제31차 회의[55]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으로 안건번호 피해 제187호에 대해 심의하였다.

조사결과 의료실무위 제23차 회의에서 상이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난 피해자로 판단하여 인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반면 피해 제188호의 경우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인정을 의결하고, 명예회복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어서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안'을 심의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189호의 경우는 2009년 3월 23일 명예회복 신청에 대해 피해실무위 제8차 회의와 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법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명예회복조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2년 6월 22일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지정 검진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았다. 의료실무위 제24차

55) 일시/장소: 2014. 6. 24.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삼보·정문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문체부 제1차관, 경찰청 차장 등 9명.

회의는 이 안건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의료실무위에서 판정한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안건번호 피해 제190호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안건으로, 의료실무위 제24차 회의에서 판정한 의료지원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재심' 신청 건으로 안건번호 피해 제191호를 심의하였는데, 이는 심의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상이가 인정되어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이 추가 상이 인정을 요구해옴에 따라, 심의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재심 신청한 추가 상이를 인정하였다. 신청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실무위 제24차 회의에서 추가 의료지원금을 재산정하여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2 심의위원회 제31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87호	명예/의료	최현인(정혜)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88호	명예	김○○(법○)	피해자 불인정	기각

표 3-63 심의위원회 제31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89호	의료	이배원(자신)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90호	의료	박대흥(법등)	지급결정	재심 신청[56]

표 3-64 심의위원회 제31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91호	의료 재심	채규호	지급결정	

56) '의료지원금 지급 재심신청'에 따라 제33차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하였다.

32) 제32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32차 회의[57]에서는 모두 3건을 심의하였다.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을 신청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법난 피해자 인정을 의결하였다. 이때 인정을 의결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의료지원금 결정안'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어 의료실무위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25차 회의에서 의결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심의 후에는 '피해자 개인 배·보상 관련 법률자문 결과', '피해자 해외 역사순례 행사계획(안)', '제31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5 심의위원회 제32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92호	명예/의료	김중건(자성)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193호	명예/의료	이기남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66 심의위원회 제32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94호	의료	최현인(정혜)	지급결정	지급완료

33) 제33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33차 회의[58]에서는 모두 5건을 심의하였다.

57) 일시/장소: 2014. 8. 27. 14:00~15: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 문체부 제1차관 등 7명.

58) 일시/장소: 2014. 10. 27. 15:00~16: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정문 스님, 윤원호·

심의위원회는 명예회복을 신청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2건에 대해서 법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 부재 및 진술의 신빙성 부재 등을 사유로 피해자 불인정을 의결하고, 신청인에게 명예회복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 실무위에 회부된 이후 의료실무위 제26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2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신청' 1건을 심의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199호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피해 상이로 인정한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안건이다. 신청인은 기존에 인정한 상이 외에 다른 증상의 추가 상이 인정과 추가 요구사항의 수용을 요구하였다. 의료실무위 제26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10·27법난으로 인한 상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추가 요구사항 역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신청인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 이러한 사유로 재심신청 건은 불인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실무위에서 의결한 결정사항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가상이 및 추가지원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기 결정한 의료지원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심의 후에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진행상황', '피해신청 마감안내 홍보 추진현황', '심의위원회 제32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7 심의위원회 제33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95호	명예	김○○(자○)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196호	의료	성성환(청욱)	피해자 불인정	기각

조남진·허남오 위원, 문체부 제1차관 등 6명.

표 3-68 심의위원회 제33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97호	의료	김중건(자성)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198호	의료	이기남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69 심의위원회 제33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 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199호	의료 재심	박대홍(법등)	재심신청(추가상이/요구사항): 기각 기 결정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기각, 미청구로 공탁 집행

34) 제34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34차 회의[59]에서는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3건을 심의하였다.

안건번호 제200호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자료조사를 통해 재상정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하였다.

안건번호 제201호 및 제202호는 명예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상과 같은 심의 후에는 '피해신청 및 처리현황', '2015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모색 간담회 결과', '심의위원회 제33차 회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59) 일시/장소: 2014. 12. 10. 16:00~17:00/위원회 회의실 (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정만 스님(위원장), 정문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7명.

표 3-70 심의위원회 제34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00호	명예	김○○(도○)	피해자 여부 보류[60]	보류
피해 제201호	명예	최○○(성○)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02호	명예	주○○(대○)	피해자 불인정	기각

35) 제35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35차 회의[61]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먼저 전임 위원장 정만 스님이 사임함에 따라 이번 회의는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윤원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10·27법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신임위원으로 위촉된 조계종 총무부장인 지현 스님이 선임되었다.

이어서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으로 총 6건을 심의하였다. 2건은 법난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을 의결하고,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반면 나머지 안건 4건은 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해 기각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208호는 피해실무위 제24차 회의 및 심의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객관적인 증거 및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피해자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신청인은 목격자 진술 및 참고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 재심을 신청하였다. 다시 신청인을 상대로 한 피해사실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하여 심의한 결과, 피해실무위 제26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 지급대상 피해자로 인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피해실

60) 제35차 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자해당여부 심의'에 대해 다루어졌다.
61) 일시/장소: 2015. 1. 27.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삼보·정문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7명.

무위와 의료실무위의 심의결과를 검토한 바, 신청인을 10·27법난법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의결하였다. 그리고 의료지원금 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결 결과를 의료실무위에 회부하였다.

한편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2건의 경우 지난 심의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법난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한 건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 의료지원금 산정을 위해 해당 실무위에 회부한 이후 의료실무위 제28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 판정을 하여 상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심의 후에는 '2015년 업무계획(안)'과 '제34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71 심의위원회 제35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 내용	비 고
	위원장 선임의 건	신임 위원장으로 지현 스님 선임	

표 3-72 심의위원회 제35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03호	명예/의료	김○○(법○)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04호	명예/의료	정동군(삼오)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05호	명예/의료	이건호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06호	명예	김○○(명○)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07호	명예	김○○(화○)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00호	명예	김○○(도○)	피해자 불인정	기각

표 3-73 심의위원회 제35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 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08호	의료	성성환(청욱)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74 심의위원회 제35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09호	의료	김홍규(금용)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10호	의료	여옥희(문성)	지급결정	지급완료

36) 제36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36차 회의[62]에서는 모두 6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2건은 피해실무위 제27차 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법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이나 법난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어, 피해자로 불인정 의결하였다. 따라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기각,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3건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법난으로 인한 상이를 인정하고, 의료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의료실무위 제29차 회의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을 심의하여 상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2015년 10·27기념행사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은 명예회복추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상정한 안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심의 후에는 '2014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평가 및 결산'과 '심의위원회 제35차 회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62) 일시/장소: 2015. 3. 18. 13:00~13:5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삼보·정문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국가보훈처 차장 등 8명.

표 3-75 심의위원회 제36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11호	명예/의료	임○○(보○)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12호	명예/의료	박○○(도○)	피해자 불인정	기각

표 3-76 심의위원회 제36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13호	의료	성성환(청욱)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14호	의료	정동군(삼오)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15호	의료	이건호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77 심의위원회 제36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제2015-1호	2015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2015년 10·27법난 제35주년 기념행사 – 피해자 간담회 · 역사순례, 기념법회, 법난영상물제작 · 미술전, 현장탐방 등 국고보조금 신청액: 2억 원	

37) 제37차 회의

심의위원회 37차 회의[63]에서는 피해실무위 제28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정한 안건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6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안' 6건 모두 신청인 등의 진술 외 법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을 기각, 그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후 '사무처 직원 근무기간 연장 추진계획(안)'[64]과 '심의위원회

63) 일시/장소: 2015. 4. 15.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 스님, 윤원호 · 조남진 · 이명묵 · 허남오 위원 등 7명.

64) 사무처 총 직원 15명 중 상근계약직 4명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2015년 7월까지 근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념관 건립,

제36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78 심의위원회 제37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16호	명예/의료	박○○(도○)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17호	명예/의료	문윤식(법장)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18호	명예/의료	반○○(혜○)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19호	명예/의료	박○○(보○)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20호	명예/의료	최○○(수○)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21호	명예/의료	하○○(정○)	피해자 불인정	기각

38) 제38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38차 회의[65]에서는 모두 7건을 심의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여부 6건을 심의하였는데, 4건은 상이를 신청한 여러 가지 질환 중 한 가지 질환만 법난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인정을 의결한 안건은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안건번호 피해 제223호와 피해 제224호는 법난으로 인한 관련성 및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피해자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을 기각,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2016년 법난기념관 건립 예산 요구(안)'을 심의하였다. 이는 법난 기념관 건립 총 사업비 1,534억 900만 원 중 2016년 예산 626억 9,200만 원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22차 명예실무위는 이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상정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심의 후에는 '2016년 위원회 운영예산 요구(안)'과 '천태종 신청 취하자

명예회복방안 마련, 백서 발간 등 대부분의 업무가 미결된 상황이므로 위원회 종료 시점인 2016년 6월까지 적정인원으로 현 정원보다 2명(문체부1, 국방부1)이 감소된 사무처 직원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추진계획(안)이다.

65) 일시/장소: 2015. 5. 20. 14:00~15: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6명.

종결처리 계획(안)' 및 '심의위원회 제37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79 심의위원회 제38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22호	명예/의료	전보원(보원)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23호	명예/의료	이도성(도성)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24호	명예	진○○(천○)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25호	명예/의료	천성봉(도만)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26호	명예/의료	류광수(지호)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27호	명예/의료	한정기(자용)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80 심의위원회 제38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제2015-2호	2016년 「법난기념관」 건립예산 요구(안)	• 총 사업비로 1,534억 900만 원 중 2016년 예산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626억 9,200만 원 요구 • 2016년 예산요구안 적정성 검토 후 "원안 의결"	

39) 제39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39차 회의[66]에서는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7건 중 법난으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 의결한 3건은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건은 각하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3건은 모두 10·27법난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로 불인정 의결하였다. 따라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기각되었음을 통지하였다.

66) 일시/장소: 2015. 6. 30. 15:00~16:2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경찰청 차장 등 7명.

이어서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5건을 심의하였다. 이 안건들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22차 및 제38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을 의결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의료지원금 산정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의료실무위 제32차 회의에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의료지원금 판정을 심의하였다.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이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심의 후에는 '심의위원회 제38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81 심의위원회 제39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75호	명예	송현섭(월주)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81호	명예	김○○(국○)	피해자 신청 각하	각하
피해 제228호	명예	전득수(설정)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29호	명예/의료	이법철(법철)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30호	명예/의료	최○○(진○)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31호	명예/의료	윤동암(일선)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32호	명예/의료	김광회(진우)	피해자 불인정	기각

표 3-82 심의위원회 제39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33호	의료	권장수(도현)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34호	의료	천성봉(도만)	지급결정	재심 신청[67]
피해 제235호	의료	류광수(지호)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36호	의료	한정기(자용)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37호	의료	홍○○(봉○)	판정불가 및 관련 없음	불인정

67) 천성봉(도만)은 10·27법난으로 인한 상이로 의료지원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10·27법난으로 인한 추가 상이 인정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 제41차 회의에서 재심의를 하였다.

40) 제40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40차 회의[68]에서는 모두 7건을 심의하였다.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신청 심의안' 6건은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법난 피해자로 관련성이 불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것이다. 재심신청에 대하여 의료실무위는 사건충격척도 조사, 지정병원 정밀검진 등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심신청한 상이에 대해 10·27법난 관련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실무위 제31차 회의에서는 재심신청 사유 검토 및 신청인 진술, 참고인·목격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실무위에서 상정한 재심신청 5건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법난으로 인한 피해자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다.

반면에 안건번호 피해 제238호로 피해자 해당여부를 재심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의료실무위와 피해실무위는 신청인이 재심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10·27법난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법난 피해자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1건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로 인정·의결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의료지원금 산정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다. 이후 이 안건을 의료실무위 제33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을 판정하여 상정한 것인데, 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후에는 '기념관 건립계획적정성 검토결과',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마련 토론계획(안)', '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계획(안)', '사무처 조직 재정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68) 일시/장소: 2015. 8. 25. 14:00~15: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7명.

표 3-83 심의위원회 제40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 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38호	명예/의료	김○○(법○)	피해자 불인정	기각
피해 제239호	명예/의료	문윤식(법장)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40호	명예/의료	박○○(도○)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41호	명예/의료	이도성(도성)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42호	명예/의료	김광회(진우)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243호	명예/의료	윤동암(일선)	피해자 인정	해당 실무위 회부

표 3-84 심의위원회 제40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44호	의료	이법철(법철)	지급결정	지급완료

41) 제41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41차 회의[69]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5건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법난 피해자 인정을 의결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의료지원금 산정 심의를 위해 해당 실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다. 이후 의료실무위 제34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을 판정·심의한 후 상정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이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신청'에 대해 심의하였는데, 이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대해 추가상이를 이유로 의료지원금 증액을 신청한 안건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상이의 인정을 요구한 질환에 대해 법난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난 피해자로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이미 결정한 의료지원금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69) 일시/장소: 2015. 9. 21. 13:00~13:4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7명.

로 의결하였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85 심의위원회 제41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 내용	비고
	신청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45호	의료	박○○(도○)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46호	의료	문윤식(법장)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47호	의료	이도성(도성)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48호	의료	윤동암(일선)	지급결정	지급완료
피해 제249호	의료	김광회(진우)	지급결정	지급완료

표 3-86 심의위원회 제41차 회의 의료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의결내용	비 고
	신청 구분	신청인(법명)		
피해 제250호	의료 재심	천성봉(도만)	재심신청(추가상이 인정요구): 기각	기각

42) 제42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42차 회의[70]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방안'[71]을 심의하였다.

심의위원회에 법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명예회복을 신청한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 중에서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35건을 제외한 131건이 명예회복 적용대상이 된다. 위원회에서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131건은 입적 승려 33명 등을 포함하여 개인이 91건이며, 조계종과 사찰 등 피해종교단체가 40건이다.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방안'은 이번 심의에서 '총괄적 명예

70) 일시/장소: 2015. 10. 27. 13:00~13:4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경찰청 차장 등 7명.

71)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0·27법난 피해자로 인정한 피해자 등에 대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명예회복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명예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회복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각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별로 명예회복조치(안)을 별도로 심의·의결한 후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명예회복조치 방안은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로 나누어 마련하였다. 즉,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는 공통사항, 입적 승려 및 사망자, 생존자(출가자/재가자·환속자)로 세분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는 공통사항, 조계종,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등으로 구분하여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이다. 또한 명예회복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예회복 의견서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번 심의를 통해 마련된 '총괄적 명예회복조치 방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명예실무위 제24차 회의에서 심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방안'에 대해 원안을 의결하였는데, 구체적 명예회복 조치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방안'의 공통사항으로 ①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수여, ② 위원회 백서에 명부 및 피해사실 등 수록하여 발간, ③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조치에 대하여 신문에 게시, ④ 기념관 내 동판 등에 명단을 수록하는 것이다. 조계종은 기념관 건립,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은 사찰 입구에 10·27법난을 설명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둘째, '피해자(개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방안'의 공통사항으로, ①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수여, ② 위원회 백서에 명부 및 피해사실 등 수록하여 발간, ③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조치에 대하여 신문에 게시, ④ 기념관 내 동판 등에 명단 수록하는 것이다. 또한 입적 승려 및 사망자에 대해서는 10·27법난 기념법회(기념행사)시 법계 추서, 기념관 내 행장(수행자로 살아온 일생) 전시, 기념관 내 입적 승려들을 위한 제의 공간(또는 지장사) 마련, 기념행사 중 천도재(추모제) 봉행 또는 다례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자(출자자, 재가자 및 환속자)에 대해서는 기념관 트라우마 치유센터 이용, 기념관 요양시설 이용, 입적 후 기념관 내 행장 전시, 피해자(또는 피해자 대표)를 기념관 운영위원으로 위촉 권고, 법난 기념행사 자문위원 위촉 권고, 기념사업회

운영 위원 위촉 권고 등을 시행한다.

표 3-87 심의위원회 제42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일반 제2015-3호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방안'	원안의결	

43) 제43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43차 회의[72]에는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73]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과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안)' 을 심의하였다.

우선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의 피해신고 내용 및 위원회의 피해 인정 경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소속 5,000여 사찰을 폭력적으로 유린하고 소속 승려 2,000여 명을 연행하는 등 조계종과 그 소속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고 조계종과 피해자 소속사찰 등 39개 피해종교단체에 대해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을 일괄하여 대리 신청하였다.

또한 천태종 총무원장도 소속 사찰인 구인사에서 10·27법난으로 11명의 승려 및 신도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신도가 감소하는 종교적 피해를 입었다며 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제23차 회의를 개회하여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한 조계종과 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39개 등 모두 40개 피해종교단체를 10·27법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은 지난 제42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0·27법난 명예회복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써, 명예실무위 제25차 회의에서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

72) 일시/장소: 2015. 12. 2. 14:00~14:55 / 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7명.

73)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피해종교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과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에 대하여 10·27법난법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명예회복조치를 취하기로 원안 의결하였다. 다만, 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의 '피해사찰 안내판 설치'는 대한불교조계종과 협의하여 통일된 문안과 형식을 정하되 실제 설치 여부는 해당 사찰의 동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명예회복결정서와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안)' 안건을 심의하였다.

안건번호 피해 제291호에 대한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재심자는 10·27법난 당시 강원도 양양 소재 낙산사 홍련암에서 기도하던 중 폭행피해를 당했다며 피해자 신고를 하였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심의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1차 피해자 불인정이 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참고인을 내세워 재심을 신청하여 심의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제4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결정을 받은 다음, 본인의 동의 및 청구 절차를 거쳐 2015년 10월 12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의료지원금 지급 후인 2015년 10월 19일 참고인은 본인의 진술이 청탁에 의한 허위 증언이었음을 고백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허위 참고인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심의위원회는 피재심자 본인이 의료지원금 반환을 서약한 만큼,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재심자의 10·27법난 피해자 인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의료지원금을 10·27법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환수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10·27법난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의 유효기간 삭제,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 위원회 소속변경, 사무처 폐지 등 주요개정 내용과 향후 법 개정 일정 등의 보고가 있었다.

또한 '명예회복 미신청 및 불인정의 건 처리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토의결과, 심의위원회는 피해자로 인정되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았지만 명예회복을 미 신청한

5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불인정된 1명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법 제정 목적인 이상, 명예회복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차기 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88 심의위원회 제43차 회의 명예회복조치 대상 피해종교단체(대한불교조계종 및 피해자 소속 사찰)

안건번호	피해 종교단체	안건번호	피해 종교단체	안건번호	피해 종교단체	안건번호	피해 종교단체
피해 제251호	대한불교 조계종	피해 제261호	화엄사 (구례)	피해 제271호	대자암 (공주)	피해 제281호	통도사 (양산)
피해 제252호	구인사 (단양)	피해 제262호	대흥사 (해남)	피해 제272호	광흥사 (안동)	피해 제282호	고운사 (의성)
피해 제253호	조계사 (서울)	피해 제263호	도선사 (서울)	피해 제273호	능인사 (인천)	피해 제283호	백양사 (장성)
피해 제254호	신흥사 (속초)	피해 제264호	홍은암 (서울)	피해 제274호	덕암사 (남양주)	피해 제284호	보문사 (강화)
피해 제255호	월정사 (평창)	피해 제265호	성불사 (서울)	피해 제275호	천왕사 (제주)	피해 제285호	선운사 (고창)
피해 제256호	법주사 (보은)	피해 제266호	심광사 (대전)	피해 제276호	서산사 (곡성)	피해 제286호	내장사 (정읍)
피해 제257호	마곡사 (공주)	피해 제267호	상원사 (평창)	피해 제277호	백련사 (서울)	피해 제287호	증심사 (광주)
피해 제258호	은해사 (영천)	피해 제268호	표충사 (밀양)	피해 제278호	장경사 (경기 광주)	피해 제288호	적조암 (서울)
피해 제259호	불국사 (경주)	피해 제269호	반룡사 (고령)	피해 제279호	용주사 (화성)	피해 제289호	연주암 (과천)
피해 제260호	범어사 (부산)	피해 제270호	명봉사 (예천)	피해 제280호	동화사 (대구)	피해 제290호	낙산사 (양양)

표 3-89 심의위원회 제43차 회의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 결과

안건번호	피해 신청		의결 내용	비고
	신청 구분	피재심인(법명)		
피해 제291호	명예/의료	박○○(도○)	• 10·27법난 피해자 인정 취소 • 기 지급한 의료지원금을 10·27법난법 제6조에 따라 환수	

44) 제44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44차 회의[74]에는 '10·27법난피해자(입적 승려·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과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안)'을 심의하였다.

우선 심의안건으로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대상은 10·27법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피해자로 인정된 입적 승려 32명과 일반인 사망자 1명 등 모두 33명이다.

입적 승려의 경우 피해 신고 신청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박주식(진설) 등 23명, 대한불교천태종 총무부장이 남익순(대충) 등 5명에 대해 일괄하여 대리로 명예회복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4명은 피해자 본인, 아들, 동생, 제자 등이 각각 신청하였다.

일반인으로서 사망한 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신도로서 법난당시 구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사망자의 아들이 피해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전에 이미 입적하였거나 사망한 인원은 29명이었으며, 피해 신청 후 입적하였거나 피해 결정 전 또는 결정 후에 입적한 승려는 4명이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피해실무위에서 피해조사 등의 절차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피해자로 인정·의결한 바 있다.

이번 '10·27법난 피해자(입적 승려·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은 지난 심의위원회 제42차 회의에서 의결한 '10·27법난 명예회복조치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명예실무위 제26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동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법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피해자로 인정된 입적 승

74) 일시/장소: 2015. 12. 23. 14:00~14:30 / 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6명.

려와 사망자를 10·27법난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명예회복조치를 취하기로 원안 의결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피해 신고 신청인에게 명예회복결정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 결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어서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안)'을 심의하였다.

이 안건은 의료지원금 지급 피해자 중 당초 명예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명예회복 신청이 1차 불인정된 피해자를 법의 취지에 맞게 명예회복 조치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이는 심의위원회 제43차 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것에 따랐다.

심의위원회는 법난으로 인한 상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의료지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명예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1차 명예회복 신청이 불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명예회복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든 피해자를 명예회복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법 제정 목적 및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명예회복 미신청 5명 및 명예회복 불인정자 1명에 대해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위해 명예회복실무위에 회부하였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90 심의위원회 제44차 회의 명예회복조치 대상 피해자(입적 승려·사망자)

안건번호	피해자(법명)	안건번호	피해자(법명)	안건번호	피해자(법명)
피해 제292호	박준석 (석암)	피해 제303호	임점택 (원광)	피해 제314호	김기태 (천장)
피해 제293호	박정운 (법열)	피해 제304호	황기연 (오현)	피해 제315호	정기철 (정수)
피해 제294호	남익순 (대충)	피해 제305호	장인찬 (희찬)	피해 제316호	김연수 (지성)
피해 제295호	윤흥식 (덕산)	피해 제306호	이상열 (현우)	피해 제317호	임동철 (정산)
피해 제296호	김형묵 (기성)	피해 제307호	김한기 (서운)	피해 제318호	홍상길 (성진)

안건번호	피해자(법명)	안건번호	피해자(법명)	안건번호	피해자(법명)
피해 제297호	조운석 (대정)	피해 제308호	최종렬 (월산)	피해 제319호	이경환 (현광)
피해 제298호	정희자 (명성)	피해 제309호	박한남 (광진)	피해 제320호	이재명 (자순)
피해 제299호	김천석 (회광)	피해 제310호	윤희중 (월하)	피해 제321호	김희현 (능혜)
피해 제300호	김각경	피해 제311호	박인수 (청하)	피해 제322호	김강웅 (도명)
피해 제301호	박주식 (진설)	피해 제312호	백식화 (현광)	피해 제323호	최영권 (원철)
피해 제302호	서병식 (정대)	피해 제313호	조학주 (학능)	피해 제324호	전보원 (보원)

표 3-91 심의위원회 제44차 회의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심의 결과

안건번호	피해자(법명)	의결 내용	비고
피해 제325호	강만봉	10·27법난법 제5조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로서 법 제정 목적에 맞게 명예회복 대상으로 인정하되,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함.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26호	김주환 (관후)	10·27법난법 제5조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로서 법 제정 목적에 맞게 명예회복 대상으로 인정하되,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함.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27호	신현배 (율봉)	10·27법난법 제5조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로서 법 제정 목적에 맞게 명예회복 대상으로 인정하되,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함.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28호	최용경 (명연)	10·27법난법 제5조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로서 법 제정 목적에 맞게 명예회복 대상으로 인정하되,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함.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29호	홍성한 (무외)	10·27법난법 제5조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로서 법 제정 목적에 맞게 명예회복 대상으로 인정하되,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함.	해당 실무위 회부
피해 제330호	성성환 (청욱)	10·27법난법 제5조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로서 법 제정 목적에 맞게 명예회복 대상으로 인정하되,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함.	해당 실무위 회부

45) 제45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45차 회의[75]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안건은 심의위원회 제4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10·27법난 명예회복조치방안'의 3차 후속조치로써, 입적 승려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으로 명예실무위 제27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상정한 것이다. 명예실무위는 심의과정에서 생존 승려들이 입적하는 경우 '입적 후 기념관내 행장전시'를 입적 승려의 행적 등을 감안하여 전시될 수 있도록 '권고'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한편 이번 심의 대상자에는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어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6명 중 명예회복을 신청하지 않은 4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지만 불인정된 1명 등 5명도 포함되었다. 이는 지난 제44차 회의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인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명예회복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명예회복을 신청하지 않은 1명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회복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번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심의 대상자는 입적 승려 1명과 생존 피해자 61명 등 모두 62명이다.

입적한 최용경(명연, 안건번호 피해 제331호)은 10·27법난으로 상이 피해를 입어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10·27법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명예회복은 미신청 상태로 입적하여 제44차 회의에서 명예회복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명예회복 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명연 스님의 후임 주지 스님 동의를 받아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안건번호 제332호에서 제392호까지의 생존 피해자 61명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대상자에는 법난으로 인한 상이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인정되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명예회복을 미신청한 3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지만 불인정된 1명을 포함하여 10·27법난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명예회복조치를 취하기로 원안·의결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피해 신고 신청인에게

75) 일시/장소: 2016. 1. 27. 15:00~16: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삼보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7명

명예회복결정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 결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자세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92 심의위원회 제45차 회의 명예회복조치 대상 피해자(입적 승려 · 생존자)

안건번호	피해자 (법명)	안건번호	피해자 (법명)	안건번호	피해자 (법명)	안건번호	피해자 (법명)
피해 제331호	최용경 (명연)	피해 제347호	김용오 (경우)	피해 제363호	김삼형 (현철)	피해 제379호	이기남 (자항)
피해 제332호	이배원 (자신)	피해 제348호	오영준 (성면)	피해 제364호	권장수 (도현)	피해 제380호	이건호
피해 제333호	문성경 (혜운)	피해 제349호	승종봉 (법민)	피해 제365호	송현섭 (월주)	피해 제381호	문윤식 (법장)
피해 제334호	윤수만 (성해)	피해 제350호	성성환 (청욱)	피해 제366호	홍현희 (봉주)	피해 제382호	이도성 (도성)
피해 제335호	류희민 (종근)	피해 제351호	정막동 (명철)	피해 제367호	배두관 (철우)	피해 제383호	윤동암 (일선)
피해 제336호	박용식 (명선)	피해 제352호	김수년 (명현)	피해 제368호	하태용 (성조)	피해 제384호	전득수 (설정)
피해 제337호	신흥균	피해 제353호	우홍근	피해 제369호	황태로 (종래)	피해 제385호	천성봉 (도만)
피해 제338호	이성휘 (원행)	피해 제354호	전종윤 (운덕)	피해 제370호	김홍규 (금용)	피해 제386호	류광수 (지호)
피해 제339호	김천일 (혜법)	피해 제355호	서영숙 (월궁)	피해 제371호	조강원 (중하)	피해 제387호	한정기 (자용)
피해 제340호	채규호	피해 제356호	여옥희 (문성)	피해 제372호	박대홍 (법등)	피해 제388호	김광회 (진우)
피해 제341호	서승남 (윤월)	피해 제357호	이근배 (혜성)	피해 제373호	박태일 (현소)	피해 제389호	이법철 (법철)
피해 제342호	황한수 (진경)	피해 제358호	한영수	피해 제374호	박무홍	피해 제390호	강만봉
피해 제343호	정재우 (지우)	피해 제359호	이종석 (근식)	피해 제375호	허인환 (성운)	피해 제391호	김주환 (관후)
피해 제344호	이근우	피해 제360호	김기곤	피해 제376호	정동군 (삼오)	피해 제392호	신현배

안건번호	피해자 (법명)	안건번호	피해자 (법명)	안건번호	피해자 (법명)	안건번호	피해자 (법명)
피해 제345호	김종우 (도웅)	피해 제361호	오인근 (법달)	피해 제377호	최현인 (정혜)		
피해 제346호	이병한 (청수)	피해 제362호	김도학	피해 제378호	김중건 (자성)		

46) 제46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46차 회의[76]에서는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사찰)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및 명예회복조치(안)'과 2016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교부의 건'을 심의하였다. 이 안건은 명예실무위 제28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정한 것이다.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사찰)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및 명예회복조치(안)'의 경우 법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 명예회복을 신청하지 않아 피해종교단체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를 명예회복 대상에 포함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심의였다.

심의위원회는 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 명예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10·27법난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고 명예회복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한 사찰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제42차 회의의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2016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교부의 건'을 심의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6년 10·27법난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을 2억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원안 의결하였다.

76) 일시/장소: 2016. 1. 27. 15:00~16: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삼보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7명.

표 3-93 심의위원회 제46차 회의 피해종교단체(사찰)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및 명예회복조치(안) 심의 결과

안건번호	심의대상	피해인정내용	비고
피해 제393호	갑 사 (공주)	위원회에서 김주환(관후스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394호	대각사 (부산)	위원회에서 김용오(경우스님)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395호	해인사 (합천)	위원회에서 홍현희(봉주스님) 등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396호	성덕암 (창원)	위원회에서 하태용(성조스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397호	보현사 (대구)	위원회에서 황태로(종래스님)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398호	임휴사 (대구)	위원회에서 박대홍(법등스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399호	봉정사 (안동)	위원회에서 박태일(현소스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400호	무량사 (부여)	위원회에서 허인환(성운스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401호	관음사 (김천)	위원회에서 성성환(청욱스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402호	계림사 (김천)	위원회에서 천성봉(도만스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403호	청곡사 (진주)	위원회에서 류광수(지호스님)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피해 제404호	수덕사 (예산)	위원회에서 전득수(설정스님)가 피해자로 인정되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해종교단체로 인정	

표 3-94 심의위원회 제46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제2016-1호	2016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교부의 건	2015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교부할 것을 의결	

47) 제47차 회의

심의위원회 제47차 회의[77]는 '2017년도 「10·27법난 기념관」 예산편성 요구(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안건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용지구입 비용과 이에 따른 철거 및 건축비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요구(안)으로 명예실무위 제29차 회의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2017년도 「10·27법난 기념관」 예산편성 요구(안)'으로 총 227억 8,000만 원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각 예산 소요 항목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금액을 기초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상비 180억 1,500만 원, 공사비 32억 1,500만 원, 시설부대경비 15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95 심의위원회 제47차 회의 일반안건 심의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제2016-2호	2017년 「법난기념관」 건립예산 요구(안)	2017년도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227억 8천만 원(민간자본보조)을 요구 의결	

3 심의위원회 결정

가.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결과 및 분석

10·27법난 관련 위원회에서 명예/의료 피해신고 및 직권상정 관련 심의·의결한 것은 총 251건(피해신고 234건, 직권상정 17건)이다. 이 중 피해 인정은 202건이며, 불인정은 49건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명예회복 신청 및 직권상정 183건 중 인정 148건, 불인정 35건

77) 일시/장소: 2016. 4. 26. 14:00~15: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지현 스님(위원장), 정문 스님, 윤원호·조남진·이명묵·허남오 위원 등 6명.

이며,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68건 중 인정 54건, 불인정 14건이다.

또한 인원기준으로 보면, 개인 126명이 피해신고 및 명예/의료지원금 신청하여 96명이 법난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30명은 불인정되었다. 그리고 단체는 명예회복 관련 57개(신청 45개, 직권상정 12개)를 심의·의결하여 52개가 피해종교단체로 인정되고, 5개가 불인정되었다.

표 3-96 10·27법난 피해자 등 피해신고에 따른 위원회 결정 결과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	1	–	이배원(자신)	능인사(인천 중구) / 주지	• 수배 도피 (미연행) •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12차 회의	–	의료-40 추가 신청
2	–	1	강만봉	상원사(강원 평창) / 매점 운영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5차 회의	지급결정 제8차 회의	재가자
3~4	2	2	문성경(혜운)	법주사(충북 보은) / 교무국장	• 고문, 폭행 • 부정축재 누명	피해자 인정 제5차 회의	지급결정 제13차 회의	
5	3		윤수만(성해)	천왕사(제주) / 주지	• 연행, 조사 •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11차 회의	–	
6	–	3	김주환(관후)	갑사(충남 공주) / 부전	• 미연행 • 경내 구타 후 실신	피해자 인정 제5차 회의	지급결정 제16차 회의	
7	–	4	신현배	덕암사(경기 고양) / 부전	• 연행, 감금, 조사 • 연행도중 부상	피해자 인정 제6차 회의	지급결정 제9차 회의	환속
8	4	–	류희민(종근)	불국사(경북 경주) / 재무국장	• 연행, 조사 • 재무국장 해임	피해자 인정 제5차 회의	–	
9~10	5	5	박용식(명선)	화엄사(전남 구례) / 주지	•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6차 회의	지급결정 제12차 회의	
11~12	6	6	신흥균	상원사(강원 평창) / 사무장	• 연행, 감금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6차 회의	지급결정 제9차 회의	재가자
13	–	7	최용경(명연)	성불사(서울 강북) / 주지	• 미연행 • 경내 구타 폭행	피해자 인정 제6차 회의	지급결정 제9차 회의	지급 후 입적
14~15	7	8	박준석(석암)	천태종(충북 단양) / 총무원장	• 고문 후유증 사망 • 징역, 재산몰수	피해자 인정 제6차 회의	지급 비대상	피해신청 전 입적
16~17	8	9	이성휘(원행)	월정사(강원 평창)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 협박, 구타	피해자 인정 제6차 회의	지급결정 제17차 회의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8~19	9	10	김천일 (혜법)	조계사(서울 종로)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 폭언,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6차 회의	지급결정 제16차 회의	
20	10	–	채규호	조계사(서울 종로) / 교육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언, 구타 • 교육국장 해임	피해자 인정 제8차 회의	–	환속, 법사 (의료-32 추가 신청)
21	–	11	홍성한 (무외)	광흥사 (경북 안동)	• 미연행 • 놀람, 공포 후유증	피해자 인정 제11차 회의	지급결정 제14차 회의	
22	11	–	경○○ (성○)	신흥사 (강원 속초)	• 법난 이전 경찰서 구금 및 삼청교육 피해	신청반려 (2009.8.24.)	–	비대상자
23~24	12	12	서승남 (윤월)	홍은암 (서울 서대문)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구타 • 형 확정(무고)	피해자 인정 제12차 회의	지급결정 제15차 회의	
25	13	–	장○○ (연○)	관음사(제주) / 총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언, 구타 없음	피해자 불인정 제15차 회의	–	
26	14	–	황한수 (진경)	마곡사(충남 공주)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10차 회의	–	
27	15	–	정재우 (지우)	대흥사(전남 해남)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피해자 인정 제8차 회의	–	
28~29	16	13	박정운 (법열)	심광사(대전) / 총무국장	• 연행, 조사 • 구타, 폭행	피해자 인정 제8차 회의	지급결정 제13차 회의	지급 후 입적
30	17	–	이근우	청담학원(경기 평택) / 이사	• 연행, 조사 • 이사 해임	피해자 인정 제8차 회의	–	의료-30 추가 신청
31	18	–	김종우 (도웅)	반룡사 (경북 영천)	• 연행, 감금, 조사 • 폭언	피해자 인정 제11차 회의	–	
32	19	–	이병한 (청수)	신흥사(강원 속초) / 부주지 및 재무	• 수배 도피 (미연행)	피해자 인정 제12차 회의	–	의료-29 추가 신청
33~34	20	14	김용오 (경우)	대각사(부산)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12차 회의	지급결정 제19차 회의	
35~36	21	15	오영준 (성면)	명봉사(경북 예천)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12차 회의	지급결정 제15차 회의	
37	22	–	승종봉 (법민)	조계사(서울 종로)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언, 재무국장 해임	피해자 인정 제11차 회의	–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38	23	–	성성환 (청욱)	관음사(경북 김천) / 주지	• 연행, 조사 • 실신, 주지 해임	피해자 불인정 제15차 회의	–	의료-45 추가 신청 (피해 인정)
39~40	24	16	정막동 (명철)	화엄사(전남 구례) / 부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10차 회의	지급결정 제15차 회의	
41	25	–	김수년 (명현)	화엄사(전남 구례)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10차 회의	–	의료-31 추가 신청
42~43	26	17	우홍근	마곡사(충남 공주)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13차 회의	지급결정 제17차 회의	환속
44	27	–	남익순 (대충)	천태종(충북 단양) / 종정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45	28	–	전종윤 (운덕)	천태종(충북 단양) / 총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16차 회의	–	
46	29	–	윤흥식 (덕산)	천태종(충북 단양) / 교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14차 회의	–	의료-22 추가 신청
47	30	–	김형묵 (기성)	천태종(충북 단양) / 재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48	31	–	김○○ (국○)	천태종(충북 단양) / 사회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명예신청 각하 (2015.6.30.)	–	조사 거부 등
49	32	–	조운석 (대정)	천태종(충북 단양) / 종정사서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50	33	–	서영숙 (월궁)	천태종(충북 단양) / 법사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의료-27 추가 신청
51	34	–	정희자 (명성)	천태종(충북 단양) / 판매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후 입적
52	35	–	여옥희 (문성)	천태종(충북 단양) / 법사	• 사찰 내 조사 (미연행) • 협박, 폭언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의료-33 추가 신청
53	36	–	박○○ (거○)	천태종(충북 단양) / 공양주	• 사찰 내 조사 (미연행) • 협박, 폭언	피해자 불인정 제22차 회의	–	
54~55	37	18	이근배 (혜성)	도선사(서울 강북)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피해자 인정 제13차 회의	지급결정 제16차 회의	
56~57	38	19	한영수	문공부 / 종무관	• 연행, 감금, 조사 • 형 확정(파면)	피해자 인정 제14차 회의	지급결정 제17차 회의	재가자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58~59	39	20	이종석(근식)	표충사(경남 밀양) / 재무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피해자 인정 제13차 회의	지급결정 제23차 회의	
60~61	40	21	김기곤	조계종(서울 종로) / 관리계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피해자 인정 제16차 회의	지급결정 제18차 회의	재가자
62	41	–	김천석(회광)	표충사(경남 밀양)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14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63	–	22	윤흥식(덕산)	천태종(충북 단양) / 교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14차 회의	지급결정 제17차 회의	개별 신청
64	42	–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종 (서울 종로)	• 조계종 소속 사찰 폭력적 유린(5,000여 사찰) • 소속 승려 연행(2,000여명)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피해종교단체
65~66	43	23	오인근(법달)	조계사(서울 종로) / 감찰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17차 회의	지급결정 제23차 회의	
67~68	44	24	김도학	조계종(서울 종로) / 재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17차 회의	지급결정 제19차 회의	환속
69~70	45	25	김삼형(현철)	은해사(경북 영천) / 재무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18차 회의	지급결정 제23차 회의	
71~72	46	26	권장수(도현)	도선사(서울 강북)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지급결정 제39차 회의	
73	47	–	김각경	조계사(서울 종로) / 신도	• 연행, 감금, 조사 • 무고죄(1년)	피해자 인정 제18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사망
74	48	–	구인사	구인사 (충북 단양)	• 인적 피해(11명) • 물적 피해 • 종교적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요구사항 – 정부 사과 – 880억 예산지원요구(교육시설 조성비 500억, 문화센터 건립 300억)	피해종교단체
75	–	27	서영숙(월궁)	천태종(충북 단양) / 법사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지급결정 제26차 회의	개별신청
76	–	28	황한수(진경)	마곡사(충남 공주)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10차 회의	지급결정 제23차 회의	
77	–	29	이병한(청수)	신흥사(강원 속초) / 부주지 및 재무	• 수배 도피 (미연행)	피해자 인정 제12차 회의	지급결정 제29차 회의	

일련 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78	49	–	송현섭 (월주)	조계종(서울 종로) / 총무원장	• 연행, 감금, 조사 • 종권 찬탈, 명예 실추	피해자 인정 제39차 회의	■ 요구사항 – 10·27법난 진상 재조사 – 정부사과, 재발방지 천명 – 조계종, 개인 피해자 국가 배상	
79	50	–	박주식 (진설)	조계사 (서울 종로)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0	51	–	서병식 (정대)	용주사 (경기 화성)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1	52	–	임점택 (원광)	신흥사 (강원 속초)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2	53	–	황기연 (오현)	신흥사 (강원 속초)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3	54	–	장인찬 (희찬)	월정사 (강원 평창)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4	55	–	이상열 (현우)	월정사 (강원 평창)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5	56	–	김한기 (서운)	동화사 (대구)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6	57	–	최종렬 (월산)	불국사 (경북 경주)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7	58	–	박한남 (광진)	범어사 (부산)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8	59	–	윤희중 (월하)	통도사 (경남 양산)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89	60	–	박인수 (청하)	통도사 (경남 양산)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90	61	–	백식화 (현광)	고운사 (경남 의성)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91	62	–	이○○ (서○)	백양사 (전남 장성)	• 연행, 조사	피해자 불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92	63	–	조학주 (학능)	백양사 (전남 장성)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93	64	–	김기태 (천장)	백양사 (전남 장성)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94	65	–	정기철 (정수)	조계사 (서울 종로)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95	66	–	가○○ (성○)	용봉사 (충남 홍성)	• 연행, 조사	피해자 불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96	67	–	김연수 (지성)	선운사 (전북 고창)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97	68	–	고○○ (태○)	내장사 (전북 고창)	• 연행, 조사	피해자 불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98	69	–	임동철 (정산)	내장사 (전북 고창)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99	70	–	홍상길 (성진)	내장사 (전북 고창)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100	71	–	이경환 (현광)	증심사 (광주)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101	72	–	김○○ (태○)	백양사 (전남 장성)	• 연행, 조사	피해자 불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102	73	–	이재명 (자순)	적조암 (서울 성북)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103	74	–	배○○ (송○)	연주암 (경기 과천)	• 연행, 조사	피해자 불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104	75	–	김희현 (능혜)	조계종(서울 종로) / 재무부장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105	76	–	정○○ (영○)	백담사 (강원 인제)	• 연행, 조사	피해자 불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106	77	–	김강웅 (도명)	상원사 (강원 평창)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107	78	–	최영권 (원철)	낙산사 (강원 양양)	• 연행, 조사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	피해신청 전 입적
108	79	–	조계사	조계사 (서울 종로)/ 김천일(혜법)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일련 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09	80	–	신흥사	신흥사(강원 속초) / 이병한(청수)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0	81	–	월정사	월정사(강원 평창) / 이성휘(원행)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1	82	–	법주사	법주사(충북 보은) / 문성경(혜운)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2	83	–	마곡사	마곡사(충남 공주) / 황한수(진경)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3	84	–	은해사	은해사(경북 영천) / 김삼형(현철)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4	85	–	불국사	불국사(경북 경주) / 류희민(종근)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5	86	–	범어사	범어사(부산) / 박한남(광진)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6	87	–	화엄사	화엄사(전남 구례) / 박용선(명선)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7	88	–	대흥사	대흥사(전남 해남) / 정재우(지우)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8	89	–	도선사	도선사(서울 강북) / 이근배(혜성)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19	90	–	홍은암	홍은암(서울 서대문) / 서승남(윤월)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20	91	–	성불사	성불사(서울 성북) / 최용경(명연)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21	92	–	심광사	심광사(대전) / 박정운(법열)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22	93	–	상원사	상원사(강원 평창) / 김강웅(도명), 신흥균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23	94	–	표충사	표충사(경남 밀양) / 이종석(근식)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24	95	–	반룡사	반룡사(경북 고령) / 김종우(도웅)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25	96	–	명봉사	명봉사(경북 예천) / 오영준(성면)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26	97	–	대자암	대자암(충남 공주) / 김주환(관후)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27	98	–	광흥사	광흥사(경북 안동) / 홍성한(무외)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28	99	–	능인사	능인사(인천) / 이배원(자신)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29	100	–	덕암사	덕암사(경기 남양주) / 신현배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30	101	–	관음사	관음사(제주) / 장○○(연○)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불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31	102	–	천왕사	천왕사(제주) / 윤수만(성해)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일련 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32	103	–	서산사	서산사(전남 곡성) / 김수년(명현)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33	104	–	백련사	백련사(서울 서대문) / 승종봉(법민)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34	105	–	장경사	장경사(경기 광주) /승종봉(법민)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35	106	–	용주사	용주사(경기 화성) / 서병식(정대)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36	107	–	동화사	동화사(대구) / 김환기(서운)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37	108	–	통도사	통도사(경남 양산) / 박인수(청하)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38	109	–	고운사	고운사(경북 의성) / 백식화(현광)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39	110	–	백양사	백양사(전남 장성) / 조학주(학능)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40	111	–	보문사	보문사(인천) / 정기철(정수)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41	112	–	용봉사	용봉사(충남 홍성) / 가○○(성○)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불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42	113	–	선운사	선운사(전남 고창) / 김연수(지성)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43	114	–	내장사	내장사(전북 정읍) / 임동철(정산)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44	115	–	증심사	증심사(광주) / 이경환(현광)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45	116	–	적조암	적조암(서울 성북) / 이재명(자순)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46	117	–	연주암	연주암(경기 과천) / 김홍규(금용)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47	118	–	백담사	백담사(강원 인제) / 정○○(영○)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불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48	119	–	상원사	상원사(강원 평창)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불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명예–93호와 동일 사찰 (중복)
149	120	–	낙산사	낙산사(강원 양양) / 최영권(원철)	• 소속 사찰 피해	피해단체 인정 제23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신청
150		30	이근우	청담학원(경기 평택) / 이사	• 연행, 조사 • 이사 해임	피해자 인정 제8차 회의	지급결정 제26차 회의	
151	–	31	김수년(명현)	화엄사(전남 구례) / 재무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피해자 인정 제10차 회의	지급결정 제23차 회의	
152	–	32	채규호	조계사(서울 종로) / 교육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언, 구타 • 교육국장 해임	피해자 인정 제8차 회의	지급결정 제31차 회의	
153	–	33	여옥희(문성)	천태종(충북 단양) / 법사	• 사찰 내 조사(미연행) • 협박, 폭언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지급결정 제35차 회의	개별 신청
154~155	121	34	홍현희(봉주)	해인사(경남 합천)	• 연행 여부 미상 • 경내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기각결정 제39차 회의	판정불가 및 관련없음
156~157	122	35	배두관(철우)	조계종(서울 종로) / 기획국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지급결정 제26차 회의	

일련 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58	123	–	○○신문	대한불교 (서울 종로)	• 대한불교 강제 폐간 • 명예 실추, 구독자 및 광고료 손실	피해단체 불인정 제23차 회의	–	
159~160	124	36	하태용 (성조)	성덕암(경남 창원) / 원주	• 미연행 • 경내 폭행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지급결정 제26차 회의	
161~162	125	37	황태로 (종래)	보현사(대구) / 주지(종회의원)	• 경내 폭행 • 수배 도피 (미연행) • 주지 (종회의원) 해임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지급결정 제26차 회의	
163~164	126	38	김홍규 (금용)	연주암(경기 과천) / 조계종(서울 종로) 재무부장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 재무부장 해임	피해자 인정 제22차 회의	지급결정 제35차 회의	
165~166	127	39	조강원 (중하)	조계사(서울 종로)/ 사무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27차 회의	지급결정 제30차 회의	
167	–	40	이배원 (자신)	능인사(인천 중구) / 주지	• 도피 중 자수, 조사과정에서 고문	피해자 인정 제12차 회의	지급결정 제31차 회의	
168	128	41	박대홍 (법등)	임휴사(대구)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협박, 폭행, 구타 •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26차 회의	지급결정 제31차 회의	의료 지원금 미 청구로 법원공탁
170	129	–	박태일 (현소)	봉정사(경북 안동)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29차 회의	–	
171~172	130	42	박무홍	조계사 (서울 종로)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피해자 인정 제27차 회의	지급결정 제30차 회의	환속
173	131	–	허인환 (성운)	무량사(충남 부여)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폭언	피해자 인정 제29차 회의	–	
174~175	132	43	정동군 (삼오)	조계사(서울 종로) / 주지 시자(시봉)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폭언	피해자 인정 제35차 회의	지급결정 제36차 회의	
176~177	133	44	최현인 (정혜)	통도사 (경남 양산)	• 미연행 • 경내 구타, 폭행	피해자 인정 제31차 회의	지급결정 제32차 회의	
178	–	45	성성환 (청욱)	관음사(경북 김천) / 주지	• 연행, 조사 • 실신 •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35차 회의	지급결정 제36차 회의	
179	134	–	김○○ (도○)	천태종(충북 단양) / 사회과장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피해자 불인정 제35차 회의	–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80	135	–	변○○(춘○)	구성사(대구)	• 미연행 • 종단 스님 연행 소식에 정신적 충격	명예신청 취하(2015.5.7.)	–	
181	136	–	조○○(진○)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명예신청 취하(2015.5.7.)	–	
182	137	–	최○○(성○)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피해자 불인정 제34차 회의	–	
183	138	–	주○○(대○)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피해자 불인정 제34차 회의	–	
184	139	–	김○○(명○)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피해자 불인정 제35차 회의	–	
185	140	–	김○○(화○)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피해자 불인정 제35차 회의	–	
186	141	–	안○○(선○)	구인사(충북 단양)	• 미연행 • 경내 연행 목격 후 정신적 충격	명예신청 취하(2015.5.7.)	–	
187~188	142	–	김○○(법○)	금강대(부산) / 주지	• 수배 도피 (미연행) • 사찰수색	피해자 불인정 제31차 회의	기각결정 제31차 회의	
189~190	143	47	김중건(자성)	적조암(서울 성북) / 총무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 총무 해임	피해자 인정 제32차 회의	지급결정 제33차 회의	
191~192	144	48	이기남	적조암(서울 성북)	• 연행, 감금, 조사 • 폭행, 구타	피해자 인정 제32차 회의	지급결정 제33차 회의	
193~194	145	49	김○○(자○)	적조암(서울 성북) / 재무	• 미연행 • 경내 폭행, 폭언 • 재무 해임	피해자 불인정 제33차 회의	기각결정 제33차 회의	
195~196	146	50	김○○(법○)	원통사(서울 도봉) / 주지	• 미연행 • 경내 폭행, 도피	피해자 불인정 제40차 회의	기각결정 제40차 회의	
197~198	147	51	이건호	조계종 전국신도회 / 사무총장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35차 회의	지급결정 제36차 회의	재가자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99~200	148	52	박○○ (도○)	홍련암(강원 양양)	• 미연행 • 경내 폭행, 도피	피해자 인정취소 제43차 회의	환수결정 제43차 회의	제40차 회의 재심 · 인정
201~202	149	53	전보원 (보원)	선석사(경북 성주)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38차 회의	지급기각 제38차 회의	지급결정 전 입적
203~204	150	54	최○○ (진○)	조계사(서울 종로) / 부전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피해자 불인정 제39차 회의	기각결정 제39차 회의	
205~206	151	55	문윤식 (법장)	낙산사(강원 양양) / 부전	• 미연행 • 경내 구타, 폭행	피해자 인정 제40차 회의	지급결정 제41차 회의	
207~208	152	56	이도성 (도성)	해인사(경남 합천)	• 수배 도피 (미연행) • 졸도	피해자 인정 제40차 회의	지급결정 제41차 회의	
209~210	153	57	임○○ (보○)	홍련암(강원 양양)	• 연행, 감금, 조사 • 경내 폭행	피해자 불인정 제36차 회의	기각결정 제36차 회의	
211~212	154	58	윤동암 (일선)	조계종(서울 종로) / 성자 이차돈 선양회	• 미연행 • 청사 내 폭행(추락)	피해자 인정 제40차 회의	지급결정 제41차 회의	
213~214	155	59	반○○ (혜○)	홍련암(강원 양양)	• 미연행 • 경내 폭행, 도피	피해자 불인정 제37차 회의	기각결정 제37차 회의	
215	156	–	전득수 (설정)	수덕사(충남 예산)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폭언	피해자 인정 제39차 회의	–	
216~217	157	60	박○○ (도○)	낙산사 홍련암(강원 양양)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피해자 불인정 제36차 회의	기각결정 제36차 회의	
218~219	158	61	박○○ (보○)	낙산사(강원 양양) / 주지 시자(시봉)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피해자 불인정 제37차 회의	기각결정 제37차 회의	
220	159	–	진○○ (천○)	해인사(경남 합천) / 재무국장	• 수배 도피 (미연행) • 도피 중 상이	피해자 불인정 (2015.5.20.)	–	
221~222	160	62	최○○ (수○)	불국사 (경북 경주)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피해자 불인정 제37차 회의	기각결정 제37차 회의	
223~224	161	63	하○○ (정○)	홍련암 (강원 양양)	• 미연행 • 경내 폭행	피해자 불인정 제37차 회의	기각결정 제37차 회의	
225~226	162	64	천성봉 (도만)	계림사(경북 김천) / 주지	• 연행, 감금, 조사 • 구타, 폭행, 주지해임	피해자 인정 제38차 회의	지급결정 제41차 회의	

일련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법명) / 신청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227~228	163	65	류광수 (지호)	청곡사(경남 진주) / 주지	• 미연행 • 연행중 상이 (허리)	피해자 인정 제38차 회의	지급결정 제39차 회의	
229~230	164	66	한정기 (자용)	적조암 (서울 성북)	• 수배 도피 (미연행)	피해자 인정 제38차 회의	지급결정 제39차 회의	
231~232	165	67	김광회 (진우)	광흥사(경북 안동) / 주지	• 수배 도피 (미연행) •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40차 회의	지급결정 제41차 회의	
233~234	166	68	이법철 (법철)	조계종(서울 종로) / 사회국장	• 조사 • 사회국장 해임	피해자 인정 제39차 회의	지급결정 제40차 회의	

한편 위원회 직권[78]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심의·의결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 5건[79], 단체 12건[80] 등 모두 17건이다. 비록 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심의·의결한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명예회복 조치 대상자에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단체의 경우에는 10·27법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고 기존에 마련한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3-97 명예회복 미신청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심의 결과

일련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법명) / 피해종교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	–	1	강만봉	상원사(강원 평창) / 매점 운영	• 연행, 감금, 조사 • 고문, 폭행	피해자 인정 제5차 회의	지급결정 제8차 회의	재가자

78)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접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이다.
79) 1건의 경우 명예회복만 신청을 하였다가 불인정되고 이후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 재조사 한 후 심의·의결한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80) 법난 피해자로 인정된 자의 당시 소속 사찰이 명예회복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일련번호	접수번호		피해자(법명) / 피해종교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2	–	3	김주환(관후)	갑사(충남 공주) / 부전	• 미연행 • 경내 구타 후 실신	피해자 인정 제5차 회의	지급결정 제16차 회의	
3	–	4	신현배	덕암사(경기 고양) / 부전	• 연행, 감금, 조사 • 연행도중 부상	피해자 인정 제6차 회의	지급결정 제9차 회의	환속
4	–	7	최용경(명연)	성불사(서울 강북) / 주지	• 미연행 • 경내 구타 폭행	피해자 인정 제6차 회의	지급결정 제9차 회의	지급 후 입적
5	23	45	성성환(청욱)	관음사(경북 김천) / 주지	• 연행, 조사 • 실신 • 주지 해임	피해자 인정 제35차 회의	지급결정 제36차 회의	
6	–	–	갑사	갑 사(충남 공주) / 김주환(관후)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7	–	–	대각사	대각사(부산) / 김용오(경우)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8	–	–	해인사	해인사(경남 합천) / 홍현희(봉주)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9	–	–	성덕암	성덕암(경남 창원) / 하태용(성조)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10	–	–	보현사	보현사(대구) / 황태로(종래)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11	–	–	임휴사	임휴사(대구) / 박대홍(법등)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12	–	–	봉정사	봉정사(경북 안동) / 박태일(현소)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13	–	–	무량사	무량사(충남 부여) / 허인환(성운)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14	–	–	관음사	관음사(경북 김천) / 성성환(청욱)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일련번호	접수번호		피해자(법명) / 피해종교단체	법난 당시 소속 사찰 / 직책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명예	의료				피해자 등 인정 여부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	
15	–	–	계림사	계림사(경북 김천) / 천성봉(도만)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16	–	–	청곡사	청곡사(경남 진주) / 류광수(지호)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17	–	–	수덕사	수덕사(충남 예산) / 전득수(설정)	• 피해자 소속사찰	피해단체 인정 제46차 회의	–	조계종 총무원장 일괄요청

표 3-98 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직권	인정	불인정	비고
명예회복	166	17	148	35	직권 상정 17건 인정
의료지원금 지급	68		54	14	
계	251		202	49	

표 3-99 10·27법난 피해신고자 심의·의결 현황 (단위: 명)

구분	명예단일	명예·의료 병합	의료 단일	계
인정	39	52	5	96
불인정	19	11	0	30
계	58	63	5	126

표 3-100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심의·의결 현황 (단위: 개)

구분	접수	직권	인정	불인정
명예 회복	45	12	52	5
계	57		52	5

다음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인정으로 판정된 54건의 지급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표 3-101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

연도	인원(명)	금 액(원)		지급총액(원)
		최대	최소	
2009	1			14,024,920
2010	10	27,152,160	2,581,490	121,231,870
2011	10	63,195,006	7,436,940	308,386,705
2012	3	25,219,837	6,277,620	37,775,077
2013	7	21,256,942	6,277,620	61,420,502
2014	8	29,970,840	6,277,620	90,978,290
2015	15	18,720,410	6,313,620	115,833,630
계	**54**	**63,195,006**	**2,581,490**	**749,650,994**

한편 위원회는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행령 제13조[81]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재심신청은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총 12건이 접수되었는데, 명예회복 결정 및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이하 '병합 재심신청')은 6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이하 '단일 재심신청')은 6건이었다.

병합 재심신청은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병합 신청 건에 대해 신청인의 피해사실이 규명되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10·27법난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피해자로 불인정되어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이 기각되었는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신청을 한 것이다. 물론 재심신청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가 진술서부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만 접수할 수 있었다.

81)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통지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명예회복 결정통지서 또는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1. 삭제(2011. 11. 11.), 2. 삭제(2011. 11. 11.).

이러한 병합 재심신청 6건 중 5건은 재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10·27법난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하지만 1건은 재심의 결과에도 피해자로 불인정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료지원금 지급이 기각되었다.

한편 단일 재심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되고, 신청인의 상이가 10·27법난에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나, 이에 대한 의료지원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추가 상이를 요구하고, 이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의 증액을 요청한다.

단일 재심신청 6건 중 2건은 추가 상이가 인정되어, 이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을 다시 산정하여 결국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이 최초의 결정에 비해 증액되었다. 하지만 3건은 재심신청인의 추가 상이 요구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이를 10·27법난 상이로 볼 수 없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원래의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만 인정하였다. 그리고 1건은 불인정 판정이 내려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음은 재심신청 유형 및 처리결과와 재심신청 상세 내역 및 처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02 재심신청 유형 및 처리결과 요약

구분		재심신청 사유		처리 결과	
의료지원금 지급	6건	결정액 증액(인정)	5건	증액(추가 상이 포함 재산정)	2건
				기존 결정액(추가 상이 불인정)	3건
		신청 기각(불인정)	1건	피해자 인정 후 인정 상이 산정	1건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지급	6건	신청 기각(불인정)	6건	피해자 인정 후 인정 상이 산정	5건
				신청 기각(재심 불인정)	1건

표 3-103 재심신청 상세 내역 및 처리결과

일련번호	접수일자	재심신청 분야·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재심신청 사유	위원회 처리 결과
1	2010. 4.30.	의료 재심-1	김천일(혜법)	조계사(서울 종로) / 주지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 증액 요구 - 추가 상이 인정 요구	• 재심신청 인용(2010.12.8.) - 추가 상이 인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1.2.15.) - 인정된 추가 상이 포함 의료지원금 재산정(증액)

일련번호	접수일자	재심신청 분야·번호	신청인(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재심신청 사유	위원회 처리 결과
2	2012. 11.26.	의료 재심-2	이병한 (청수)	신흥사 (강원 속초) / 부주지 및 재무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 증액 요구 - 추가 상이 인정 요구	• 재심신청 기각(2014.4.9.) - 추가 상이 불인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4.4.9.) - 기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으로 재결정
3	2013. 12.20.	의료 재심-3	채규호 (일행)	조계사(서울 종로) / 교육국장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 증액 요구 - 추가 상이 인정 요구	• 재심신청 인용(2014.4.9.) - 추가 상이 인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4.6.24.) - 인정된 추가 상이 포함 의료지원금 재산정(증액)
4	2014. 7.17.	의료 재심-4	박대홍 (법등)	임휴사(대구) / 주지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 증액 요구 - 추가 상이 인정 요구	• 재심신청 기각(2014.10.27.) - 추가 상이 불인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4.10.27.) - 기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으로 재결정
5	2014. 11.13.	의료 재심-5	성성환 (청욱)	관음사(경북 김천) / 주지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기각)에 대한 재심신청 - 당시 목격자 진술 및 참고인 진술서 첨부	• 재심신청 인용(2015.1.27.) - 피해자 인정[기존 명예신청(명예-23호)에 대한 기각(피해자 불인정) 번복]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5.3.18.) - 신청 상이에 대한 의료지원금 산정 후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6	2015. 2.27.	명예& 의료 재심-6	김○○ (법○)	원통사 (서울 도봉) / 주지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기각)에 대한 재심신청 - 단순 재심 신청	• 재심신청 기각(2015.8.25.) - 피해자 불인정(재심)으로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다시 불인정
7	2015. 5.12.	명예& 의료 재심-7	문윤식 (법장)	낙산사 (강원 양양) / 부전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기각)에 대한 재심신청 - 당시 목격자 진술서 첨부	• 재심신청 인용(2015.8.25.) - 피해자 인정[기존 명예신청(명예-151호)에 대한 기각(피해자 불인정) 번복]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5.9.21.) - 신청 상이에 대한 의료지원금 산정 후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8	2015. 5.12.	명예& 의료 재심-8	박○○ (도○)	낙산사 (강원 양양)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기각)에 대한 재심신청 - 당시 목격자 진술서 첨부	• 재심신청 인용(2015.8.25.) - 피해자 인정[기존 명예신청(명예-148호)에 대한 기각(피해자 불인정) 번복]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5.9.21.) - 신청 상이에 대한 의료지원금 산정 후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재심신청 분야·번호	신청인 (법명)	법난 당시 소속사찰 / 직책	재심신청 사유	위원회 처리 결과
9	2015. 6.15.	명예& 의료 재심-9	이도성 (도성)	해인사 (경남 합천)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기각)에 대한 재심신청 - 병원 소견서, 증인 진술서 등 첨부	• 재심신청 인용(2015.8.25.) - 피해자 인정[기존 명예신청(명예-152호)에 대한 기각(피해자 불인정) 번복]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5.9.21.) - 신청 상이에 대한 의료지원금 산정 후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10	2015. 7.8.	명예& 의료 재심-10	김광회 (진우)	광흥사(경북 안동) / 주지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기각)에 대한 재심신청 - 단순 재심 신청	• 재심신청 인용(2015.8.25.) - 피해자 인정[기존 명예신청(명예-165호)에 대한 기각(피해자 불인정) 번복] ※ 피해자 불인정 당시 법적 심사기한 내 정밀검진 불가로 재심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음.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5.9.21.) - 신청 상이에 대한 의료지원금 산정 후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11	2015. 7.9.	명예& 의료 재심-11	윤동암 (일선)	조계종(서울 종로) / 성자 이차돈 선양회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기각)에 대한 재심신청 - 증빙 서류 제출	• 재심신청 인용(2015.8.25.) - 피해자 인정[기존 명예신청(명예-154호)에 대한 기각(피해자 불인정) 번복] ※ 피해자 불인정 당시 법적 심사기한 내 정밀검진 불가로 재심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음.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5.9.21.) - 신청 상이에 대한 의료지원금 산정 후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12	2015. 7.24.	의료 재심-12	천성봉 (도만)	계림사(경북 김천) / 주지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 증액 요구 - 추가 상이 인정 요구	• 재심신청 기각(2015.9.21.) - 추가 상이 불인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2014.9.21.) - 기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액으로 재결정

한편 조계종 일괄대리신청 개요 및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04 조계종 일괄대리신청 개요 및 검토 결과

- 2011.12.26. 조계종 총무원,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이하 '명예신청서'로 줄임) 일괄대리신청
  - 9,853명 [성명(한글 · 한자), 법명(한글 · 한자), 주민번호 기재]

    ▸9,853명 중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중복인원은 4명: 김문오(진오), 김혜성(혜성), 이중하(만오), 김○○(태○)
    ▸이들을 중복인원으로 제외한다면 실제 일괄대리신청은 9,853명이 아닌 9,849명
- 2011.12.29. 위원회(지원단),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 2011.12.30. 위원회, 조계종 총무원(사회부)에 신청서 1차 보완 협조요청
- 2012.01.20. 조계종 총무원, 1차 보완 서류 제출
  - 개인별 보완이 아닌 이병근(지환) 1명을 대표로 '명예신청서' 및 「피해경위서」 제출
- 2012.02.06. 위원회(지원단),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신청서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
- 2012.02.07. 위원회, 조계종 총무원에 신청서 2차 보완 협조요청
  - 최초 제출된 일괄대리신청 9,853명 중 "기신청인"(위원회 '개별신청' 중복자) 57명을 제외한 9,796명을 신규 신청인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 협조요청(인원수 조정·확정 통보)

    ▸"기신청인"(위원회 '개별신청' 중복자) 57명에서 누락된 인원은 9명: 경○○(성○), 김주환(원산/관후), 김한기(서운), 유희민(종근), 이상열(현우), 장인찬(희찬), 최영권(원철), 최용경(명연), 홍성한(무외)
    ▸이들을 누락인원으로 "기신청인"에 포함한다면 인원수 조정 · 확정 통보 당시 실제 보완자료 요청 대상은 9,796명이 아닌 9,783명
- 2012.03.20. 조계종 총무원, 2차 보완 서류 제출
  - 위원회가 요청한 9,796명 중 3,232명에 대한 거주사, 주소 및 전화번호만 추가
  - 3,232명: "기신청인"(위원회 '개별신청' 중복자) 24명, "추가 신청인" 5명 포함.

    ▸3,232명 명단에서 연번 〈1268〉과 〈2838〉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는 3,230명
    ▸"기신청인"(위원회 '개별신청' 중복자) 24명에서 누락된 인원은 2명: 김주환(원산/관후), 최용경(명연)
    ▸"기신청인" 24명에 포함된 승려 중 이경식(자승)의 경우, 앞선 9,853명 분석 당시에 "기신청인" 57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3,232명 분석 당시에만 "기신청인"으로 되어 있음. 이는 위원회 신청에 조계종이 피해종교단체로 신청한 것을 감안한 것이라 판단됨.
    ▸조계종 일괄대리신청 최초 제출 당시 누락된 "추가 신청인"(신규 명단)는 5명: 김범준(정운), 김준수(혜철), 이탄준(탄준), 정옥녀(부연), 박옥수(묘성)
    ▸9,853명 명단과 3,232명 명단에 모두 들어 있으나, 성명(속명) 또는 법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성명 또는 법명 불일치)가 2명: 곽봉제(선재) vs 곽봉재(선재) / 이은성(만오) vs 이은성(선행)

• 2012.05.07. 위원회(지원단),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신청서 조치방안 검토 보고」
• 2012.05.08. 위원회, 조계종 총무원에 신청서 3차 보완 협조요청
– 9,796명에 대한 개인별 '명예신청서' 등 보완자료 요청
• 2012.05.15. 조계종 총무원,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일괄신청인으로 확정·통보된 9,796명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조사와 심사 착수 요구.
– 현재까지의 피해조사 경과와 이후 계획을 5월 말까지 조계종에 통보 요청.
• 2012.06.~11. 조계종 일괄대리신청인(9,853명) 중 7명(별도 관리), 개별적으로 보완자료 제출
– '명예신청서' 및 「피해경위서」뿐만 아니라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도 함께 제출
• 2012.09.25. 위원회, 제21차 회의 「조계종 법난피해 일괄 대리 신청 처리방안」 상정 ⇨ 차기 회의로 이월
– 처리 방안: ① 신청서류 미비로 피해자 불인정 ② 신청서류 미비로 신청서 반려
• 2012.10.18. 위원회, 제22차 회의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 신청서 심사 안건」 상정 ⇨ 차기 회의로 이월
– 처리 방안: ① 신청서류 미비로 피해자 불인정 ② 신청서류 미비로 신청서 반려
• 2012.10.24. 위원회, 제23차 회의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 신청서 심사 안건」 상정 ⇨ 심의 보류
– 처리 방안: ① 신청서류 미비로 피해자 불인정 ② 신청서류 미비로 신청서 반려
• 2014.01.10. 조계종 총무원, 3,232명에 대한 변동사항 제출

▸2012. 3. 20. 제출된 3,232명 명단과 2014. 1. 10. 제출된 3,232명 명단을 비교한 결과, 누락된 연번이나 인원은 동일함.
▸다만, 이전과 비교할 때 성명(속명)과 법명이 잘못 기재되어 수정하거나, 그 사이에 거주사(거주지)가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였음.
– 성명(속명) 정정: 15건 / 법명 정정: 4건 / 거주사(거주지) 변경: 483건
– 위원회 '개별신청' 중복자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는 5건으로 모두 거주사(거주지) 변경에 해당함.

• 2014.01.22. 위원회, 제27차 회의 「조계종 일괄 대리 신청인 처리방향(안)」 심의 · 의결 ⇨ 원안대로 추진
① 조계종 대상자(3,232명)에 대해 설문지 발송 ⇒ 개별 신청의사 확인 후 신청 안내 ② 서류구비 신청인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등 추진 ※ 신청의사가 없거나, 개별 서류구비 미신청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종결 처리
• 2014.02.10. 위원회, 3,232명 중 3,148명 대상으로 위원장 명의 서한문 및 설문지 발송(84명 발송 제외)
– 발송 제외: 누락인원 2명, 기 신청 중복 승려 31명, 총무원장 및 입적 승려 등 5명, 국외 거주 승려 34명, 주소 불명 승려 12명(미확인 3명 포함) 등 84명

• 2014.04.09. 위원회, 제29차 회의 「조계종 일괄 대리 신청인 설문조사 결과 및 처리방안」 심의·의결
⇨ 원안 가결

① '피해신청 의사'가 있는 승려들에게 적극신청 안내하고, 신청 순으로 사실조사 및 심의 조치 ② 기타 일괄 대리 신청인에 대해서는 조계종과 협의(시기, 방식 등)를 통해 종결 처리 ③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 개별 신청에 나서도록 지속 안내 및 홍보(신청기한: 2014.12.31. / 조사 및 심사 기한: 2015.6.30.)

※ 조계종과 충분한 협의 후에 원만히 종결 처리

나. 대표적인 피해자 사례[82]

1) 월주 스님(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10·27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1980년 10월 27일 새벽 개운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으로 출근하는 도중 사복 수사관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보안대 서빙고분실에 구금되었다. 다른 총무원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합수단 수사1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과정에서 구타나 신체적 가혹행위 등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합수단 수사1국은 정치범죄를 다루는 곳이었는데, 월주 스님에 대한 수사는 주로 공금횡령, 총무원장으로서 금전과 결부된 인사권의 행사 여부 등 부정축재와 권력비리, 그리고 조계종 분규의 원인 및 폭력사태의 책임 등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투서 등을 근거로 한 수사결과, 이러한 혐의가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구금 후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월주 스님은 수사관으로부터 조계종 분규 상황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무원장직에서 사퇴해줄 것을 종용받았다. 결국 11월 3일 잠시 총무원으로 가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 총무원장직에서 사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총 23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무혐의로 훈방·조치되었다.

월주 스님이 구금되어 수사를 받은 것은 주로 부정축재와 비리혐의였지만, 경제범죄

82) 피해자 사례는 우리 위원회에 피해신고한 신청서와 자체 조사한 내용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10·27법난의 진실과 증언Ⅱ–"진실" 10·27법난 증언 녹취록』(2007. 12. 12.)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를 다루는 합수단 수사3국이 아닌 정치범죄를 주로 다루는 합수단 수사1국에서 조사를 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신군부는 1980년 초에 실시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오다가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에 선출되자 '구국의 영웅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바랍니다.'란 내용으로 성명서를 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때 월주 스님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정신에 위배된다.' 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두 번째로 신군부 측에서 찾아와 '송월주'라는 이름 석 자를 빼고 '조계종 총무원'으로만 해서 성명서를 내라고 했으나, 이 역시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신군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주 스님은 10·27법난 때 정치범죄를 다루는 합수단 수사1국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처음 죄인 다루듯 말을 함부로 하고 반말을 쓰다가 이틀 후부터 존대를 썼다고 한다.

구금된 지 23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났을 때에서야 월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만이 아니라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모든 사찰을 수색해 많은 승려들을 강제 연행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10·27법난으로 인하여 조계종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신도들이 급감하였으며 상당수의 승려들이 환속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2) 혜성 스님(당시 도선사 주지)

1980년 10월 27일, 도선사 주지 혜성 스님이 새벽 예불을 마친 후 막 아침 공양을 하고 났을 때였다. 사찰밖에는 무장을 한 군인들 1개 소대 병력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시에 사찰을 들이쳐 재무 장부 등을 압수하고 혜성 스님을 강제로 연행하여 지프차에 태웠다. 스님이 구금된 곳은 나중에 알았는데, 합수단 제3국이라고 했다.

군인들은 혜성 스님을 감금하고 강제로 승복을 벗기더니 군복도 아니고 푸른 죄수복을 던져주며 입으라고 했다. 죄수복을 걸치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철문으로 된 방안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다른 승려들도 많이 와 있었다. 선학원 이사장, 세원정사 법인 큰스님, 부산 대각사 경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등과, 그리고 도선사 재무국장 도현 스님도 눈에 띄었다.

심문을 하는 수사관은 혜성 스님에게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도선사에서 시작한 학원사업 때문에 벌여놓은 일들이 여러 가지라 빚만 많았는데, 그에게 부정축재를 했

다고 하면서 자술서를 통해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자술서 쓰기를 거부하자 건장한 젊은 군인 세 명이 혜성 스님에게 달려들더니 인정사정 두지 않고 때리기 시작했다. 비명을 질러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맞는데, 너무 두려워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

그렇게 여러 차례 심문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합수단 1국은 정치범죄를, 2국은 깡패 등 사회범죄를, 3국은 경제범죄를 다루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혜성 스님은 합수단 3국에서 심문을 받고 있었으므로, 경제범죄 혐의로 구금이 된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혜성 스님은 수사관들의 질문에 아는 대로만 대답하였다.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닥치는 대로 구타를 해대는 것이었다. 증인을 불러 대질도 시키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면서 부정축재를 했다는 진술을 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혜성 스님에게는 조계종으로부터 체탈도첩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렇게 25일 동안 구금 상태에서 심문을 받고 매일 구타를 당하다 보니 탈장까지 되었다. 무혐의로 풀려난 혜성 스님은 심문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말을 잘 안 들었다고 해서 흥국사로 가서 강제참선을 해야 할 처지였는데, 구타를 당해 탈장이 되는 바람에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였다. 그래서 스님은 중앙대 근처의 성심병원에서 탈장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다.

나중에 체탈도첩의 징계가 풀려 승려의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혜성 스님은 구금 상태에서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두통이 심하고 인간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거기에다 지금은 파킨슨병까지 걸려, 걸을 때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3) 삼보 스님(전 상원사 주지)

상원사 주지를 지낸 바 있는 삼보 스님은 잠시 볼 일을 보기 위해 강원도 횡성군 보광사에 다니러 갔다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보안대 수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 당일인 1980년 10월 27일 새벽 5시에 경찰 1명과 보안대 수사관 3명은 "삼보 스님이냐"고 본인 확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연행 사유를 밝혔다.

"간첩이 한 명 내려왔는데 당신과 접선을 하려고 했다는 진술이 있으니 횡성서로 가서 대질 심문을 하겠다."

수사관들이 "간첩……운운"하는 바람에 삼보 스님은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따라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제1군사령부 보안대로 연행된 삼보 스님은, 콘크리트로 된 골방에 구금되자마자 수사관들의 강요에 의해 승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들은 고무신을 신으라고 했고, 자해 행위를 할까봐 허리띠도 매지 못하게 하였다.

구금 기간 내내 삼보 스님은 수사관들의 심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심문을 통해 조서를 작성하였다. 수사관들은 각자 주어진 임무의 성격에 따라 정보조 · 수사조 · 타격조로 구별이 되어 있었다. 사병들로 이루어진 타격조를 제외하고, 수사관들 대부분은 중사 · 상사 계급을 가진 경력이 많은 부사관들이었다.

수사관들은 심문을 할 때 스님에 대한 예우를 무시했으며, 수시로 폭행과 협박 · 고문 등을 자행하였다. 부사관들로 구성된 정보조나 수사조는 심문을 할 때 뺨을 때리는 정도로 그쳤으나, 타격조인 사병들은 기름을 먹인 탄광용 갱목으로 온몸을 가격하였다. 매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군홧발로 목을 밟았고,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물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도 자백을 하지 않자, 서울의 서빙고분실로 데려가 몸을 가루로 만든 다음 한강에 버리겠다는 협박도 했다는 것이다.

삼보 스님에 대한 수사는 주로 부정축재와 주지 임용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집중되었다.

당시 수사관들이 작성한 기록에 보면, 상원사 주지 시절 삼보 스님이 시주금 1,400만 원 정도를 착복하여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개인 가옥 구입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 정선의 정암사 주지 임용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를 걸었다.

그러나 삼보 스님은 이에 대해 "시주금 횡령과 같은 비위사실은 일체 없었다. 정암사 주지 임명과 관련해서도 전임 주지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동국대 동기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려고 하다 약간의 물의를 일으킨 적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1980년 11월 17일 보안대 수사관들은 삼보 스님에게 앞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면 승려를 하지 않겠다, 다른 승려들을 만나지 않겠다,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 등등 10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결국 스님은 수사관들의 강요에 못 이겨 서약서에 지장을 찍었고, 제1군사령부 법당에 가서 강제로 환속식까지 하게 되었다. 조계종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군사령부에서 체탈도첩을 당한 것이었다.

그 후 삼보 스님은 1980년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다가 삼청교육대(제36사단)에 가서 한 달간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 1981년 1월 4일 자유의 몸이 되었다. 10·27법난 피해자 중에서 삼청교육대에까지 끌려갔던 사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삼보 스님은, 자신이 삼청교육대에까지 입소하여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고통스런 훈련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는 조사받는 동안 상당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마도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생각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삼청교육대에 보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보안대에서 심사를 받을 때 A급과 B급은 형무소로 가고, C급은 삼청교육대에, D급은 훈방 조치되었다고 한다.

10·27법난이 일어난 지 25년이 되던 2005년 8월 1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법률 제정을 언급하였다. 바로 그 직후인 8월 23일 한국일보 송현클럽 강당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 증언보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피해자로 나온 삼보 스님은 증언 도중 할복을 기도하여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2008년 8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다시 한 번 할복을 기도해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조속히 10·27법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4) 혜운 스님(당시 법주사 교무국장)

법주사 교무국장 혜운 스님은 10·27법난 당시 충주 시내에 볼 일이 있어 외출했다가 뒤늦게 사찰에 돌아왔다. 그때 사찰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하여 사찰 내에 머물던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갔던 것이다.

사찰에 남아 있던 사람이 전하기를, 옥천 보안대장이 혜운 스님을 찾는다는 말을 듣

고 청주보안대까지 스스로 찾아갔다. 죄가 없으니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안대에 들어가자 상황은 달랐다. 군인들은 혜운 스님을 다짜고짜 지하 벙커에 가두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다. 심지어 뺨까지 맞자 수행자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혜운 스님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시키려고 자백을 강요하였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죽으면 20만 원으로 장례를 치르면 그만이야."라고 엄포를 주기까지 하였다.

결국 혜운 스님은 고문에 견디지 못해 수사관이 하라는 대로 말했고, 횡령·배임으로 형사 입건되어 청주보안대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교도소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삼청교육대와도 같은 가혹한 기합을 받았다. 봉체조를 시키는데 올라갈 때 '새나라', 내려올 때 '새정치'을 복창하게 하였다. 봉 하나에 10명이 한 조가 되어 100회씩 실시하는데, 태도불량이나 복창불량을 트집삼아 다시 200회 추가 실시를 하도록 했다. 심지어 나중에 힘이 다 쇠진되어 모두들 기진맥진해 있을 때는 봉을 옆구리에 끼고 오리걸음을 걷게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약 20㎏이 나가는 모래가마니를 배 위에 올려놓고 등으로 기어가게 하거나 멍석말이, 엎드려 팔굽혀펴기 등 7~8가지 기합을 주어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를 바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였다.

결국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었던 혜운 스님은, 수사관이 횡령했다고 쓰라고 해서 그대로 써주었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고분고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교도소에서 송장이 되어 나왔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고하였다.

그 후 혜운 스님은 군검찰에 가서 재조사를 받을 때 "제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고, 너무 고문이 심하여 그렇게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계엄령이 해제되어 그는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 이미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체탈도첩이 되어 승려 신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혜운 스님은 미결수로 6개월 복역을 한 후 보석으로 출감하여 계속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그는 7명의 증인을 세웠다. 재판 결과 1심에서 무죄, 2심과 3심에서 역시 무죄가 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혜운 스님은 당시의 고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등이 아프고, 흉통과 이명도 심하

며,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 걷는데도 불편을 겪고 있다. 간혹 어지럼증이 심할 때도 있다.

5) 원철 스님(당시 낙산사 주지)

10·27법난 당시 낙산사 주지였던 원철 스님은, 1980년 10월 27일 새벽 낙산사 경내에 있다가 일명 '영동공사'로 알려진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이때 원철 스님을 비롯하여 낙산사 총무 및 재무 스님, 사무원, 신흥사 사무장 등 총 6명이 함께 연행되어 같은 방에 감금되었다.

원철 스님에 대한 수사는 주로 1977년 낙산사 경내에 세워진 해수관음상 불사와 관련한 사안에 집중되었을 뿐, 심문을 할 때 이렇다 할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스님은 1977년경부터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연행 당시 간경화로 악화된 상태에서 구금되었다. 심문을 받는 동안 요양 및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원철 스님은 구금 22일 만에 풀려났으나 다시 한 달 가량 흥국사로 가서 강제 참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병은 더욱 깊어졌으며, 낙산사로 복귀한 후 주지직을 박탈당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 오래도록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고 1983년 9월경, 원철 스님은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하여 속세 나이로 48세에 입적하였다. 결과적으로 평소 간염 치료를 받던 중 보안대에 연행되어 구금되는 바람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고, 심문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지병을 더욱 악화시켜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6) 설정 스님(당시 수덕사 주지)

수덕사 주지였던 설정 스님의 경우 1980년 10월 27일 새벽 5시에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서는데, 지프차를 타고 나타난 사람들이 갑자기 경내로 들이닥쳐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 일행 중에 홍성의 보안대에 있는 사람과 지서장 얼굴이 낯익었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전부 총을 갖고 있었다.

사무실로 갔더니 설정 스님에게 금고문을 열라고 했다. 매우 강압적이었다. 금고문을 열자 거기에 있는 돈이며 장부며 모든 것을 쓸어 담고, 설정 스님도 연행하였다. 이때

총무와 재무 스님도 함께 연행되었다. 세 명의 승려는 대전 육군 보안대 지하실에 구금되었다.

합수단 수사관은 강제로 승복을 벗기더니 군복을 입으라고 했다. 설정 스님이 "무슨 이유로 이러느냐?"고 묻자, 그들은 "상부의 지시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이라면 죽일 수도 있느냐?"고 항변하자, "그렇다."고 위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처음부터 수사관은 막말과 욕설로 시작했다. 그래서 설정 스님은 "그렇게 (막말을) 하면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너 고문 좀 당해 볼래?"라고 말하며 협박을 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적으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범죄 사실이 없자, 그들은 죄목 하나라도 들춰내기 위해 절 식구들에게까지 찾아가 철저히 조사를 했다.

합수단 수사관은 설정 스님에게 ① 내분 문제, ② 신도 상대, ③ 계약관계, ④ 각 암자 상대, ⑤ 관람비 수불과정, ⑥ 불전 불공비 유용관계, ⑦ 경리장부 일체 확인, ⑧ 은닉재산 유무, ⑨ 전에 있던 곳(서울 홍인사), ⑩ 예비군 훈련 미필여부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비위사실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수사관은 조사 결과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구금 11일 동안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설정 스님은 무혐의로 훈방 조치되었다. 석방 후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회정화위원장이 표창장을 줄 테니 오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군수를 통해 표창장과 금박을 입힌 만년필을 가져왔기에 또 거절했더니, 군수가 그냥 옆에 놓고 가버렸다.

7) 성해 스님(당시 천왕사 주지)

10·27법난 당시 제주 천왕사 주지 성해 스님은 서울 선학원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다시 제주로 가려던 참이었다. 주변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부터 여러 승려들이 군인들에 의해 계엄사에 연행되었으니 당장은 제주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나 성해 스님은 천왕사에서 불사(佛事)한 일밖에 없으니 괜찮다며 1980년 10월 28일 비행기를 탔다가 제주공항에서 곧바로 연행되었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사복군인이 다짜고짜 계엄사령부 제주분실(일명 '한라기업사')로 끌고 가서, 그는 졸지에 어두

운 지하실에 감금된 상태로 취조를 받았다.

처음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사방에 고문기구들이 널렸고, 벽에는 핏자국까지 남아 있어 매우 살벌한 분위기였다. 당시 3명의 수사관이 교대로 욕을 해대며 위협을 가하였다.

수사관들은 이미 천왕사를 뒤져 통장과 재무구조를 알 수 있는 서류들을 압수해 성해 스님에게 내보이며 "어떻게 해서 생긴 돈이냐?"고 다그쳤다.

성해 스님은 1977년부터 천왕사 주지로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1100도로에서 사찰까지 진입로를 포장하고 있었다. 그 지출 내역을 보고 마치 공사비에서 돈을 뒤로 빼돌려 부정축재를 한 것처럼 몰아세웠다. 또한 당시 그는 '포니' 자동차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따져 물은 후 차를 아예 압수해버렸다.

수사관들은 성해 스님에 대해 고문을 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취조하면서 온갖 위협을 하고 언어폭력을 일삼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결국 위협에 못 이겨 천왕사 주지직을 내놓았으며, 아무런 부정이 드러나지 않자 감금 21일 만에 방면해주었다.

그때 주지직만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체탈도첩되어 조계종 승려 자격도 상실한 성해 스님은 당장 어디로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제주도를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한라산 자체도 보기 싫을 정도여서, 서울에 와서 비승비속의 신분으로 선학원에 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였다. 그 후 미국에 가서 포교활동을 하다 귀국해서 법난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사면복권이 되었다.

8) 현우 스님(당시 월정사 부주지)

10·27법난 당시 월정사 부주지로 총무 소임을 맡고 있던 현우 스님은 1980년 10일 27일 새벽 군인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원주에 있는 1군사령부 합수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감금당했을 때 먼저 승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게 했으며, 아무런 죄도 없는데 무조건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심문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고분고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고, 구타와 협박을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다. 현우 스님이 자백할 만큼 지은 죄가 없다고 버티자, 그들은 인정사정 두지 않고 몽둥이로 온몸을 구타했다. 물고문, 전기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도 현우 스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관들의 허위진술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다. 20여 일 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버티자, 더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면서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삼청교육대에서는 봉체조 등 인간으로 체력의 한계를 느낄 만큼 고된 훈련을 받았으며, 매일 전신 구타와 모욕을 당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삼청교육대에서 가혹한 훈련 끝에 풀려나기는 했으나, 현우 스님은 이미 조계종 정화위원회로부터 체탈도첩 처분을 받은 상태라 승려 신분이 아니었다. 그 후 몸과 마음이 병들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오랜 병고에 시달리다 결국 1999년에 지병이 악화되어 입적하였다.

9) 정수 스님(당시 보문사 주지)

보문사 주지로 있던 정수 스님은 지리산으로 해서 부산까지 한 바퀴 돌고 올 생각으로 석모도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 내렸다. 그런데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이 그를 강제 연행하였다.

그때가 10·27법난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980년 10월 26일이었으므로, 정수 스님은 왜 자신이 연행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군인들에게 물어봐도 가보면 안다고만 할 뿐 확답을 주지 않았다. 김포에 있는 헌병대 구치소에 구금이 되고 나서도 영문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는데, 보안대 수사관이 오더니 "심영해가 누구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하자, 다시 오겠다고 하더니 다음날도 와서 똑 같은 질문을 던졌다. 간첩 비슷한 얘기를 해서 아마도 '간첩 사건'으로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월탄 스님이 구치소에 들어왔다.

그때서야 정수 스님은 "아, 종단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구나!"하고 짐작하였다. 1980년 10월 27일로 작전 일자가 잡혀 있었는데, 스님이 사찰에서 벗어나 멀리 출타를 하려는 것을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연행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정수 스님은 합수단의 '45계획'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이었다.

심문을 할 때 수사관은 느닷없이 "절에 50억 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 내놓으라."고 말했다. 정수 스님은 "50억 원이 어디 있느냐? 보문사에 불전이라고 들어오는 돈은 사찰 중건하는 목수들과 석공들에게 다 들어가고 없다."고 대답하였다.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50억 원…… 운운"하기에, 정수 스님은 "절에 50억 원이 있다는데 찾아서 당신들이 쓰고 내게 5억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일종의 항변이었던 것이다.

정수 스님이 구치소에 들어간 지 사흘 후, 수사관들은 군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그때부터 구타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각목으로 어깨와 등을 후려치더니, 고춧가루와 후춧가루를 넣은 물로 물고문을 하였다. 나중에는 그것도 약하다고 생각했던지 대검으로 빙초산 뚜껑을 따더니 물에 타서 코에 수건을 얹고 들이부었다.

물고문으로 통하지 않자, 수사관들은 정수 스님의 양쪽 손목과 발목 네 군데 동맥에 전깃줄을 테이프로 고정시키더니, 전기를 통하게 하여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처음에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까무러쳤다가 살아나니, 그는 오히려 죽겠다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오기로 살아야겠다는 독한 마음이 생겼다.

정수 스님은 김포 헌병구치소에서 수도군단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수도군단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많은 관계로 나중에는 안양교도소를 임시로 빌려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결국 정수 스님은 군법당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계속 연기를 하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수도군단장 명으로 '형 집행 정지'가 되어 풀려났다.

그러나 정수 스님은 이미 조계종 정화중흥회의로부터 체탈도첩 처분을 받아 승려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므로, 교도소에서 나온 후 마땅히 오갈 곳이 없었다. 승적을 박탈당한 사람이 절밥을 먹을 자격도 없고, 어느 절에 가서도 여비 달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면서 척추를 다쳤는데, 그 후유증이 심해 척추 수술까지 받았다. 정수 스님은 수술을 한 후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찌르르 전기가 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팔과 다리가 쑤시고 아팠다고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찌르르한 통증이 전기고문 받을 때를 연상케 하여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까지 하였다.

정수 스님은 그렇게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 2001년에 입적을 하였다.

10) 신흥균(당시 상원사 사무장)

상원사 사무장을 맡고 있던 신흥균 씨는 1980년 10월 27일 새벽 5시경 사복을 입은 군인들 5~6명과 맞닥뜨렸다. 밖은 새벽인 데다 산속이라 냉기가 있어 몹시 추웠다. 그들이 사무장을 찾기에 자신이라고 밝혔더니, 그 방의 서류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챙겼다. 그러고는 조사할 것이 있다며 그를 연행하여 닭장차 같은 버스에 싣고 원주에 있는 보안대로 끌고 갔다.

군인 막사에 들어가니, 군인들은 더블 백을 주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자,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무조건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군인들로부터 직경이 약 3cm 되는 철근으로 온몸을 맞고 군화에 짓밟히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군인들이 신흥균 씨를 때리며 묻는 것은 상원사 주지였던 도명 스님의 거처를 대라는 것이었다. 그는 모른다고 해서 더 맞았다. 일주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저녁에는 원주경찰서 구치소로 가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보안대로 끌려가서 취조를 받았다. 보안대 대원들은 취조실에 들어설 때 몸을 굴려서 들어오고 나갈 때 굴려서 나가라고 명령하기까지 하였다. 그것도 일종의 군기를 잡는 기합이었던 것이다.

무혐의로 보안대에서 풀려난 후 신흥균 씨는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허리 통증이 심하여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다. 허리가 아파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힘든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위원회

위원회는 10·27법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83]에 따라 각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피해실무위,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과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명예실무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실무위 등 3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10·27법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실무위원 및 실무위원장의 구성과 관련한 내용인데, 자격요건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3급·4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구성된 각 실무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때 상정된 안건을 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여 결론을 내리게 된다.

83)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2. 법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3. 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1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가. 피해실무위 개최 현황

피해실무위는 2009년 5월 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도에 5회, 2010년도에 6회, 2011년도에 4회, 2012년도에 4회, 2014년도에 6회, 2015년도에 7회 등 총 3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피해실무위 개회 현황 및 각 회차 피해실무위에 상정된 안건과 심의·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05 피해실무위 개최 현황

회차	일시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결과
제1차	2009. 5. 7.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실무위원 위촉장 수여 • 10·27법난 피해자 등 여부심사 실무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안)	수정안 의결
제2차	2009. 7. 15.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명예회복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판정보류 피해인정
제3차	2009. 8. 25.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 의료지원금 신청 3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4차	2009. 9. 28.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회의운영규칙 제6조 개정(안) • 명예회복 신청 5건 • 의료지원금 신청 7건	원안의결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5차	2009. 12. 15.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4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6차	2010. 2. 2.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4건 • 의료지원금 신청 2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7차	2010. 3. 25.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명예회복 신청 3건	피해인정

회차	일시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결과
제8차	2010. 5. 18.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명예회복 신청 4건 • 의료지원금 신청 2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9차	2010. 7. 8.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명예회복 신청 3건 • 의료지원금 신청 3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10차	2009. 9. 8.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3건 • 의료지원금 신청 2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11차	2009. 11. 19.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명예회복 신청 1건 • 명예회복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제12차	2011. 1. 24.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13차	2011. 4. 11.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 의료지원금 신청 2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14차	2011. 6. 15.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15차	2011. 11. 29.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명예회복 신청 1건 • 명예회복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피해인정
제16차	2012. 4. 26.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명예회복 신청 3건 • 의료지원금 신청 3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17차	2012. 5. 31.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명예회복 신청 27건 • 명예회복 신청 5건 • 명예회복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재심의
제18차	2012. 6. 29.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명예회복 신청 5건 • 명예회복 신청 2건 • 명예회복(피해종교단체) 40건 • 명예회복(피해종교단체) 4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제19차	2012. 11. 30.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명예회복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회차	일시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결과
제20차	2014. 1. 17.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 의료지원금 신청 2건	피해인정 피해인정
제21차	2014. 3. 21.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피해인정
제22차	2014. 6. 17.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명예회복 신청 1건 • 명예회복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제23차	2014. 8. 19.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 명예회복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2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보류 피해인정 보류
제24차	2014. 10. 17.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2건	피해불인정 피해불인정
제25차	2014. 11. 28.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1건 • 명예회복 신청 2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제26차	2015. 1. 19.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 명예회복 신청 3건 • 의료지원금 신청 3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제27차	2015. 3. 9.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 명예회복 신청 6건 • 의료지원금 신청 2건 • 의료지원금 신청 6건	피해불인정 재심의 피해불인정 재심의
제28차	2015. 3. 31.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6건 • 의료지원금 신청 6건	피해불인정 피해불인정
제29차	2015. 5. 12.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4건 • 명예회복 신청 2건 • 명예회복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4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재심의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재심의

회차	일시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결과
제30차	2015. 6. 23.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7명	• 명예회복 신청 2건 • 명예회복 신청 3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3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제31차	2015. 8. 11.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명예회복 신청 5건 • 명예회복 신청 1건 • 의료지원금 신청 5건 • 의료지원금 신청 1건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피해인정 피해불인정
제32차	2015. 11. 18.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명예회복 신청 1건 • 명예회복 신청 1건	피해불인정 피해불인정

나. 피해실무위 회차별 주요 내용

1) 제1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차 회의[84]의 안건으로 10·27법난 피해자 등 여부심사 실무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안)[85]이 상정되었다. 이때 안건 심의에 앞서 먼저 조남진 피해실무위 원장이 정부위원으로 조훈식 국방부 직무감찰관, 백승호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민간위원으로 권상탑 예비역 대령, 최원일 HBstar 부사장, 김봉석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실무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해실무위 간사인 심의지원과장(권영섭 대령)이 위원회 활동 경과, 조직 및 편성, 부서별 소관업무, 업무절차체계, 관계법령 등에 대해 업무소개를 하였다.

업무소개에 이어 안건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심의안건인 10·27법난 피해자 등 여부심사 실무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 6개 조문과 수정안 5개 조문을 의결하였다.[86] 이때 수정·의결된 5개 조문은 제4조(회의운영), 제6조(안건의 심의·의결),

84) 일시/장소: 2009. 5. 7. 14:30~17:0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조훈식·백승호·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6명.
85) 이후 피해실무위는 10·27법난 피해자 등 여부심사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하였다.
86) 최종적으로 의결된 11개 조문 내용은 부록에 실려 있다.

제8조(수당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0조(비밀엄수) 등이다.

표 3-106 제1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87]	안건명	심의결과	비 고
제1-1호[88]	10·27법난 피해자 등 여부심사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안)	원안의결 6개 조문 수정의결 5개 조문	제3차 위원회 상정

2) 제2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차 회의[89]에서는 강만봉의 의료지원금과 이배원의 명예회복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기타 사항으로 피해실무위 제3차 회의 개최(안)과 피해신청 접수현황 및 추진경과를 보고하였다.

안건심의 전에 피해실무위 제1차 회의 때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이형모 국방부 인권담당관에 대해 조남진 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처음으로 피해신청 2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져 피해 인정 1건, 판정보류 1건을 의결하였다.

안건번호 제2-1호의 경우 보안대로 연행되어 폭행당한 사실로 상이를 입었다는 신청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실무위에서는 심의를 거쳐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안건번호 제2-2호의 경우 피해실무위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피해신고 이유가 계엄사 군인들의 검거 시도로 계엄해제시까지 도피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인천의 능인사 주지에서 해임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피해실무위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보류하였다.[90]

---

87) 피해실무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안건번호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건번호를 수정하고 원래 회의 진행 때 상정된 안건번호는 각주로 명기하였다.

88) 원래 안건 번호: 제2009-1호.

89) 일시/장소: 2009. 7. 15. 15:00~17:0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백승호·이형모·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5명.

90) 보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현행법률 적용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각함이 타당하나, ② 국가가 검거 시도라는 공권력 동원, 신청인의 도피 시작과 인천 능인사 주지 해임 등의 정황을 심의에 반영시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③ 법률 개정안 국회심의(가결, 부결) 이후로 심의를 연기할 것 등이다.

표 3-107 제2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1호[91]	의료지원금 신청(강만봉)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5차 위원회 상정
제2-2호[92]	명예회복 신청(이배원: 자신)	명예회복	판정 보류	

3) 제3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3차 회의[93]에서는 심의안건으로 피해자 등 여부심의 4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으로 의결하였다. 안건심의 후 기타 사항으로 피해 조사시 상황별 적용 방안을 보고하였다.

피해실무위 제3차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피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세부 병명별 인정 여부를 피해실무위에서 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피해실무위 제2차 회의 때는 의료실무위에서 개인별로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자료를 근거로 세부 병명별로 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제3차 회의에서는 피해실무위가 세부 병명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능력과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 논의 대상이 되었다. 심의위원 및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단 실무진과의 많은 의견이 오고간 끝에, 세부 병명별 인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안건번호 제3-3호에 대해서는 의료실무위에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져, 회의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상정을 의료실무위 제3차 회의가 끝나는 2009년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였다.[94]

---

91) 원래 안건번호: 제1호.
92) 원래 안건번호: 제2호.
93) 일시/장소: 2009. 8. 25. 15:30~17:5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조훈식·이형모·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6명.
94)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를 준비하는 실무진에게 다소 착오가 있었다. 즉 의료실무위에서 판단하는 의학적 인과관계 자료가 피해실무위 심의 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자료인가에 대해 양 실무자간에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표 3-108 제3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3-1호[95]	의료지원금 신청(김주환: 관후)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5차 위원회 상정
제3-2호[96]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문성경: 혜운)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5차 위원회 상정
제3-3호[97]	의료지원금 신청(신현배: 율봉)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제3-4호[98]	명예회복 신청(류희민: 종근)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5차 위원회 상정

4) 제4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4차 회의[99]의 일반안건으로는 회의운영규칙 제6조(안건의 심의·의결) 개정(안) 1건을 상정하였고,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7명을 상정하였다. 심의 결과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지난 피해실무위에서 세부 병명별로 인정여부를 의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원단 자체 토의를 걸쳐 마련한 피해실무위 회의운영규칙 제6조(안건의 심의·의결) 개정안에 대해 의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후부터는 피해실무위에서 피해자 인정 여부와 더불어 세부 병명별로 피해인정 여부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표 3-109 제4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4-1호[100]	회의운영규칙 제6조(안건의 심의·의결) 개정(안)		원안 의결	제6차 위원회 상정

95) 원래 안건번호: 제3호.
96) 원래 안건번호: 제4, 5호.
97) 원래 안건번호: 제6호.
98) 원래 안건번호: 제7호.
99) 일시/장소: 2009. 9. 28. 15:00~17:05/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백승호·이형모·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6명.
100) 원래 안건번호: 제2009-2호.
101) 원래 안건번호: 제1, 2호.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4-2호[101]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박준석: 석암)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제4-3호[102]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이성휘: 원행)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제4-4호[103]	의료지원금 신청(홍성한: 무외)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제4-5호[104]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신흥균)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제4-6호[105]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박용식: 명선)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제4-7호[106]	의료지원금 신청(최용경: 명연)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제4-8호[107]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김천일: 혜법)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5) 제5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5차 회의[108]는 심의안건으로 피해자 등 여부심의 4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안건 심의 후에는 피해신청 접수 및 조사현황을 보고하였다.

표 3-110 제5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5-1호[109]	채규호(일행)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8차 위원회 상정
제5-2호[110]	정재우(지우)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8차 위원회 상정
제5-3호[111]	박정운(법열)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8차 위원회 상정
제5-4호[112]	이근우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8차 위원회 상정

102) 원래 안건번호: 제3, 4호.
103) 원래 안건번호: 제5호.
104) 원래 안건번호: 제6, 7호.
105) 원래 안건번호: 제8, 9호.
106) 원래 안건번호: 제10호.
107) 원래 안건번호: 제11, 12호.
108) 일시/장소: 2009. 12. 15. 14:00~15:0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백승호 · 이형모 · 권상탑 · 최원일 · 김봉석 위원 등 6명.

6) 제6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6차 회의[113]는 심의안건으로 피해자 등 여부심의 4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표 3-111 제6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6-1호[114]	서승남(윤월)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0차 위원회 상정
제6-2호[115]	황한수(진경)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0차 위원회 상정
제6-3호[116]	정막동(명철)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0차 위원회 상정
제6-4호[117]	김수년(명현)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0차 위원회 상정

7) 제7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7차 회의[118]는 심의안건으로 피해자 등 여부심의 3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회의에 앞서 신임위원 최홍숙 국방부 인권담당관에게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표 3-112 제7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7-1호[119]	윤수만(성해)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1차 위원회 상정
제7-2호[120]	승종봉(법민)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1차 위원회 상정
제7-3호[121]	김종우(도옹)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1차 위원회 상정

109) 원래 안건번호: 제1호.
110) 원래 안건번호: 제2호.
111) 원래 안건번호: 제3, 4호.
112) 원래 안건번호: 제5호.
113) 일시/장소: 2010. 2. 2. 14:00~15:1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백승호·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5명.
114) 원래 안건번호: 제1, 2호.
115) 원래 안건번호: 제2호.
116) 원래 안건번호: 제4, 5호.
117) 원래 안건번호: 제6호.
118) 일시/장소: 2010. 3. 25. 15:00~16:0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최홍숙·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5명.

8) 제8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8차 회의[122]는 심의안건으로 피해자 등 여부심의 4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안건 제8-3호 이배원(자신 스님) 건은 제2차 피해실무위 심의에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 법난 피해자 인정을 의결하였다. 안건 심의 후에는 피해신청서 접수결과 및 심의 현황과 홈페이지 개설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

표 3-113 제8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8-1호	김용오(경우)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의료지원금		
제8-2호	오영준(성면)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의료지원금		
제8-3호	이배원(자신)[123]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제8-4호	이병한(청수)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9) 제9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9차 회의[124]는 심의안건으로 피해자 등 여부심의 3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안건 심의 후에는 2010년도 상반기 위원회 운영결과, 피해신청접수 및 실무위원회 심의현황보고가 이어졌다.

---

119) 원래 안건번호: 제1호.
120) 원래 안건번호: 제2호.
121) 원래 안건번호: 제3호.
122) 일시/장소: 2010. 5. 18. 14:00~16:0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4명.
123) 제2차 피해심사실무위(1009. 7. 15.)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 건의 핵심은 법난 당시 도피자의 경우도 '법난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다. 지원단에서는 법무관 및 군의관에 의한 법률적, 의학적인 검토를 한 결과 도피자의 경우도 법난으로 인한 피해(불안장애 등)를 입었다면 '법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124) 일시/장소: 2010. 7. 8. 15:00~17:0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4명.

표 3-114 제9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9-1호	우홍근(학우)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3차 위원회 상정
제9-2호	이근배(혜성)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3차 위원회 상정
제9-3호	이종석(근식)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3차 위원회 상정

10) 제10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0차 회의[125]는 심의안건으로 피해자 등 여부심의 3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회의에 앞서 신임위원 유동주 국방부 직무감찰 담당관에게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안건 심의 후에는 피해신청 접수 및 실무위원회 심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표 3-115 제10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0-1호	윤흥식(덕산)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4차 위원회 상정
제10-2호	한영수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4차 위원회 상정
제10-3호	김천석(회광)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4차 위원회 상정

11) 제11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1차 회의[126]는 심의안건으로 피해자 등 여부심의 3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피해 인정 1명, 피해 불인정 2명을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안건번호 제

125) 일시/장소: 2010. 9. 8. 15:00~17:0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백승호·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6명.

126) 일시/장소: 2010. 11. 19. 15:00~17:0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4명.

11-3호(김천일, 혜법 스님 신청건)의 경우는 재심을 신청한 건으로, 추가하여 피해 신청한 상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3-116 제11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1-1호	장○○(연○)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15차 위원회 상정
제11-2호	성성환(청욱)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15차 위원회 상정
제11-3호	김천일(혜법)[127]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5차 위원회 상정
		의료지원금		

12) 제12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2차 회의[128]는 심의안건으로 피해자 등 여부심의 2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안건 심의 후에는 2010년 주요사업 추진결과와 현 전쟁기념관 4층에서 조계사 앞 동덕빌딩 9층으로의 사무실 이전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피해신청 접수와 조사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117 제12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2-1호	전종윤(운덕)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6차 위원회 상정
제12-2호	김기곤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6차 위원회 상정
		의료지원금		

127) 피해실무위 제4차 회의(2009. 9. 28.) 및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2009. 11. 9.)에서 피해자로 인정 및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까지 완료되었으나, 그 이후에 추가로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2010. 5. 3.)을 청구함으로써 이날 재심의를 하게 되었다. 또한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2010. 9. 14.)에서는 이 문제를 정식안건(안건명: 재심심사 기간 중 추가신청서 제출건의 업무처리안)으로 채택하여 추가신청 건을 병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128) 일시/장소: 2011. 1. 24. 15:00~16:00/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5명.

13) 제13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3차 회의[129]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2명을 상정하였고, 심의 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안건 심의 후에는 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심의 및 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피해신청 접수 및 조사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118 제13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3-1호	오인근(법달)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7차 위원회 상정
제13-2호	김도학(허현)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7차 위원회 상정

14) 제14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4차 회의[130]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2명을 상정되었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안건 심의 후에는 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피해신청 접수현황 및 조사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119 제14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4-1호	김삼형(현철)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18차 위원회 상정
제14-2호	김각경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18차 위원회 상정

129) 일시/장소: 2011. 4. 11. 15:00~16: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 · 권상탑 · 최원일 · 김봉석 위원 등 5명.

130) 일시/장소: 2011. 6. 15.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 · 권상탑 · 최원일 위원 등 4명.

15) 제15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5차 회의[131]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2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피해 인정 1명, 피해 불인정 1명으로 의결하였다.

제15-1호 송현섭(월주) 건에 대해서는 위원 간에 많은 토의가 있었다. 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강제 연행되어, 구금 및 강압조사를 받은 사실은 종단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인정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상이가 없어도 당시 정신적 피해는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로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행법에 따라 신청인의 상이가 없다는 진술 및 자료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 불인정' 의견으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자는 데 대해 실무위원들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안건 심의 후에는 실무위원회, 피해신청 접수 및 조치 현황, 위원회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시행규칙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표 3-120 제15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5-1호	송현섭(월주)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132]
제15-2호	서영숙(월궁)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료지원금		

16) 제16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6차 회의[133]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3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신청 건 모두 피해자 인정을 의결하였다.

안건 심의 후에는 입적 승려 상이여부 심의 관련 보고가 있었다. 실무위원들은 입적 승려 참고인 등 조사시 상이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토록 하며, 피해실무위에서 심의시

131) 일시/장소: 2011. 11. 29.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5명.
132) 송현섭(월주)의 경우 심의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안건 상정이 되었으나 판정이 보류되었다가, 심의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133) 일시/장소: 2012. 4. 26.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4명.

의료실무위의 상이 인과관계 판단자료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해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계종일괄대리신청 관련 보고에 대해서는,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처리방안 및 신청서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3-121 제16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6-1호	배두관(철우)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6-2호	황태로(종래)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6-3호	하태용(성조)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17) 제17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7차 회의[134]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 심의 33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신청 건에 대해 피해 인정 27건, 피해 불인정 5건, 재심의 1건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안건번호 제17-27호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 후 재심의를 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32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한편 조계종에서 대리 신청한 입적 승려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 건 중 2명의 승려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22 제17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7-1호	박주식(진설)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호	서병식(정대)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134) 일시/장소: 2012. 5. 31. 16: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4명.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7-3호	임점택(원광)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4호	황기연(오현)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5호	장인찬(희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6호	이상열(현우)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7호	김한기(서운)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8호	최종열(월산)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9호	박한남(광진)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0호	윤희중(월하)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1호	박인수(청하)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2호	백식화(현광)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3호	이○○(서○)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4호	조학주(학능)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5호	김기태(천장)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6호	정기철(정수)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7호	가○○(성○)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8호	김연수(지성)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19호	고○○(태○)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0호	임동철(정산)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1호	홍상길(성진)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2호	이경환(현광)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3호	김○○(태○)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4호	이재명(자순)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5호	배○○(송○)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6호	김희현(능혜)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7호	정○○(영○)	명예회복	자료보완 재심의	
제17-28호	김강웅(도명)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29호	최영권(원철)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30호	남익순(대충)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31호	김형묵(기성)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32호	조운석(대정)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7-33호	정희자(명성)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18) 제18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8차 회의[135]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개인 피해자 7명과 피해종교단체 45건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개인 피해자 신청에 대해 피해 인정 5명, 피해 불인정 2명을 의결하였다. 또한 피해종교단체의 경우 피해인정 40건, 피해 불인정 4건을 의결하였다.

표 3-123 제18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8-1호	김○○(국○)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호	여옥희(문성)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호	박○○(거○)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호	권장수(도현)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5호	홍현희(봉주)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6호	김홍규(금용)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7호	정○○(영○)[136]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8호	조계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9호	신흥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10호	월정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11호	법주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12호	마곡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13호	은해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14호	불국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15호	범어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16호	화엄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135) 일시/장소: 2012. 6. 29. 16: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4명.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8-17호	대흥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18호	도선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19호	홍은암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0호	성불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1호	심광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2호	상원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3호	표충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4호	반룡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5호	명봉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6호	대자암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7호	광흥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8호	능인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29호	덕암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0호	관음사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1호	천왕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2호	서산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3호	백련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4호	정경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5호	용주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6호	동화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7호	통도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8호	고운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39호	백양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0호	보문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1호	용봉사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2호	선운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3호	내장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4호	증심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5호	적조암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6호	연주암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8-47호	백담사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8호	상원사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137]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49호	낙산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50호	대한불교조계종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51호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제18-52호	대한불교조계종 ○○신문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19) 제19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19차 회의[138]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1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표 3-124 제19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19-1호	박대홍(법등)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4차 위원회 상정

20) 제20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0차 회의[139]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개인 피해자 2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136) 제17차 피해심사실무위(2012. 5. 30.)에서 재심의 의결되었던 건이다.
137) 제18-22호와 중복 신청하였다.
138) 일시/장소: 2012. 11. 30.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유동주·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4명.
139) 일시/장소: 2014. 1. 17.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강태서·김기영·권상탑·김봉석 위원 등 5명.

표 3-125 제20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0-1호	조강원(중하)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7차 위원회 상정
제20-2호	박무홍(오설)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27차 위원회 상정

21) 제21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1차 회의[140]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개인 피해자 2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표 3-126 제21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1-1호	박태일(현소)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9차 위원회 상정
제21-2호	허인환(성운)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29차 위원회 상정

22) 제22차 회의

제22차 피해실무위[141]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2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피해 인정 1명, 피해 불인정 1명을 의결하였다.

표 3-127 제22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2-1호	최현인(정혜)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1차 위원회 상정
제22-2호	김○○(법○)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1차 위원회 상정

140) 일시/장소: 2014. 3. 21.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강태서·하상구·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6명.

141) 일시/장소: 2014. 6. 17.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강태서·하상구·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5명.

23) 제23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3차 회의[142]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개인 피해자 3명을 상정하였으며, 심의결과 2명은 피해 인정, 1명은 피해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후 차기 피해실무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표 3-128 제23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3-1호	김중건(자성)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2차 위원회 상정
제23-2호	이기남(자항)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2차 위원회 상정
제23-3호	김○○(자○)[143]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보류(재논의)	미상정

24) 제24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4차 회의[144]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2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피해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제24-2호(김○○: 자○)는 법난 현장의 단순 목격자이므로 피해실무위에서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표 3-129 제24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4-1호	성성환(청욱)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3차 위원회 상정
제24-2호	김○○(자○)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3차 위원회 상정

142) 일시/장소: 2014. 8. 19. 16:00~17:2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하상구·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5명.

143) 제23-3호 김○○(자○)의 경우 사찰에 들어온 군인들에게 다른 승려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피해신고를 하여, 피해실무위에서 신청인이 군인들에게 직접 폭행, 연행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

144) 일시/장소: 2014. 10. 17.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강태서·박진영·하상구·권상탑·김봉석 위원 등 6명.

25) 제25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5차 회의[145]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3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1명에 대해서는 피해 인정, 2명에 대해서는 피해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표 3-130 제25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5-1호	김○○(도○)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34차 위원회 상정
제25-2호	최○○(성○)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34차 위원회 상정
제25-3호	주○○(대○)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34차 위원회 상정

26) 제26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6차 회의[146]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개인 피해자 6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3명에 대해서는 피해 인정, 3명에 대해서는 피해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제26-1호 성성환(청욱)의 경우 위원회에서 피해 불인정으로 의결되어 재심을 신청한 건인데, 재조사시 신청인이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되어 피해 인정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제36-3호, 제36-4호의 경우 법난 당시 단순 현장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전 심의에서 단순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과 동일하게 피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표 3-131 제26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6-1호	성성환(청욱)[147]재심 신청건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제26-2호	정동군(삼오)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145) 일시/장소: 2014. 11. 28. 16:00~17:2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강태서·박진영·하상구·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6명.
146) 일시/장소: 2015. 1. 19.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박성락·박진영·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6명.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6-3호	김○○(명○)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제26-4호	김○○(화○)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제26-5호	김○○(법○)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제26-6호	이건호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27) 제27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7차 회의[148]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개인 피해자 8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2명에 대해서는 피해 불인정을 의결, 6명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불인정된 제27-1호의 경우 의료실무위에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제27-2호의 경우 신청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재심의 결정된 6건의 경우 신청인들의 진술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차기 피해실무위에서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3-132 제27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7-1호	임○○(보○)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6차 위원회 상정
제27-2호	박○○(도○)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6차 위원회 상정
제27-3호	박○○(도○)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재심의	

147) 제33차 위원회에서 피해자 불인정 의결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건이다.
148) 일시/장소: 2015. 3. 9. 16:00~17: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박성락 · 최주원 · 권상탑 · 최원일 · 김봉석 위원 등 6명.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7-4호	문윤식(법장)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재심의	
제27-5호	반○○(혜○)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재심의	
제27-6호	박○○(보○)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재심의	
제27-7호	최○○(수○)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재심의	
제27-8호	하○○(정○)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재심의	제36차 위원회 상정

28) 제28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8차 회의[149]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개인 피해자 6명을 상정하였고[150], 심의결과 6명에 대해서 모두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피해자 불인정이 결정된 이유는 법난 당시 같은 사찰 및 장소에 있었던 신청인들의 진술이 상이하고, 신청인들 이외의 참고인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로 인정할 근거가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표 3-133 제28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8-1호	박○○(도○)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제28-2호	문윤식(법장)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제28-3호	반○○(혜○)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149) 일시/장소: 2015. 3. 31. 16:00~17: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박성락·박진영·최주원·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6명.

150) 지난 27차 피해실무위에서 재논의가 결정되어, 이번 제28차 피해실무위에서 재심의를 하였다.

안건번호	안건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8-4호	박○○(보○)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제28-5호	최○○(수○)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제28-6호	하○○(정○)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29) 제29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29차 회의[151]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7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피해 인정 4명, 피해 불인정 2명, 재심의 1명을 의결하였다.

표 3-134 제29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29-1호	윤동암(일선)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재심의	제38차 위원회 상정
제29-2호	전보원(보원)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제29-3호	이도성(도성)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제29-4호	진○○(천○)	명예회복	피해 불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제29-5호	천성봉(도만)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제29-6호	류광수(지호)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제29-7호	한정기(자용)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151) 일시/장소: 2015. 5. 12. 16:00~17: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박성락 · 박진영 · 최주원 · 권상탑 · 최원일 위원 등 6명.

30) 제30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30차 회의[152]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개인 피해자 5명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피해 인정 2명, 피해 불인정 3명을 의결하였다.

표 3-135 제30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30-1호	이법철(법철)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제30-2호	전득수(설정)	명예회복	피해 인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제30-3호	최○○(진○)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제30-4호	윤동암(일선)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제30-5호	김광회(진우)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31) 제31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31차 회의[153]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심의 개인 피해자 6명[154]을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피해 인정 5명, 피해 불인정 1명을 의결하였다.

표 3-136 제31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31-1호	김○○(법○)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152) 일시/장소: 2015. 6. 23. 16:00~17: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백승필·박진영·최주원·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7명.
153) 일시/장소: 2015. 8. 11.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백승필·최주원·권상탑·최원일·김봉석 위원 등 6명.
154) 제31차 피해실무위의 안건은 모두 위원회에서 피해자 불인정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건이다.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31-2호	문윤식(법장)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제31-3호	박○○(도○)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제31-4호	이도성(도성)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제31-5호	김광회(진우)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제31-6호	윤동암(일선)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32) 제32차 회의

피해실무위 제32차 회의[155]의 심의안건으로는 피해자 등 여부 재심의 1명을 상정하였다. 신청인은 지난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당시 중요 진술을 한 참고인이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여 재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결과 피해 불인정을 의결하였다.

표 3-137 제32차 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신청유형	심의결과	비 고
제32-1호	박○○(도○)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피해 불인정	제42차 위원회 상정

155) 일시/장소: 2015. 11. 18. 14:00~14: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조남진 위원장, 백승필·박진영·권상탑·최원일 위원 등 5명.

2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가. 명예실무위 개최 현황

명예실무위 회의는 2009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4월 14일 제29차 회의까지 모두 29차례 개최하였다.

2009년 5월 8일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정부 및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개최된 명예실무위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4차례, 2010년 5차례, 2011년 3차례, 2012년 3차례, 2013년 1차례, 2014년 3차례, 2015년 7차례, 그리고 2016년 3차례 등 2016년까지 총 29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차별 명예실무위에 상정된 안건과 심의·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38 명예실무위 개최 현황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1차	2009. 5. 8.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윤원호 위원장(이하 위원장), 김정철, 김재철, 허동윤, 정석원, 김영주 (6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 심의 전 실무위원 5명 위촉장 수여 • 심의결과 –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안) [원안의결]
제2차	2009. 7. 8.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김정철, 김재철, 전종호, 정석원, 김영주 (6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1건 * 심의 전 실무위원 1명(전종호) 위촉장 수여 • 심의결과 –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안) [위원회 위임] – 명예회복방안연구용역 검토사항 [보고]
제3차	2009. 12. 4. / 전쟁기념관 4층 대회의실	위원장, 김재철, 허동윤, 정석원, 김영주 (5명)	• 심의안건: 보고 1건 • 심의결과 –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최종본(초안) [보완 후 재심의키로 의결]
제4차	2009. 12. 15.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김정철, 정석원, 김영주 (4명)	• 심의안건: 보고 1건 • 심의결과 –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최종본(수정안) [보고]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5차	2010. 1. 26.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김재철, 정석원, 김영주 (4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 심의결과 – 10·27법난 명예회복추진 실무지침서(안) [수정의결]
제6차	2010. 5. 28.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김정철, 정석원, 김영주, 박성락 (5명)	• 심의안건: 토의 2건 • 심의결과 –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추진 시기별 검토 [토의] – 역사교육관 건립 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검토 [토의]
제7차	2010. 7. 21.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김정철, 민병원, 허동윤, 정석원, 김영주 (6명)	• 심의안건: 의결 2건, 보고 3건 • 심의결과 – 역사교육관 건립계획 수정(안) [위원회 위임] – 2010년도 법난기념행사 지원(안) [원안의결] – 2010년 전반기 추진업무 성과/분석 [보고] – 10·27법난 기념행사관련 보조사업 행정절차 [보고] –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보고]
제8차	2010. 11. 25. / 전쟁기념관 4층 대회의실	위원장, 김정철, 민병원, 정병택, 김영주 (5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 심의결과 – 10·27법난 3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금액 확정 및 행사결과 평가 [보완 후 차기 회의 재상정]
제9차	2010. 12. 2. / 전쟁기념관 4층 소회의실	위원장, 김정철, 민병원, 김영주 (4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2건 • 심의결과 – 10·27법난 30주년기념행사 보조금 금액 확정 및 행사결과 평가 [원안의결] – 수시연구용역(피해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명예회복방안) 추진계획(안) [재의결] –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분석 [보고]
제10차	2011. 4. 11.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김정철, 정병택, 김영주 (4명)	• 심의안건: 의결 2건, 보고 2건 • 심의결과 – 2012년도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편성(안) [보완 후 차기 회의 재상정] –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관련 예산편성(안) [원안의결] – 국내외 과거사위원회 명예회복방안 조사내용 [보고] –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개인별 카드 견본 [보고]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11차	2011. 4. 19.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박성락, 허병윤, 정병택, 김영주 (5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 심의결과 – 2012년도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편성(안) [원안 의결] ※ 2012년도 역사교육관 예산을 804억 원으로 편성하고 사업명칭을 '10·27법난 피해자를 위한 역사교육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함.
제12차	2011. 9. 21.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김정철, 도재경, 황원채, 허동윤, 정병택, 김영주 (7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1건 • 심의결과 – 2011년 10·27법난 기념행사 관련 조계종의 국가보조금 신청의 건 [원안 의결] – 10·27법난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방안 학술연구용역 발주 현황 [보고]
제13차	2012. 4. 18.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도재경, 황원채, 정병택, 김영주 (5명)	• 심의안건: 의결 2건 • 심의결과 – 2011년도 법난 제31주년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결산(안) [원안의결] –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계획(안) [일부 의결] ※ 해외역사순례사업: 전면 재검토
제14차	2012. 6. 5.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도재경, 허동윤, 정병택 (4명)	• 심의안건: 의결 2건, 보고 2건 • 심의결과 –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계획(안) [원안의결] ※ '기념사업' 용어 사용 재검토 – 2013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안) [원안의결] – 명예회복방안 학술연구용역 경과 [보고] – 역사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
제15차	2012. 10. 18.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김정철, 도재경, 정병택 (4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2건 • 심의결과 –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계획(안) [원안의결] – 조계종, 명예실무위원 추가위촉 관련 [보고] – 2013년도 명예회복추진 예산요구 관련 진행[보고]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16차	2013. 9. 27.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박재민, 문태선, 허동윤, 정병택 (5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1건 • 심의결과 – 2013년 10·27법난 기념행사 관련 조계종의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원안의결] – 위원회 행정조직 개편 현황 [보고]
제17차	2014. 2. 26.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허동윤, 김승규, 정병택, 김영주 (5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2건 • 심의결과 – 2014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심의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원안의결] – 기념관 건립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 – 2013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 평가 및 결산 [보고]
제18차	2014. 5. 15.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김승규, 안수현, 문태선, 허동윤, 김영주 (6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2건 • 심의결과 –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 심의 및 2015년 예산편성 요구의 건 [원안의결] – 과거사 관련 기념관 현장조사 출장 결과 [보고] – 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
제19차	2014. 10. 1.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김승규, 김주용, 허동윤, 정병택, 김영주 (6명)	• 심의안건: 보고 3건 • 심의결과 – 법난기념관 건립 진행상황 및 주요현안 [보고] –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마련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 2014 법난 기념행사 진행상황 및 주요일정 [보고]
제20차	2015. 1. 21.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김승규, 김주용, 허동윤, 정병택, 김용구 (6명)	• 심의안건: 보고 2건 • 심의결과 – 2015년 명예회복지원과 업무계획(안) [보고] – 10·27법난 피해자 캄보디아 역사순례 출장 결과 [보고]
제21차	2015. 3. 5.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김승규, 김주용, 허동윤, 정병택, 김용구 (6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2건 • 심의결과 – 2015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심의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원안의결] – 2014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 평가 및 결산 [보고]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초안) 및 향후 계획 [보고]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22차	2015. 5. 6.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송병호, 김주용, 허동윤, 정병택 (5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1건 • 심의결과 – 2016년 기념관 건립 예산편성(안) 요구의 건 [원안의결] – 10·27법난 피해자 초청(1·2차) 간담회 결과 [보고]
제23차	2015. 7. 14.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송병호, 유동준, 허동윤, 김용구, 윤승환 (6명)	• 심의안건: 보고 3건 • 심의결과 – 10·27법난기념관 추진현황 [보고] – 활동보고서 발간 기획(안) [보고] – 명예회복조치(안) 마련을 위한 실무소위원회 구성의 건 [보고]
제24차	2015. 10. 13.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유동준, 나치만, 허동윤, 윤승환, 양원준 (6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보고 2건 • 심의결과 –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 방안(안) [원안의결] – 기념관 건립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 명예회복조치 마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제25차	2015. 11. 11.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송병호, 나치만, 허동윤, 윤승환, 양원준 (6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 심의결과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 [원안의결]
제26차	2015. 12. 10.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송병호, 윤승환, 양원준 (4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 심의결과 – 10·27법난 피해자(입적 승려 ·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 [원안의결]
제27차	2016. 1. 18.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유동준, 나치만, 윤승환, 양원준 (5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 심의결과 – 10·27법난 피해자(입적 승려 · 생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 [일부 수정의결]
제28차	2016. 3. 17.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송병호, 유동준, 나치만, 허동윤, 양원준 (6명)	• 심의안건: 의결 2건, 보고 1건 • 심의결과 – 미 신청 피해종교단체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및 명예회복조치(안) [원안의결] – 2016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원안의결] – 2015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29차	2016. 4. 14. / 위원회 회의실 (동덕빌딩 9층)	위원장, 송병호, 유동준, 나치만, 허동윤, 윤승환, 양원준 (7명)	• 심의안건: 의결 1건 • 심의결과 – 「2017년 기념관 건립」 예산편성(안) 요구의 건 [원안의결]

나. 명예실무위 주요 심의 · 의결 사항

1) 명예실무위 회의운영규칙(안)

명예실무위는 2009년 5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안)〉(안건번호 제2009-1호)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의결 내용은 전체 12개 조문 가운데 원안의결 7개 조문, 수정의결 5개 조문이었다. 이날 수정 · 의결한 5개 조문은 제2조(명예회복 대상 및 정의), 제3조(기능), 제5조(회의운영), 제7조(안건의 심의 · 의결), 제9조(수당 등)이다.[156]

2)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관 건립(안) 및 예산편성 요구

명예실무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역사교육관[157] 건립계획(안) 및 관련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009년 7월 8일에는 제2차 회의를 열고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관 건립(안) 지원내용 의결에 관한 사항〉(안건번호 제2009-2호)[158]을 심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예산규모(1,500억 원)의 타당성 여부와 검토가 필요하다.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인데 가장 중요한 절차가 생략되었으므로 심의가 무의미하다.", "구체적인 건립 장소, 예산 규모를 결정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명예실무위는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역사교육관 지원과 관련하여,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관

156) 최종 의결된 회의운영규칙 12개 조문의 내용은 본 백서의 부록에 첨부하였다.
157) 2013년 5월 22일 일부 개정된 법률에서 '기념관'이라 칭하기 이전까지 기존 법령에서는 '역사교육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58) 심의를 위해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요약본)을 먼저 보고하였다.

건립과 관련한 예산규모와 장소의 결정을 10·27법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한다.” 라고 안건의결을 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명예실무위는 2010년 5월 28일 제6차 회의에서 〈역사교육관 건립 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검토〉를 토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 지원단에서는 “역사교육관 건립비용과 관련하여 건립비, 설계비 등 총 1,500억 원을 반영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도 세출예산에 기초조사 설계비로 23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건립부지 미선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2011년에도 212억 7,400만 원을 역사교육관 건립 소요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낙산사 인접지역에서 조계사 인접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조계종의 움직임은 있으나,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 위원회(지원단)에 정식으로 접수된 공문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회의에서는 “역사교육관 건립 부지의 선정이 시급한 문제다. 사업진행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계종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종합의견으로 “조계종의 회신공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이후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자.”고 논의하였다.

조계종에서는 2010년 6월 8일 역사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 장소를 강원도 낙산사에서 서울 조계사로, 사업비 지원방식을 국가 직접 시행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을 약 1,500억 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조계사 일원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총 비용 2,942억 원 가운데 1,51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역사교육관 건립계획 수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명예실무위는 2010년 7월 8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역사교육관 건립계획 수정(안)〉(안건번호 제2010-4호)을 상정하고 심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역사교육관 건립 부지 변경과 소요예산, 사업비 지원방식 등의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법령의 취지 부합 여부 등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기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이에 대한 안건심의를 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위원회 지원단에서는 조계종으로부터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2011년 4월 11일 명예실무위 제10차 회의에 〈2012년도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편성(안)〉

(안건번호 제2011-01호)을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계종이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계획(안)을 제출해옴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2012년도 역사교육관 예산을 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근거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의결'하였다.

조계종은 2011년 4월 13일 사업명을 '국민과 함께하는 조계사일원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으로 정하기로 하고, 사업 부지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남측 부지로 변경하였다. 또한 사업비 항목을 건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2012년도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을 804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역사교육관 건립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명예실무위는 2011년 4월 19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편성(안)〉(안건번호 제2011-03호)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조계종이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계획(안)을 제출해옴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2012년도 역사교육관 예산을 804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사업명칭을 '10·27법난 피해자를 위한 역사교육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의결하였다.

3)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 심의 및 예산편성 요구

2013년 5월 22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8월 23일 같은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 제6조의 '역사교육관 건립' 조문이 법률 제3조의 '기념관 건립'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명예실무위는 2014년 2월 26일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념관 건립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2009년부터 검토가 이루어진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4년을 기점으로 원점에서 기념관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진행상황, 조계종 총무원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조계종에서는 2014년 5월 12일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 제출의 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사업추진주체는 조계종 총무원이며, 추진방법은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종로구 소재 조계사 내에 기념관과 치유시설 등 2동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조계종의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에서는 국고보조금 1,530억 원(90%)과 자부담

153억 원(10%) 등 총사업비는 1,687억 5,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부지매입비의 70%인 534억 9,700만 원과 기본조사 설계비 6억 1,600만 원 등 541억 1,300만 원을 2015년 예산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명예실무위는 2014년 5월 15일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 심의 및 2015년 예산편성 요구의 건〉(안건번호 2014-02호)을 심의하였다. 안건 심의 결과 2015년 기념관 건립 예산을 541억 1,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키로 하고,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159]

명예실무위는 2015년 5월 6일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기념관 건립 예산편성(안) 요구의 건〉(안건번호 2015-02호)을 심의하였다. 이에 앞서 조계종에서는 2015년 4월 29일 기념관 건립의 사업개요, 건립부지 현황, 공간배치 계획, 운영 콘텐츠[160], 사업 추진일정, 사업비 구성 및 연도별 예산규모,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2016년도 건립예산 신청의 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조계종은 여기서 총사업비 1,687억 원 가운데 토지매입비 582억 1,800만 원, 건설비 44억 7,300만 원(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등 총 626억 9,100만 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안건 심의 결과 원안대로 2016년 기념관 건립 예산을 626억 9,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명예실무위는 2016년 4월 14일 제29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기념관 건립 예산편성(안) 요구의 건〉(안건번호 2016-76호)을 심의하였다. 사무처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2015년 8월 기재부에서 확정한 기념관 건립 총사업비 1,670억 1,7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예산규모에 2015년 불용예산 18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요청하였다. 안건 심의 결과 2017년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토지·건물매입비 180억 1,500만 원, 공사비 32억 1,500만 원, 시설부대경비 15억

159) 회의에서는 부지 선정 등 사업계획의 부재로 그동안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서 2014년 안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산편성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왜 새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지으려는 건지,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치료를 하는 기관인지 그냥 치료에 도움을 주는 곳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문화재 시굴 및 처리 예산, 사유지 매입의 원활한 추진 등 난제들을 잘 대비해서 예산 설명 자료를 만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160) 건립될 2개동의 건물 중 1동은 전사교육·연구·공연 시설, 2동은 치유시설 위주로 예정하고 있다.

5,000만 원 등 총 227억 8,000만 원을 편성·요구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4) 10·27법난 기념행사 관련 예산 지원 및 결산(안)

명예실무위는 2010년부터 매년 회의를 열고 10·27법난 기념행사와 관련한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에 대해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2010년 7월 21일, 명예실무위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안)〉(안건번호 제2010-05호)을 심의하였다. 조계종에서 제출한 2010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계획(안)의 주요 사업은 10·27법난 30주년 기념법회를 위시하여 피해자 간담회와 세미나, 연극제(연극 〈뜰 앞의 잣나무〉) 공연 등이다. 회의에서는 2010년도 법난 기념행사 지원예산으로 1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10·27법난 30주년 기념행사가 종료된 후 주관단체인 조계종은 2010년 11월 2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명예실무위는 2010년 11월 25일 제8차 회의를 열고 〈'10·27법난 3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금액 확정 및 행사 결과 평가〉(안건번호 제2010-06호)를 심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계종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금액이 내용상 하자가 발생하여[161] 윤원호 위원장의 직권으로 보완을 한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조계종에서 기념행사 정산보고서를 수정·제출해옴에 따라, 2010년 12월 2일 개최한 제9차 회의에서는, 제8차 실무위에서 1차 심의했던 안건을 2차로 다시 심의하였다. 이때 참석 위원들 간에 별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조계종에서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계획(안)〉을 제출해옴에 따라, 위원회는 청사 이전[162] 이후 처음으로 2011년 4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명예실무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관련 예산편성(안)〉(안건번호 제2011-02호)을 심의한 바, 원안 그대로 국고보조금을 기존 1억 원에서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163]

---

161) 조계종에서 제출한 정산내용은 기념행사비로 1억 원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조계종 측의 업무행정상의 착오로 위원회가 지원하는 기념행사 지원예산 1억 원에 대한 정산금액과 일치하여야만 하였다.

162) 위원회는 2011년 3월 10일 청사를 전쟁기념관에서 현재 위치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소재 동덕빌딩 9층으로 이전하였다.

163) 회의에서 명예실무위 위원장은, 10·27법난 기념행사는 피해 사찰, 피해 승려 등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추

명예실무위는 2011년 9월 21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관련 조계종의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164]〉(안건번호 제2011-04호)을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에 의견이 오고간 끝에 2011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에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조계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그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2012년 4월 11일 개최한 명예실무위 제13차 회의에서는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 결산과 2012년도 예산집행의 건이 동시에 심의안건으로 다루어졌다. 〈2011년도 10·27법난 제31주년 기념행사 국가보조금 결산(안)〉(안건번호 제2012-01호)은 심의결과 원안 그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다.[165]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인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계획(안)〉(안건번호 제2012-02호)을 심의하였다.

2012년 4월 16일 조계종에서는 해외역사순례(캄보디아), 기념법회와 천도재, 기념음악회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제32주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비 신청서 제출의 건〉을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위원들 간에 의견이 오고간 끝에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는, 해외역사순례사업의 경우 전면 재검토하고 기타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조계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부분인정 의결하였다.

2012년 6월 5일 개최한 명예실무위 제14차 회의에서는, 제13차 회의에서 부분인정 의결한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계획(안)〉(안건번호 제2012-03호)을 재심의하였다. 심의결과 해외역사순례사업을 취소하고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발표회(세미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조계종의 제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안)〉(안건번호 제2012-04호)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조계종이 제출한 2013년도 기념행사의 주요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 초청법회(서울, 부산), 법난 33주년 기념 세미나,

---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64) 2011년 9월 9일 조계종에서는 독후감공모전, 기념법회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10·27법난 제31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신청서 수정 제출의 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명예실무위는 이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을 심의하였다.

165) 회의에서는 ① 상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행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② 피해자승려 배려 및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③ 행사평가 주요내용은 2012년 법난 기념행사 지원 시 판단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극 〈뜰 앞의 잣나무〉 순회공연, 장엄물 제작 및 전시 등이다. 안건 심의 결과 조계종의 제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국고보조금을 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다.[166]

조계종에서는 2012년 10월 17일 10·27법난 기념법회 및 추모음악회,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발표회(세미나),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등 5개 도시 순회 기념법회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10·27법난 제32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신청서 제출의 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명예실무위는 2012년 10월 18일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계획(안)〉(안건번호 제2012-05호)을 상정하였다. 안건 심의 결과 2012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을 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167]

명예실무위는 2013년 9월 27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계종에서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2013년 10·27법난 기념행사 관련 조계종의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안건번호 제2013-01호)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조계종에서 2013년 9월 3일 위원회에 제출한 〈제33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신청서 제출의 건〉은 국고보조금을 2억 원으로, 추모문학 예술제, 대학생 포럼 및 캠프, 제주·광주·경남·경북·충청 등 지역순회 강연 및 간담회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안건 심의 결과 2013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을 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다.

명예실무위는 2014년 2월 26일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를 받고 〈2014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심의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안건번호 제2014-01호)을 심의하였다. 조계종은 2014년 2월 20일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세미나, 10·27법난 특별강연 및 청년캠프, 10·27법난 피해자 캄보디아 역사순례, 대전·강원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순회강연 및 간담회, 현장탐방-'국가폭력, 성찰과 치유의 길을 찾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2014년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의 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안건 심의 결과 2014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166) 회의에서는 ① 위원회 활동기한(2013년 6월) 고려 기념행사 일정의 적절성 토의, ② 기념행사 관련 조계종 요청금액의 적절성 토의, ③ 기념법회 및 추모제의 지역형평성 조계종에 건의 요청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167) 회의에서는 지방순회법회 산출근거에 맞춰 지출항목 기재 및 정부지침 준용 권고, 지출항목 등 기념행사 지출 및 정산결과 관리 철저, 피해 승려 참여율 제고 및 명예회복을 위한 행사진행 준비 철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고보조금을 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다.

조계종에서는 2015년 2월 26일 10·27법난 피해자 증언 영상물 제작, 10·27법난 피해자 중국 역사순례, 10·27법난 미술전, 현장탐방-'국가폭력, 성찰과 치유의 길을 찾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의 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명예실무위는 2015년 3월 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평가 및 결산'을 보고받고 〈2015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심의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안건번호 제2015-01호)을 심의하였다. 안건 심의 결과 2015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을 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168]

명예실무위는 2016년 3월 17일 제28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를 받고 〈2016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안건번호 제2016-75호)을 심의하였다. 조계종에서는 2016년 3월 7일 10·27법난 피해자를 위로하는 천도재 봉행을 포함한 36주년 기념법회와 피해자 간담회, 10·27법난 피해자 일본 역사순례, 다큐멘터리 제작, 역사 유물 수집 및 편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2016년 10·27법난 제36주년 국고보조사업계획서 제출의 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안건 심의 결과 2016년도 10·27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을 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위원회 제46차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5)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명예실무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고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심의·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

168) 회의에서는 '법난 미술전'의 경우 응모대상을 학생이나 일반시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승려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 증언 영상물 제작'은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개개인의 인터뷰를 해서 역사적 증거로 남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들이 영상물을 보고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념관의 훌륭한 콘텐츠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퀄리티 높고 고급스럽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차후 기념관 건립을 염두에 두고 1회성 행사보다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심도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명예실무위는 2009년 12월 4일 전쟁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최종본(초안) 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좀 더 보완하여 의결키로 하였다.[169]

명예실무위는 2009년 12월 1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최종본(초안) 의결에 관한 사항〉을 다시 상정하고 검토하였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에 일부 의견이 개진되었는데[170] 지원단에서 검토한 제2차 수정안을 수용, 수정·의결하였다.

명예실무위는 2011년 9월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제2차 학술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2012년 6월 5일에는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171] 비롯한 진행경과를 보고하였다.

6)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추진 실무지침서(안)

명예실무위는 2010년 1월 26일 제5차 회의에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추진 실무지침서(안)〉(안건번호 제2010-3호)을 심의하였다.

명예회복추진 실무지침서의 취지는 '10·27법난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 후세에 이를 전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법정신을 담아 명예회복 도모

169) 회의에서는 ①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특히 14번 항목은(64쪽) 자의적 설정과 강요의 성격이 짙으므로 삭제 요망, ② 명예회복방안이 지극히 나열적으로 언급되어 와 닿는 것이 없음, ③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개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④ 법난의 가해자 부분의 강조 및 내용 삽입, ⑤ 법난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내인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 그와는 다른 외인론에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점 강조 필요, ⑥ 법난의 발생 특성은 제주 4·3항쟁, 거창이나 노근리 등의 사건과는 달리 승려와 사찰 등 종교집단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특별성 강조 필요, ⑦ 역사교육관 건립 등 각종 명예회복방안보다 정부의 사과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적시, ⑧ 언론 피해사례 분석과 관련하여 당시 신문기사 좀 더 많이 다뤘으면 하고, 언론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은 세밀한 연구 뒷받침 필요, ⑨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발표 조사결과보고서 원본CD를 책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170) 회의에서는 ① 법난 발생원인 중 내인론은 각주로 처리하되 본문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소결내용 교정, ② 일부 내용의 이견에 대한 논란 해소 차원에서 속표지에 박스 문구 삽입 필요(예: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 조계종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③ 공무원 재직 중이던 피해자의 경우를 반영하여 명예회복방안 가운데 민간인을 상대로 복직권고 등의 안 삽입 필요, ④ 본문에 비하여 부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되므로 1쪽당 1문항을 1쪽당 2문항으로 재편집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171)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제2차 학술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는 2015년 5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에 진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목적은 '10·27법난 피해자로 인정된 대상자(개인·단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적용지침으로서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회복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의에서는 11개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4개 항목은 수정·의결하였다.[172] 최종 통과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추진 실무지침서〉 조문은 총 11개 항목이다. 그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취지, 목적, 관련근거, 방침, 명예회복 심의대상, 신청내용 확인 절차, 명예회복의견서 접수, 명예회복추진 심의절차, 관계기관 및 소속종단과의 협조,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적용(안), 행정사항 등이다.

명예회복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이날 의결된 10항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적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조계종의 경우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둘째는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의 경우에 대한 명예회복 적용 방안이다.

셋째는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경우 사망자와 생존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사항은 명예회복 증서를 수여하는 사항이다.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경우 역사교육관 내에 수행자로 살아온 일생을 담은 행장을 전시하고, 동판에 명단을 수록하며, 다례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생존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경우 다시 출가자와 재가자 및 환속자를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출가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입적 후 역사교육관 내 행장 전시, 역사교육관 내 동판에 명단 수록, 역사교육관 요양시설 이용 혜택,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위촉 권고, 역사교육관 운영위원 위촉 권고, 법난 기념행사 자문위원 위촉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재가자 및 환속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역사교육관 내 동판에 명단 수록, 생존시 불교병원 이용 혜택, 법난 당시 해임자 복직권고 등의 사항이다.

172)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안의결 7개 항목은 1. 목적, 3. 방침, 5. 신청내용 확인 절차, 6. 명예회복의견서 접수, 7. 명예회복추진 심의절차, 8. 관계기관 및 소속종단과의 협조, 10. 행정사항 등이다. 그리고 수정의결 4개 항목은 1. 취지(신설), 2. 관련근거(부분 삭제), 4. 명예회복대상(문구 삽입), 9.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적용(안) 등이다.

7)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 방안(안)

위원회는 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해 국내 다른 과거사 관련 명예회복방안 등의 여러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밀히 검토하여 채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학술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말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위원회의 명예회복조치(초안)을 마련하였다.

명예실무위는 2015년 3월 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초안)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명예회복조치를 마련하는 다음 세 가지 방향이 담겨 있다.

첫째, 명예회복조치는 유형별로 나누어 방안을 마련한다. 위원회의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로 피해유형을 나누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피해종교단체는 조계종과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피해자는 다시 사망자와 생존자로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입적 승려와 일반 사망자, 생존자는 출가자와 재가자 및 환속자로 세분할 수 있다.

둘째,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명예회복조치는 현행 법령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위원회의 의결로 추진 가능한 조치는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증서 수여' 등 몇 가지 방안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회의 명예회복조치는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피해자 명단이 담긴 동판 전시, 입적 승려를 위한 천도재(또는 다례제) 지원' 등 기념관 건립 및 기념행사에 반영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명예회복조치는 일반적인 명예회복방안으로 모색되는 권고사항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명예회복조치는 전문가 및 불교계와 피해자·피해종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예실무위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후 시행한다. '10·27법난의 부당성 등 교과서 수록',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조계종이 취하여야 할 조치' 등 권고사항은 위원회 백서에 적시하거나 별도 조치를 모색하여야 한다.

명예실무위는 2015년 7월 14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명예회복조치(안) 마련을 위한

실무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검토하였다. 회의에서는 실무소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1인, 조계종 총무원 1인, 위원회 명예회복지원과장 등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일에 조계종 총무원 김용구 기획팀장, 한세대 송봉규 교수, 명예회복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회복조치(안) 마련을 위한 실무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명예회복조치(초안)을 검토하였다.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전제 하에 언론 게제, 백서에 수록 등 명예회복조치(안)의 형식, 절차,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명예실무위는 이렇게 검토된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10월 13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 방안(안)〉(안건번호 제2015-03호)을 심의하였다. 안건 심의 결과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첨삭·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173]

8)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

명예실무위는 2015년 10월 13일 제24차 명예실무위 및 같은 해 10월 27일 심의위원회 제42차 회의의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방안〉 의결에 따라, 피해자 등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명예회복조치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명예실무위는 2015년 11월 11일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안건번호 제2015-04호~제2015-44호)을 심의하였다. 이 날 심의안건은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39곳 등 피해종교단체 40건이었으며, 안건 심의 결과 원안 그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명예실무위는 2015년 12월 10일 제26차 회의를 개최하고, 〈10·27법난 피해자(입적승려·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안건번호 제2015-44호~제2015-76호)을 심의하였다. 이 날 심의안건은 입적 승려 32건과 재가 사망자 1건 등 33건이었으며, 안건 심의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173) 회의에서는 심의안건 원안의 문장 한 곳의 자구를 수정하고, 생존자에 대한 명예회복 중 7항 "법난 당시 해임자 복직 권고" 조항의 삭제, '조계종이 취해야 할 조치(권고사항)' 중,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3~5항, "피해자 자손에 대한 종단 장학금 지원, 법난 피해자 '후원 사찰' 배려, 법난 당시 해임자에 대한 복직 조치" 등을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다. 그리고 회의 의결 내용을 반영한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 방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백서의 '제4장 10·27법난 명예회복사업'의 '3절 명예회복방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명예실무위는 2016년 1월 18일 제27차 회의를 개최하고, 〈10·27법난 피해자(입적승려·생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안건번호 제2016-01호~제2016-62호)을 심의하였다. 이 날 심의안건은 입적 승려 1건과 승려 50건 및 환속·재가자 11건 등 생존자 61건으로 총 62건이었으며, 안건 심의 결과 일부 수정의결[174]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명예실무위는 2016년 3월 17일 제28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 신청 피해종교단체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및 명예회복조치(안)〉(안건번호 제2016-63호~제2016-74호)을 심의하였다. 이 날 안건은 명예회복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피해가 인정된 법 제2조 제3호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하는 12곳 사찰을 명예회복조치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였다. 안건 심의 결과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12곳을 명예회복 대상에 포함하고 명예회복조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3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가. 의료실무위 개최 현황

10·27법난 의료실무위는 2009년 5월 1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4회, 2010년에 6회, 2011년에 5회, 2012년에 4회, 2013년에 1회, 2014년에 7회, 2015년에 7회 등 총 34차 회의까지 개최되었다. 회차별로 상정된 안건과 심의·의결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4) 회의에서는 생존 승려의 명예회복조치 가운데 일곱 번째 항목인 "입적 후 기념관 내 행장 전시"에서 '권고'를 추가하여 "입적 후 기념관 내 행장 전시 권고"로 일부 수장의결하였다.

표 3-139 의료실무위 개최 현황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1차	2009. 5. 15. / 전쟁기념관 소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일반안건 1건 * 심의 전 실무위원 5명 위촉 / 임명장 수여 * 심의 내용: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수정 의결)
제2차	2009. 7. 10. / 전쟁기념관 소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일반안건 1건 * 심의 내용: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원안 의결)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3건
제3차	2009. 9. 10. / 전쟁기념관 소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심의안건 – 일반안건 1건 * 심의 내용: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수정 의결)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8건
제4차	2009. 12. 19. / 전쟁기념관 대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1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4건
제5차	2010. 1. 20. / 전쟁기념관 대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3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8건 * 2건 보류결정[승종봉(법민), 김종우(도웅)]
제6차	2010. 3. 15. / 전쟁기념관 대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1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3건 * 1건 보류결정[김용우(경우)]
제7차	2010. 5. 7. / 전쟁기념관 대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일반안건 1건 * 심의 내용: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 수정안(수정 의결)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1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8건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8차	2010. 6. 29.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2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 * 1건 보류결정[장○○(연○)]
제9차	2010. 8. 27. / 전쟁기념관 소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3건 * 1건 보류결정[김주환(관후)] * 재심 1건[김천일(혜법)]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
제10차	2010. 11. 12. / 전쟁기념관 소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3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3건 * 재심 1건[김천일(혜법)]
제11차	2011. 1. 14. / 전쟁기념관 소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4건 * 1건 보류결정[윤흥식(덕산)]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1건
제12차	2011. 4. 1. / 위원회 회의실	성낙진 위원 등 4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4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
제13차	2011. 6. 10.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1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
제14차	2011. 9. 23.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4건 * 2건 보류결정[이종석(근식), 오인근(법달)]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1건 * 1건 보류결정[서영숙(월궁)]
제15차	2011. 11. 14.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2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16차	2012. 4. 12.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1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17건 * 13건 보류결정[서병식(정대) 등 13명]
제17차	2012. 5. 24.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3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31건 * 대한불교조계종 입적승려: 27건 * 대한불교천태종 입적승려: 4건
제18차	2012. 6. 26.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6건 * 6건 모두 장기미결건
제19차	2012. 11. 20.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
제20차	2013. 5. 8.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6건
제21차	2014. 1. 15.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
제22차	2014. 3. 12.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2건 * 재심 2건[이병한(청수), 채규호(일행)]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
제23차	2014. 4. 23.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2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1건
제24차	2014. 6. 11.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7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3건 * 재심 1건[채규호(일행)]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1건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25차	2014. 8. 12.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1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1건
제26차	2014. 10. 7.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3건 * 재심 1건[박대홍(법등)]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1건
제27차	2014. 11. 18.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6건 * 1건 보류결정[김○○(법○)]
제28차	2015. 1. 13.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2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5건
제29차	2015. 3. 3.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7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3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8건
제30차	2015. 4. 7.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7명	• 심의안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3건
제31차	2015. 4. 28.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4명	• 심의안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7건 * 1건 보류결정[이법철(법철)]
제32차	2015. 6. 16.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6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4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5건
제33차	2015. 7. 21.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7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1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4건 * 재심 4건[김○○(법○), 이도성(도성), 김광회(진우), 윤동암(일선)]

회차	일자 / 장소	참석	회의 내용
제34차	2015. 9. 15. /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등 5명	• 심의안건 – 의료지원금판정 안건 5건 –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1건 * 재심 1건[천성봉(도만)]: 추가 상이 인정 요구

나. 의료실무위 회차별 주요 내용

1) 제1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차 회의[175]에서는 이명묵 위원장이 의료실무위원 5명에게 위촉 및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간사인 심사지원과장 권영섭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경과, 조직 및 편성, 부서별 소관업무, 업무체계절차,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를 소개하였다.

상정 안건은 일반 심의안건 1건으로 〈10·27법난 의료실무위 회의운영 규칙(안)〉(안건번호 2009-01호)이 상정되었다. 이때 12개 조문은 원안대로, 1개 조문(제10조, 검진)은 수정·의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차 회의[176]의 상정 안건은 4건으로 일반 심의안건 1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3건이었다. 이외에 의료실무위 개최 초기 단계로 의료실무위원들에게 심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업무체계도 설명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반안건은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안)〉[177](안건번호 2009-02호)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관련 근거, 방침, 검진대상 및 검진병원의 임무, 검진기관 및 검진전문의, 검진절차, 의료지원금 산정, 검진결과 통

175) 일시/장소: 2009. 5. 15. 15:00~16:30/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강성흡·강동주·정재열·권범선·성낙진 위원 등 6명.
176) 일시/장소: 2009. 7. 10. 15:00~16:30/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강성흡·강동주·정재열·권범선·성낙진 위원 등 6명.
177)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 처리 계획(안) 세부내용은 '부록'에 실려 있다.

보, 검진비 기준 및 예산집행, 서면검진, 협조 및 행정사항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0 제2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09-01	강만봉 의료	상이 인정	제5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02	김주환(관후) 의료	상이 인정	제5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03	문성경(혜운) 명예/의료	상이 인정 * 검진 추가	제5차 위원회 상정

3) 제3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3차 회의[178] 상정 안건은 9건으로 일반 심의안건 1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8건이었다. 이외 고혈압 질환의 10·27법난 관련 상이로 인정 여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질환 검진 방법, 검진병원 지정 관련 보고 및 토의 등이 이루어졌다.

고혈압은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 발병률, 음주·흡연·염류과다섭취·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소, 고령, 비만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만성질환이다. 그러므로 위원들의 토의 결과 10·27법난과 관련성 있는 질환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질환 검진방법과 관련해서는 신경정신과 및 입원진료에 대한 승려들의 거부감 해소 차원에서 검진전문의 협조 하에 외래진료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진병원 지정의 경우 피해자 유형을 고려하여 병원을 지정하되 1차 검진 지정병원으로 동국대학교 의료원을 선정[179]하기로 했다. 다만 검진전문의 위촉시에는 10·27법난 의료실무위원은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안건은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안)〉[180](안건번호 2009-04호)

178) 일시/장소: 2009. 9. 10. 16:00~17:30/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강동주·정재열·권범선 위원 등 4명.

179)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과 동국대학교 의료원 원장 이명묵은 2009년 9월 29일 검진 지정의료기관 협약(전문 5개 조항, 부칙 2개 조항)을 체결하였다.

에 관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검토배경, 관련법규,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검토내용, 의결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토의결과 지급기준 검토내용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료비는 위원회에서 기준안 마련 적용'을 '비급여 의료비는 위원회에서 기준안 마련 조정'으로 수정하였다. 붙임 #4의 치과 보철료 기준 항목에서는 '치과 보철료 산정시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산율(30%) 적용'으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1 제3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09-04	신현배 의료	상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05	박용식(명선)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06	신흥균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07	이성휘(원행)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08	김천일(혜법)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09	홍성한(무외) 의료	상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10	최용경(명연) 의료	상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11	박준석(석암)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6차 위원회 상정

4) 제4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4차 회의[181] 상정 안건은 5건으로 처음으로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1건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4건이 상정되었다. 이외 질환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 적용문제, 명예회복 신청인 중 추가 의료지원금 신청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절차, 명예회복 신청인의 의학적 인과관계상의 질환 부여정도, 일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신청된 경우의 처리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의료실무위 제4차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지원금판정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때 질환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 적용문제를 토의하였는데, 다른 과거사 위원회 및 판례 등을

180)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안) 세부내용은 '부록'에 실려 있다.
181) 일시/장소: 2009. 12. 19. 14:30~15:30/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병묵 위원장, 강성흡·강동주·정재열·성낙진 위원 등 5명.

보면 '기여도' 적용 사례가 각기 달랐다. 그러나 의료지원금은 예산지급에 관한 건으로 '기여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의료실무위에서 결정할 것인가,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의료실무위에서 본회의 지침 없이 '기여도'(율)를 적용하여 질환별 의료지원금 산정금액에 대해 삭감하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본회의에 논의를 건의하여 적용 여부를 확정한 후 의료실무위에 적용을 지시하면 그때 질환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여율을 판단,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여도'는 퇴행성 질환 중 외상에 의해 악화된 경우에 적용하는데, 10·27법난의 경우는 사례가 다른 위원회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과거 일부 위원회에서는 '기여도'를 적용하였으나, 10·27법난의 경우는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 결과 강만봉(판정번호 2009-01호)부터 본회의 지침을 적용·처리하기로 하였다.[182]

또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절차와 관련하여 명예회복 신청인 중 추가 의료지원금 신청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 결과 명예회복 신청과 의료지원금 신청이 구분되어 있어, 최초 명예회복만 신청했던 사람이 의료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시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다시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 상이가 피해로 인정될 경우 검진과정을 통해 의료지원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명예회복 신청인이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난 피해를 신청하는데, 인과관계 심의시 개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황상 현증, 기왕증 모두 상이에 해당되므로 질환명 부여는 대부분 의증으로 판단하였다. 일부 신청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만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신과 전문위원이 학회 및 관련 자료를 근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의 발병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심의 결과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82) 2009년 12월 21일 개최된 제8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적용하게 되었다.

표 3-142 제4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09-01	강만봉 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8차 위원회 상정

한편,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3 제4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09-12	박정운(법열)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8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13	채규호(일행)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8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14	정재우(지우) 명예	상이 인정	제8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09-15	이근우 명예	상이 인정	제8차 위원회 상정

5) 제5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5차 회의[183] 상정안건은 11건으로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3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8건이다. 그러나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 건 중 2건(승종봉: 법민, 김종우: 도웅)에 대한 보류결정이 내려져 의견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외에 피해자로 인정된 명예회복신청인이 추가로 의료지원금 신청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방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외래진료 협조 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의료실무위는 명예회복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인정된 신청인이 추가로 의료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 대하여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절차를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의료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의료실무위는 피해사실 조사까지 추가하여 처음부터 의학적 인과관계를 재규명토록 하였다. 따라서 의학적 인과관계 판정 단계에서 10·27법난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의료지원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한편 10·27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진료협약을 체결한 검진 지정병원(동국대 일

183) 일시/장소: 2010. 1. 20. 14:00~15:300/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강성흡·이일구·정재열·성낙진 위원 등 5명.

산병원)의 정신과 의사는 검진대상자들이 입원한 상태에서 검진을 받아야만 정신감정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청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신분 또한 승려들이 많아 정신과에 입원하여 검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외래진료로 대체시 심리검사 및 정신과 진료 상담 결과를 가지고 '진단서'를 발행하면, 이를 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판정키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4 제5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0-01	신현배 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9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0-02	신흥균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9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0-03	최용경(명연) 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9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5 제5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0-01	서승남(윤월)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02	정막동(명철)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0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03	윤수만(성해) 명예	상이 인정	제11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04	황한수(진경)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0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05	김종우(도웅) 명예	상이 인정	제11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06	김수년(명현)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0차 위원회 상정

6) 제6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6차 회의[184] 상정안건은 4건으로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1건과 의학적

184) 일시/장소: 2010. 3. 15. 15:00~16:30/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강성흡·이일구·정재열·성낙진·권범선 위원 등 6명.

인과관계 규명 안건 3건이었다. 이 중 의학적 인관관계 규명 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실무위 제3차 회의에서 상이를 인정받아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홍성한(무외)의 신청 건이 같은 회의에서 '10·27법난으로 인한 상이인지 불분명하다.'고 결정되어, 의료지원금 판정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되어 재조사를 거쳐 다시 상정되었다. 의료지원금 판정 실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류가 결정되었던 승종봉(법민)에 대한 안건은 상정이 되었으며, 이외 1건(김용오: 경우)이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보류결정'이 내려져 의결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외 명예회복 신청인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상이에 대한 심의자료와 관련한 내용, 의료지원금 신청인과 명예회복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기준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명예회복 신청인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상이는 대부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음에 따라 정신적 질환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과 담당 위원이 제공한 자료인 '사건충격척도' 문진표를 사실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지원금 신청인과 명예회복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기준을 달리 하도록 하였다. 의료지원금 신청인은 현재 증상 여부가 중요하며, 명예회복 신청인은 전부터 있던 증상까지 인정되므로, 동일한 시각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의료지원금 신청인은 진단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토의가 있었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6 제6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0-04	김천일(혜법)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1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7 제6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0-09	홍성한(무외) 의료	상이 인정	제11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10	승종봉(법민) 명예	상이 인정	제11차 위원회 상정

7) 제7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7차 회의[185] 상정안건은 모두 10건이었다.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 수정(안)〉이 일반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1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8건이 상정되었다. 여기에는 5차 의료실무위에서 보류가 결정된 성성환(청욱)과 의료실무위 제6차 회의에서 보류가 결정된 김용오(경우) 건이 포함 되었다. 이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의료지원금 산출시 고려할 사항과 기타 의료지원금 산출 근거와 관련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의료실무위는 처음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판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타 과거사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10·27법난과 관련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30년의 유병기간을 가진 만성질환으로 치료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의료지원금 산출근거는 기존 사례를 우선 적용토록 하였다. 다만 유사질환에 대해서는 진료과목별 특성과 병원별 수가 등을 고려하여 주사료·검사료 등 비표준화 진료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토의가 있었다.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 수정(안)〉은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 작성시 다른 위원회의 사례 분석을 통해 처리계획 9항에 '검진의 수당은 1인당 1일 14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지원단의 종합감사 결과 '장애진단 전문의 수당 집행의 부적정'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검진전문의의 수당지급 방식을 검토하여 '검진의 1인당 1일 14만 원을 피해자 1인당 검진시 7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이것이 의결되어 10·27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186]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185) 일시/장소: 2010. 5. 7. 13:30~15:00/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강성흡·정재열·권범선·김진영 위원 등 5명.

186) 〈10·27법난 피해자 검진업무처리계획 수정(안)〉은 '부록'에 실려 있다.

표 3-148 제7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0-10	박용식(명선)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9 제7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0-11	김용오(경우)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12	오영준(성면)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13	우홍근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3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14	이근배(혜성)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3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15	이종석(근식)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3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16	이배원(자신)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17	이병한(청수)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18	성성환(청욱)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5차 위원회 상정

8) 제8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8차 회의[187] 상정안건은 모두 4건이었다.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2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1건(장○○: 연○)은 보류로 결정되어 의견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관계로, 3건에 대해서만 심의하였다. 이외에 명예회복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한 심의자료와 관련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의료실무위는 명예회복을 신청한 장○○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심의하면서, 추후 명예회복만을 신청한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충격척도 문진표를 작성하여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87) 일시/장소: 2010. 6. 29. 16:00~17:00/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강성흡·이일구·권범선·성낙진 위원 등 5명.

표 3-150 제8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0-19	문성경(혜운)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3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0-20	박정운(법열)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3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51 제8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0-21	한영수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4차 위원회 상정

9) 제9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9차 회의[188] 상정안건은 5건으로,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3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김주환(관후)의 의료지원금 산정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보류 결정이 내려져, 의료지원금 판정 관련 2건에 대한 심의만 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6차 의료지원금 판정 실무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이 결정되었던 김천일(혜법)이 의료지원금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의를 하였다. 이밖에 상이 관련 후유증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의료실무위는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을 신청한 윤흥식(덕산)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심의하면서, 상이를 치유하던 중 개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 정부에서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토의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52 제9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0-22	홍성한(무외) 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4차 위원회 상정
재심판정 2010-23	김천일(혜법)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4차 위원회 상정

188) 일시/장소: 2010. 8. 27. 16:00~17:30/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유균혜·이일구·김진영·성낙진 위원 등 5명.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53 제9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0-22	윤흥식(덕산)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4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23	김천석(회광) 명예	상이 인정	제14차 위원회 상정

10) 제10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0차 회의[189] 상정안건은 6건으로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3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3건 등 총 6건이 상정되었다.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중 8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 결정되었던 장○○(연○)이 상정되었고, 의료지원금 재심을 신청했던 김천일(혜법)[190]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도 재심의하게 되었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54 제10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0-24	서승남(윤월)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5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0-25	오영준(성면)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5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0-26	정막동(명철)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5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55 제10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0-24	김기곤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0-25	장○○(연○) 명예	상이 인정	제15차 위원회 상정
재심의견 2010-26	김천일(혜법)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6차 위원회 상정

189) 일시/장소: 2010. 11. 12. 15:00~16:30/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유균혜·이일구·김진영·권범선·성낙진 위원 등 6명.
190) 혜법 스님은 제9차 회의에서 추가 상이 인정여부에 대한 안건이 재상정되었다.

11) 제11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1차 회의[191] 상정안건은 5건으로,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4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1건이 상정되었다. 윤흥식(덕산)의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은 심사보류 결정이 되어 판정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의료지원금 판정은 3건에 대한 심의결과만 나왔다.

의료실무위는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을 신청한 윤흥식(덕산)의 의료지원금을 심의하며 상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담당 검진의에게 추가 소견을 제출받기로 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56 제11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01	김주환(관후) 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6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1-02	이근배(혜성)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6차 위원회 상정
재심판정 2011-03	김천일(혜법)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6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57 제11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1-05	전종윤(운덕) 명예	상이 인정	제16차 위원회 상정

12) 제12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2차 회의[192] 상정안건은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4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이었다. 이 중 제11차 의료지원금 판정 실무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판정 심사가 보류 되었던 윤흥식(덕산)의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되었다.

---

191) 일시/장소: 2011. 1. 14. 15:15~16:25/위원회 회의실(서울 용산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이일구·정재열·성작진·권범선 위원 등 5명.

192) 일시/장소: 2011. 4. 1. 16:00~17:30/위원회 청사가 종로구 관훈동 동덕빌딩으로 이전(2011. 3. 3.부)한 이후 처음으로 9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 참석위원: 이일구·김진영·성낙진·권범선 위원 등 4명. 제11차 의료실무위 회의시 이명묵 위원장이 개인적 사유로 불참하여, 의료실무위 회의 운영규칙 제3조 3항에 따라 연장자인 성낙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58 제12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1-06	이성휘(원행)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7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1-07	한영수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7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1-08	우홍근(학우)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7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1-09	윤흥식(덕산)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7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59 제12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1-10	오인근(법달)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7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1-11	김도학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7차 위원회 상정

13) 제13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3차 회의[193] 상정안건은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1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이었다.

의료실무위는 의료지원금을 산출함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동일 병명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다만 향후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일반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병원 추정 금액으로 의료지원금 판정을 심의하였다. 따라서 진찰료의 경우 1회 1만 4,940원을 3만 2,000원으로 하고, 입원료 4만 7,750원을 5만 2,830원으로 조정하되, 지원단에서는 초진이 아닌 재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93) 일시/장소: 2011. 6. 10.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유균혜, 이일구, 김진영 위원 등 4명.

표 3-160 제13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1-10	김기곤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8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1 제13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1-12	김삼형(현철)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18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1-13	김각경 명예	상이 인정	제18차 위원회 상정

14) 제14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4차 회의[194] 상정안건은 최초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4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1건이었다. 이종석(근식)과 오인근(법달)의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과 서영숙(월궁)의 의학적 인관관계 심의 건의 심의가 보류되어,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2건에 대한 심의만 하였다.

의료실무위는 실신이나 고혈압(의증), 협심증(의증)에 대한 향후치료비 산정과 관련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법무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검사비' 지원 여부를 향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두통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없이 기대여명을 고려, 향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2 제14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1-11	김용오(경우)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9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1-14	김도학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19차 위원회 상정

194) 일시/장소: 2011. 9. 23.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이일구·고효정·권범선·구기형 위원 등 5명.

15) 제15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5차 회의[195] 상정안건은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2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2건이었다. 이 중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1건(이근우)은 최초 명예회복만 신청하였다가 추후 의료지원금을 신청하여 심의하게 된 안건이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3 제15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1-15	이종석(근식)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3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1-17	김삼형(현철)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3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4 제15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1-14	서영숙(월궁)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1-15	이근우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16) 제16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6차 회의[196] 상정안건은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1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17건이었다. 이 중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1건(채규호: 일행)은 최초 명예회복만 신청하였다가 추후 의료지원금을 신청하여 심의하게 된 안건이다. 이외에 조계종에서 13명[197]의 입적 승려를 신청하여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13명 모두 이날 회의에서는

195) 일시/장소: 2011. 11. 14.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이일구·고효정·권범선·구기형·성낙진 위원 등 6명.

196) 일시/장소: 2012. 4. 12.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이일구·고효정·권범선·구기형·성낙진 위원 등 6명.

197) 조계종에서는 2011년 10월 12일 총 29명의 입적 승려(확인결과 2명의 승려는 생존 중이었음)을 종단 총무원장 명의로 대리신청하였고, 참고인 조사가 완료된 13명에 대하여 제16차 의료지원금판정 실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심의키 위하여 상정한 것이다.

심의가 보류되었다.

조계종에서 신청한 13명의 입적 승려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건과 관련 신청인 모두 입적한 승려들로 의무기록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실무위는 이에 대한 심의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결과, 10·27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지침을 받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5 제16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2-01	오인근(법달)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3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6 제16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2-01	채규호(일행)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02	배두관(철우)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03	하태용(성조)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04	황태로(종래)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17) 제17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7차 회의[198] 상정안건은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3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31건[199]이었다. 의료지원금 심사 대상자 3명은 모두 최초 명예회복만 신청하였다가 차후 의료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의료실무위는 입적한 승려들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심의하기 전에 심층적인 토론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 일시/장소: 2012. 5. 24. 16:30~18:2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유균혜·이일구·고효정·권범선·구기형 위원 등 6명.

199)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31건은 모두 입적한 승려들로 10·27법난 당시 조계종 소속이 27명, 대한불교천태종 소속이 4명이었다.

입적 승려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은 본인의 진술이 없고 진단서 등 의학적 관련 서류도 없으므로 단지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의료실무위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에 이명묵 위원장은 의학적 인과관계는 다른 실무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고, 의료실무위에서 가부간에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양분됨에 따라 위원장이 주관이 되어 2회에 걸쳐 인과관계 규명 심의의 타당성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2회 모두 참석위원 가부 동수(3:3)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배석한 법무관은,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법난과 상이 간의 인과관계이므로 진단서가 없다하여 반드시 판단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즉 판단자료의 부족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양적 차이만 있을 뿐 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개별 판단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회의에 배석한 심의지원과장 김상근도 현행 규정과 절차상 의학적 인과관계는 의료실무위에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입적 승려들 중 공식적인 국가기록이 있는 경우 차후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단지 명예회복에만 반영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명묵 위원장은 과거 의료실무위 심의 전례를 기준으로 하여 입적 승려들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되, 매건 심의하여 인정가능과 판정불가로 구분하도록 하는 안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가지고 위원들의 동의하에 심의를 진행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7 제17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2-02	황한수(진경)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3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2-03	이병한(청수)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3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2-04	김수년(명현)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3차 위원회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8 제17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2-18	박주식(진설)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19	서병식(정대)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0	임점택(원광)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1	황기연(오현)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2	장인찬(희찬)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3	이상열(현우)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4	김한기(서운)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5	최종렬(월산)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6	박한남(광진)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7	윤희중(월하) 명예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8	박인수(청하) 명예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29	백식화(현광) 명예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0	이○○(서○) 명예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1	조학주(학능)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2	김기태(천장)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3	정기철(정수)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4	가○○(성○) 명예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5	김연수(지성)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6	고○○(태○) 명예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7	임동철(정산)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8	홍상길(성진)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39	이경환(현광)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41	이재명(자순)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42	김희현(능혜)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43	정○○(영○) 명예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44	김강웅(도명)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45	최영권(원철)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46	남익순(대충)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47	김형묵(기성)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2-48	조운석(대정)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49	정희자(명성) 명예	상이 인정	제22차 위원회 상정

18) 제18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8차 회의[200] 상정안건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6건이었다. 심사 대상자 6명 모두 피해 신청 이후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던 신청 건을 모아 심의하게 되었다[201].

의료실무위는 피해신청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의무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심의가 지연된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의무기록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 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우선 '판정불가'로 심의 후, 차후 의무기록 등이 보강되면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9 제18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2-50	권장수(도현) 명예/의료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51	여옥희(문성) 명예/의료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52	홍현희(봉주) 명예/의료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53	김홍규(금용) 명예/의료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55	김○○(국○) 명예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56	박○○(거○) 명예	판정 불가	제22차 위원회 상정

200) 일시/장소: 2012. 6. 26. 16:30~17:4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이일구·권범선·구기형·성낙진 위원 등 5명.

20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11776호(2013.5.22.)로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10·27법난 신청인에 대한 심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실무위 제18차 회의 개최 당시까지 미처리된 신청 건에 대한 일괄 심의를 하게 된 것이다.

19) 제19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19차 회의[202] 상정안건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안건 2건이었다. 심사 대상자 1명(이배원, 자신)은 최초 명예회복만 신청하였다가 추가로 의료지원금을 신청하여 인과관계부터 다시 심의하게 되었다.

의료실무위는 입적 승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불가'로 결정된 신청인이 재심신청을 할 경우, 법령 등의 개정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0 제19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2-58	이배원(자신)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1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2-59	박대홍(법등)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26차 위원회 상정

20) 제20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0차 회의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6건이 상정되어 심의하였다.[203]

의료실무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1일 투약료 및 정신요법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토의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1 제20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3-01	서영숙(월궁)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6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3-02	이근우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6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3-03	채규호(일행)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6차 위원회 상정

202) 일시/장소: 2012. 11. 20. 17:00~17: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이일구·권범선·구기형·이순택 위원 등 5명.

203) 일시/장소: 2013. 5. 8.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이일구·권범선·이순택·고효정·성낙진 위원 등 6명.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3-04	배두관(철우)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6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3-05	하태용(성조)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6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3-06	황태로(종래)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26차 위원회 상정

21) 제21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1차 회의[204] 상정안건은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2건이었다.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2 제21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4-01	조강원(중하)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27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4-02	박무홍(오설)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27차 위원회 상정

22) 제22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2차 회의[205]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 재심 안건 2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2건이 상정되어 심의하였다.

의료지원금 재심을 신청한 이병한(청수)의 경우 10·27법난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채규호(일행)는 검진 후 재판단을 하기로 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3 제22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재심판정 2014-01	이병한(청수) 명예/의료	불인정(재심 기각)	제29차 위원회 상정
재심판정 2014-02	채규호(일행) 명예/의료	인정(추가 검진 의결)	제29차 위원회 상정

204) 일시/장소: 2014. 1. 15. 16:30~17: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홍진선·권범선·천승현·고효정·성낙진 위원 등 6명.

205) 일시/장소: 2014. 3. 12.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홍진선·천승현·고효정·성낙진·구기형 위원 등 6명.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4 제22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4-03	박태일(현소) 명예	상이 인정	제29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4-04	허인환(성운) 명예	상이 인정	제29차 위원회 상정

23) 제23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3차 회의[206]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 재심 안건 2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1건이 상정되어 심의하였다.

의료실무위에서는 대상자 심의 전에 먼저 의료지원금 산출근거를 재확인하였다. 의료지원금 산출근거는 과거사례를 우선 적용하되 유사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과목별 특성과 병원별 수가 등을 고려하였다. 즉 주사료, 검사료 등 비표준화 진료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피해자별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5 제23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4-03	조강원(중하)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0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4-04	박무홍(오설)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0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6 제23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4-05	최현인(정혜)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1차 위원회 상정

206) 일시/장소: 2014. 4. 23. 16:3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홍진선·권범선·고효정·성낙진·구기형 위원 등 6명.

24) 제24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4차 회의[207]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3건(재심 1건 포함)과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1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다.

의료실무위에서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실제 수술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들이 받는 비용의 평균치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대부분 수용하였다. 수술 전·후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5회를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반사성 신경병증성 방광의 의료지원금 산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0·27법난과의 인과관계 및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정병원 검진의의 의견을 검토하여 검사료 일부를 조정하되,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7 제24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4-05	이배원(자신)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1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4-06	박대홍(법등)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1차 위원회 상정
재심판정 2014-07	채규호(일행)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1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8 제24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4-06	김○○(법○)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1차 위원회 상정

25) 제25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5차 회의[208]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1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심

207) 일시/장소: 2014. 6. 11.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이명묵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실무위원이 모두 참석하였다.

208) 일시/장소: 2014. 8. 12.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홍진선·권범선·고효정·구기형 위원 등 5명.

의안건 1건이 상정되어 심의하였다.

의료실무위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사례를 적용하여 의료지원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9 제25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4-08	최현인(정혜)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2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80 제25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4-07	김중건(자성)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4-08	이기남(자항)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2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4-09	김○○(자○)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3차 위원회 상정

26) 제26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6차 회의[209]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2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1건, 의료지원금 재심 안건 1건이 상정되어 심의하였다.

의료실무위에서는 최초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가 피해자로 불인정된 성성환(청욱)의 의료지원금 신청건과 관련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심의하였다. 이미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불인정을 의결하였는데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 결과, 의료지원금 신청 절차가 다시 재개된 것이다. 의료실무위 제7차 회의에서 상이를 인정하였으므로, 다시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또한 의료지원금 재심을 신청한 박대홍(법등) 심의 건의 경우 재심의를 원하는 상이가 법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209) 일시/장소: 2014. 10. 7. 17:30~18:3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홍진선·권범선·고효정·구기형·성낙진 위원 등 6명.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81 제26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4-09	김중건(자성)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3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4-10	이기남(자항)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3차 위원회 상정
재심판정 2014-03	박대홍(법등)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3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82 제26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4-10	성성환(청욱)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27) 제27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7차 회의[210]에서는 최초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6건이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으나, 1건이 자료 보완 후 재상정토록 결정되어 5건에 대해서만 심의하였다.

의료실무위에서는 객관적 의무기록이 없어 장기간 심의가 지연되었던 김홍규(금용)와 여옥희(문성)을 심의한 결과 상이가 인정되었다.

김○○(법○)의 경우 상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법난 당시 직접 폭행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천태종 종정 스님 등이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1개월여 간 감시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천태종 승려 3명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인정으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210) 일시/장소: 2014. 11. 18. 16:00~17: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홍진선·권범선·고효정·구기형·성낙진 위원 등 6명.

표 3-183 제27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4-11	김홍규(금용)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4-12	여옥희(문성)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4-14	김○○(도○) 명예	상이 인정	제34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4-15	최○○(성○) 명예	상이 인정	제34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4-16	주○○(대○) 명예	상이 인정	제34차 위원회 상정

28) 제28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8차 회의[211]에는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2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 안건 5건 등 총 7건이 상정되었다.

의료실무위에서는 의무기록 등의 부족으로 제27차 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던 김○○(법○)의 경우 역시 상이가 인정되지 않아 법난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법난 당시 직접 폭행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천태종 종정 스님 등이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1개월 여 간 감시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천태종 승려 2명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실무위 제27차 회의에서 피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84 제28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5-01	김홍규(금용)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02	여옥희(문성)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211) 일시/장소: 2015. 1. 13.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권범선·고효정·구기형·권영철·권동주 위원 등 6명.

표 3-185 제28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5-01	김○○(법○) 명예/의료	상이 불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02	정동군(삼오)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03	이건호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04	김○○(명○) 명예	상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05	김○○(화○) 명예	상이 인정	제35차 위원회 상정

29) 제29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29차 회의[212]에는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3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 안건 8건 등 총 11건이 상정되었다.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와 관련해서는 임○○(보○)는 진술내용의 신빙성 문제로, 박○○(도○)의 경우 법난 당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86 제29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5-03	성성환(청욱)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6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04	정동군(삼오)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6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05	이건호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6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87 제29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5-06	박○○(도○)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212) 일시/장소: 2015. 3. 3.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을 포함한 실무위원 7명 전원 참석.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5-07	문윤식(법장)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08	임○○(보○) 명예/의료	상이 불인정	제3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09	반○○(혜○)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10	박○○(도○) 명예/의료	상이 불인정	제36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11	박○○(보○)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12	최○○(수○)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13	하○○(정○)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7차 위원회 상정

30) 제30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30차 회의[213]에는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3건이 상정되었다. 이 중에는 법난 피해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 중인 권장수(도현) 건도 포함되어 상정되었다.

의료실무위에서는 미국에서 체류 중 일시 귀국한 권장수(도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여 상이를 인정하였다.

또한 10·27법난 신청인 중 대리인이 신청한 홍현희(봉주)에 대한 심층 토의한 결과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여 '판정불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의무기록을 제출한 윤동암(일선)의 경우는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일부 상이가 인정되었으나, 기타 상이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88 제30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5-14	권장수(도현)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15	홍현희(봉주) 명예/의료	판정 불가	제39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16	윤동암(일선)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213) 일시/장소: 2015. 4. 7.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을 포함한 실무위원 7명 전원 참석.

31) 제31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31차 회의[214]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7건이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다. 이 중 1건은 현재의 자료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지정병원 검진을 거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6건에 대한 심의만 하였다.

그리고 이법철(법철)의 경우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판정을 보류하고, 지정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89 제31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5-17	전보원(보원)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18	이도성(도성) 명예/의료	상이 불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19	진○○(천○) 명예	상이 불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20	천성봉(도만)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21	류광수(지호)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22	한정기(자용)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8차 위원회 상정

32) 제32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32차 회의[215]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4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5건이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다. 이 중 3건은 현재의 자료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판정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권장수(도현)의 경우 검진병원에서 제출받은 향후치료비 추정서에서 투약료가 상향 제출되어 실무위원간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인정한 투약료 내에서도 처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다른 신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에 있어서는 김광회(진우)와 윤동암(일선)의 경우 현재의 진술

214) 일시/장소: 2015. 4. 28.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실무위원: 이명묵 위원장, 고효정·구기형·권영철 위원 등 4명.

215) 일시/장소: 2015. 6. 16.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실무위원: 이명묵 위원장, 고효정·구기형·권범선·권동주·성낙진 위원 등 6명.

과 증상 및 제출 자료로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병원검진이 필요하나 2015년 6월 30일이 법정 심사기한이 끝나는 날이므로 심의위원회 심의단계까지 1차 심의를 완료하기 위해 일단 '판정불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1차 심의 완료 후 재심신청 기간을 통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지정병원 검진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최○○(진○)의 경우 신청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 안건은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판정불가' 결정을 내렸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90 제32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5-06	권장수(도현)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07	천성봉(도만)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6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08	류광수(지호)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09	한정기(자용)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91 제32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의견 2015-24	전득수(설정) 명예	상이 인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25	김광회(진우) 명예/의료	판정불가	제39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26	이법철(법철)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39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27	윤동암(일선) 명예/의료	판정불가	제39차 위원회 상정
의견 2015-28	최○○(진○) 명예/의료	판정불가	제39차 위원회 상정

33) 제33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33차 회의[216]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1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심

216) 일시/장소: 2015. 7. 21.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실무위원: 이명묵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전원 참석.

의안건 4건이 상정되어 심의하였다.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4건은 모두 재심 신청 건으로, 이 중 2건은 의료실무위 제36차 회의에서 지정병원 검진을 거쳐 상정하도록 주문한 안건이었다.

의료실무위에서는 김○○(법○)의 재심신청건과 관련 심도 깊은 논의결과 법난 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1차 심의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도성(도성)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 후 신청인을 조사한 결과 상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제32차 의료실무위에서 지정병원 검진 후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윤동암(일선)의 경우와 김광회(진우)는 검진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92 제33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5-10	이법철(법철)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10·27법난 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93 제33차 의료실무위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재심의견 2015-01	김○○(법○) 명예/의료	상이 불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재심의견 2015-02	이도성(도성)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재심의견 2015-03	김광회(진우)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재심의견 2015-04	윤동암(일선) 명예/의료	상이 인정	제40차 위원회 상정

34) 제34차 회의

의료실무위 제34차 회의[217]에서는 의료지원금 판정 안건 5건과 의료지원금 재심 신청인 의학적 인과관계 심의안건 1건이 상정되어 심의하였다.

---

217) 일시/장소: 2015. 9. 15. 17:00~18:00/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위원: 이명묵 위원장, 권영철·고효정·구기형·성낙진 위원 등 5명.

의료지원금 재심을 신청한 천성봉(도만)의 추가 상병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의무기록이 없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 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94 제34차 의료실무위 의료지원금 판정 심의결과

구분	신청인	심의 결과	비 고
판정 2015-11	박○○(도○)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41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12	문윤식(법장)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41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13	이도성(도성)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41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14	윤동암(일선)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41차 위원회 상정
판정 2015-15	김광회(진우)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41차 위원회 상정
재심판정 2015-01	천성봉(도만) 명예/의료	의료지원금 산정	제41차 위원회 상정

제4장

10·27법난 명예회복 사업



명예회복방안

1 명예회복방안 모색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마련은, 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법령에 따른 명예회복방안의 한계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는 세심한 조사·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명예회복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다른 과거사 관련 명예회복방안 등의 여러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학술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피해자·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위원회의 명예회복조치(초안)가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다시 초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와 불교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 명예회복방안의 전제

가.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의 피해 유형

10·27법난 명예회복의 대상은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 '피해자 등')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며,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일컫는다.[1)]

법률에 따라 10·27법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가 위원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심의를 통해 10·27법난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조계종과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은 피해종교단체가 된다. 생존한 피해자 중 의료실무위의 인정을 받은 자는 상이로 인한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10·27법난으로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강제연행·감금·고문 및 도피생활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이, 승적·직위·직책 박탈 등 사회적 지위 및 종교적 기반 붕괴, 강압에 의한 왜곡된 수사결과에 따른 수행자로서의 위상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이다. 피해종교단체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였으며, 종단 및 승려의 권위실추로 불교 발전의 토대 붕괴, 기존 신도 이탈 및 신규 신도 증가율 감소로 인한 교세 급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위원회의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로 피해유형 범주를 나누어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피해종교단체의 경우 조계종과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구분하고, 피해자는 다시 사망자와 생존자로 구분하여 법령에 따른 명예회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입적 승려와 재가자 사망자로, 생존자는 출가자와 재가자 및 환속자로 세분할 수 있다.

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 법령에 따른 명예회복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명예회복조치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나 '피해종교단체'에 한해 위원회는 10·27법난의 피해 여부를 심의한다. 그리고 피해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나 '피해종교단체'에게 명예회복조치를 한다.

법령에 따른 명예회복은 피해자 등 인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념관 건립, 기념사업 지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명예회복 사항 및 이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여기에서 피해자 인정과 의료지원금 지급은 모두 마무리를 하였고, 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27법난 관련 현행 법령에는 여느 과거사 관련 법령과 달리 추가적인 규정으로 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은 추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방안, 위원회에서 조치 가능한 10·27법난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를 위한 명예회복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표 4-1 법령에 명시된 10·27법난 명예회복방안

구분	내용
법 제3조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명예회복방안 모색과 활동 경과

위원회에서 실시한 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은 크게 연구용역 사업 실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피해자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피해자 명예회복의견서 조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원회 설립 이전에는 조계종에서 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가. 연구용역 사업

위원회는 명예회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연구』 용역 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제1차 연구용역은 2009년 하반기에 동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였고, 제2차 연구용역은 2012년 상반기에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과학연구소가 진행하였다.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중에서 명예회복방안과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명예회복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경과

날짜	내용
2009. 하반기	• 제1차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연구』 용역 실시: 동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차차석 교수)
2012. 상반기	• 제2차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연구』 용역 실시: 중앙승가대학교(책임연구원: 유승무 교수)

1) 제1차 연구용역

동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차차석 교수)에서 실시한 제1차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개인 명예회복과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 한국불교 전반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피해자 등의 인터뷰와 연구자료 및 언론자료 수집 등을 통한 사례조사다. 또한 이 같은 사례조사의 내용 분석, 국내외 배·보상 사례 분석 등에 대한 연구이다.

제1차 연구용역에서는 공통적 명예회복방안,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단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언론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명예회복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공통적 명예회복방안

명예회복을 위해 공통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진실성을 담은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둘째, 10·27법난으로 상처 입은 불교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될 수 있는 역사교육관[2] 건립 추진, 역사교육관 건립에 있어 상징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표지(標識) 역할[3]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가미되어야 한다.

셋째, 10·27법난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 차원의 행사인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나)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으로는 피해자 전체에 대해 피해자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안, 역사교육관에 동판을 새기거나 피해자 명단에 수록하는 방법[4] 등을 통해 개인 피해자들에게 제도적으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을 피해유형에 따른 명예회복방안과 피해 신분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으로 구분하였다.

피해 유형에 따른 명예회복방안은 다시 1차적 피해유형을 연행 및 구금에 의한 피해와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피해로 구분하였다.

연행 및 구금에 의한 피해 가운데 상이가 없는 연행 및 구금 피해자들은 현행법 아래서 신청이 제한되어 있고, 그 피해 정도 확인과 피해자 인정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역사교육관 및 기념사업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피해는, 그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지급

---

2) 2013년 5월 22일 일부 개정된 법률에서 '기념관'이라 칭하기 이전까지 기존 법령에서는 '역사교육관'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3) 피해자 명단이 담긴 동판 혹은 피해자 구역 내지는 기념조형물.
4)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명부 동판 설치와 유사한 개념.

판정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이에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 신분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의 경우 육체적 상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승려들의 명예회복은 개인적 명예훼손 및 불교계 전체의 명예 실추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적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피해 승려들이 불교계를 위해 희생했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그 피해를 인정하고,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방법이다. 즉 10·27법난 피해자 명단을 작성하고, 불교계에서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며 관련 증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사업을 신설한다.

둘째, 피해자 승려 대다수가 60~70대 이상의 노령으로 한두 가지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 지원책으로 종단 소속 하에 있는 병원에서 감면혜택을 높여주거나 요양시설을 신축하여 피해 승려들을 우선 지원한다.

셋째, 피해 승려들이 요양시설에서 기거하며 역사교육관의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10·27법난에 관한 연구 및 집필, 호국불교에 대한 연구, 불교전통 강연 등 불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한다.

한편 승려 신분이 아닌 재가불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은 보상을 통한 금전적 지원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 단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단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은 역사교육관 건립과 기념사업의 틀을 이용한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모색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단체의 명예회복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명예회복추진을 위해 재단의 설립과 같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역사교육관 건립을 통한 명예회복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교육관의 건립은 명예회복을 위한 공간의 마련을 의미하는데, 그 공간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역사교육관의 기본 핵심 역할은 기록 수집과 관리 사업이다. 여기에는 과거사에 관한 기록 자료뿐만 아니라 구술 자료와 영상자료까지도 포함하며, 그밖에 역사교육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과 연구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문과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시달리는 승려들에게 일반인들과 같은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여기에 함께 포함하면 보다 포괄적인 명예회복 사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교육관 건립이 건물을 건축하는 데만 그친다면 단체의 명예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교육관 건립과 함께 전시·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기념사업을 통한 명예회복방안의 경우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불교계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 차원에서 실시된 행사이고, 지금까지 단순한 이의 제기 차원을 넘어 법률에 따른 행사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념사업은 10·27법난으로 상처를 준 이들과 상처를 받은 이들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10·27 체험관, 10·27 관련 작품전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마당, 10·27 관련 자료 전시, 10·27 관련 영상물 상영 등 10·27법난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마당, 10·27 기념 학술회의 개최 등 학술적 성과를 수행할 학술마당을 제시하였다.

라) 언론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불교계는 1980년 10월 27일 정권에 의한 강제 정화라는 치욕을 당하였다.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국가폭력에 수반하여 언론에 의한 왜곡·과장 보도로, 불교의 종교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승려들이 또다시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계가 10·27법난에 대한 언론보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기가 언론중재와 관련한 제도가 성립하기 이전인 1980년이라는 점이다. 즉 현행 제도로 과거의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상으로도 잘못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10·27법난과 관련한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승려들이나 불교계가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첫째 언론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불교계와 피해자 승려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과거사를 해결하는 방법, 둘째 언론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의 틀을 마련하는 것 등 언론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제2차 연구용역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유승무 교수)에서 실시한 제2차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발생 원인과 전개 등 10·27법난의 진상, 불교계의 피해와 개인적 피해 등 10·27법난의 피해 현황, 10·27법난의 법적 성격, 국내외 대표적인 과거사정리 검토, 10·27법난 피해자(단체)의 명예회복방안 등이다. 제2차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명예회복방안은 크게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로 분류된다.

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먼저 노령화한 10·27법난 피해자에게 요양지원과 같은 노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증거가 분명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신고자를 발굴하여 피해신고 접수율을 향상시키고, 국가폭력에 의한 신체적(또는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으로 국가가 불교계에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10·27법난 피해자들을 그 일차적 수혜자로 인정하는 방안, 입적한 승려들이나 사망한 재가자의 경우 지장사를 건설하여 재를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아울러 국가는 종단으로 하여금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단으로부터 받은 불이익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종단적 차원의 명예회복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해단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

10·27법난으로 인하여 피해단체는 기존의 청정한 이미지에 큰 손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 손상은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의지할 곳을 불신하거나 상실토록 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동반하게 하였다.

피해단체가 대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처와 손실을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불교 본연의 역할, 즉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다시 충실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피해단체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10·27법난 피해자들 중에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불어 공적 차원에서 고문 트라우마, 국가폭력·가정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등 한국사회의 각종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10·27법난 희생자 및 관련자 중에서 입적하거나 사망한 승려들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줄 수 있고, 종교적 의식을 정례화 할 수 있는 제의공간으로 지장사의 건설이 필요하다.

셋째, 과거사를 치유하기 위한 기억(과 재현)과 치유(와 청산)의 변증법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역사교육관은 철저히 기억과 재현의 공간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업에서부터 이를 기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를 재현하기 위한 각종 전시물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10·27법난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언론으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도록 하는 제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보편적 인권의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0·27법난 명예회복방안 속에는 당연히 이러한 보편적 과제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며, 10·27법난 이외에 보편적인 인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불교인권회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나. 세미나 및 토론회

위원회는 명예회복방안을 모색하고 학계·전문가 및 불교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11년 11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학술세미나를, 2015년 8월 27일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는 10·27법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표 4-3 명예회복방안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경과

날짜/장소	내 용
2009.10. 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 10·27법난의 발생배경과 불교의 과제: 김광식 부천대 교수 • 10·27법난 피해현황: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 • 10·27법난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선방안: 최용춘 상지대 교수 • 10·27법난 명예회복 운동사: 조환기 불교정책연구원 상임연구원 • 10·27법난 특별법에 나타난 바람직한 명예회복방안: 문무왕 동국대 강사 • 10·27법난의 교훈과 종단적 과제: 이병두 나란다아카데미 원장 • 해외 종교탄압사례와 명예회복: 민정희 로터스월드 국제교류팀장 • 10·27법난 배상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백승흠 청주대 교수 • 10·27법난으로 본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 박기태 경주대 교수
2010.10.2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10·27법난 세미나-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과 명예회복방안 • 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과 사회적 과제: 김광식 교수 • 10·27법난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방안과 법률의 개선방안 연구: 문무왕 강사
2011.11.21./ 국회도서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방안 세미나 • 피해자 관점에서 본 10·27법난: 대오 스님 • 10·27법난의 복기: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 10·27법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명예회복방안: 박용규 조계종 총무원 총무차장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개선 방향: 김재원 변호사
2012.12.18./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10·27법난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세미나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대오 스님 •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본 10·27법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10·27법난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이재승 건국대 교수 • 10·27법난의 피해와 피해자(단체)의 명예회복방안: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날짜/장소	내 용
2015. 8.2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 • 10·27법난 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명예회복방안: 진희권 경기대 교수 • 10·27법난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추진현황: 송봉규 한세대 교수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에 대한 피해자 의견 ①: 이건호 전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에 대한 조계종 의견: 이석심 조계종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에 대한 피해자 의견 ②: 성해 스님

1)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명예회복방안과 관련하여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종교탄압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할 것, 10·27법난 당시 의도적으로 불교계를 폄훼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각종 왜곡 보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정정, 나아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명예회복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확대된 피해자의 범위를 판정 기준에 적용할 것, 개인 피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 및 명예회복, 역사교육관 건립 시 피해를 입은 개인에 관한 부분을 적시하고 개인의 명단을 공개할 것,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과 같이 10·27법난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재단법인'의 설립, 구술사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구술 증언 수집과 자료집 발간, 법난에 대한 연구 활동 추진 및 보장, 정기적인 학술행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와 학술행사 활성화 등이다.

2) 10·27법난 세미나

명예회복방안과 관련하여 세미나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10·27법난의 자체에서 '역사적 교훈 찾기'는 미시적이며 법난 이전과 이후의 종단 움직임 등 역사적 맥락에서 거시적인 교훈을 찾는, 광의적인 역사 찾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난에서 교훈 찾기는 그 출발부터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법률적 문제점을 재고하여 명예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활동 기한의 연장, 피해자의 범위 확대,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

이 들어간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방안 세미나

명예회복방안과 관련하여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10·27법난과 동일 성격의 과거사인 5·18민주화운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과 같이 당시 사건의 가해자인 '국가'를 반드시 명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배상을 규정한 법 개정을 통해 손실 보상과 손해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제연행·권리제한·구금·가혹행위·인권유린 등 종교적 자존과 명예훼손, 승가의 위의(威儀)와 도덕성 실추 등의 보다 본질적인 피해를 피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10·27법난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세미나

명예회복방안과 관련하여 세미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0·27법난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피해양상을 훨씬 다양하게 규정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하며, 피해자의 범주도 확대해야 한다. 피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고, 이로 인하여 회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배상, 금전적인 배상, 실효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재발방지수단이 추가되어야 한다. 수행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금은 복잡하고 저렴한 보상금이 아니라 특별위자료 형태로 품위 있는 보상금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제조치와 사과조치도 국가의 차원, 언론매체의 차원, (어느 정도는) 종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27법난 피해자가 대부분 연로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지원금 지원은 매우 긴요한 조치이나, 요양 지원과 같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노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야말로 바람직한 명예회복방안이 될 것이다. 피해단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과 운영, 입적한 승려들의 원혼을 위무할 지장사의 건립과 운영, 기억과 재현의 공간으로써 역사교육관의 건립,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인권의식의 확립이라는 보편적 과제에 기여할 인권회관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

5)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

명예회복방안과 관련하여 발표자들은 10·27법난특별법은 명예회복을 시켜줄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10·27법난도 내란 상태에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국가 공권력은 부당한 행사라고 지적하였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법난을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치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 간담회 및 피해자 명예회복의견서 조사

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이후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과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제시된 각종 명예회복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에 기초한 개인 피해자·입적 승려, 조계종 및 피해종교단체(사찰) 관련 명예회복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불교계 및 학계 전문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 개인별 명예회복의견을 수렴하고 유형화하여 개인의 명예회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회복의견을 조사하였다.

1)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해 피해자·전문가·불교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또한 관련 업무 담당기관인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의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였다.

한편 조계종은 총무원이 주최하는 10·27법난 명예회복방안을 위한 피해자 초청 간담회를 10·27법난 기념사업에 포함하여 매년 10월 27일 개최하였다.

표 4-4 **명예회복방안을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경과**(2014년 이후)

날짜	내용
2014. 4. 22.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송봉규(한세대 교수), 염규홍(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1과장), 임채도(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 등 학계·인권전문가 초청 간담회
2014. 6. 10.	위원장, 10·27법난 피해 스님 초청 간담회 – 성해 스님(前 천왕사 주지), 자신 스님(前 능인사 주지), 한영수(前 문공부 종무담당관), 이근우(前 청담학원 이사) 등 12명 참석
2014. 8. 21.	명예회복 지원사업 관련 조계종·위원회 간담회 – 조계종 총무원 명본 스님(총무국장), 덕운 스님(사회국장), 황효성(성역화추진위팀장), 양원준(사회부 행정관) 등 4명 참석
2014. 12. 4.	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 김봉석(변호사), 성해 스님(피해자회 회장), 한영수(前 문공부 종무담당관), 이근우(前 청담학원 이사), 김용구(총무원 사회팀장) 등 6명 참석
2015. 3. 6.	위원장, 10·27법난 피해자 초청 1차 간담회 – 성해 스님(피해자회 회장), 자용 스님(피해자회 수석부회장), 이기남(피해자회 사무총장), 한영수(前 문공부 종무담당관), 이근우(청담학원문화센터 평생교육원장), 이건호(前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등 6명 참석
2015. 4. 30.	위원장, 10·27법난 피해자 초청 2차 간담회 – 청수 스님(피해자회 부회장), 자신 스님(前 능인사 주지), 혜운 스님(前 법주사 교무국장), 자성 스님(前 적조암 총무), 채규호(前 조계사 재정 겸 총무원 교육국장), 우홍근(前 마곡사 재무국장) 등 6명 참석

가) 위원장, 10·27법난 피해자 초청 간담회

위원회는 2014년 6월 10일 〈10·27법난 피해스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성해 스님(법난 당시 천왕사 주지, 피해자회 회장) 등 12명의 피해자가 참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정만 스님이 참석하였으며, 도재경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사무처 각 과장들이 배석하였다.

2015년 3월 6일에는 위원장 초청 10·27법난 피해자 초청 1차 간담회를, 같은 해 4월 30일에는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차 간담회에는 성해 스님 등 6명이 참석하였고, 2

차 간담회에는 청수 스님(피해자회 부회장)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지현 스님이 참석하였고, 도재경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각 과장들이 배석하였다.

위원장이 주재한 〈10·27법난 피해자 초청 간담회〉에서 명예회복방안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열반한 승려들을 위한 추모일을 제정하고 지장사를 건립할 것, 의료지원금 지급을 받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추가 치료비 지급 등을 고려할 것,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위원회 및 종단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나)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위원회는 2014년 4월 22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필요성'에 대해 모두발언을 진행하였다.

2014년 12월 4일에는 〈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전문가로 김봉석 변호사, 피해자 가운데 성해 스님 등 6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위원회 및 조계종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보상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종단의 과제로는 지장사 건립, 생존·입적 스님들을 위한 법계 부여(추서), 피해자들을 위한 공동사찰 배려 등 실질적인 명예회복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 피해자 명예회복의견서 조사

위원회는 2011년 7월 말까지 10·27법난 피해자 신청을 한 51명과 2개 종단(조계종, 천태종)의 일괄신청자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이 의결된 3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회복의견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2014년 3월에도 2011년 8월 이후 피해자로 '인정'이 의결된 78건의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회복의견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하였다. 그 이후로는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의결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종료 후 즉시 명예회복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통해 의견서 회신을 보내준 10·27법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회복의견을 조사·검토하였다.

피해자들이 제시한 명예회복방안을 정리하면 ①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② 법난 당시 손실된 물품이나 몰수당한 주차장에 대한 피해보상, ③ 기 지출한 치료비 보상, 의료비 지원, 요양시설 마련, ④ 기념관 건립 및 기념법인 설립, 개인 기록 전시, 피해자들이 운영에 참여, ⑤ 법난의 진실규명 및 기록의 보존·관리, ⑥ 근·현대사 교과서에 법난의 부당성과 종교탄압에 대한 내용 수록, ⑦ 언론을 통한 정부의 사과, ⑧ 전과기록 말소, ⑨ 명예회복 훈장 수여, ⑩ 법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⑪ 종단차원의 명예회복, ⑫ 공직 파면 취소(공무원연금 수령자격 회복), ⑬ 승적 복귀, ⑭ 업적 및 공적 복위, ⑮ 재산 원상 복구, ⑯ 사망자 제망비 및 사리탑 또는 부도 건립 등이다.

4 분야별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검토

가. 분야별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사업, 세미나, 간담회 등에서 10·27법난 피해자들과 학계·불교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명예회복방안을 분야별로 종합하면 ① 기념관(건립계획, 운영, 기록물 전시), ② 추가적 진상규명, ③ 피해보상 및 지원, ④ 의료 지원, ⑤ 단체 설립, ⑥ 교과서 수록, ⑦ 언론 정정보도, ⑧ 정부의 사과, ⑨ 명예회복 증서 수여, ⑩ 종단차원 명예회복으로 분류된다.

표 4-5 분야별 명예회복방안

구 분		세부 내용
① 기념관	건립계획	① 추모공원 조성, 부도와 공덕비, 기념 조형물 등 건립 ② 요양시설, 연구소, 법인, 치유센터 등 건립 ③ 기념관 건립에 피해자 참여
	운영	① 피해자(또는 피해자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위촉 ② 피해자유족을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기회 제공 ③ 피해자들에게 수익사업 운영권 부여
	기록물 전시	① 개인 기록 및 피해자 명단이 담긴 동판 전시 ② 법난 관련 문헌·사진·동영상 등 자료전시, 보존 및 관리

구 분	세부 내용
2 추가적 진상규명	① 추가적 진상규명과 피해조사 필요 ② 피해자 범위 확대
3 피해보상 및 지원	① 연행, 고문, 감금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 ②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피해보상 ③ 기 지출한 치료비 및 손실몰수당한 개인재산 피해보상 ④ 법난기념사업 비용 및 기념관 운영비 부족분 지원
4 의료 지원	① 의료지원금 지원 및 요양 지원 등 노후복지서비스 제공 ②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5 단체 설립	① 명예회복 기념사업,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재단 설립 ② 공익법인 또는 법난연구소 설립
6 교과서 수록	① 역사교과서에 법난의 부당성과 종교탄압에 대한 내용 수록
7 언론 정정보도	①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과 방송 및 정정보도
8 정부의 사과	① 언론을 통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② 법률에 구체적인 '가해자'로서 '국가' 명시
9 명예회복 증서 수여	① 피해자인정 증서 교부 및 훈장 수여
10 종단차원 명예회복 추진	① 지속적인 연구 활동 전개와 종단차원의 명예회복방안 강구 ② 요양시설 신축과 소속 병원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③ 종교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④ 피해자 자녀에 대한 종단 장학금 지원

나.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검토

1) 기념관 건립 · 운영

기념관 건립은 법률에 따른 사업이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조계종이다. 부지 매입 등 조계종에서 주관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피해자들의 기념관 운영 참여, 수익사업 운영권 부여 등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조계종에 있다. 물론 위원회가 조계종에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조계종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 집행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위원회 보관 자료들에 대한 기념관 이관에 대해서는 이관 범위 등에 대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세부적인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2) 추가적 진상규명

'과거사 청산'은 명확한 진상규명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진상규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의 피해조사는 10·27법난의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의료지원금 지급 판정과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 법난의 진상을 재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추가적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 보강 및 활동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위원회 이외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피해보상 및 지원

피해보상은 법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합수단의 사찰 수색 당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지원은 10·27법난 기념사업 예산 및 기념관 운영비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의료지원금 지급 외에 법적 보상 근거가 없으므로 시행이 불가능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난 기념사업 예산 및 기념관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역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

4) 의료 지원

의료 지원과 관련한 명예회복방안은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및 노후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다. 법난 피해로 인한 상이 이외의 의료지원금 지급이나 노후복지 서비스 제공은 법령을 개정하거나 조계종이 추진할 과제로 판단된다.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은 조계종과 협의하여 기념관 건립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5) 단체 설립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기념관 운영, 법난 연구 등을 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등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과거사 관련 법령과 같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즉, 단체 설립도 법률 개정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6) 교과서 수록

초 · 중 · 고교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에 법난의 부당성과 종교탄압의 내용을 수록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종교탄압 재발 방지를 추진하는 명예회복방안이다. 교과서에 법난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조계종에서 수록(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7) 언론의 정정보도

10·27법난을 전후한 언론의 과장 · 왜곡보도에 대하여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도 명예회복방안의 하나다. 언론에 언급된 당사자를 포함해 종단 중심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 반론자료 등 대책을 마련하고 언론사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명예회복 증서 수여

명예회복 증서 수여는 법난 피해자에 대하여 훈장을 수여하거나 증서를 교부하는 명예회복방안이다. 정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상훈법'상 훈장 수여 대상 자격이 있어야 하고, 법난 피해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인정증서 수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정부의 사과

정부의 사과는 10·27법난에 대한 현 정부의 사과 및 가해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명예회복방안이다. 정부는 1988년 12월 30일 강영훈 국무총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표자 또는 법난 당시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방안은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명예회복 조치방안이 아니며, 위원회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하는 사안의 하나로 판단된다.

10) 종단차원의 명예회복 추진

10·27법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계종 종단차원에서의 명예회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외에 종단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명예회복방안은 ① 지

속적인 연구 활동 전개와 종단차원의 명예회복방안 강구, ② 요양시설 신축과 소속 병원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③ 종교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④ 피해자 자녀에 대한 종단 장학금 지원 등이다. 이는 종단에서 주관하여 검토 및 조치할 사항이다.

5 명예회복조치 마련

위원회는 세미나와 토론회, 연구용역, 간담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견서 조사, 불교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명예회복방안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검토한 명예회복방안은 앞부분에서 기술한 명예회복방안과 관련한 기본적인 전제와 남은 활동기한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가. 위원회의 명예회복조치 심의·의결 경과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야별 명예회복방안 가운데 피해자 범위 확대, 기 지출한 치료비 지급,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가해자로서 '국가' 명시 등의 명예회복방안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 또는 연구소 설립과 추가적 진상규명 및 피해조사, 종단차원의 명예회복 추진 등은 법률의 개정이나 향후 조계종이 기념관 운영과 기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위원회 사무처는 이러한 법적인 제한 등을 고려하여 2015년 2월 말 명예회복조치 초안을 마련하고, 2015년 3월 5일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초안)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위원장 초청 10·27법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015년 6월 말 예정하였다가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대중행사 자제 분위기에 따라 연기하였던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8월 27일 개최하였다.

이렇게 검토된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 해 10월 13일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10월 27일 제42차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심의위원회 제43차 회의(2015.12. 2.)에서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을, 제44차 회의(2015.12.23.)에서 '10·27법난 피해자(입적승려·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을, 제45차 회의(2016. 1.27.)에서 '10·27법난 피해자(입적승려·생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을, 제46차 회의(2016. 3.29.)에서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사찰)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및 명예회복조치(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피해자 '인정'이 의결된 피해자 등(147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심의·의결 내용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등 피해종교단체 52건, 입적 승려 34건, 생존자 61건 등이었다.

나. 유형별 명예회복조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 방안' 가운데 명예회복조치는 법령에 따라 '피해자(개인)'와 '피해종교단체'로 유형별 범주를 나누어 방안을 마련하였다.

1)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의 공통사항으로는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수여, 위원회 백서에 명부 및 피해사실 등을 수록하여 발간,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조치에 대하여 신문에 게시, 기념관 내 동판 등에 명단 수록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조계종의 경우 기념관 건립,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의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밖에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에 대해서는 사찰 입구에 10·27법난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키로 하였다.

2) 피해자(개인)에 대한 명예회복

피해자(개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공통사항으로는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수여, 위원회 백서에 명부 및 피해사실 등을 수록하여 발간,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조치에 대하여 신문에 게시, 기념관 내 동판 등에 명단 수록 등의 조치를 하도록 방안이 마련되었다.

입적 승려 및 사망자에 대해서는 10·27법난 기념법회(기념사업)시 법계 추서 권고, 기념관 내 행장(수행자로 살아온 일생) 전시, 기념관 내 입적 승려들을 위한 제의 공간(또는 지장사) 마련, 기념사업 중 천도재(추모제) 봉행 또는 다례제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생존자(출가자, 환속자 및 재가자)에 대해서는 기념관 트라우마 치유센터 이용, 기념관 요양시설 이용, 입적 후 기념관 내 행장 전시 권고, 피해자(또는 피해자 대표)를 기념관 운영위원으로 위촉 권고, 법난 기념사업 자문위원 위촉 권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위촉 권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4-6 10·27법난 피해 유형별 명예회복조치

명예회복 대상			명예회복조치
피해자	전체		•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수여 • 위원회 백서에 명부 및 피해사실 등을 수록하여 발간 •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조치에 대하여 신문에 게시 • 기념관 내 동판 등에 명단 수록
	사망자	입적승려	• 10·27법난 기념법회(기념사업) 시 법계 추서 권고 • 기념관 내 행장(수행자로 살아온 일생) 전시 • 기념관 내 입적 승려들을 위한 제의 공간(또는 지장사)마련 • 기념사업 중 천도재(추모제) 봉행 또는 다례제 지원
		사망자	
	상이자	출가자	• 기념관 트라우마 치유센터 이용 • 기념관 요양시설 이용 • 입적 후 기념관 내 행장 전시 권고 • 피해자(또는 피해자 대표)를 기념관 운영위원으로 위촉 권고 • 법난 기념사업 자문위원 위촉 권고 •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위촉 권고
		환속자, 재가자	• 기념관 트라우마 치유센터 이용 • 기념관 요양시설 이용

명예회복 대상		명예회복조치
피해 종교 단체	공통사항	•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수여 • 위원회 백서에 명부 및 피해사실 등을 수록하여 발간 •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조치에 대하여 신문에 게시 • 기념관 내 동판 등에 명단 수록
	조계종	• 기념관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피해사찰	• 사찰 입구에 10·27법난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

3) 조계종이 취해야 할 조치(권고사항)

한편 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 방안'의 하나로 '조계종이 취해야 할 조치(권고사항)'도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명예회복조치로 기념관 내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기념관의 일정공간을 할애하여 요양시설 마련, 기념관 내 10·27법난 연구 공간 마련, 기념관 내 피해사찰과 피해자 명단이 수록된 동판 등을 전시, 기념관 내 입적 승려들의 행장(수행자로 살아온 일생) 전시, 기념관 내 법난 관련 문헌·사진·동영상 등 자료 전시 및 보존 관리, 기념관 내 입적한 승려나 사망한 재가자들을 위한 제의 공간(또는 지장사) 마련 등이다.

명예회복조치 관련 조계종이 취해야 할 조치(권고)로는 기념관 건립 및 추모시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기타 권고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기념관 건립 및 추모시설과 관련해서는 피해 입적 승려 관련 부도와 공덕비 건립, 피해자(또는 피해자 대표)를 기념관 운영위원으로 위촉, 피해자·유족을 기념관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요양지원 등 노후복지 서비스 제공, 피해자의 종단 소속 병원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기타 권고사항으로는 입적 승려·사망자들의 천도재(추모제) 봉행 또는 다례제 지원, 위원회 미신청 피해자에 대한 피해조사 등 추가적 진상규명, 피해 입적 승려들에게 법계 추서 등 시급한 명예회복 조치, 피해자(또는 대표)를 법난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피해자(또는 대표)를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제2절

10·27법난 기념관 건립

10·27법난법 제3조는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관'을 명시하였다. 이 법이 법난 피해자나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배·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념관 건립은 법난 피해를 당한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10·27법난법 제정 당시에는 시행령 제6조에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역사교육관'이라 명시되었었다. 조계종은 10·27법난법이 제정된 후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09년 5월 강원도 양양 낙산사 인근에 건립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다가 10·27법난이 발생한 상징적 장소인 서울 조계사 일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건립 부지를 변경한 후에도 구체적인 부지 확보계획 및 사업비 산출근거가 미비하여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매년 책정된 건립예산은 불용처분 되었다. 그 후 2013년 8월, 10·27법난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역사교육관'은 '기념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소관부처도 문체부로 이관되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위원회와 조계종은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4년 상반기에는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1,670억 원 규모의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 2015년 건립 부지 매입에 착수하여 2016년까지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6년 말부터 설계에 들어가 2018년 12월에 10·27법난 기념관을 완공할 예정이다.

1 기념관 건립계획 수립

2013년 8월, 법률 개정으로 위원회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이관 · 업무인수인계 등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와 조계종은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2014년부터 조계종은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가 같은 해 5월 12일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가. 사업 개관

조계종의 사업계획서는 총 248쪽에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10 · 27법난 발생경위 등을 살펴보고, 기념관 건립사업의 배경과 목적, 사업의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주요 사업내용 등을 개괄하였다.

사업계획서에서는 10 · 27법난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에 있어서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념관 건립을 통해 명예회복 공간을 마련한다.

둘째, 연행 및 구금을 당한 생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으로 기념관의 일정부분을 할애하여 치유시설을 마련한다.

셋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행 및 구금 생존 피해자들을 위해 10 · 27법난에 대한 역사 증언을 행사의 일부로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시 · 공연 · 연구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기념관 건립시 연행 및 구금 피해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명예훼손을 알리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조계종은 '불교계와 법난 피해자들에게 가해졌던 불명예 · 소외 · 억압, 그리고 심리적 ·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치유 및 해소를 통해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함'을 법난기념관 건립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념관 건립 사업은 2008년 3월 28일 제정·공포된 10·27법난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사업시행주체, 사업부지 등 주요 사업내용을 요약하였다.

기념관 건립은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시행주체는 조계종 총무원이다. '서울시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일원' 28필지 4,500㎡ 위에 기념시설 및 치유시설 각 1동씩 건립할 계획이며, 기념시설은 24필지 3,573㎡ 위에 지하5층·지상6층, 총면적 2만 1,518㎡ 규모이고, 치유시설은 4필지 926.6㎡ 위에 지하1층·지상3층, 총면적 1,418㎡ 규모이다.

2016년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 착공하여 2018년도에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 기초자료 분석 및 타 기념관 사례조사

사업계획서 제2장에서는 기초자료 분석에 들어가 사업부지가 속해 있는 서울시 종로구의 문화자원, 관광객의 종로구 방문 경향, 조계종 및 조계사의 관광수요 현황을 분석하였다.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유사시설로 '거창사건 추모공원 역사교육관', '부산시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제주 4·3 평화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을 현장 답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자료로 삼았다. 국외 시설로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및 공원', '난징 대학살 동포 기념관 및 공원',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오키나와 평화기념관',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에 건립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답사하여 참고하였다.

또한 치유시설 건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 트라우마센터',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를 답사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참고자료로 삼았다.

다. 기념관 구성과 운영 계획

제3장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였다. 기념관 1동은 10·27법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불교사를 재조명하는 전시·교육·연구·공연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

며, 기념관 2동은 심리적 · 신체적 · 사회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업계획서에서는 기념관 1 · 2동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주체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제안하였다. 법인의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회비 및 자체사업으로 조달하며, 예산 및 회계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념관 1동은 전시관 운영인력 25명 등 총 60명이 필요하고, 기념관 2동은 치유전문인력 14명 등 총 2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념관 1동의 면적은 24필지 3,573㎡이며, 기념관 2동은 4필지 926.6㎡이다. 기념관 1동은 사업부지 북쪽에 건립하며, 2동은 1동과 분리하여 남서쪽에 별도로 배치함으로써 치유시설 이용자들을 1동 관람객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념관 1동은 현대식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조성하며, 기념관 2동은 이용자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한옥 형태로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라. 총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추산

사업계획서 제4장에서는 총사업비 및 경상운영비를 추산하였다. 총사업비는 기념관 1동(기념시설) 및 기념관 2동(치유시설) 건립 기본계획부터 설계 및 시공단계와 개관을 전후하여 전시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투입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사업부지 매입비와 건설비를 합한 사업비는 1,534억 900만 원으로 추정하여 향후 국고지원 요청액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산출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조계종이 현물 출자하는 종단소유 토지 평가액 153억 원을 더해 총사업비는 1,678억 원으로 산출하였다.

연간 운영비는 1동과 2동을 합한 82명의 인건비 21억 2,600만 원, 전시 · 연구 · 교육 · 공연 및 유지비 등으로 21억 4,100만 원 등 총 42억 6,7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위원회는 2014년 5월 28일, 제30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계종에서 제출한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였다. 그리고 2015년도 기념관 건립예산으로 541억 원을 편성하여 기재부에 요구하였다.

표 4-7 10·27법난기념관 사업부지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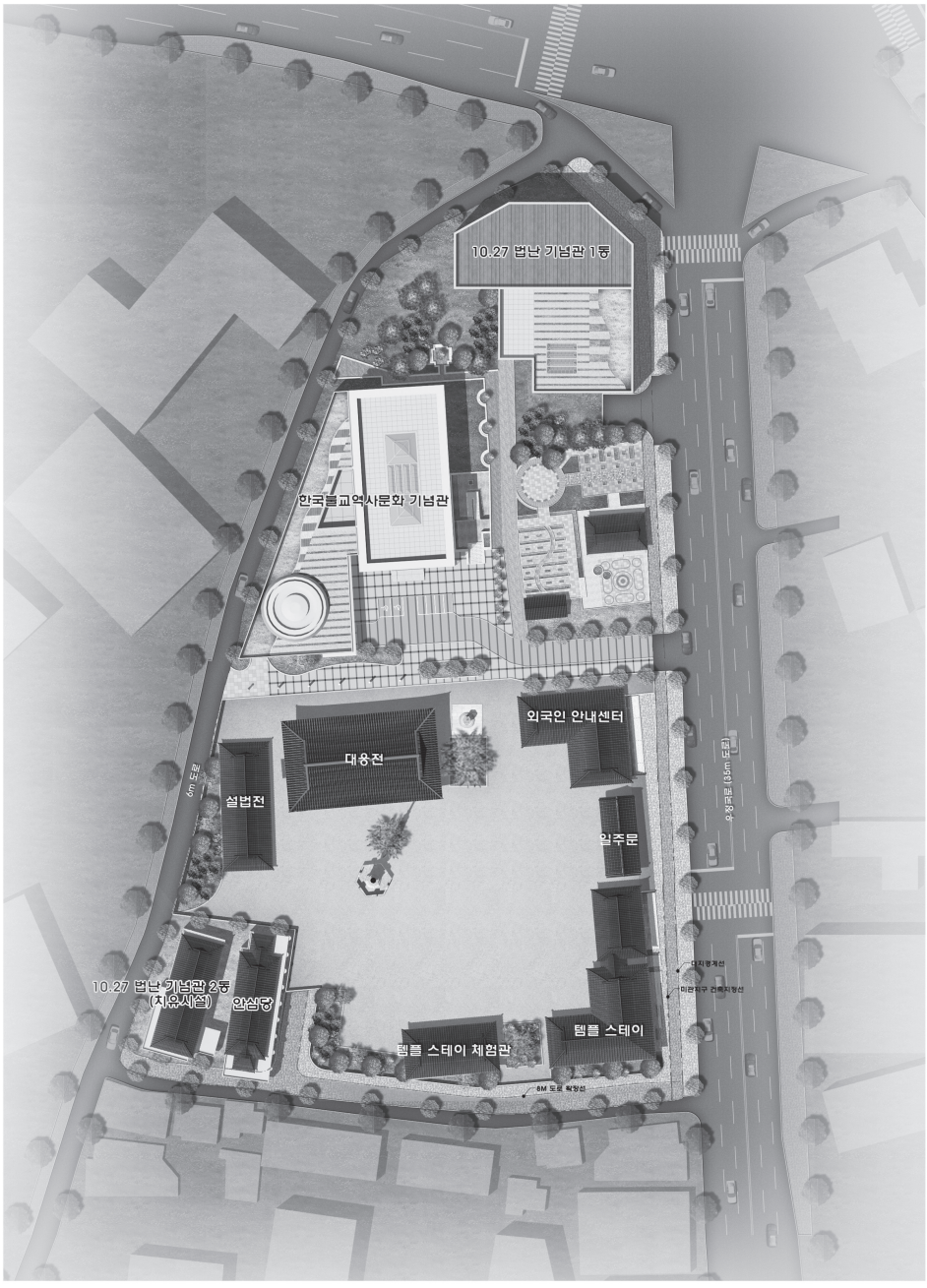

2 기념관 건립예산 편성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는 민간보조 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에 난색을 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 국가가 부지매입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까지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었다.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15년도 예산에 기념관 건립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재부는 부지매입비를 인정하지 않고, 2015년도 기념관 건립예산에 설계비와 건축비만 반영할 의사를 보였으나, 수차례 협의 끝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 '건립 및 설계비 등'으로 195억 원을 편성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예산 편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6년 6월 말 위원회 종료 이전에 기념관 건립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2014년도 11월 29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재부 · 조계종 · 위원회 등의 기관 고위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기재부는 '건립 및 설계비 등'에는 부지매입을 위시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결과가 되었다. 며칠 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다. 다만 2015년도 기념관 건립예산은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수시배정 사업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국고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관해서는 아직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었다. 해가 바뀌어 2015년 6월 초, 기재부는 민간자본보조로 토지를 매입한 전례가 없으므로,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되 기념관은 조계종 소유로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기재부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조계종이 토지매입을 직접 추진하고 국고로 매입하는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되, 국가는 토지사용료 보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계종은 이를 공식문서로 요구하여 2015년 6월 25일 기재부

제2차관, 문체부 제2차관 및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3인이 '10·27법난기념관 재정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소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이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등을 실시할 예정인 바, 토지매입비 575억 원, 설계비 28억 원, 공사비 30억 원 등 총 633억 원이 정부안으로 결정되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014년 6월 18일 기재부(타당성심사과)로부터 '2014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위원회는 조계종과 협의하여 "기념관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라고 회신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10·27법난법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2항 제4호에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면제사유로 제시하였다.

2014년 9월 17일, 기재부(타당성심사과)는 위원회의 기념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근거와 같은 이유로 기념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라고 통보하여 왔다. 다만, 조계종이 수립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에 대해 서울 중심지 사유지 매입의 적절성, 기념관 규모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재부의 의뢰로 '10·27법난 기념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는 2014년 10월 15일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2014년 6월에 수립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서를 KDI에 제출하였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KDI는 사업부지 현장답사를 요청해왔고, 2014년 12월 8일 기념관 사업부지 현장답사를 겸한 사업설명회를 조계종 총무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법난기념관을 포함하여 조계사 일원에 대한 '역사문화관광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념관 부지를 포함한 조계사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2012년도 제1차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한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목록에 3개의 건물이 기념관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보존범위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계종은 부동산 전문가로 TFT를 구성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매매가를 협상하고 있음도 설명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회의와 자료 제출 및 설명 과정을 거쳐서, 2015년 6월 22일 KDI의 1차 점검회의 자료가 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는 2015년 7월 1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이때 KDI의 회의 자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법난기념관 방문객 수요추정 결과, 인구추계에 의한 시장세분화 수요추정 방법으로는 연 27만 3,189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았다. 중력모형에 의한 수요추정 방법으로는 연 37만 8,914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내국인 방문객 수는 위 둘을 평균한 32만 6,052명, 외래 관광객 예측치 1만 4,124명을 더해 내·외국인 방문객 수는 총 34만 176명으로 추산하였다.

다음으로, 조계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기념관 건립 총사업비를 1,687억 5,000만

원(국고 1,534억 900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KDI는 1,728억 8,200만 원으로 재산정하였다.

시설규모에 대해 KDI는 '대안Ⅰ·Ⅱ·Ⅲ'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대안Ⅰ을 보면 지하 5층, 지상 6층의 기념관 1동 중 지상 3층의 교육시설은 지상 4층과 지상 2층의 공간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므로 중복시설로 보아 제외시켰다. 치유시설인 기념관 2동은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이 대안대로라면 기념관 1동은 조계종이 제시한 2만 100㎡에서 1만 7,985㎡로, 기념관 2동은 1,418㎡에서 738㎡로 축소된다.

대안Ⅱ는 유사시설을 기준삼아 축소한 것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전국의 유사 과거사 시설 20곳의 건축연면적 평균값 8,867㎡에 주차면적을 포함하여 1만 737㎡를 적정 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조계종이 제시한 2만 100㎡에 비해 절반가량 축소되는 면적이다. 기념관 2동은 대안Ⅰ과 같았다.

대안Ⅲ은 치유시설인 기념관 2동을 분리하지 말고, 기념관 1동에 통합하여 건립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부지 면적은 조계종이 제시한 4,500㎡에서 기념관 2동 예정부지 면적 926㎡를 제외한 3,574㎡로 줄어든다. 이때 시설 면적은 대안Ⅱ에서 제시한 기념관 1동 면적 1만 737㎡와 기념관 2동 면적 738㎡를 합한 1만 1,475㎡로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KDI가 조계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총사업비 재산정액 1,728억 8,200만 원을 기준으로 각 대안에 맞게 총사업비를 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Ⅰ은 1,663억 700만 원(국고 1,506억 3,700만 원), 대안Ⅱ는 1,406억 6,200만 원(국고 1,249억 9,200만 원), 대안Ⅲ은 1,137억 7,200만 원(국고 981억 20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2015년 7월 1일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회의실에서 KDI, 조계종, 위원회, 문체부 종무실 불교담당종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은 KDI의 검토안에 대해 수요조사에 종교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유사시설 평균면적으로 적정면적을 산출하는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념관 2동은 한옥 양식으로 건립할 예정인데 현대식 건물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KDI는 2차 점검회의 자료 작성시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성격상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KDI는 대안Ⅱ를 최적대안으

로, 조계종은 자체 추산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대안 I 을 최적대안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쟁점은 총사업비에 모아졌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자체의 인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조계종이 제시한 총사업비의 산출근거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었다.

2015년 7월 29일, KDI의 2차 점검회의 자료가 송부되었다. 2차 자료에는 앞서 수정을 약속한 기념관 2동의 공사비 등을 수정하여 총사업비가 약간 증액되었다. 조계종에서 추정한 총사업비를 1,735억 5,400만 원(국고 1,578억 8,400만 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중복시설을 제외한 대안 I 은 1,670억 1,700만 원(국고 1,513억 4,700만 원)으로, 대안II는 1,430억 3,200만 원(국고 1,273억 6,200만 원)으로 추정하였고, 1차 점검회의 자료에 있었던 대안III은 제외되고 대안 I 과 대안II로 최적대안이 좁혀졌던 것이다. 두 가지 안에 대해 KDI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첨부하였다.

'본 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국가가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사업으로, 대안II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조계종의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대안 I 도 선택이 가능하다. 총사업비를 어느 대안으로 할 것인가는, 국가가 조계종과 협의해 온 과정을 바탕으로 위원회·문체부·조계종 및 기재부의 협의 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KDI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계종·위원회·기재부 등은 대안 I 로 의견을 모았고, 2015년 8월 11일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는 이것을 최적대안으로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위원회는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와 통화하여 대안 I 의 총사업비를 기재부 문화예산과에도 통지하였고, 2016년도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하라는 확인을 받았다.

기재부의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5]

---

5)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는 2013년 말 가격기준임.
3.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 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4. 괄호안( )의 사업비는 국공유지 포함금액임.
5. 검토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시설규모를 준용하여 검토함.
대안 1: 중복시설(2층 교육시설)을 제외한 시설규모로 검토함.

표 4-8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조계사 일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사업기간		2015 ~ 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무총리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재)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민간자본 보조			
사업규모	부지면적	4,500㎡	4,500㎡	4,500㎡	4,500㎡
	시설면적	21,518㎡	21,518㎡	18,633㎡	11,475㎡
총사업비	공사비	67,262	59,053	53,609	33,591
	부대비	8,823	6,080	5,582	3,795
	보상비	76,419	91,940	91,940	91,940
		(77,324)	(92,643)	(92,643)	(92,643)
	예비비		15,707	15,113	12,933
			(15,778)	(15,183)	(13,003)
	조계종 자부담	15,341	–	–	–
	합계	167,845	172,780	166,244	142,259
		(168,750)	(173,554)	(167,017)	(143,032)
B/C		–	–	–	–
AHP		–	–	–	–

결국 대안 I 이 최적대안으로 선정되었다. 조계종에서 기획한 기념관 1동 및 2동의 시설면적은 2만 1,518㎡에서 1만 8,633㎡로 축소되었고, 총사업비는 1,687억 5,000만 원에서 1,670억 1,700만 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총사업비에는 조계종이 현물 출자하는 토지 등의 자부담액이 포함되어 있어, 국고기준으로 보면 조계종은 1,534억 900만 원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념관 총사업비는 1,513억 4,700만 원으로 조계종의

대안 2: 유사시설 비교를 통해 적정 시설규모 산정 후 검토함.

6. 조계종 자부담분(현물출자)은 15,670백만 원으로 재추정 되었으며, 총사업비에 포함됨.
7. 최종점검회의(2015.7.1.) 시 참석자들은 대안 I 을 최적대안으로 추천함.

요구액보다 20억 6,200만 원이 감액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5 기부채납약정서 체결

앞서 재정지원협약서에 따라 조계종은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국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2항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계종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단 소유로 등기를 이전하고, 다시 기부채납을 위해 국가(문체부)에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사실을 세무당국에 명확히 증빙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계종과 문체부를 당사자로 하는 기부채납약정서 체결을 지원하여, 2015년 10월 두 기관은 약정서를 교환하였다.

6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회는 2015년 8월 기재부(문화예산과)를 방문하여 2015년도 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집행을 협의하였다. 기념관 건립예산은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있었다. 그 자리에서 기재부는 토지매입 가격은 KDI 추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간 서명 직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면 즉시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5년 10월, 조계종은 견지동 소재 건립부지 1필지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종단으로부터 서명 직전의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을 전달받은 위원회는 즉시 기재부에 수시배정

을 요청하였고, 2015년 10월 말 기념관 건립을 위한 1차 국고보조금 12억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조계종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조계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었으며, 2015년 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기념관 부지까지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에 따라 종단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발맞추어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다. 2015년 12월 조계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2억 9,400만 원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기재부와 협의 끝에 2,200만 원이 삭감된 2억 7,200만 원을 배정받아 교부하였다.

2015년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민간보조금은 19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토지 1필지 매입비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14억 8,5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되었다. 불용처분 된 180억 1,500만 원은 2017년도 예산에 요구할 예정이다.

제3절

10·27법난 기념행사

1 주요 기념행사 현황

10·27법난 기념사업은 1980년 10월 27일 법난이 일어난 지 29년만인 2009년에 조계종 주관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이는 10·27법난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부당하게 짓밟힌 한국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27법난법 제3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6] 위원회가 출범한 후인 2009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매년 지원을 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1억 원,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2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10·27법난 기념사업의 주요 행사로는 피해자 간담회와 10·27법난 기념법회가 있다. 조계종은 매년 10월 27일 법난 피해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방안과 기념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10·27법난 기념법회는 매년 10월 27일 10·27법난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조계종의 공식적인 기념행사다.

그 밖의 행사로는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역사순례, 지역의 불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10·27법난을 알리는 지역순회 강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및 간담회, 그리고 불자와 일반국민들에게 10·27법난을 알리고 법난의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 현장탐방 등

---

6) 10·27법난법 시행령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20.)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있다.

2015년에는 '10·27법난 피해자 영상물 제작'과 '10·27법난 미술전'을 새롭게 진행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영상물 제작'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다. 10·27법난이 발생한 지 35년 이상이 지나면서 피해자들 일부는 사망하고, 피해자들 대부분도 고령이어서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에 따라 시작한 것이다.

'10·27법난 미술전'은 10·27법난을 현 시대에 맞게 예술로 조명하고자 진행한 사업이다. 회화·판화·조각·공예·사진 부문의 작품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전시하였다. 10·27법난의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연도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각종 기념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4-9 10·27법난기념사업 진행 상황(2009~2015년)

연도	주요 행사
2009	피해자 간담회
	기념법회
	심포지엄
	전시회 "언론보도로 본 10·27법난의 진실"
2010	피해자 간담회
	기념법회
	세미나
	연극 '뜰 앞에 잣나무'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10·27법난 진실과 화해의 길을 찾아'
2011	피해자 간담회
	기념법회
	독후감 공모전
2012	피해자 간담회
	기념법회 및 추모음악회
	기념연극–창작창극 2015 선객
	지역순회법회
	세미나

연도	주요 행사
2013	피해자 간담회
	기념법회 및 추모 문학 예술제
	대학생 포럼 및 캠프
	지역순회강연 및 간담회
2014	피해자 간담회
	기념법회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발표회
	특별강연 및 청년캠프
	지역순회강연 및 간담회
	현장탐방
	역사순례
2015	피해자 간담회
	기념법회
	역사순례
	10·27법난 피해자 증언 영상물 제작
	10·27법난 미술전

2 연도별 기념행사 진행

1) 제29주년 법난 기념사업(2009년)

2009년은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법난기념사업에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해로, 피해자간담회 · 기념법회 · 심포지엄 · 전시회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되었다.

표 4-10 2009년 10·27법난 제29주년 기념사업

주요 행사	일 시	장 소
피해자 간담회	10.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
기념법회 (기념공연 〈승천〉)	10.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심포지엄	10.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전시회 "언론보도로 본 10·27법난의 진실"	10.9.~10.2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2009년에는 10·27법난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조계종 주관으로 기념법회가 열렸다. 제29주년 기념법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하여 10·27법난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였다. 기념법회와 연계하여 기념공연으로 〈승천〉이 공연되었다. 기념사업 대부분이 10월 9일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10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린 전시회 〈언론보도로 본 10·27법난의 진실〉은 10·27법난 발생 당시의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발표의 내용을 비교 전시한 행사였다. 10·27법난이 일어나게 된 정치적 의도를 밝히고 언론의 왜곡보도 행태를 알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한번 보고 끝나는 전시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전시 도록을 제작하여 관람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왔다.

2) 제30주년 법난 기념사업(2010년)

2010년에는 10·27법난 당일 전국 사찰을 무료로 개방하였고, 사찰 방문객들에게 〈10·27법난이 무엇이에요?〉라는 안내문 8만 부를 배포하였다. 또한 수도권 및 도심에 있는 사찰 1,000곳을 선정하여 10·27법난 기념사업 포스터 6,000부를 게시하였고, 수도권 주요 사찰에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2010년에 진행된 주요 행사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1 2010년 10·27법난 제30주년 기념행사

주요 행사	일시	장소
피해자 간담회	10.2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
기념법회	10.27.	조계사 대웅전
세미나	10.2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연극 〈뜰 앞에 잣나무〉 공연	10.25.~31.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10·27법난 진실과 화해의 길을 찾아〉	10.27.	MBC 방영

2010년 10·27법난 기념사업은 피해자 간담회, 기념법회 및 추모문학예술제, 대학생 포럼 및 캠프, 지역순회강연 및 간담회 등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먼저 10월 25일 오전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 20여 명을 초청하여 10·27법난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피해자들은 10·27법난에 대한 총체적인 명예회복방안과 개별 피해보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같은 날인 오후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27법난 기념법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조계종은 10·27법난 명예회복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 자리는 불교계 대표자와 피해 관련자, 그리고 각 신행단체 신도회가 한자리에 모여 10·27법난에 대해 알아보고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행사가 되었다.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극 〈뜰 앞에 잣나무〉를 공연하였다. 이 연극은 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알릴 시청각 자료로 활용키로 하였다. 또한 연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국 사찰 및 신행단체에 배포하였다.

한편 MBC는 다큐멘터리 〈10·27법난 진실과 화해의 길을 찾아〉를 제작하여, 10월 27일 오후 5시 35분부터 6시 30분까지 전국적으로 방영하였다. 이때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동영상 DVD로 제작하여 전국 사찰 및 신행단체 1,000곳에 배포하였다.

다큐멘터리 〈10·27법난 진실과 화해의 길을 찾아〉 역시 연극 〈뜰 앞에 잣나무〉처럼 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시청각 자료로서 이용하기로 하였다.

3) 제31주년 법난 기념사업(2011년)

10·27법난 기념사업 3년째를 맞이하는 2011년은 청년·학생 등 젊은 세대에게 10·27법난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에 진행된 기념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4-12 2011년 10·27법난 제31주년 기념사업

주요 행사	일시	장소
피해자 간담회	10.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
기념법회	10.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2012.1.1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2011년에는 〈10·27법난 제31주년 기념 독후감 공모전〉이 열렸다.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10·27법난 자료에 대한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일어난 10·27법난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10·27법난의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독후감 공모전은 응모대상을 학생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총 119편의 응모작 중 11편을 당선작으로 뽑아 시상하였다. 당선작은 불교신문에 매호 연속 게재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10·27법난조사보고서와 10·27법난 피해자 승려 녹취록이 담긴 자료집을 발간하여 전국 사찰과 학교, 정부기관, 전국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4) 제32주년 법난 기념사업(2012년)

2012년은 기존에 수도권에만 집중되었던 행사를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음악회와 연극 등 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 10·27법난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에 진행된 주요 기념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3 2012년 10·27법난 제32주년 기념사업

주요 행사	일시	장소
피해자 간담회	10.26.	조계사
기념법회 및 추모음악회	10.26.	조계사
기념연극·창작 창극 〈2015 선객〉	11.23.~12.1.	한국창극원
지역순회법회	대구-12.14. 부산-12.16.	
세미나	12.18.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세미나실

2012년에는 추모음악회, 연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10·27법난에 대해 쉽게 알리려는 의도였다.

10월 27일 피해자 간담회에는 피해자 28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10·27법난 관련 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10·27법난 기념법회 및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조계사 경내에서 피해자와 불자,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하여 10·27법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창작 창극 〈2015 선객〉은 10·27법난을 겪은 가족을 소재로 한 공연 작품이다. 10·27법난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고초를 겪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처음으로 시도한 지역순회법회는 애초 5대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행사가 연말로 미루어지면서 각 지방 주요 사찰들과 행사 일정이 겹쳐 대구와 부산, 2곳에서만 진행하였다.

5) 제33주년 법난 기념사업(2013년)

2013년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10·27법난을 알리고, 더 많은 지역으로 행사를 확대하였다. 또한 청년세대에게도 10·27법난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 진행된 기념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4 2013년 10·27법난 제33주년 기념사업

주요 행사	일시	장소
피해자 간담회	10.2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
기념법회 및 추모문학예술제	10.2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대학생 포럼 및 캠프	11.9.~23.	서울, 강원, 대구, 전주
지역순회강연 및 간담회	제주 - 11.12.~15. 울산 - 12.4. 광주 - 12.19.	제주, 울산, 광주

2013년 10월 25일 오전 11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다. 피해자 18명이 참석하였으며, 10·27법난 관련 사업 경과보고와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오후에는 10·27법난 기념법회 및 추모 문학예술제가 열렸다.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강원·대구·전주에서 대학생 포럼 및 캠프가 열렸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대학생 180여 명이 참가하였고, 강사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고현주 사진작가가 '상상하라 자유로운 세상'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27법난에 대해 인터뷰를 하여 10·27법난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2013년에도 지역순회법회를 열었다.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12월 4일은 울산에서, 12월 19일은 광주에서 지역순회법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250여 명이 참석한 제주 지역순회법회에는 피해자 11명이 함께 했다. 울산은 520여 명, 광주는 350여 명이 참가하였다.

6) 제34주년 법난 기념사업(2014년)

10·27법난 기념사업이 6년째에 접어들면서 2014년에는 기존에 해오던 행사들과, 아울러 피해자들의 요구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행사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 진행된 기념사업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5 2014년 10·27법난 제34주년 기념사업

주요 행사	일시	장소
피해자 간담회	10.2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
기념법회	10.2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발표회	6.1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특별강연 및 청년캠프	특별강연 동대부고-9.19. 광동고-9.26. 청년캠프-9.20.	특별강연-동대부고, 광동고 청년캠프-한국문화연수원
지역순회강연 및 간담회	인천-11.25. 강원-11.27.	인천, 강릉
현장탐방(10.16~11.29)	10.16.~11.29.	조계사 안심당, 광주 트라우마치유센터 등
역사순례	12.13.~17.	캄보디아

2014년은 과거 기념사업과 달리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도하고, 법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치유를 통해 역사의 상처를 보듬고 아픈 과거를 상생과 화합의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다.

'지역순회강연 및 간담회'는 인천과 강원(강릉) 서 개최하여 법난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천에서는 550여 명, 강릉에서는 450여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부산 · 대구 · 제주 · 광주 · 울산 · 인천 · 강원 등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대학생 등 청년세대에게 과거 국가 권력의 부당한 행위와 그 교훈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특별강연과 청년캠프'는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올바른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을 새롭게 심어주었다.

2014년 해외역사순례는 '킬링필드'라는 아픔을 간직한 캄보디아 현장에서 국가 권력의 부당성과 전쟁의 참상을 확인하여 '폭력'에 대한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해외역사순례에 동참한 사람들은 피해자와 조계종, 법난위원회 등 25명이었다.

10월 27일에는 피해자 간담회와 기념법회가 열렸다. 피해자 간담회는 피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념법회에서는 공헌자 표창을 진행하여, 10·27법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난으로 인한 불교, 종단 등의 명예회복에 힘쓴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원행 스님, 진관 스님, 이근우 씨가 수상하였다.

6월 19일에는 피해자 명예회복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표 4-16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발표회

주 제	발표자
10·27법난의 증언, 명예회복방안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상황과 통합적 치유모델	인권의학연구소 임채도 사무국장
10·27법난 기념관 운영방안 연구	이경순 문학박사
10·27법난 기념관 기본구상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구현 소장

2014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현장탐방'은 불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릴레이 강연과 국내 각종 치유센터를 방문하는 행사다. 그동안 10·27법난기념사업에서 시행해오지 않았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에게 10·27법난과 국가폭력에 대해 알리는 강연·워크숍·현장탐방 등으로 사업이 이어진 것이다. 그 중 현장탐방은 김근태 치유센터, 평택 쌍용차 해고자 심리치유공간 '와락', 노근리 평화공원, 광주 트라우마센터 등을 둘러보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국가 폭력과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며 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치유 해법을 모색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시민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7) 제35주년 법난 기념사업(2015년)

2015년에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10·27법난 피해자 증언 영상물 제작', 피해자들의 아픔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하는 '10·27법난 미술전'이 진행되었다.

2015년에 진행된 기념사업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7 2015년 10·27법난 제35주년 기념사업

주요행사	일시	장소
피해자 간담회	10.2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
기념법회	10.2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역사순례	6.11.~14.	중국
10·27법난 피해자 증언 영상물 제작		
10·27법난 미술전	시상 10.27. 전시 10.23.~ 10.28.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현장탐방 10·27법난을 듣는 사람들	7.16.~11.1.	제주 서귀포, 광주, 서울, 남양주, 구례

2015년의 기념사업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2015년은 기념관 건립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이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기념관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2015년 10·27법난 기념사업은 10·27법난 기념관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준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 증언 영상물 제작'이었다. 영상물 제작은 10·27법난이 35년이 흘러 피해자들 일부는 사망하였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시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았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작된 영상물은 앞으로 건립될 10·27법난 기념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10·27법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방송(BBS)이 촬영을 진행하였다. 불교방송의 담당 PD와 카메라 감독이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영상으로 담았다.

'10·27법난 미술전'은 10·27법난 피해자들의 아픔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해서 10·27법난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품의 장르는 회화·판화·조각·공예·사진 등이다. 10월 21일 작품 접수 결과 총 91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대상은 1명을 선정했는데, 김화언의 '기도'가 당선되었다. 최우수상은 2명으로 오현욱의 '빼앗기다'와 임태치의 '인과응보'를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또 특별상 1명, 우수상 3명, 특선 10명, 입선 31명의 수상자를 뽑았다. 시상식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10·27법난 기념법회'가 끝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하였다. 특별상은 피해자의 아픔을 표현한 피해자인 일선 스님이 수상하였다. 시상된 작품은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전시하였다.

'현장탐방 10·27법난을 듣는 사람들'은 듣기 워크숍, 릴레이 강연, 현장 순례로 진행되었다. 듣기 워크숍은 4차례 진행하였는데 7월 16일은 제주도 서귀포시, 9월 7일과 9월 21일은 서울, 그리고 10월 31일은 화엄사에서 진행하였다. 듣기 워크숍은 10·27법난을 겪은 피해자들을 모시고 10·27법난의 진실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된 행사이다. 원행 스님, 한영수 전 문공부 종무관, 명선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서서 참가자들에게 10·27법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릴레이 강연은 10·27법난의 배경과 교훈을 되짚은 행사이다. 10월 8일 광주 무각사에서 진행하였고, 강사는 성공회대 교수이자 역사학자인 한홍구 교수가 맡았다.

현장탐방은 10·27법난의 현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당시의 모습을 찾아가보는 사업이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2일 동안 진행되었다. 10·27법난이 일어난 후 24명의 승려들이 2달 동안 연금되었던 남양주 흥국사와 구례 화엄사에 둘러보았다. 당시 화엄사에서 피해를 입은 명선 스님이 10·27법난 때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이 현장탐방에는 불자와 대불련 회원 등 40여 명이 참가하였다.

'피해자 간담회'와 '10·27법난 기념법회'가 10월 27일에 열렸다.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2015년 기념사업에서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때 피해자 29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10·27법난 기념법회'에서는 피해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10·27법난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겼다.

2015년에는 중국 난징에서 '피해자 역사순례'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을 포함해 21명이 참가했다. '피해자 역사순례'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10·27법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난징대학살기념관 방문을 통해 전쟁과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제5장

위원회 활동성과와 후속과제



활동성과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수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관계자를 강제로 연행하여 수사한 사건을 말한다. 이때 합수단은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 아래 군·경 합동으로 전국 사찰 및 암자를 수색하여, 불교계의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행자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10·27법난이 일어난 지 28년만인 2008년 3월 28일 10·27법난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해왔다. 시일이 오래 지났지만 늦게라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10·27법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불교계 피해자와 조계종을 비롯한 피해종교단체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1] 피해실무위, 명예실무위, 의료실무위 등 3개 실무위원회를 두어 피해신고를 한 개인 및 단체의 피해사실을 심의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3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의·의결을 하였다. 그동안 피해실무위 32회, 명예실무위 29회, 의료실무위 34회 등 총 95회의 실무위원회 회의와, 47회의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위원회가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피해신고 및 직권으로 처리한 건수는 251건이었다. 그 중에서 개인 96명, 단체 52개가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로 인정되었다.

---

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신고기한을 최종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였고,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일부 재심 건에 대한 심사도 2015년 12월 초까지 전부 마무리하였다.

또한 피해자들 가운데 54명에게는 총 7억 4,996만 4,614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사망자와 생존자들에게는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를 수여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와 의료지원금 지급 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위원회의 성과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예산의 확정과 기념행사 지원이었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은 사건 당시의 피해 자료를 상설 전시하여 일반인들에게 10·27법난의 진상을 알리고,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원회는 10·27법난의 주요 피해 사찰인 조계사 인근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10·27법난 기념관은 4,500㎡ 부지에 2개동을 건립하게 되는데, 건평 2만 1,518㎡의 규모로 201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념관 부지매입 및 건립비용으로 총사업비 1,670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현대사에서 종교계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인 10·27법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은, 10·27법난의 진상을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위원회는 10·27법난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기획하여 지원하였다. 조계종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기념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었는데 10·27법난 기념법회를 비롯하여 연극 공연, 피해자 역사순례, 대학생 포럼 및 캠프, 현장탐방 등의 행사였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억 원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억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념사업을 통하여 불교신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법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도록 하여 명예회복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갔다. 이처럼 매년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다시는 법난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다.

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를 위하여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계엄사령부 합수단에서 발표한 불교계의 피해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해신고가 매우 저조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10·27법난 직후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연행되어 수사를 받은 인원이 총 1,929명이었고, 수색한 사찰과 암자가 총 5,731개에 달하였다. 이에 비하면 피해신고 인원은 개인 126명, 단체 45개밖에 안 돼 합수단의 수사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피해신고를 한 신청인과 피해사찰이 적었으므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 인정 건수도 크게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위원회가 활동한 기간과 피해자 인정을 위한 노력에 비하여 피해신고 자체가 저조했던 원인은, 대부분 승려 신분인 피해자들이 10·27법난 당시 겪은 치욕스런 일들에 대하여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껴 신고를 기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10·27법난이 일어난 지 28년 만에 법이 제정되고, 29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시기적인 문제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0·27법난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 한계도 일부의 경우 피해신고율이 저조했던 이유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즉 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개인의 배·보상이 제외되었다는 점, 상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었다는 점,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은 10·27법난법의 법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후속과제

위원회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무처는 2016년 6월 30일 해산되고, 잔여 업무는 문체부 종무실로 이관되어 후속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2015년 12월 31일 국회 통과로 제3차 10·27법난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한시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사업 기간이 삭제되어, 이로써 10·27법난 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관 건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과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 이외에 아직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피해사실을 인정·심의하여야 한다. 10·27법난이 발생한 지 36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을 감안할 때, 이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사망하기 전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사업 시행 주체인 조계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기념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10·27법난 기념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10·27법난 기념관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10·27법난기념재단'(가칭)을 조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다. 기념재단 설립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활동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10·27법난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위하여 기념재단 산하에 부설 연구소를 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0·27법난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4·3희생자추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섯째, 피해자들이 대부분 승려이고 연로한 관계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에 추가 의료지원금이나 요양비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피해자 개개인의 배·보상 요구와는 별도로, 형식적인 위로를 넘어 보다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불교신도 이외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파급효과를 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10·27법난의 개요를 게재하고, 법난 당시 과장·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또는 기획보도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10·27법난은 현대사에서 특정 종교를 상대로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위원회는 지난 8년여 동안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신고 공고를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신청인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자 인정과 의료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피해신고 건수가 너무 저조하여 현실적으로 당시의 피해자는 물론 불교계가 입은 상처도 만족할 만큼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체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위원회는 후속과제를 중심으로 법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더욱 힘을 기울여, 10·27법난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 록

10 · 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 명단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부록 1】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 명단

1) 10·27법난 피해자

위원회에서 인정한 법난 피해자는 총 96명이다. (본명 가나다 순)

강만봉: 상원사 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불법으로 연행되어 감금 및 고문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9월 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권장수(도현): 도선사 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2주일간 구금 상태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도선사 재무국장에서도 해임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각경: 조계사 신도로 10·27법난 당시 조계종 기획국장 윤월 스님이 소송 중일 때 일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무고죄로 수감되었다. 신청 전 사망으로 아들이 대리신청한 건인데, 국군기무사령부, 대법원 판결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1년 6월 2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강웅(도명): 상원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다음해인 1981년 1월 상원사 소림초당에서 국가의 불교탄압을 이유로 분신 기도를 하다 다른 승려들에 의해 구출되었다. 이후 보안대에 연행되어 1주일 동안 조사를 받으며 협박과 고문으로 인한 고초를 당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미검 수배 중 보고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광희(진우): 광흥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합수단에서 수배 중일 때 1년간 피신하여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주직도 박탈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8월 25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기곤: 조계종 관리계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연행되었다. 15일간 감금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직장에서도 강제로 퇴직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1년 2월 15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기태(천장): 용흥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로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도학: 조계종 재무부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1주일간 구금되어 구타와 협박을 당하고, 조계종 재무부장직에서도 해임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1년 4월 19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환속).

김삼형(현철): 은해사 재무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21일 동안 감금 상태에서 협박 및 폭행, 1개월간 흥국사 강제 참선과 5년 동안 공권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1년 6월 2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수년(명현): 화엄사 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연행되어 폭행을 당했다. 이때 화엄사 재무국장직과 서산사 주지직도 박탈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3월 2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연수(지성): 선운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로 강제 연행되었다.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증을 받았다.

김용오(경우): 대각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때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구타 및 고문을 당했다. 이때 주지직을 포함하여 조계종의 모든 직책이 박탈되었다. 법난으로 인한 상이로 2010년 6월 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종우(도웅): 반룡사에서 기도 정진하던 중 10·27법난 당시 군인들에 의해 경북 영천훈련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강압적 조사로 정신적 충격과 인격적 모멸감 등을 느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4월 9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주환(관후): 갑사 부전의 소임을 맡았던 10·27법난 당시 대자암에서 군인 수십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9월 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중건(자성): 적조암 총무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연행되었다. 심문 중 폭행을 당하고 적조암 총무직에서도 해임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4년 8월 2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천석(회광): 표충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강압 조사를 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친동생이 대리 신청을 한 건인데,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9월 14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천일(혜법): 조계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협박과 고문을 당했고, 주지직 박탈과 공권정지 5년 처분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12월 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한기(서운): 동화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형묵(기성): 천태종 재무부장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천태종 일관 대리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홍규(금용): 조계종 전 재무부장으로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심문 중 협박을 당했다. 종회의원 박탈과 함께 5년 동안 공권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김희현(능혜): 조계종 재무부장 소임을 맡았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허리를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조계종 정화위원회 공권정지 1년 처분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남익순(대충): 천태종 종정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천태종단 일괄 대리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문공부 통보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류광수(지호): 청곡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대웅전에서 기도 중일 때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하다 축대에서 떨어져 골절상과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5월 20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류희민(종근): 불국사 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가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연행되어 심문받을 때 협박과 모욕을 당했으며, 공권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9월 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문성경(혜운): 10·27법난 당시 법주사 교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가 보안대에 연행되어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며, 부정축재의 누명을 쓰고 체탈도첩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9월 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문윤식(법장): 낙산사 부전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낙산사 홍련암 법당에서 사찰을 수색하던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8월 25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박대홍(법등): 임휴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연행되어 협박과 폭행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3년 12월 4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박무홍: 조계사 도감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구타를 당하였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4년 1월 22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환속).

박용식(명선): 10·27법난 당시 화엄사 주지로 소임을 맡고 있다가 보안대에 연행되어 협박과 고문, 주지 해임과 공권정지 5년 처분을 받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11월 16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박인수(청하): 통도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월하 스님과 함께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증을 받았다.

박정운(법열): 심광사 총무국장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강압 조사와 구타를 당했으며 조계종에서 제적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12월 21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피해자 결정 후 입적하였다.

박주식(진설): 조계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에 입적한 승려로 조계종 총무원장이 일괄신청을 한 건(이후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당시 합수단 수사기록과 조계종 정화위원회 공권정지 5년 처분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사실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박준석(석암): 천태종 총무원장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자진 출석하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계엄령 해제로 청주교도소로 이감되어 1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하였다. 신청 전 입적한 승려로 아들이 대리신청을 하였으며,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11월 16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박태일(현소): 봉정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구금 상태에서 11일 동안 협박 조사를 받았으며, 주지직을 박탈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4년 4월 9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박한남(광진): 다솔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감금 상태에서 욕설과 구타를 당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배두관(철우): 조계종 기획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합수단에 강제 연행되었다. 1주일 후 보안대로 넘겨져 10일 정도 심문을 받았고, 1개월 동안 흥국사 강제 참선을 한 후 풀려났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백식화(현광): 석수암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로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과 조계종 정화위원회 체탈도첩 처분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서병식(정대): 신륵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 통해 피해사실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서승남(윤월): 10·27법난 당시 홍은암에서 기도 정진하다가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고 체탈도첩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6월 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서영숙(월궁): 천태종 구인사 법사로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협박 조사를 받고 인간적인 모멸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성성환(청욱): 관음사 주지로 있을 당시인 10·27법난 때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강압조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주지직도 박탈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1월 2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송현섭(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있던 10·27법난 때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23일간 구금되었다. 강압에 의하여 조계종 총무원장직도 사임하였다. 이로 인하여 종권 찬탈과 명예 실추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난에 의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피해 승려라는 점에서, 2015년 6월 30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승종봉(법민): 조계사 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가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었다. 보안대에서 강압조사와 고문을 당했으며, 직책도 박탈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4월 9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신현배: 법상종의 덕암사 부전 소임을 맡고 있던10·27법난 당시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군인 3~4명으로부터 손과 팔을 심하게 비트는 폭행을 당하여 후유증을 앓았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11월 16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환속).

신흥균: 상원사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로 연행되어 감금 상태에서 협박과 고문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11월 16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여옥희(문성): 천태종 구인사 법사로 10·27법난 당시 법당 내의 3층 방에 감금되어 협박 조사를 받았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오영준(성면): 명봉사 주지로 소임 중 10·27법난으로 보안대에 연행되어 강압조사와 고문을 받았으며, 주지직에서도 박탈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6월 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오인근(법달): 조계종 감찰부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연행되었다. 40여 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1년 4월 19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우홍근: 마곡사 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연행되었다. 감금 상태에서 심문을 받을 때 폭행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7월 22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환속).

윤동암(일선): 조계종 이차돈선양회 소속 승려로 있던 10·27법난 당시 합수단 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들에게 떠밀려 3층에서 2층 계단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8월 25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윤수만(성해): 10·27법난 당시 제주 천왕사 주지로 소임 중 제주공항에서 보안대로 연행되어 강압적 조사를 받았으며, 부정축재 누명을 쓰고 승적을 제적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4월 9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윤흥식(덕산): 천태종 교무부장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자진 출두해 강압 조사와 구타 및 고문을 당했다. 천태종 일괄 대리신청 건으로, 피해자 결정 후 입적하였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9월 14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윤희중(월하): 통도사 조실로 있던 10·27법난 당시 은사인 청하 스님과 함께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로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건호: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3일간 구금되어 고문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1월 2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경환(현광): 증심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도피하였다가 1981년 2~3월경 경찰에 자수하였다.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교도소에 수감돼 구타 및 봉체조 등을 당하였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보고 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근배(혜성): 도선사 주지 소임 중이던 10·27법난 당시 합수단 제3국에 연행되었다. 강압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며, 주지직 박탈과 함께 체탈도첩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7월 22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근우: 도선사에서 운영하는 청담학원 이사로 근무하던 중 10·27법난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3국에 연행되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하고 직책 또한 박탈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12월 21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기남(자항): 적조암 시봉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사찰 경내를 수색하던 군인에게 구타를 당하고, 파출소로 연행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4년 8월 2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도성(도성): 해인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합수단에 의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약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주지직에서도 해임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8월 25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배원(자신): 10·27법난 당시 수배자로 도피 생활을 하다 보안대에 자수하여 고문을 당하고, 능인사 주지에서 해임되어 승적이 박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6월 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법철(법철): 조계종 사회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조계사 2층 불교신문사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총무원 사회국장직에서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6월 30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병한(청수): 신흥사 부주지겸 재무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수배를 당해 3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6월 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상열(현우): 월정사 부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삼청교육대에 가서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조계종 정화위원회 체탈도첩 처분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성휘(원행): 10·27법난 당시 월정사 재무국장을 맡고 있던 중 보안대에 연행되어 20일 동안 구금 상태에서 협박과 고문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11월 16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재명(자순): 적조암 승려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조사를 받던 중 폭행을 당하고, 삼청교육대에 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 기록과 삼청교육대 기록, 조계종 정화위원회 체탈도첩 처분 기록 등과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종석(근식): 표충사 재무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11일간 감금 상태에서 구타와 협박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7월 22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임동철(정산): 약사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허리, 어깨 통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증을 받았다.

임점택(원광): 신흥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에 입적한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조계종 정화위원회 체탈도첩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사실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장인찬(희찬): 월정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15일간 조사를 받던 중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 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전득수(설정): 수덕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11일간 지하실에 구금된 상태로 폭언과 협박을 받아 인격적 모독과 수치를 느끼는 피해를 입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6월 30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전보원(보원): 선석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상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입원 중에 있을 때 상좌가 대리신청을 한 건으로,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5월 20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전종윤(운덕): 천태종 구인사 총무부장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협박과 고문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1년 2월 15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정기철(정수): 보문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전기고문·물고문 등으로 척추 등에 상이가 발생하였으며, 주지직을 박탈당하였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조계종 정화위원회 체탈도첩 처분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정동군(삼오): 조계사 주지의 시봉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쇄약으로 인한 공포증까지 생겼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1월 27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정막동(명철): 화엄사 부주지 소임 중 10·27법난으로 인하여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16일 동안 감금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3월 2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정재우(지우): 대흥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로 연행되어 83일간 감금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승적에서도 제적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12월 21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정희자(명성): 천태종 판매부에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심문 과정에서 고문과 희롱을 당했다. 신청 후 입적 승려로 천태종 일괄 대리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조강원(중하): 조계사 사무장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강압조사를 받던 중 허리 등을 무차별로 구타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4년 1월 22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조운석(대정): 천태종 종정 사서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구타와 고문을 받고 투옥되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천태종 일괄 대리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조학주(학능): 백양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과 조계종 정화위원회 공권정지 2년 처분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볼 때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채규호: 조계사 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가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구금되어 심문 과정에서 협박과 고문을 당했다. 이때 조계사 재무 공직도 박탈당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법난으로 인한 상이로 2009년 12월 21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환속).

천성봉(도만): 계림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로 연행되었다. 3일 동안 구금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고, 주지직도 박탈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5월 20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최영권(원철): 낙산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한 달 간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를 당해 하복부에 물이 차는 상이를 입었으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조계종 정화위원회 공권정지 5년 처분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최용경(명연): 성불사 주지 소임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오래도록 고생을 하였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09년 11월 16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최종렬(월산): 불국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강압에 의해 주지직 사퇴서를 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최현인(정혜): 통도사 강원 학인으로 있던 10·27법난 당시 사찰 경내를 수색하던 군인에게 구타를 당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4년 6월 24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하태용(성조): 성덕암 원주 소임을 맡고 있던 10·27법난 당시 군인들이 법당으로 난입하여 구타를 당했다. 군인들이 몸을 밟고 총으로 위협하여 가슴에 통증을 느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한영수: 문공부 종무관으로 근무하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강압적인 조사를 받고 수감되었으며, 공직에서 파면조치를 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9월 14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한정기(자용): 적조암 전 주지로, 10·27법난 당시 합수단에 의해 수배된 것을 알고 약 1년 정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5년 5월 20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허인환(성운): 무량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사에 연행되어 강제로 조서를 작성케 하고, 욕설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4년 4월 9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홍상길(성진): 내장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보안대에 수배되어 주지직을 박탈당했으며, 2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정읍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의 미검 체포 후 처리 보고 기록,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볼 때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홍성한(무외): 광흥사 승려로 있던 10·27법난 당시 사찰 내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수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그 후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았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4월 9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홍현희(봉주): 해인사 전 주지로 10·27법난 당시 군인들의 폭행으로 머리와 허리 상이를 입었다. 심사 대상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합수단 기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다. 법난에 위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황기연(오현): 광덕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신청 전 입적 승려로 조계종 일괄신청 건인데, 합수단 수사 기록과 징계처분 등의 기록은 없으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 입증이 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황태로(종래): 보현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법당에 들이닥친 군인들의 폭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주지직 및 종회의원에서 박탈당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2년 10월 18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황한수(진경): 마곡사 주지로 있던 10·27법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주지직에서도 강제 사임되었다. 법난에 의한 상이로 2010년 3월 2일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2) 피해종교단체

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종교단체는 총 52개다.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당시 조계종 소속 5,000여 사찰에 대한 폭력적 유린, 승려 2,000여 명 연행 및 구금 · 가혹행위 · 폭행과 그에 따른 사망 및 환속, 약 200만 명의 신도 급감, 언론에 의한 조계종의 이미지 실추, 법난 후유증으로 인한 조계종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갑사(공주): 10·27법난 당시 갑사의 부전 소임을 맡고 있던 김주환(관후)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계림사(김천): 10·27법난 당시 계림사 주지였던 천성봉(도만)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고운사(의성): 10·27법난 당시 고운사 주지였던 백식화(현광)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관음사(김천): 10·27법난 당시 관음사 주지였던 성성환(청욱)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광흥사(안동): 10·27법난 당시 광흥사에 있던 홍성한(무외)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낙산사(양양): 10·27법난 당시 낙산사 주지였던 최영권(원철)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내장사(정읍): 10·27법난 당시 내장사 주지였던 임동철(정산)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능인사(인천): 10·27법난 당시 능인사 주지였던 이배원(자신)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대각사(부산): 10·27법난 당시 대각사 주지였던 김용오(경우)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대자암(공주): 10·27법난 당시 대자암 부전 소임으로 있던 김주환(관후)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대흥사(해남): 10·27법난 당시 대흥사 주지였던 정재우(지우)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덕암사(남양주): 10·27법난 당시 덕암사 부전 소임을 맡았던 신현배(율봉)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도선사(서울): 10·27법난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이근배(혜성)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동화사(대구): 10·27법난 당시 동화사 주지였던 김한기(서운)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마곡사(공주): 10·27법난 당시 마곡사 주지였던 황한수(진경)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명봉사(예천): 10·27법난 당시 명봉사 주지였던 오영준(성면)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무량사(부여): 10·27법난 당시 무량사 주지였던 허인환(성운)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반룡사(고령): 10·27법난 당시 반룡사 대중이었던 김종우(도웅)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백련사(서울): 10·27법난 당시 백련사 주지였던 승종봉(법민)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백양사(장성): 10·27법난 당시 백양사 주지였던 조학주(학능)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범어사(부산): 10·27법난 당시 법어사 말사인 다솔사 주지였던 박한남(광진)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법주사(보은): 10·27법난 당시 법주사 교무국장이었던 문성경(혜운)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보문사(강화): 10·27법난 당시 보문사 주지였던 정기철(정수)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보현사(대구): 10·27법난 당시 보현사 주지(종회의원)였던 황태로(종래)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봉정사(안동): 10·27법난 당시 봉정사 주지였던 박태일(현소)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불국사(경주): 10·27법난 당시 불국사 재무국장이었던 류희민(종근)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상원사(평창): 10·27법난 당시 상원사 주자였던 김강웅(도명)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서산사(곡성): 10·27법난 당시 서산사 주지였던 김수년(명현)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선운사(고창): 10·27법난 당시 선운사 주지였던 김연수(지성)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성덕암(창원): 10·27법난 당시 성덕암 원주 소임을 맡고 있던 하태용(성조)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성불사(서울): 10·27법난 당시 성불사 주지였던 최용경(명연)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수덕사(예산): 10·27법난 당시 수덕사 주지였던 전득수(설정)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신흥사(속초): 10·27법난 당시 신흥사 부주지였던 이병한(청수)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심광사(대전): 10·27법난 당시 심광사 총무국장으로 있던 박정운(법열)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연주암(과천): 10·27법난 당시 연주암 지주였던 김홍규(금용)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용주사(화성): 10·27법난 당시 용주사 주지였던 서병식(정대)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월정사(평창): 10·27법난 당시 월정사 재무국장으로 있던 이성휘(원행)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은해사(영천): 10·27법난 당시 은해사 재무 소임을 맡았던 김삼형(현철)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임휴사(대구): 10·27법난 당시 임휴사 주지였던 박대홍(법등)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장경사(경기 광주): 10·27법난 당시 장경사 주지였던 승종봉(법민)이 피해자로 이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적조암(서울): 10·27법난 당시 적조암 승려였던 이자명(지순)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조계사(서울): 10·27법난 당시 조계사 주지였던 김천일(혜법)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증심사(광주): 10·27법난 당시 증심사 주지였던 이경환(현광)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천왕사(제주): 10·27법난 당시 천왕사 주지였던 윤수만(성해)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청곡사(진주): 10·27법난 당시 청곡사 주지였던 류광수(지호)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통도사(양산): 10·27법난 당시 통도사 주지였던 박인수(청하)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표충사(밀양): 10·27법난 당시 표충사 재무 소임을 맡고 있던 이종석(근식)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해인사(합천): 10·27법난 당시 해인사의 승려 이도성(도성)과 홍현희(봉주)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홍은암(서울): 10·27법난 당시 홍은암에 있던 승려 서승남(윤월)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화엄사(구례): 10·27법난 당시 화엄사 주지였던 박용식(명선)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소속 사찰을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구인사(천태종, 단양): 10·27법난 당시 천태종 총무원장 등 11명의 승려에 대한 폭행 · 구타 · 폭언, 복전함의 시주금 임의 탈취 몰수, 불단 및 기물 파손, 신도수가 15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급감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종교단체로 인정하였다.

【부록 2】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1) 10·27법난 피해자(입적 승려): 故 윤희중(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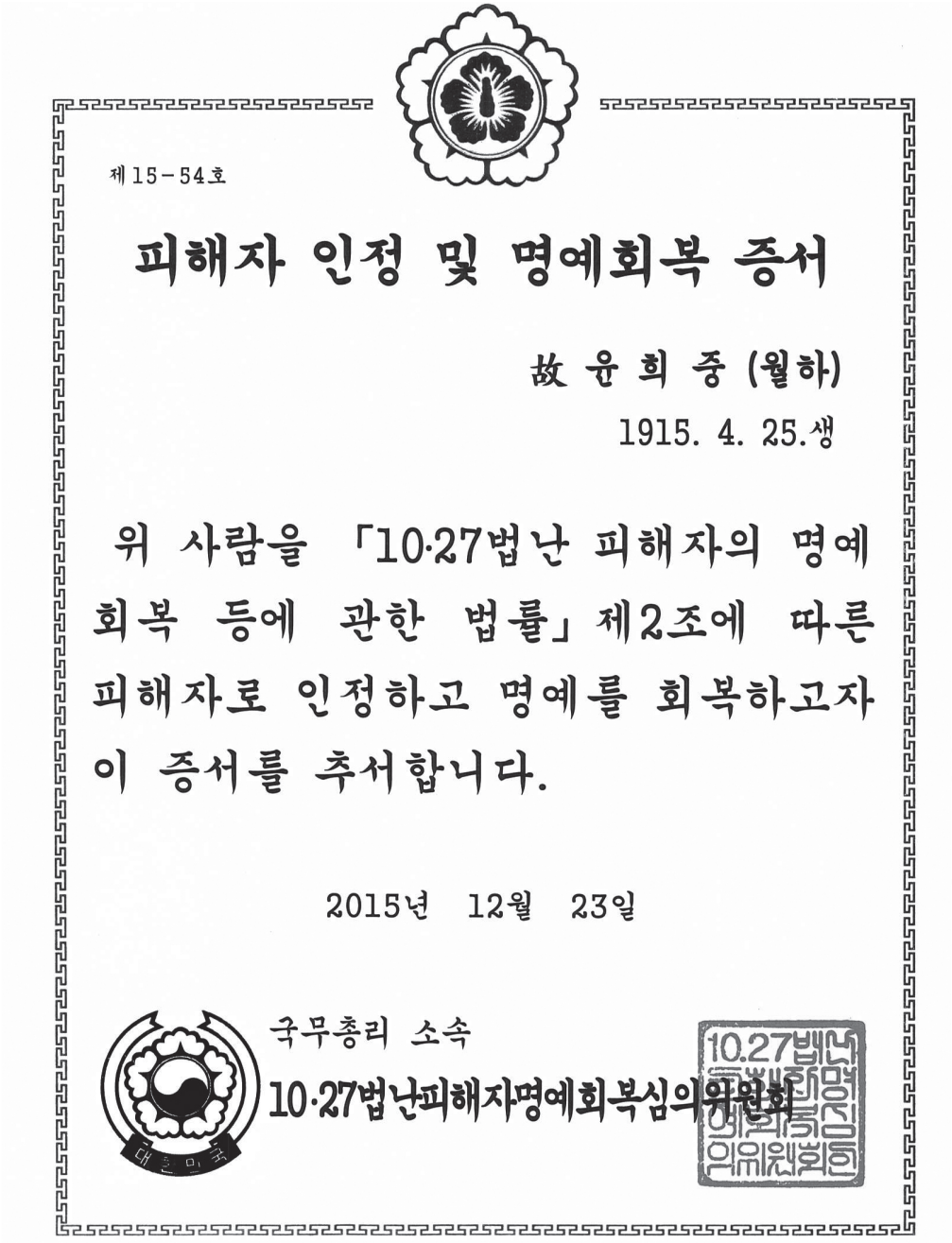

제 15-54호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故 윤 희 중 (월하)

1915. 4. 25.생

위 사람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증서를 추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 10·27법난 피해자(생존자): 송현섭(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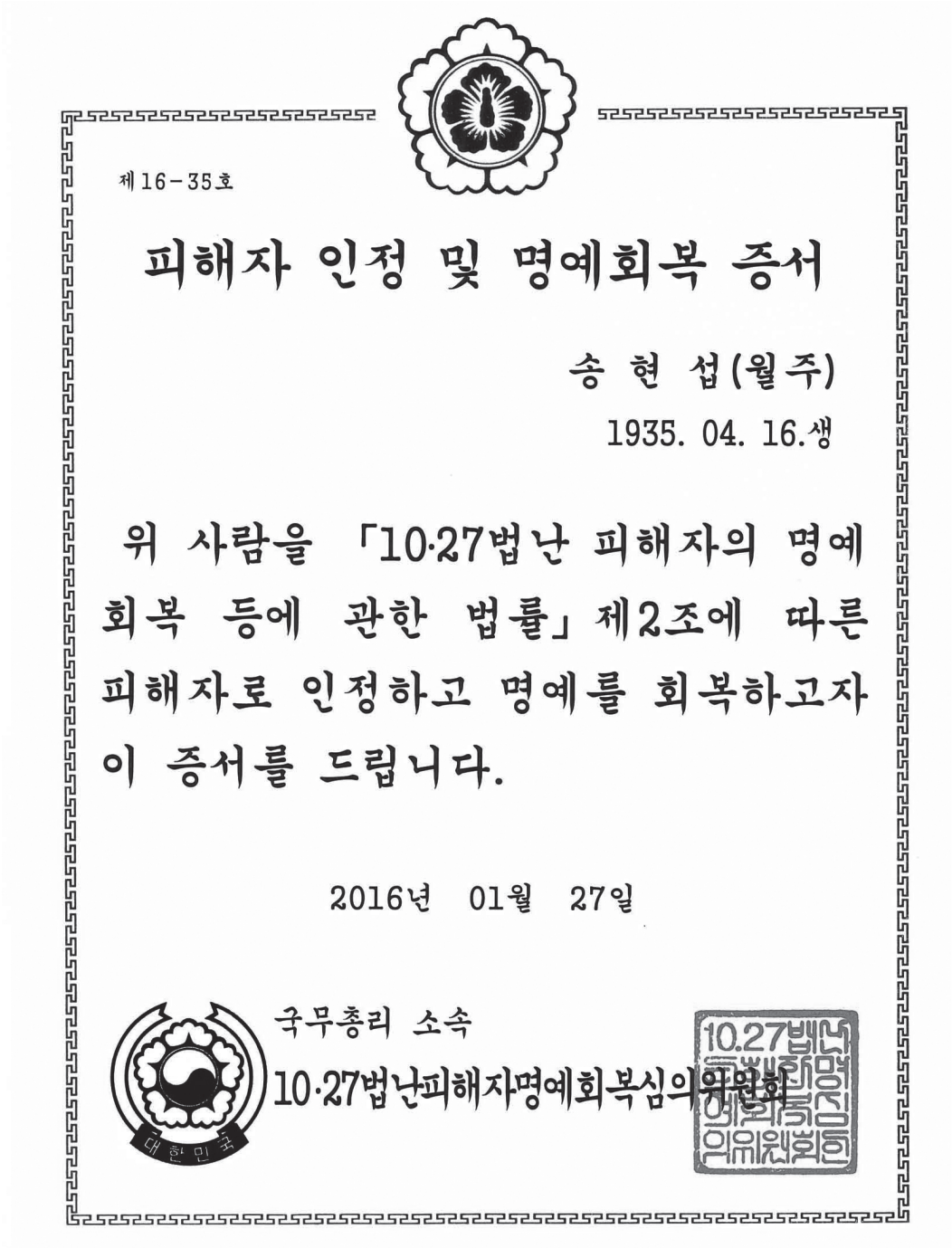

제 16-35호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송 현 섭(월주)

1935. 04. 16.생

위 사람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01월 27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3)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제 15-1호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대한불교조계종

귀 종단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종교 단체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조계사(대한불교조계종 제1교구본사)

제 15-3호

피해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귀 사찰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종교 단체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 편집위원회

위원장 **허남오**(심의위원회 위원)

위 원 **진희권**(경기대 법학과 교수) **서재영**(불광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선두(불교신문사 편집부장) **김용구**(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

백서 기획단

단 장 **윤남순**(심의위원회 사무처장)

부단장 **조연갑**(심의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공승관(심의위원회 명예회복지원과장)

총 괄 **이원균**(심의위원회 명예회복지원과 백서 담당)

단 원 **엄광용**(심의위원회 명예회복지원과 백서 담당)
현석이(심의위원회 기획총괄과 기록물 관리 담당)

원 고 **이정권**(심의위원회) **이경수**(기념관)

작 성 **김진수**(명예회복방안) **황종하**(의료실무위) **최홍섭**(기념행사)

10·27 법 난 피 해 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

인 쇄 일 2016년 6월 9일

발 행 일 2016년 6월 15일

발 행 처 국무총리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우)03145)
Tel: 02-738-6210 Fax: 02-730-5991
http://www.1027beopnan.go.kr

디자인 · 인쇄 디자인페이지(02-2285-5278)